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규정집



Contents

01	한국음악저작권협회	001
02	한국음반산업협회	079
03	한국음악실연자연협회	111
04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	149
05	한국방송작가협회	221
06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243
07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277
08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289
09	한국영화제작가협회	303
10	한국언론진흥재단	321
11	한국문화정보원	351

01

한국음악저작권협회

1. 사용료 징수규정
2. 사용료 분배규정
3. 관리수수료 규정
4. 신탁계약약관
5. 이용계약약관

01 사용료 징수규정

1988년 02월 23일 제정	2012년 12월 27일 개정
1988년 08월 17일 개정	2013년 01월 25일 개정
1988년 10월 25일 개정	2013년 03월 18일 개정
1989년 05월 11일 개정	2013년 04월 23일 개정
1990년 07월 14일 개정	2013년 11월 26일 개정
1992년 07월 14일 개정	2014년 11월 17일 개정
1997년 01월 31일 개정	2015년 08월 26일 개정
2002년 06월 01일 개정	2015년 12월 23일 개정
2002년 12월 30일 개정	2016년 01월 25일 개정
2003년 06월 27일 개정	2016년 03월 28일 개정
2003년 10월 16일 개정	2016년 10월 19일 개정
2005년 10월 21일 개정	2018년 03월 26일 개정
2006년 07월 14일 개정	2018년 06월 20일 개정
2007년 07월 19일 개정	2019년 12월 17일 개정
2008년 02월 28일 개정	2020년 12월 11일 개정
2009년 11월 01일 개정	2022년 08월 23일 개정
2012년 02월 15일 개정	2023년 05월 09일 개정
2012년 03월 15일 개정	2024년 07월 31일 개정
2012년 06월 08일 개정	2025년 03월 13일 개정
2012년 12월 26일 개정	2025년 05월 07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와 협회에서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이하 “관리저작물”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간의 음악저작물 사용에 따른 공정한 사용료 산정 및 징수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의 체결) 협회의 관리저작물을 복제, 배포, 공연, 공중송신(전송, 방송, 디지털음성 송신), 대여 등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협회와 문서로써 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약관) 본 규정에 따른 음악저작권 이용계약은 협회가 정한 이용계약약관 등에 의한다.

제4조(음악저작물)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악저작물 -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음으로 표현한 창작물로서 가사 및 악곡을 지칭한다.
2. 음악저작물관리비율 - 이용자가 이용하는 총 음악저작물 중 협회의 관리저작물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산정한다. 다만, 각 유사 이용형태 등을 통해 구체적인 이용횟수를 파악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이용자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각 장의 유사 이용형태를 통해 집계된 수치를 준용할 수 있다.

가. 공연, 방송, 전송

$$\frac{\text{본 협회의 관리저작물 이용횟수}}{\text{총 이용횟수}} \times \text{지분율}$$

나. 복제·배포

$$\frac{\text{관리곡 수}}{\text{총 수록곡 수}} \times \text{지분율}$$

비고1) 지분율은 협회의 각 관리저작물에 따른 신탁회원의 권리비율로서 구체적 기준은 협회가 제공한다.

제5조(사용구분) 협회의 관리저작물의 이용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연, 2. 방송, 3. 전송, 4. 웹캐스팅, 5. 복제 및 배포, 6. 대여 및 기타

제2장 공연 사용료

제6조(연주회 등) ① 연주회 등에서 입장료 등 매출이 있는 공연 1회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다만, 매출이 없는 무료공연의 사용료는 입장료를 2,000원으로 간주하고 좌석수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매출액으로 하여 아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1. 콘서트, 디너쇼, 연주회 등 음악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연

$$\text{매출액} \times 3\% (\text{음악사용료율}) \times \text{음악저작물관리비율}$$

2. 악극, 뮤지컬, 오페라, 발레 등 연극적 요소와 결합한 공연

$$\text{매출액} \times 2\% (\text{음악사용료율}) \times \text{음악저작물관리비율}$$

3. 패션쇼, 서커스, 무용회, 아이스스케이팅쇼 등 음악을 부가적으로 사용하는 공연

매출액 × 1%(음악사용료율)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1) 매출액이란 총 입장료 수입에서 부가가치세 및 입장료 판매 대행수수료는 공제하고 협찬 및 기부금 등은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비고2) 입장료가 5,000원 미만이거나 초대권의 경우에는 5천원으로 간주하여 입장료 수입을 산정하되, 초대권 수는 전체 좌석수의 20% 이내만 인정한다. 단, 입장료 금액이 표시되어 있는 초대권의 경우에는 입장료 액면가의 80%를 입장료 수입으로 산정하되 협찬금 등을 받은 기업 등에게 초대권을 배부한 경우의 초대권은 매출액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공연장의 좌석이 기존 좌석과 별도의 공간이 혼재되어 있거나 기존 좌석이 없이 별도의 공간만이 존재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공연장의 좌석수는 다음의 계산방식에 의거 산출한다.

* 기존 좌석과 별도의 공간이 혼재된 경우 공연장 좌석수 = 기존 좌석수 + [(별도 공간의 총면적 - 무대설치 면적) ÷ 1㎡]

* 기존 좌석이 없이 별도의 공간만 존재하는 경우 공연장 좌석수 = (공연장 총면적 - 무대설치 면적) ÷ 1㎡

③ 공연종료 후 2주 이내에 사용자가 사용료 산출에 필요한 입장객수 및 입장료 수입, 사용음악저작물 목록(공연실황의 녹음·녹화내용 또는 사용 곡명이 표시된 팜플렛 등 자료 포함)등 제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연장의 전체 좌석수를 적용하여 매출액을 산정한다.

④ 디너쇼에 있어서의 입장료는 당해 공연시 제공되는 음식료와 관련하여 총 입장료의 60%로 한다.

⑤ 당해 공연장 또는 공연기획사에서 동 공연에 대한 연간사용계약을 원하는 경우에는 음악사용량과 공연 횟수를 감안하여 연간 사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용자는 전년도 공연사용료를 납부한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고, 협회는 연간 사용료를 20% 감액한다.

제6조의2(온라인 공연) ① 온라인으로 제6조 제1항 각호의 연주회 등을 하는 경우 1회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이하 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6조를 준용한다).

1. 매출이 있는 공연 : 제6조 제1항 각호의 산식을 적용한다.

2. 매출이 없는 무료공연

제6조 제1항 1호 : 이용자 수 × 60원 ×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제6조 제1항 2호 : 이용자 수 × 40원 ×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제6조 제1항 3호 : 이용자 수 × 20원 ×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비고1) 온라인 공연이란 제6조 제1항 각호의 연주회 등을 온라인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해당 공연이용자를 대상으로 1회에 한하여 재방송[리스트리밍], 지연송출[딜레이스트리밍] 등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징수규정 제3장 방송 사용료, 제4장 전송 사용료, 제5장 웹캐스팅의 적용을 받는 서비스는 제외한다.

비고2) 이용자 수란 중복되지 않은 온라인 공연을 이용한 자의 수를 말하며(온라인 공연의 특성을 감안하여 1인의 멀티뷰는 1인으로 본다.), 이용자 수를 파악하기 어려운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비고3) 제6조를 준용하는 경우 이용자 수는 제6조의 좌석수로 본다.

② 제1항과 제6조 제1항 각호의 연주회 등이 혼합(결합)된 공연의 경우는 각각의 사용료를 합산한 금액으로 정산한다. 다만, 각각의 이용료(입장료 등)를 구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 매출액과 총 이용자 수로 사용료를 정산한다.

제7조(영업장) ① 나이트클럽, 룸살롱 등의 유흥주점 및 극장식 식당에서의 공연사용료는 다음 기준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등급	영업허가면적	월정액(원)	비 고
1	66㎡ 미만	31,000	농어촌 지역의 읍·면 단위에서는 1등급씩 하향 적용한다. (1등급 제외)
2	66㎡ 이상 99㎡ 미만	40,000	
3	99㎡ 이상 132㎡ 미만	49,000	
4	132㎡ 이상 165㎡ 미만	58,000	
5	165㎡ 이상 198㎡ 미만	68,000	
	198㎡ 이상 매 33㎡ 초과시 마다	9,000원씩 추가 최고 287,000원	

② 단란주점에서의 공연사용료는 다음 기준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등급	영업허가면적	월정액(원)	비 고
1	66㎡ 미만	27,000	농어촌 지역의 읍·면 단위에서는 1등급씩 하향 적용한다. (1등급 제외)
2	66㎡ 이상 99㎡ 미만	35,000	
3	99㎡ 이상 132㎡ 미만	43,000	
4	132㎡ 이상 165㎡ 미만	52,000	
5	165㎡ 이상 198㎡ 미만	60,000	
	198㎡ 이상 매 33㎡ 초과시 마다	8,000원씩 추가 최고 230,000원	

③ 무도학원, 에어로빅장, 노래교실 등에서의 공연사용료는 다음 기준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등급	수강생 수	월정액(원)	비 고
1	50명 미만	21,000	수강생 수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무도장, 카바레 등에서의 공연등급을 적용한다.
2	50명 이상 100명 미만	26,000	
3	100명 이상 150명 미만	31,000	
4	150명 이상 200명 미만	36,000	
5	200명 이상 250명 미만	42,000	
6	250명 이상 300명 미만	52,000	
7	300명 이상 350명 미만	63,000	
8	350명 이상 400명 미만	73,000	
9	400명 이상 500명 미만	89,000	
10	500명 이상	105,000	

④ 무도장, 카바레, 스탠드바 등에서의 공연사용료는 다음 기준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등급	영업허가면적	월정액(원)	비 고
1	66㎡ 미만	23,000	농어촌 지역의 읍·면 단위에서는 1등급씩 하향 적용한다(1등급 제외).
2	66㎡ 이상 99㎡ 미만	28,000	
3	99㎡ 이상 132㎡ 미만	34,000	
4	132㎡ 이상 165㎡ 미만	46,000	
5	165㎡ 이상 231㎡ 미만	57,000	
6	231㎡ 이상 330㎡ 미만	69,000	
7	330㎡ 이상 495㎡ 미만	92,000	
8	495㎡ 이상 660㎡ 미만	115,000	
9	660㎡ 이상 990㎡ 미만	138,000	
10	990㎡ 이상	172,000	

⑤ 노래연습장에서의 공연사용료는 방 1개당 면적별 월정액을 합산한 총액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등급	방 면적	월정액(원)	비 고
1	6.6㎡ 미만	5,000	농어촌 지역의 읍·면 단위에서는 방당 500원씩 감한다.
2	6.6㎡ 이상 13.2㎡ 미만	6,000	
3	13.2㎡ 이상 19.8㎡ 미만	7,000	
4	19.8㎡ 이상	8,000	

⑥ 레스토랑, 커피숍, 카페, 뷔페 등에서 생음악 공연시 공연사용료는 다음 기준에 음악 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등급	영업허가면적	월정액(원)	비 고
1	66㎡ 이상 99㎡ 미만	23,000	
2	99㎡ 이상 132㎡ 미만	28,000	
3	132㎡ 이상 165㎡ 미만	34,000	
4	165㎡ 이상 231㎡ 미만	46,000	
5	231㎡ 이상 330㎡ 미만	57,000	
6	330㎡ 이상 495㎡ 미만	69,000	
7	495㎡ 이상 660㎡ 미만	81,000	
8	660㎡ 이상 990㎡ 미만	92,000	
9	990㎡ 이상	103,000	

⑦ 게임방 멀티방 등에서 노래반주기, 댄스게임기 또는 멀티기기에 의한 공연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금액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1. 노래반주기 : 기기 1대당 월 3,000원
2. 댄스게임기 : 기기 1대당 월 2,000원
3. 멀티기기 : 기기 1대당 월 2,000원

비고) 멀티기기관 1대의 기기로 게임, 노래, 영화감상 등을 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

⑧ 주민자치센터,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 등에서 비영리목적으로 음악을 이용하는 프로그램(노래교실과 에어로빅 프로그램)을 개설한 경우 그 공연사용료는 다음 기준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등급	수강생 수	음악사용시간에 따른 월정액(원)				
		10시간 미만	10시간 이상 30시간 미만	30시간 이상 60시간 미만	60시간 이상 100시간 미만	100시간 이상
1	30명 미만	6,000	7,000	9,000	11,000	13,000
2	30명 이상 ~ 60명 미만	7,000	9,000	11,000	13,000	15,000
3	60명 이상 ~ 90명 미만	8,000	11,000	13,000	15,000	17,000
4	90명 이상 ~ 120명 미만	9,000	13,000	15,000	17,000	19,000
5	120명 이상 ~ 150명 미만	10,000	15,000	17,000	19,000	21,000
6	150명 이상 ~ 180명 미만	11,000	17,000	19,000	21,000	23,000
7	180명 이상 ~ 210명 미만	12,000	19,000	21,000	23,000	25,000
8	210명 이상 ~ 240명 미만	13,000	21,000	23,000	25,000	27,000
9	240명 이상	14,000	23,000	25,000	27,000	29,000

비고) 다수의 음악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수강생수와 음악사용시간을 합산 적용한다. 단, 영리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⑨ 커피 전문점,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에서의 공연사용료는 다음 기준에 음악저작권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등급	영업허가면적	월정액(원)	비 고
1	50m ² 이상 100m ² 미만	2,000	
2	100m ² 이상 200m ² 미만	3,600	
3	200m ² 이상 300m ² 미만	4,900	
4	300m ² 이상 500m ² 미만	6,200	
5	500m ² 이상 1,000m ² 미만	7,800	
6	1,000m ² 이상	10,000	

비고1) 농어촌 지역의 읍·면 단위에서는 1등급씩 하향 적용한다.(1등급 제외)

비고2) 영업허가면적 50m² 미만은 징수대상에서 제외한다.

⑩ 체력단련장의 공연사용료는 다음 기준에 음악저작권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등급	영업허가면적	월정액(원)	비 고
1	50m ² 이상 100m ² 미만	5,700	
2	100m ² 이상 200m ² 미만	11,000	
3	200m ² 이상 300m ² 미만	14,400	

등급	영업허가면적	월정액(원)	비 고
4	300m ² 이상 500m ² 미만	18,500	
5	500m ² 이상 1,000m ² 미만	23,200	
6	1,000m ² 이상	29,800	

비고1) 농어촌 지역의 읍·면 단위에서는 1등급씩 하향 적용한다.(1등급 제외)

비고2) 영업허가면적 50m² 미만은 징수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전문체육시설에서 하는 체육관련 공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전문체육시설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전문체육시설에서 하는 체육관련 공연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text{입장료 수입} \times 0.2\%(\text{음악사용료율}) \times \text{음악저작물관리비율}$$

② 입장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1경기당 평균 사용료가 30,000원 미만으로 산출될 경우 1경기당 사용료는 30,000원으로 하되,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비고1) 입장료수입에서 운동장사용료 및 입장권 발매수수료 등으로 10%를 공제한다.

제9조(경마·경륜·경정장) ① 경마장에서의 공연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text{전년도총수입} \times \text{순수익률} \times \text{특별적립공제비율} \times 0.01\%(\text{음악사용료율}) \times \text{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1) 순수익률이란 총수입금액 중 고객환급 및 제세금, 기타경비를 공제한 순수익금의 비율을 말한다.

비고2) 특별적립공제비율이란 축산발전기금 및 농어촌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적립금의 비율을 말한다.

② 경륜·경정장에서의 공연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text{전년도총수입} \times \text{조정발매수득금률} \times 0.01\%(\text{음악사용료율}) \times \text{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 조정발매수득금률이란 총수입금액 중 고객환급 및 제세금을 공제한 이익금(발매수득금)의 90%를 말한다.

제10조(유원시설의 공연사용료) ① 유원시설에서의 공연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text{입장료 수입} + \text{음악사용놀이기구 이용료 수입}) \times 0.11\%(\text{음악사용료율}) \times \text{음악저작물관리비율}$$

② 스키장에서의 공연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text{개장기간 중 수입총액} \times 0.05\%(\text{음악사용료율}) \times \text{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1) 수입총액이란 장비대여료 및 강습비를 제외한 리프트, 곤돌라 이용료 수입과 시즌권 판매수입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1조(호텔·콘도미니엄, 카지노, 골프장 등에 대한 공연사용료) ① 호텔, 콘도미니엄 등의 공연 사용료는 다음 기준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7조에 해당하는 영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징수한다.

등급	객실 수	월정액(원)	비 고
1	50개 미만	20,000	○ 월정액은 특급호텔 기준임. 1급은 특급의 90%, 2급은 특급의 80%, 3급은 특급의 70%를 적용함 ○ 콘도미니엄은 특급호텔의 50%를 적용함
2	50개 이상 100개 미만	40,000	
3	100개 이상 200개 미만	80,000	
4	200개 이상 300개 미만	140,000	
5	300개 이상 400개 미만	210,000	
6	400개 이상 500개 미만	280,000	
7	500개 이상	350,000	

② 카지노에서의 공연사용료는 다음 기준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등급	영업허가면적	월정액(원)	비 고
1	1,000㎡ 미만	35,000	
2	1,000㎡ 이상 1,500㎡ 미만	70,000	
3	1,500㎡ 이상 2,000㎡ 미만	140,000	
4	2,000㎡ 이상 2,500㎡ 미만	200,000	
5	2,500㎡ 이상 3,000㎡ 미만	260,000	
6	3,000㎡ 이상	320,000	

③ 골프장에서의 공연사용료는 다음 기준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7조에 해당하는 영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징수한다.

등급	음악사용 시설(건물) 수	월정액(원)
1	1개	50,000
2	2개	75,000
3	3개	100,000
4	4개	125,000
5	5개	150,000

5개 초과시 매 1개당 15,000원씩 월정액 추가

비고1) 골프장 음악사용 시설(건물)은 주차장, 클럽하우스, 그늘집을 말한다.

제12조(대규모점포에 대한 공연사용료) 대규모점포 중에서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점포(전통시장은 제외)에서의 공연사용료는 다음 기준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7조에 해당하는 영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징수하고, 별도 징수하는 영업장의 면적은 대규모점포 영업장 면적에서 제외한다.

등급	영업장면적	월정액(원)	비 고
1	3,000㎡ 이상 5,000㎡ 미만	80,000	영업장면적이 매장면적의 125%를 초과하는 경우 매장면적의 125%를 영업장면적으로 간주
2	5,000㎡ 이상 10,000㎡ 미만	150,000	
3	10,000㎡ 이상 15,000㎡ 미만	300,000	
4	15,000㎡ 이상 20,000㎡ 미만	500,000	
5	20,000㎡ 이상 30,000㎡ 미만	700,000	
6	30,000㎡ 이상 40,000㎡ 미만	900,000	
7	40,000㎡ 이상 50,000㎡ 미만	1,100,000	
8	50,000㎡ 이상	1,300,000	

제13조(항공기 내의 공연사용료) 여객용 항공기 내의 기내음악서비스에 대한 공연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text{월 탑승중 음악사용료} + \text{월 비행중 음악사용료}) \times \text{음악저작물관리비율} \times \text{비행기수} \times 12\text{개월}$$

비고) 월 탑승중 음악사용료 및 비행중 음악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구 분	월 탑승중 음악사용료	월 비행중 음악사용료
200석 미만	17,000	69,000
200석 이상 - 300석 미만	22,000	92,000
300석 이상	26,000	115,000

제14조(기차 등) 철도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여객용 열차 및 해운법의 규정에 의한 해상여객 운송사업용 선박의 공연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text{승차(선)료 수입} \times 0.02\%(\text{음악사용료율}) \times \text{음악저작물관리비율} \times \text{조정계수}$$

비고) 승차(선)료 수입이란 운임과 서비스요금을 포함한 것으로 한다.

제15조(공연사용료 징수의 부가기준) 제7조, 제11조 및 제12조의 경우 영업일수가 10~20일

인 경우에는 사용료의 50%를 징수하고 10일 미만이면 당해 월의 사용료를 면제한다(공적인 기관의 근거자료 필요). 다만, 주말 또는 지정일 등의 특정일에만 개설되어 월 15시간 미만으로 사용하는 경우 월정사용료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사용료를 산정하되, 월 사용 총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월정사용료를 적용한다.

$$\text{각 등급의 월정액} \times [\text{월정음악사용시간} \div 15\text{시간}]$$

제3장 방송 사용료

제16조(지상파방송에 대한 방송사용료) ① 한국방송공사, (주)문화방송(지역문화방송 제외), (주)에스비에스의 방송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text{매출액} \times 1.2\%(\text{음악사용료율}) \times \text{조정계수} \times \text{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1) 매출액이란 방송사의 전년도 수신료(전년도 특수방송운영비와 EBS 지원금을 공제한다) 및 광고수입(협찬수입 포함)을 합산한 금액에서 일반 징수경비, 광고대행수수료 등 제반 지출경비를 감안하여 20/100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다른 사업자의 방송, 전송, 웹캐스팅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인한 매출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비고2) 조정계수는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다만, 수신료 인상이나 광고규제 완화 등의 사유로 매출액의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계수를 조정할 수 있다.

연 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이후
조정계수	0.508	0.547	0.588	0.632	0.679

비고3) 방송사용료의 대상에는 이 규정에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방송되지 않는 공연(제6조), 방송물 전송(제24조)이나 웹캐스팅(제27조) 및 영상물 복제·배포(제29조) 등은 제외되고, 방송사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방송용 공연(공연의 2분의 1 이상을 방송하는 경우에 한함)과 복제(싱크로나이제이션 이용) 등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방송, 전송, 웹캐스팅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을 포괄한다.

비고4) 방송사용료의 적정한 인상을 기하기 위해 최종 산출된 방송사용료에서 한국방송공사는 2012년에 5%, (주)문화방송과 (주)에스비에스는 2012년에 20%, 2013년에 15%, 2014년에 10%, 2015년에 5%를 각각 감액한다.

비고5) 지역문화방송의 경우 2012년 방송사용료는 본 항의 (주)문화방송에 적용되는 사용료 산식을 적용하고, 2013년부터는 제2항에 따른다.

② 지역문화방송, (주)케이엔엔, (주)대구방송, (주)대전방송, (주)광주방송, (주)오비에스 경인티브이, (주)울산방송, (주)청주방송, (주)전주방송, (주)강원민방, (주)제주방송 등의 방송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text{매출액} \times 1\%(\text{음악사용료율}) \times 0.72(\text{조정계수}) \times \text{음악저작물관리비율}$$

다만, (주)오비에스경인티브이의 조정계수는 비교2)와 같다.

비고1) 매출액이란 방송사의 전년도(방송초기연도와 그 익년도 및 방송종료연도에 한해 당해연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수신료 및 광고수입을 합산한 금액에서 징수경비, 광고대행수수료 등 제반 지출 경비를 감안하여 30/100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이하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이 조에서 같다.)

비고2) (주)오비에스경인티브이의 조정계수는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조정계수	0.43	0.52	0.54

③ 교육방송의 방송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text{매출액} \times 45/100(\text{조정계수}) \times 0.35\%(\text{음악사용료율}) \times \text{음악저작물관리비율}$$

④ 기독교방송, 불교방송, 평화방송, 원음방송, 경기방송의 방송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text{매출액} \times 46/100(\text{조정계수}) \times 1.2\%(\text{음악사용료율}) \times \text{음악저작물관리비율}$$

다만, 경기방송의 조정계수는 다음과 같다.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조정계수	0.50	0.55	0.60

⑤ 교통방송의 방송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text{매출액} \times 46/100(\text{조정계수}) \times 1.35\%(\text{음악사용료율}) \times \text{음악저작물관리비율}$$

⑥ 극동방송의 방송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text{매출액} \times 46/100(\text{조정계수}) \times 0.7\%(\text{음악사용료율}) \times \text{음악저작물관리비율}$$

⑦ 국군방송의 방송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text{매출액} \times 1\%(\text{음악사용료율}) \times 0.72(\text{조정계수}) \times \text{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1) 매출액이란 전년도 TV 및 라디오 방송제작과 관련된 정부예산을 말하며, 제반 지출 경비를 감안하여 30/100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⑧ 아리랑FM 등 외국어 라디오방송의 방송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text{매출액} \times 1.35\%(\text{음악사용료율}) \times \text{조정계수} \times \text{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1) 매출액이란 전년도 수신료 및 광고수입(협찬수입포함)을 합산한 금액에서 수수료 등 제반 지출경비를 감안하여 30/100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아리랑 FM의 매출액은 전년도 정부지원금(방송통신발전기금) 중 FM 방송제작비를 말한다.

비고2) 조정계수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조정계수	0.46	0.60	0.75	0.90	1.00

⑨ 국악방송의 방송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text{매출액} \times 0.7\%(\text{음악사용료율}) \times \text{조정계수} \times \text{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1) 매출액이란 일체의 전년도 정부지원금, 기금수입 및 광고수입 등을 말한다.

다만, 방송시설 운영비, 노후장비교체, 전국화 비용을 공제한다.

비고2) 조정계수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조정계수	0.60	0.70	0.80	0.90	1.00

⑩ YTN라디오의 방송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text{매출액} \times 46/100(\text{조정계수}) \times 0.6\%(\text{음악사용료율}) \times \text{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1) 매출액이란 전년도 방송협찬수입과 광고판매수입을 합산한 금액에서 제반 지출 경비를 감안하여 30/100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제17조(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방송사용료) ① 홈쇼핑채널(PP)의 방송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text{기준 매출액} \times \text{조정계수} \times 2.5\%(\text{음악사용료율}) \times \text{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1) 기준 매출액은 전년도 매출 총이익의 15%로 하며, 광고대행수수료 등 제반 경비 지출을 감안하여 60/100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비고2) 조정계수는 다음과 같다.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조정계수	0.37	0.39	0.42

② 종합편성채널의 방송사용료는 이용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③ 홈쇼핑채널이외 방송채널사용사업(PP)의 방송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text{매출액} \times \text{조정계수} \times \text{음악사용료율} \times \text{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1) 매출액이란 전년도 수신료 수입 및 광고수입의 합산액을 말하며, 광고대행수수료 등 제반 경비 지출을 감안하여 40/100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비고2) 음악채널 조정계수는 다음과 같다.

연 도	2011년	2012년
조정계수	0.39	0.41

비고3) 오락채널, 교양종교채널, 스포츠채널, 보도채널, 기타채널 년도별 조정계수는 다음과 같다.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조정계수	0.52	0.55	0.59

비고4) 채널별 음악사용료율은 다음과 같다.

음악전문채널: 4%, 음악·버라이어티채널: 2.3%, 오락채널: 1.1%, 교양·종교채널: 1%, 스포츠채널: 0.6%, 보도채널: 0.5%, 기타 채널: 0.35%

제18조(종합유선방송(SO)에 대한 방송사용료) 종합유선방송(SO)의 방송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text{방송총수입} \times 0.5\%(\text{음악사용료율}) \times \text{조정계수} \times \text{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1) 방송총수입이란 방송사의 전년도 수신료수입 및 광고수입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수신료수입에서 일반 징수경비, 채널사용사업자 수신료 배분비율로 37.5/100를, 광고수입에서 광고대행수수료로 25/100를 제반 지출경비로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비고 2) 조정계수는 다음과 같다.

연 도	2010년	2011년	2012년
조정계수	0.48	0.51	0.54

제19조(위성방송에 대한 방송사용료) 위성방송에 대한 방송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text{매출액} \times 45/100(\text{조정계수}) \times \text{음악사용료율} \times \text{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1) 매출액이란 전년도 수신료수입, PPV채널수입, 광고 수입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일반 징수경비, 채널사용사업자 수신료배분비율, 광고대행수수료 등 제반 지출경비를 감안하여 50/100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비고2) 연도별 음악사용료율은 다음과 같다.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음악사용료율	0.55%	0.57%	0.7%	0.8%	1.0%

제19조의 2(IPTV 등에 대한 음악사용료) IPTV에 대한 음악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text{매출액} \times 1.2\%(\text{음악사용료율}) \times 0.47(\text{조정계수}) \times \text{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1) 매출액이란 당해연도 수신료수입(유료수신료 수입 포함), 광고수입(협찬수입 포함) 및 기타 본 서비스관련 수입(지원금, 판권수입)의 합산액을 말한다. 단, 광고수입 중 광고대행수수료로 30%를 공제하기로 한다.

제19조의 3(지상파 DMB에 대한 방송사용료) 지상파 DMB에 대한 음악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매출액 × 45/100(조정계수) × 1%(음악사용료율)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1) 매출액이란 당해연도 광고수입을 말하며, 일반 징수경비 및 광고대행수수료 등 제반지출 경비를 감안하여 30/100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20조(중계유선방송에 대한 방송사용료) 중계유선방송에 대한 방송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수신료수입 × 0.2%(음악사용료율)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제21조(음악유선방송에 대한 방송사용료) 음악유선방송에 대한 방송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수신료수입 × 2%(음악사용료율)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제22조(이동방송서비스 등) 철도(전철, 기차)에서 제공되는 영상서비스에 대한 방송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매출액 × 0.1%(음악사용료율) × 연도별차등적용율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1) 매출액이란 이동방송을 실시함으로써 발생하는 상업광고수입, 협찬광고수입 및 기타 방송과 관련한 수입의 합산액을 말한다.

비고2) 연도별차등적용율은 다음과 같다.

2002년도 50/100, 2003년도 60/100, 2004년도 70/100, 2005년도 85/100, 2006년도 100/100

제4장 전송 사용료

제23조(주문형 스트리밍 서비스) ① 소비자가 요청하는 음악저작물(뮤직비디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고 이용한 횟수에 비례하여 소비자에게 이용료를 부과하는 경우 또는 특정 상품(서비스)의 판매를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4원(곡당 단가) × 이용횟수 × 지분율

비고1) 이용횟수는 이용자가 제공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하되 횟수 산정 기준 등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이용자는 그 자료(로그 파일을)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이하 이 장에서 같다)

비고2) 특정 상품(서비스)에는 제2항의 월정액 스트리밍 상품, 제3항의 오프라인 재생 스트리밍 상품이 포함되지 않는다.

② 제1항과 달리 월정액을 받고 음악저작물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이하 “월정액 스트리밍 상품”이라 한다)의 사용료는 다음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0.7\text{원(곡당 단가)} \times \text{이용횟수} \times \text{지분율}]$ 또는 $[\text{월정 } 700\text{원(가입자당 단가)} \times \text{가입자수} \times \text{음악저작물관리비율}]$
2. $\text{매출액} \times 10.5\%(\text{음악사용료율}) \times \text{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1) 제1호의 사용료는 사용자가 1년 단위로 선택할 수 있다.

비고2) 가입자란 회원제 운영의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회원을 말하며, 회원제와 비회원제의 혼합 또는 회원제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월간 서비스를 이용한 순방문자를 말한다. 단, 월간 서비스를 이용한 순방문자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는 별도로 협회와 이용자가 협의하여 정한다(이하 해당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에서 같다).

비고3) 매출액이란 사용자가 직/간접적으로 운영하는 당해 서비스 사이트의 해당 서비스로부터 취득한 이용료의 수입에 광고 및 기타의 수입을 합한 총매출액(Gross Sales)을 말하며, 판매촉진 행위 등에 따라 할인된 금액을 포함한다. 다만, 광고 및 기타의 수입은 당해 서비스 사이트에서 음악이 차지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하고 매출액이 없는 경우는 별도로 협회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정한다(이하 해당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에서 같다).

비고4)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의 사용료 정산에 있어 인앱결제 서비스와 PC WEB 등의 서비스가 동일한 경우 인앱결제 서비스의 사용료는 PC WEB 등의 서비스 가격 및 정산 산식을 적용하여 정산한다. (제23조 및 제23조의 2에 적용된다.)

③ 제2항과 달리 월정액 스트리밍 상품에 소비자가 가입 기간 동안 오프라인 상에서도 재생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단, 오프라인 재생을 위해 저장된 음원이 추출, 복제, 공유 등 다운로드와 유사한 속성을 갖지 않는 경우)의 사용료는 다음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text{월정 } 1,144.5\text{원(가입자당 단가)} \times \text{가입자수} \times \text{음악저작물관리비율}$
2. $\text{매출액} \times 10.5\% \times \text{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 이용자는 오프라인 상에서 재생된 이용횟수를 집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과 달리 광고수익을 목적으로 소비자가 음악저작물을 청취할 때 광고가 노출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음악저작물을 소비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이하 “광고수익 기반 스트리밍 상품”이라 한다)의 사용료는 제1호와 같다. 다만, 그 금액이 제2호보다 적을 경우 제2호로 한다.

1. $0.74\text{원(곡당 단가)} \times \text{이용횟수} \times \text{지분율}$
2. $\text{매출액} \times 10.5\%(\text{음악사용료율}) \times \text{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 소비자가 음악저작물을 청취할 때 광고가 노출되도록 하는 방식을 취하더라도 광고수익이 목적이 아니라 특정 상품(서비스)의 판매가 목적일 경우에는 제1항이 적용된다.

⑤ 주문형 스트리밍 방식으로 이용료가 없이 총 재생시간이 한 곡당 30초를 넘지 않으며, 자신의 홈페이지 및 서버에서 음악저작물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사전 신고할 경우 다음 대상에 대하여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재생시간은 60초 이내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판매촉진을 위해 판매하고자 하는 곡과 동일한 곡으로 서비스를 하는 경우
2. 저작자, 실연자, 음반제작자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자신의 저작물이나 실연, 음반에 관계되는 작품을 업로드하는 경우

제23조의 2(주문형 다운로드 서비스) ① 소비자가 요청하는 음악저작물을 곡당 다운로드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제1호와 같다. 다만, 그 금액이 제2호보다 적을 경우 제2호로 한다.

1. 77원(곡당 단가) × 다운로드횟수 × 지분율
2. 매출액 × 11%(음악사용료율)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1) 다운로드 는 소비자가 관리하는 가상의 공간에 저장하는 것을 포함한다.

비고2) 다운로드횟수는 이용자가 제공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하되 횟수 산정 기준 등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이용자는 그 자료(로그 파일)를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이하 이 장에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곡 이상 30곡 미만으로 제작된 앨범 단위로 판매되는 경우(편집앨범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사용료는 다음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38.5원(곡당 단가) × 조정계수 × 다운로드횟수 × 지분율
2. 매출액 × 11%(음악사용료율)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1) 연도별 조정계수는 다음과 같다.

연 도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조정계수	1.2	1.6	2.0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30곡 이상 다량 다운로드를 제공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다음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곡당 단가 × 조정계수 × 다운로드횟수 × 지분율
2. 매출액 × 11%(음악사용료율)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1) 곡당 단가는 30곡일 경우 곡당 38.5원을 기준으로 1곡 추가할 때마다 이전 단가보다 1% 할인하고, 65곡 이상일 경우는 곡당 26.95원으로 하며, 2021년 이후의 곡당단가는 곡수에 관계없이 38.5원으로 한다.

비고2)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간 내에 이용 가능한 다량 다운로드 상품을 제공하는 경우의 곡당

단가는 해당 상품의 곡수를 월간기준 상품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비고3) 다량 다운로드 상품(원 상품)에 이용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1개월 이내에 이용할 수 있는 곡수를 추가로 제공하는 경우 곡당 단가는 원 상품의 곡당 단가를 적용한다.

비고4) 연도별 조정계수는 다음과 같다.

연 도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조정계수	1.2	1.6	2.0

④ 다운로드한 음악저작물의 사용기간을 제한(1개월 이하로 한다)하거나, 그 제한된 기간 이후에는 그 곡(제3항의 경우에는 그 상품을 말한다)에 대한 재결제시에만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의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3항을 적용하되, 곡당 단가는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해진 곡당 단가의 38%로 한다. 단, 2021년 이후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해진 곡당 단가를 따른다.

⑤ 제1항의 다운로드 서비스(30곡이상 다량을 묶어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와 제23조 제2항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다음의 금액으로 한다.

$$(제23조 제2항의 스트리밍 사용료 \times 0.5) + \text{해당 다운로드 사용료}$$

비고1) 단, 2021년 이후에는 제23조 제2항의 스트리밍 사용료 + 해당 다운로드 사용료

제23조의 3(판매촉진 등) ① 권리자(신탁관리단체에 신탁한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또는 유통서비스사업자가 특정 저작물 또는 서비스 상품의 홍보나 판매 촉진 등을 목적으로 관련 권리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 주문형 스트리밍서비스나 주문형 다운로드서비스에 무료로 음원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비용으로 곡당 1만원의 금액을 협회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권리자 또는 유통서비스사업자가 홍보나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특정 서비스 상품에 대하여 이 규정에 의한 사용료 또는 통상의 사용료를 할인한 경우에는 협회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별도의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23조의 4(주문형 배경음악 서비스) 이용자가 카페, 블로그, 홈페이지 등 개인용 커뮤니티 서비스에 소비자가 요청하는 음악저작물을 배경음악 서비스로 제공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다음 각호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곡당 25원 × 판매횟수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 할인율
2. 매출액 × 5%(음악사용료율)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 할인율

비고1) 할인율은 6개월 이하로 기간제한을 하는 경우 0.9로 한다.

제23조의 5(홈페이지 배경음악서비스) ① 영리여부를 불문하고 기업, 단체 등이 자사 홈페이지 등에 배경음악을 이용하는 경우 1곡당 사용료는 다음 기준에 해당 곡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월평균 방문자수	금액
5천명 미만	월 4,000원
5천명 이상 ~ 1만명 미만	월 10,000원
1만명 이상 ~ 2만명 미만	월 20,000원
2만명 이상	매 2만명씩 초과시 마다 10,000원씩 추가

② 독립 도메인을 가진 개인 홈페이지 등에 배경음악을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는 제1항의 1/2로 한다.

제24조(영상물 전송서비스) ① 음악저작물이 주된 목적으로 이용되는 영상물(음악 예능, 공연 실황 등)을 전송서비스하는 경우, 사용료는 다음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매출액 × 3.0%(음악사용요율) × 연차계수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2. 월정 210원(가입자 당 단가) × 가입자 수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② 음악저작물이 부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영상물(제1항 이외의 일반 예능, 드라마, 영화 등)을 전송서비스하는 경우, 사용료는 다음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매출액 × 1.5%(음악사용요율) × 연차계수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2. 월정 105원(가입자 당 단가) × 가입자 수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1) 사용료 산식의 가입자 당 단가는 해당 연도 사용료 요율에 연동한다.

비고2) 연차계수는 다음과 같다.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계수	1.000	1.066	1.133	1.200	1.266	1.333

제24조의 2(방송사업자의 방송물 재전송서비스) ① 방송사업자가 자사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자사의 방송물을 재전송(다시보기)하는 경우,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단, 음악전문방송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사용료의 1/2로 한다.

1. 이용료 또는 광고료가 있는 경우(다만, 이 경우 사용료가 제2호보다 적을 경우 제2호 규정을 적용한다.)

$$\text{매출액} \times 1.5\%(\text{음악사용요율}) \times \text{연차계수} \times \text{음악저작물관리비율}$$

2. 이용료 및 광고료가 없는 경우

월정 60원 × 이용자 수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1) 자사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 등이란 해당 방송사업자의 이름으로 운영되는 것으로서 직접 또는 위탁 등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비고2) 이용자 수는 당해 월에 재전송서비스를 이용한 중복되지 않은 이용자 수를 말한다.

비고3) 연차계수는 다음과 같다.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계수	1.000	1.066	1.133	1.200	1.266	1.333

② 라디오방송물(AOD)을 재전송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제1항 규정의 2배로 한다.

제24조의 3(온라인 게임 및 애니메이션 등) ① 음악을 주로 사용하는 온라인 게임 및 애니메이션(편당) 등의 음악 서비스에 대한 사용료는 다음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매출액 × 5%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2. [연간 곡당 100,000원 × 관리곡수 × 지분율] 또는 [1.4원 × 이용횟수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1) 제2호에 따른 사용료 지급 방식은 매년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다.

비고2) 음악을 주로 사용하는 온라인 게임 및 애니메이션이란 음악에 맞춰 게임을 조작하여야 하거나 음악이 재생되지 않을 경우 게임의 진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등 당해 서비스에서 음악이 필수적인 요소로 사용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비고3) 매출액이란 당해 사이트에서 게임 및 애니메이션이 제공하는 음악서비스로 발생한 이용료 등의 수입에 광고, 기타의 수입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소비자가 음악 재생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유료재화를 통해 발생한 수입은 제외한다). 다만, 광고 및 기타의 수입은 당해 서비스 사이트에서 음악이 차지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비고4) 음악 사용 기간이 1년 미만인 서비스에 본조 제1항 2호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에는 연간 곡당 사용료에 1/12를 곱한 월정사용료를 1개월 단위로 적용하여 사용료를 산정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음악을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온라인 게임 및 애니메이션(편당) 등의 음악 서비스에 대한 월정 곡당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4,200원 × 관리곡수 × 지분율

제25조(전화를 이용한 서비스) 전화(이동전화, 일반전화 등)를 통해 벨소리, 통화연결음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음악을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매출액 × 9%(음악사용료율)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제26조(전화서비스-Music On Hold의 전송사용료) 일반전화기에 의해 수신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전화서비스의 유선송신 및 자체 송신에 의해 음악을 사용할 경우 1곡당 사용료는 다음 기준에 해당 곡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000회선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구분	회선수	연간사용료
1	1회선~10회선	50,000원
2	11회선~20회선	95,000원
3	21회선~30회선	135,000원
4	31회선~50회선	170,000원
5	51회선~80회선	200,000원
6	81회선~120회선	225,000원
7	121회선~200회선	250,000원
8	201회선~300회선	300,000원
9	301회선~500회선	400,000원
10	501회선~1,000회선	600,000원

비고1) 사용이 1년 미만인 기간일 경우 사용료는 1개월 단위로 해서 상기표 연간사용료를 1/12로 한 금액을 월정 사용료로 할 수 있다.

제26조의 2(결합서비스의 사용료) 제23조의 2 제5항 이외에 서비스를 결합하는 경우 사용료는 협회 규정에서 정한 각각의 사용료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합서비스의 성격을 감안하여 협회와 이용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26조의 3(해외 서비스) 해외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음악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서비스 제공 가격 등을 감안하여 협회와 이용자가 협의하여 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제5장 웹캐스팅

제27조(웹캐스팅) ① 음악이 주(主)가 되는 웹캐스팅의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료(정보료) 또는 광고료가 있는 경우

가. 방송사업자 동시방송(simulcast), 개인방송 : 다음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 월정 75원 × 가입자수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 매출액 × 2.5%(음악사용료율)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나. 매장음악서비스 : 다음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 월정 800원 × 가입자수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 매출액 × 4%(음악사용료율)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2. 이용료(정보료) 및 광고료가 없는 경우

- 월정 60원×가입자수×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1) 웹캐스팅이란 온라인상 실시간으로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악서비스를 말한다

비고2) 가입자란 회원제 운영의 경우에는 웹캐스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회원, 회원제와 비회원제의 혼합 또는 회원제를 운영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복되지 않은 월간 웹캐스팅 서비스를 이용한 자”를 말한다. “월간 웹캐스팅 서비스를 이용한 자”를 파악하기 어려운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비고3) 매출액이란 당해 사이트에서 웹캐스팅 서비스로 발생한 이용료 등에 광고, 기타의 수입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광고 및 기타의 수입은 음악서비스 항목에 당해 사이트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② 음악이 부가적으로 서비스되는 웹캐스팅의 경우 제1항 규정의 1/2로 한다.

제6장 복제 및 배포 사용료

제28조(음반) ① 상업용 음반의 복제 및 배포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 곡당사용료[출고가 × 9%(음악사용료율) ÷ 수록곡수] × 관리곡수 × 지분율 × 제작수량 × 할인율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곡당사용료가 다음의 하한가 미만일 경우, 동 금액으로 한다.

음반구분	하한가
CASSETTE TAPE	15원
CD, CD-ROM, LP	20원

비고1) 출고가란 음반 제작 후, 유통사에서 도·소매점으로 출고되는 가격을 말하며, 출고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가격의 60/100을 출고가로 간주한다.

* 소비자가격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의 대규모 점포 중 각기 다른 3곳의 장소에서 구입한 당해 음반의 평균가격을 말한다.

비고2) 할인율이란 제작·판매 과정에서 예상되는 반품·재고·폐기 등을 감안하여 할인하는 비율을 말하며, 제작자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비고3) 특정 상품의 판매촉진이나, 상품의 홍보 등을 목적으로 부가적으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음반에 대해서는 상기 하한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비매용 음반의 복제 및 배포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text{곡당사용료} \times \text{관리곡수} \times \text{지분율} \times \text{제작수량}$$

음반구분	하한가
CASSETTE TAPE	6.3원
CD, CD-ROM, LP	8.4원

제29조(뮤직비디오 등 영상물) ① 음악저작물이 주된 목적으로 사용되는 영상물(뮤직비디오, 공연실황 등)의 복제 및 배포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 곡당사용료[출고가 × 7%(음악사용료율) ÷ 수록곡수] × 관리곡수 × 지분율 × 제작수량 × 할인율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곡당사용료가 다음의 하한가 미만일 경우에는 동 금액으로 한다.

매 체 구 분	하 한 가
V-CD	38.5원
V-TAPE	46.2원
DVD	55원

② 음악저작물이 부수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영상물(제1항 이외의 다큐멘터리, 드라마, 교양, 시사, 취미, 홍보, 학습, 체육 등)의 복제 및 배포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 곡당사용료[출고가 × 5%(음악사용료율) ÷ 수록곡수 × (음악저작물 합계사용시간 ÷ 총 재생시간)] × 관리곡수 × 지분율 × 제작수량 × 할인율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곡당사용료가 다음의 하한가 미만일 경우, 동 금액으로 한다.

매 체 구 분	하 한 가
V-CD	23.1원
V-TAPE	27.5원
DVD	33원

③ 제1항 및 제2항의 영상저작물을 비매용으로 제작하는 경우의 복제 및 배포사용료는 다음의 곡당사용료에 지분율 및 제작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매체구분	곡당 사용료	
	제①항의 경우	제②항의 경우
V-CD	21원	12원
V-TAPE	25원	15원
DVD	30원	18원

비고1) 제28조의 비고1), 비고2), 비고3)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준용한다. 이 경우 음반은 영상물로 본다.
비고2) 제2항에 있어 1편의 영상물(다큐멘터리 등)에 동일곡이 전체사용시간 중에서 수회 반복 사용되었을 경우, 사용시간 2분까지를 1곡으로 본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있어 방송물에 대한 시청자의 주문·판매 등으로 인하여 판매시마다 복제·배포에 대한 사용허락을 받기가 곤란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와 협의하여 연간 포괄사용허락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 포토앨범(웨딩, 커플, 회갑, 성장 동영상 등)을 제작할 경우 복제 및 배포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text{곡당사용료}[\text{판매가} \times 3\%(\text{음악사용료율}) \div \text{수록곡수}] \times \text{관리곡수} \times \text{지분율} \times \text{판매수량}$$

제30조(음반자판기) 음반자판기에 대한 1곡당 복제 및 배포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text{음반판매가}(\text{정찰가격} - \text{부가세}) \times 7\%(\text{음악사용료율}) \div 1\text{매 당 수록곡 수} \times \text{지분율} \times \text{판매수량}$$

제31조(아케이드 게임기 등) ① 업소용 게임기의 복제 및 배포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280,000\text{원} \times \text{관리곡수} \times \text{지분율}$$

② 가정용 게임기에 사용될 목적으로 제작되는 복제물에 대한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다만, 복제물 1개 1곡당 가격이 22.5원 미만일 경우에는 동 금액으로 한다.

$$\text{곡당사용료}[\text{출고가} \times 9\%(\text{음악사용료율}) \div \text{수록곡수}] \times \text{관리곡수} \times \text{지분율} \times \text{제작수량} \times \text{할인율}$$

비고) 할인율이란 제작·판매 과정에서 예상되는 반품, 재고, 폐기 등을 감안하여 할인하는 비율을 말하며, 이용자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32조(음악저장장치 부착 제품 등) ① 완구, 오르골 등에 음악저작물을 복제하여 배포할 경우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 곡당사용료[부품 출고가 × 5%(음악사용료율) ÷ 수록곡수] × 관리곡수 × 지분율 × 제작수량 × 할인율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곡당사용료가 다음의 하한가 미만일 경우에는 동 금액으로 한다.

구분	하한가
판매용	2.2원
비매용	1.1원

비고1) 부품이란 멜로디 IC CHIP 그 밖의 음을 저장하는 전자장치 또는 음을 기록하는 기계장치를 말한다.
비고2) 할인율이란 제작·판매 과정에서 예상되는 반품, 재고, 폐기 등을 감안하여 할인하는 비율을 말하며, 이용자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이하 본조에서 동일하다).

- ② 휴대폰에 음악저작물 및 음악영상물을 복제하여 배포할 경우,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text{곡당사용료} \times \text{관리곡수} \times \text{지분율} \times \text{제작수량} \times \text{할인율}$$

구분	곡당사용료
음악저작물	8.4원
음악영상물	21원

- ③ MP3플레이어 등 멀티미디어 기기에 음악저작물 및 음악영상물을 복제하여 배포할 경우,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text{곡당사용료} \times \text{관리곡수} \times \text{지분율} \times \text{제작수량} \times \text{할인율}$$

구분	곡당사용료
음악저작물	15.4원
음악영상물	38.5원

제33조(노래반주기) ① 영업용 노래반주기

노래연습장이나 유흥주점 등 상업적인 장소에 배포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노래반주기 및 그 저장매체에 대한 음악저작물의 사용료는 제1호와 제2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신곡 사용료

$$\text{곡당사용료}[\text{신곡 출고가} \times 9\%(\text{음악사용료율}) \div \text{수록곡수}] \times \text{관리곡수} \times \text{지분율} \times \text{판매수량}$$

다만, 곡당 단가가 5원 미만일 경우에는 동 금액으로 한다.

비고1) 신곡 사용료란 정산 대상 기간 동안 해당 노래반주기 및 저장매체에 추가된 음악저작물에 대한 사용료를

말한다. 제2항 제1호 및 제3항 제1호도 이와 같다.

비고2) 신곡 출고기간 노래반주기 사업자가 정산 대상기간 동안 신곡을 판매하기 위해 도매상 등에게 공급하는 가격을 말한다. 제2항 제1호도 이와 같다.

2. 노래반주기 등의 복제 및 배포를 위한 사용료

다음의 월정사용료에 지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관리 곡수	월정 사용료
500곡까지	600,000원
500곡 초과 1,000곡 까지	1,200,000원
1,000곡 초과 20,000곡 까지	매 1,000곡당 각 1,200,000원씩 가산한 금액
20,000곡 초과 시	매 2,000곡당 각 2,000,000원씩 가산한 금액

비고1) 월정 사용료란 제1항에 따라 신곡사용료를 납부한 곡을 계속적으로 추가 이용하는 경우, 월단위로 복제 및 배포수량에 제한 없이 책정한 사용료를 말한다. 제2항 제2호 및 제4항 제2호도 이와 같다.

② 연주인용 노래반주기

연주인들에게 배포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악보 재생 기능이 포함된 노래반주기 및 그 저장매체에 대한 음악저작물의 사용료는 제1호와 제2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신곡 사용료

$$\text{곡당사용료}[\text{신곡출고가} \times 9\%(\text{음악사용료율}) \div \text{수록곡수}] \times \text{관리곡수} \times \text{지분율} \times \text{판매수량}$$

다만, 곡당 단가가 11원 미만일 경우에는 동 금액으로 한다.

2. 노래반주기 등의 복제 및 배포를 위한 사용료

다음의 월정사용료에 지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관리 곡수	월정 사용료
500곡 까지	100,000원
500곡 초과 1,000곡 까지	150,000원
1,000곡 초과 20,000곡 까지	매 1,000곡당 각 150,000원씩 가산한 금액
20,000곡 초과 시	매 2,000곡당 각 250,000원씩 가산한 금액

③ 가정용 노래반주기

가정 및 차량 등 비상업적인 장소에서 이용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노래반주기 및 그 저장 매체의 복제 및 배포사용료는 제1호와 제2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신곡 사용료

$$5\text{원} \times \text{관리곡수} \times \text{지분율} \times \text{판매수량}$$

비고1) 이전 정산기간에 신곡사용료를 정산한 노래반주기 및 저장매체라 하더라도, 해당 정산기간에 동일 수록곡의 노래반주기 및 저장매체에 대한 판매수량이 있는 경우에는 신곡사용료를 정산한다.

2. 노래반주기 등의 복제 및 배포를 위한 사용료

가. DVD 및 MEMORY CARD 등 별도 저장매체를 판매한 경우

$$\text{저장매체 출고가} \times 9\%(\text{음악사용료율}) \times \text{공제계수} \times \text{판매수량} \times \text{음악저작물관리비율}$$

나. 음악저작물이 복제된 노래반주기를 판매한 경우

$$\text{노래반주기 출고가} \times 3.5\%(\text{음악사용료율}) \times \text{공제계수} \times \text{판매수량} \times \text{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 공제계수란 특허기술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출고가에서 공제하는 계수를 말한다.

출고가	공제계수
10만원 미만	1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0.9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0.8
50만원 이상	0.7

④ 통신 노래반주기

상업적인 장소에서 스트리밍 방식의 전송을 통하여 노래반주기를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는 다음의 1과 2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서비스 사용료

$$\text{매출액} \times 9\%(\text{음악사용료율}) \times \text{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 1) 매출액이란 통신용 노래반주기 서비스 사업자가 노래반주 서비스 이용 업소에서 징수하는 영업상 수입의 총계를 말한다. 다만, 서비스 이용 노래반주기 1대당 1개월의 전송서비스 이용료가 11,000원 미만일 경우 등 금액을 하한가로 한다.

2. 노래반주기 등의 복제를 위한 사용료

다음의 월정사용료에 지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관리 곡수	월정사용료
500곡 까지	500,000원
500곡 초과 1,000곡 까지	1,000,000원

관리 곡수	월정사용료
1,000곡 초과 20,000곡 까지	매 1,000곡당 각 1,000,000원씩 가산한 금액
20,000곡 초과 시	매 2,000곡당 각 1,800,000원씩 가산한 금액

⑤ 기타 노래반주기

노래반주기능이 부가적으로 탑재된 멀티미디어 기기 및 제1항 내지 제4항을 적용하기 곤란한 노래반주기의 경우,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6\text{원} \times \text{관리곡수} \times \text{지분율} \times \text{판매수량}$$

⑥ 제1항 제2호, 제2항 제2호 및 제4항 제2호에 의해 산출된 월정 사용료가 당해 사업자가 해당 정산기간동안 판매한 노래반주기의 1대 1곡당 5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해 산출되는 사용료를 납부한다.

$$5\text{원} \times \text{관리곡수} \times \text{지분율} \times \text{판매수량}$$

비고) 판매수량은 당해 사업자가 해당 정산기간 동안 판매한 노래반주기 수량을 말한다.

⑦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각 제2호의 월정 사용료 산정을 위한 관리곡수는 함께하는 음악저작인협회의 관리곡과 합산하여 산출하되, 2002년 5월 31일 이전에 정액제로 이용 허락을 받은 곡은 관리곡수에서 제외한다.

⑧ 제3항 제2호의 사용료 산정 시, 2002년 5월 31일 이전에 정액제로 이용허락을 받은 음악저작물에 대해서는 다음의 비율에 따라 사용료에서 공제한다.

1. 공제 비율

정액제 승인곡 비율	공제비율
30% 이상	0.3
20% 이상 30% 미만	0.25
10% 이상 20% 미만	0.15
5% 이상 10% 미만	0.07
1% 이상 5% 미만	0.02

2. 정액제 승인곡 비율은 아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frac{\text{정액제 승인곡수}}{\text{관리곡수}} \times \text{지분율} \times 100\%$$

비고) 관리곡수 및 정액제승인곡수는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와 합산하여 산출하되, 정액제 승인곡 수가 불명확 할 경우에는 공제비율을 이용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34조(영화 사용료) ① 영화에 음악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복제·배포·공연 등을 일괄적으로 허락하는 경우의 곡당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300만원 + (\text{스크린당 곡단가} \times \text{개봉 첫날 스크린 수})] \times \text{지분율}$$

비고1) 스크린당 곡단가는 13,500원으로 한다.

비고2) 개봉 첫날 스크린 수는 영화진흥위원회 극장 입장권전산망 집계를 기준으로 한다.

비고3) 순제작비 10억 미만 영화의 경우, 위 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사용료의 1/10로 한다.

비고4) 저작인격권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저작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영화에 음악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복제와 공연 등을 별도로 허락하기로 특약이 있는 경우 곡당 복제사용료는 아래 표의 금액에 지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사용량에 따른 구분	5초 이상 1분 미만	1분 이상 5분 미만	5분 이상
영화제 출품	4만원	8만원	12만원

비고1) 별도 영화개봉(공연)시의 공연사용료는 (스크린당 곡단가 × 개봉 첫날 스크린 수) × 지분율로 하고, 위 ①항의 비고1) 내지 비고4)를 준용한다.

제35조(광고에 대한 복제사용료) ① 상업용 광고에 음악저작물을 이용할 경우의 1곡당 복제 사용료는 다음의 금액에 지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단, 저작인격권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저작자의 사전 승낙을 얻어야 한다.

(단위: 만원)

기간 \ 범위	지상파TV	라디오	케이블TV(위성TV, 지상파 DMB포함)	인터넷	극장	기타(옥외, 지하철차량 등)
1개월 미만	150	100	100	30	30	50
3개월 미만	250	150	150	50	50	100
6개월 미만	350	250	250	70	70	125
9개월 미만	450	350	350	80	80	150
12개월 미만	550	450	450	100	100	170

② 12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다.

$$12\text{개월 사용료} + (\text{해당 개월수 사용료} \times 80\%)$$

③ 상업용 광고가 아닌 공익광고의 경우에는 ①항 사용료의 50%로 하되, 저작인격권과 관련된 사항은 제①항을 준용한다.

제36조(출판) ① 음악출판물(음악도서, 교본 및 피스 등 음악저작물을 주로 이용하는 출판물에 복제할 경우)의 사용료

1. 곡당사용료[판매가 × 10%(음악사용료율) ÷ 수록곡수 × 음악저작물 게재비율] × 관리곡수 × 지분율 × 제작수량 × 할인율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곡당 사용료가 다음의 하한가 미만일 경우 동 금액으로 한다.

구분	하한가
판매용 출판물	5원
비매용 출판물	3원

비고1) 할인율이란 제작·판매 과정에서 예상되는 반품, 재고, 폐기 등을 감안하여 할인하는 비율을 말하며, 제작자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비고2) 음악저작물 게재비율이란 출판물의 총 면수 중 음악저작물이 게재된 면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② 일반 출판물(출판물이나 휘장, 수건, 패널, 포스터 등 음악저작물을 부수적으로 이용하는 출판물에 복제할 경우)의 1곡당 사용료는 다음의 금액에 지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부수	10,000미만	10,000이상~30,000미만	30,000이상~50,000미만	50,000이상~100,000미만	100,000이상~300,000미만	300,000이상~500,000미만	500,000이상
판매용	18,000원	36,000원	60,000원	96,000원	144,000원	180,000원	240,000원
비매용	10,000원	21,000원	36,000원	57,000원	86,000원	108,000원	144,000원

③ 결합출판물(사운드북, 동요카드 등 음악출판물과 타 매체가 결합된 상품에 복제할 경우)의 사용료

1. 곡당사용료[판매가 × 5%(음악사용료율) ÷ 수록곡수] × 관리곡수 × 지분율 × 제작수량 × 할인율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곡당 사용료가 다음의 하한가 미만일 경우 동 금액으로 한다.

구분	하한가
판매용 출판물	5원
비매용 출판물	3원

비고1) 할인율이란 제작·판매 과정에서 예상되는 반품·재고·폐기 등을 감안하여 할인하는 비율을 말하며, 제작자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37조(선거홍보용 음악사용료) 선거 홍보용으로 음악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는 다음의 금액에 지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저작인격권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저작자의 사전 승낙을 얻어야 한다.

선거의 종류	선출대상	곡당 사용료
대 통 령 선 거	대통령	2,000,000원
정 당 용	국회의원 등	2,000,000원
광역단체장선거	광역시장, 도지사	1,000,000원
기초단체장선거	시장, 구청장, 군수	500,000원
국회의원선거	국회의원	500,000원
광 역 의 원	광역시, 도의원	250,000원
기 초 의 원	시·군·구의원	125,000원
교육감 선거	시, 도 교육감	500,000원
교육의원 선거	시, 도 교육의원	250,000원

제7장 대여 사용료

제38조(음반대여사용료) 음반대여에 따른 음악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text{총매출액} \times 5\%(\text{음악사용료율}) \times \text{음악저작물관리비율}$$

제8장 보 칙

제39조(기타 사용료) ① 사용료 징수규정이 없는 서비스의 경우 협회는 이용자와 사용요율 또는 금액을 협의하여 이용허락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용허락을 한 경우 협회는 이용허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협회가 제1항의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계약을 갱신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다시 이용허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용료 징수규정에 근거하여야 한다.

제39조의 2(상호협의 등 관련 보칙) ① 본 규정에 따라 협회와 이용자가 협의하여 정할 사항과 관련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정에 따른다.

② 본 규정의 해석 또는 서비스에 적용할 조항과 관련하여 협회와 이용자 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해석에 따른다.

제40조(가산금) 협회와 연간 포괄사용허락 계약을 체결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이용자는 음악저작물의 사용내역(프로그램명, 저작물명, 저작자명, 가수명, 이용횟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2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와 관련하여 협회는 방송사가 사용내역을 원활히 제출할 수 있도록 주제공, 배경음악, 시그널 뮤직에 대한 자료(음원 또는 특징점 정보 : DNA)를 방송사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제8조 내지 제10조, 제13조, 제14조의 공연사용료
2. 제16조 내지 제22조의 방송사용료
3. 제23조 내지 제25조의 전송사용료
4. 제27조의 웹캐스팅사용료
5. 제33조의 복제사용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경과규정) ① 이 개정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 및 제23조의2의 경우에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23조 및 제23조의2의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 개정규정 시행 당시(2013.1.1.) 자동결제 방식의 가입자는 해당상품이 존재하고 자동결제를 유지하는 경우에 2013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7조의 2, 제28조, 제29조, 제32조, 제34조, 제40조의 경우에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및 경과규정) ① 이 개정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 제2항의 경우에는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23조 제2항의 서비스와 관련하여 2013년 4월 30일 이전에 자동결제 방식으로 이용하는 가입자에 대해서는 2013년 6월 30일까지 가입당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5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및 경과규정) ① 이 개정규정은 2016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23조 제2항 제1호 및 제23조의2 제3항의 서비스와 관련하여 2016년 2월 21일 이전에 자동결제 방식으로 이용하는 가입자에 대해서는 2016년 8월 31일까지 가입당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9항 및 제10항, 제12조의 경우에는 2018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및 경과규정) ① 이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23조 및 제23조의2의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 개정규정 시행(2019.1.1.) 이전 자동결제 방식의 가입자는 해당상품이 존재하고 자동결제를 유지하는 경우에 종전의 규정을 계속 적용한다.

부 칙 (2019. 12. 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12. 11.)

제1조(시행일) ① 이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39조의 경우에는 개정규정 시행 이후 이 조항에 따라 신규로 이용허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2. 8. 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5. 9.)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3조 제2항 비고4)의 경우, 2022년 6월부터 2026년 5월 판매분(4년)까지만 적용한다. <개정 2024. 7. 31.>

부 칙 (2024. 7. 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3. 13.)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5. 7.)

제1조(시행일 및 경과규정)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02 사용료 분배규정

1988년 02월 23일 제정	2014년 03월 05일 개정
1988년 08월 17일 개정	2014년 12월 31일 개정
1989년 05월 11일 개정	2015년 09월 18일 개정
2001년 07월 19일 개정	2016년 12월 23일 개정
2003년 11월 21일 개정	2017년 05월 18일 개정
2006년 08월 01일 개정	2019년 02월 25일 개정
2008년 09월 12일 개정	2019년 08월 12일 개정
2009년 08월 10일 개정	2019년 09월 20일 개정
2009년 11월 10일 개정	2022년 09월 06일 개정
2011년 01월 03일 개정	2023년 10월 10일 개정
2011년 03월 07일 개정	2024년 07월 29일 개정
2012년 12월 27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본 협회”라 한다.)가 신탁받은 음악저작물을 관리하여 얻어진 대가로 징수한 저작물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의 분배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계권리자 : 한 저작물에 관계되는 작곡자, 작사자, 편곡자, 역사자(이들의 저작재산권의 승계자를 포함한다) 또는 음악출판자를 말한다.
2. 저작물자료 : 작품신고, 편곡신고, 역사신고, 기타 이에 준하는 저작물의 관계권리자, 분배율을 기재한 자료를 말한다.
3. 국제표 : 외국 음악저작권단체와 관리저작물에 대한 권리자 정보를 주고 받기 위해 작성되는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표준양식을 말한다.
4. 관리저작물 : 관계권리자가 본 협회에 신고하여 등록된 저작물을 말하며, 상호관리계약을 체결한 단체가 관리하는 저작물을 포함한다.
5. 분배자료 : 사용자로부터 제출된 사용곡목보고서, 외국저작권관리 단체로부터 송부된 분배명세서, 그 밖의 저작물 사용내역을 기재한 자료를 말하며, 본 협회가 사용료 분

배를 위해 관계권리자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자료와 외부 기관을 통해 조사하여 얻은 자료를 포함한다.

6. 분배대상사용료 : 각 분배기에 있어서 분배대상이 되는 사용료를 말한다.
7. 분배대상저작물 : 분배대상사용료의 분배대상이 되는 관리저작물을 말한다.
8. 큐시트(Cue-sheet) : 영화나 방송프로그램의 시작부터 끝까지의 전 과정을 일정한 형식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해 놓은 방송진행표로 저작물, 그 관계권리자 및 사용시간 등을 기재한 자료를 말한다.
9. 주제음악 :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의 방송프로그램에서 주제를 부각시키기 위해 사용된 가사가 있는 테마 음악저작물을 말한다.(기악곡으로 편곡되어 사용한 경우를 포함.)
10. 배경음악 : 방송프로그램 또는 영화 등에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사용되는 보조 음악저작물을 말한다.(라이브러리 음악 포함)
11. 라이브러리 음악 : 독립적으로 연주하거나 가창할 목적으로 작곡되지 않고,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프로그램 등에 배경음악 등으로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창작되어진 음악을 말한다.
12. 시그널음악 :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을 제외한 방송프로그램 등에서 시작 또는 끝을 알리기 위해 사용되는 음악저작물을 말한다.

제3조(분배대상자) ① 사용된 관리저작물의 관계권리자는 해당 사용료의 분배대상이 된다.

② 작곡 본인 저작물에 작곡자의 허락을 얻어 가사를 붙여 사용할 경우 작사자는 해당 가사가 사용된 때만 분배의 대상이 된다. 단, 해당 작사자가 관계권리자라는 것을 다른 관계권리자가 인정할 경우 계속 분배대상이 된다.

③ 편곡자 또는 역사자는 해당 편곡 또는 역사가 사용되었을 경우에만 분배대상이 된다.

④ 신탁계약 체결 및 해지에 의한 해당 월의 사용료 분배대상자 확정의 기준은 신탁계약 체결일과 해지일을 기준으로 한다.

1. 분배자료가 일자별로 생성되지 않을 경우에는 신탁계약 체결자는 체결일 당월초일을 기준으로 하고, 신탁계약 해지자는 해지일 당월말일자로 기산하여 분배대상자를 확정한다.
2. 승계, 양도 및 하청출판계약 등, 권리의 변동이 이루어질 경우, 권리변동으로 인한 신규 신탁계약 체결일이 15일 이후에는 익월 분배대상자로 확정한다.

제4조(분배대상 저작물) 분배대상저작물은 분배대상사용료의 징수기간에 사용된 저작물이나 징수대상이 된 저작물로 한다.

제5조(관계권리자의 확정방법 등) 관계권리자는 저작물자료에 기재되어 있는 자료 확정한다.

제6조(분배대상 저작물 자료 확정) 각 분배기에 있어서 분배대상 저작물 자료확정은 분배기(매월 23일) 당월 10일까지 등록된 저작물 자료에 의거 확정하고 분배한다.

제7조(분배자료) 사용료의 분배는 분배자료에 의하여 분배한다.

제8조(분배계산방법) ① 포괄 사용허락 방식의 분배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다.

$$(\text{각 저작물에 대한 분배액}) = \frac{\text{각 저작물의 분배점수}}{\text{분배대상 저작물의 분배점수의 합}} \times \text{분배대상 사용료}$$

② 곡별 사용허락 방식의 분배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다.

$$(\text{각 저작물에 대한 분배액}) = \frac{\text{분배대상사용료}}{\text{승인곡수}}$$

제9조(분배의 조정) 사용료가 과오 분배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당해 관계권리자에게 통보하고, 익월 사용료 분배 시 그 차액을 분배받을 사용료로부터 환수 또는 추가하여 분배할 수 있다. 단, 전송 매체 사용료의 경우 발생한 환수 대상금액이 저작물별 1,000원 미만일 경우, 환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0조(분배 보상 청구 및 지급) ① 분배대상 저작물의 관계권리자가 해당 저작물에 관련된 사용료의 분배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저작물이 사용되어 분배받을 수 있었던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관계 자료를 첨부해서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전 항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검증하여 관계권리자로 확인된 경우, 해당 사용료 분배 시 분배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분배 보류금액에서 지급한다. 단, 제11조 제1항의 매체를 제외한 경우는 제11조 제4항의 방식으로 분배보상금을 지급한다.

③ 저작권 신탁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관계권리자와 매 분배기에 관계권리자이나 협회에 저작물 자료를 등록하지 않아 사용료 분배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소급하여 분배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1조(분배보상 청구에 대한 보류 금액) ① 저작물 사용료 분배시 저작물 및 저작권자 정보가 부정확하여, 미 매칭되거나 분배자료에서 누락되어 분배를 받지 못한 경우의 분배보상을 위하여 다음에 정하는 비율의 사용료만큼 매 분배기 분배대상금액에서 선공제하여 분배 보상금으로 한다.

사용료명	방 송	전송/디지털음성송신
보류금액비율	4% 이내	2% 이내

② 전송의 경우, 곡별 정산 방식에 의해 징수·분배가 이루어진 사용료는 보류금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단, 곡별 정산 방식을 통한 징수·분배 후 보류금 지급이 필요한 경우, 기존의 누적 보류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전송 곡별 정산 시에 사용료 과오 징수가 발생한 경우, 보류금에서 해당 과오 금액을 차감하여 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거 분배 보류금을 공제하지 않은 타 매체에 대해서는 차기 분배대상 금액에서 해당 저작물을 차기 분배자료에 추가하여 분배보상금을 지급한다.

⑤ 동조에서 정한 보류금액 중 해당 분배기로부터 3년간 추가로 확인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남은 보류금은 매체별로 기 분배한 당해년도 곡별분배금액 비율로 익년도 4월에 분배한다.

⑥ 동조 ⑤항에도 불구하고 전송보류금의 3년경과분 분배 후 잔존보류금액은 최소 1억원을 유지할 수 있다.

⑦ 지급하여야 할 보상금이 해당 분배기 보류금액을 초과하여 분배 보류금이 부족한 경우, 부족한 분배보상금은 누적기간이 오래된 분배 보류금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하여 지급한다.

제12조(소송 등을 통해 징수한 사용료의 분배) 소송 또는 이용자와의 합의로 과거 사용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제출한 분배자료에 의거 분배한다. 다만, 분배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제21조, 제26조, 제31조, 제34조에 따라 분배한다.

제13조(국제기준) ① 관계권리자가 외국 저작권 관리단체에 속하는 경우에는 협회가 외국상

호관리단체와 체결하고 있는 상호관리계약에서 정하는 기준 또는 CISAC(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분배할 수 있다.

② 미확인 외국저작물은 상호관리계약 단체에 회람하여 상호관리계약 단체가 제공하는 정보로 관계권리자를 확정할 수 있다.

제2장 분배율

제14조(분배율) 저작물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관계권리자에게 분배하는 비율은 아래와 같다.

관계권리자	분배율	관계권리자	분배율
1. 작곡자	12/12	7. 작곡자	8/12
2. 작곡자	10/12	음악출판자	4/12
편곡자	2/12	8. 작곡자	6/12
3. 작곡자	6/12	편곡자	2/12
작사자	6/12	음악출판자	4/12
4. 작곡자	5/12	9. 작곡자	4/12
작사자	5/12	작사자	4/12
편곡자	2/12	음악출판자	3/12
5. 작곡자	5/12	10. 작곡자	3/12
작사자	2/12	작사자	2/12
역사자	5/12	편곡자	4/12
6. 작곡자	5/12	음악출판자	3/12
작사자	1/12	11. 작곡자	3/12
편곡자	1/12	작사자	2/12
역사자		역사자	4/12
		음악출판자	3/12
		12. 작곡자	1/12
		작사자	1/12
		편곡자	4/12
		역사자	
		음악출판자	

단, 관계권리자간 분배비율에 관한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분배한다.

제3장 공연사용료

제15조(공연사용료의 구분 및 분배기) 공연사용료의 구분 및 분배대상 사용료는 아래와 같다.

공연구분	분배기	분배대상 사용료	로그자료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단란주점의 공연사용료	3월 4월	1월,2월에 징수한 사용료 합계의 평균	1월, 2월
	5월 6월	3월,4월에 징수한 사용료 합계의 평균	3월, 4월
	7월 8월	5월,6월에 징수한 사용료 합계의 평균	5월, 6월
	9월 10월	7월,8월에 징수한 사용료 합계의 평균	7월, 8월
	11월 12월	9월,10월에 징수한 사용료 합계의 평균	9월, 10월
	1월 2월	11월,12월에 징수한 사용료 합계의 평균	11월, 12월
기 타 공 연 사 용 료	항공사, 기차, 선박, 경기장 등의 공연사용료	7월 11월	전년도에 징수한 사용료
	호텔, 콘도, 백화점, 대형마트, 유원시설 등의 공연사용료	4월 10월	7 ~ 12월에 징수한 사용료 1 ~ 6월에 징수한 사용료
	커피전문점,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 생맥주 전문점, 기타주점, 체력단련장 등의 공연사용료	8월	전년도에 징수한 사용료
	연주회(무대공연) 및 영화 등의 공연사용료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1월에 징수한 사용료 2월에 징수한 사용료 3월에 징수한 사용료 4월에 징수한 사용료 5월에 징수한 사용료 6월에 징수한 사용료 7월에 징수한 사용료 8월에 징수한 사용료 9월에 징수한 사용료 10월에 징수한 사용료 11월에 징수한 사용료 12월에 징수한 사용료

제16조(유흥·단란주점 사용료 분배방법) ① 유흥·단란주점 사용료의 분배자료는 매월 수집된 다음 각 호의 자료로 한다.

1. 유흥·단란주점에 설치된 노래반주기에 녹음 수록된 관리자작물(영업용 노래반주기 판매 매출 상위 2개 업체와 연주인용 노래반주기 매출 상위 1개 업체 수록곡에 한함). 단, 노래반주기의 곡번호를 별도로 할당받아 수록된 경우에는 동일한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각각을 분배대상 저작물로 한다.
2. 유흥·단란주점에 기 설치된 네트워크 기능이 장착된 온라인 노래반주기에서 수집된 전체 로그데이터.
3. 협회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지자체(시, 군, 구)별로 관리 업소수에 비례하여, 네트워크가 연결되지 않은 노래반주기 사용업소 중 샘플링 업소로 선정된 790개 이상 업소에서 무선통신 방식으로 수집한 로그데이터.
4. 네트워크가 연결되지 않은 노래반주기 사용업소 중 샘플링 업소로 선정된 업소에는 무선통신방식의 로그수집기를 1개씩 설치하기로 한다. 단, 샘플링 업소에서 수집한 로그데이터에 에러가 발생한 경우, 그 로그데이터는 분배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5. 로그데이터 수집 샘플 업소는 매년 총 샘플업소의 25% 이상을 교체하여야 하며, 샘플 업소로 선정된 업소의 사용로그는 4년 이상 적용할 수 없다.
6. 로그데이터의 수집이 월 10일 이상 연속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업소는 샘플 수집업소 대상에서 제외한다.
7. 샘플업소를 정하는 경우 지자체(시, 군, 구)별 관리업소의 비율에 따라 정하고, 교체를 할 경우에는 동 비율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단, 해당 시, 군, 구에 표본대상 업소가 없거나, 업주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근지역 시, 군, 구의 업소를 선정할 수 있다.
8. 표본대상 업소 선정 기준과 표본 업소 선정은 외부 연구용역자료에 근거하여 사무처에서 정한다.

② 전 항에서 정한 분배대상 사용료의 분배자료 적용 비율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수록곡	네트워크가 연결된 노래반주기에서 수집된 전체로그데이터	네트워크가 연결되지 않은 노래반주기중 샘플링업소에서 수집된 로그데이터
		30%	70%

비고 1) 수록곡의 국내·외국 분배적용 비율은 로그데이터의 국내·외 이용비율을 근거로 적용한다.

비고 2) 노래반주기에서 수집하는 로그데이터 중 메들리 로그는 아래와 같이 분배점수를 부여한 후 해당 메들리 로그의 관리자작물 수로 나눈 것을 개별 관리자작물의 분배자료로 사용한다.

[일반음악 점수 10점 기준]

제작길이	분배점수
5분 미만	10점
5:00 - 5:59	12점
6:00 - 6:59	14점
7:00 - 7:59	16점
8:00 - 8:59	18점
9분 이상	20점

비고 3) 노래반주기에서 수집하는 로그데이터 중 다음의 경우는 분배대상에서 제외한다.

1. 1분 미만 사용된 로그데이터. 단, 전체 곡 길이가 1분 미만인 곡은 제외
2. 동일한 노래반주기에서 1일 동안 동일곡의 로그데이터가 6회 이상 확인된 경우, 6회 이상의 로그데이터.
3. 로그수집 일자와 시간정보가 표시되지 않는 노래반주기는 1개월 동안 동일한 노래반주기에서 동일곡의 로그데이터가 151회 이상 확인된 경우, 151회 이상의 로그데이터.
4. 업소 영업시간(통상 20시부터 익일 04시까지) 이외에 사용된 로그데이터
5. 노래반주기에서 수집하는 로그데이터 중 반주기당 7,601회 이상 사용된 로그데이터.
6. 노래반주기에서 수집하는 로그데이터 중 반주기당 100회 이하 사용된 로그데이터.

비고 4) 시간정보가 표시되지 않는 노래반주기에서 발생한 로그데이터는 횟수의 90%를 실제 사용된 횟수로 간주하여 분배자료로 사용한다.

③ 유흥·단란주점의 공연사용료는 지부별로 징수한 금액을 합산하여 각 지부별 발생한 로그데이터를 분배자료로 지부별로 구분하여 분배한다.

④ 네트워크가 연결된 노래반주기가 설치된 업소에서 징수된 사용료는 네트워크가 연결된 노래반주기에서 수집한 전체 로그데이터로, 네트워크가 연결되지 않은 노래반주기 사용업소에서 징수된 사용료는 샘플링업소로 선정된 업소에서 수집한 로그데이터로 구분하여 분배한다.

⑤ 제16조 ①항 3호에서 정한 네트워크가 연결되지 않은 노래반주기에서 무선통신 방식으로 수집한 로그데이터는 일단위로 수집하며, 수집한 로그데이터는 사용료 분배 시 분배자료로 2개월간 사용한다.

제17조(노래연습장 사용료 분배방법) ① 노래연습장 사용료의 분배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자료로 한다.

1. 노래연습장에 설치된 노래반주기에 녹음 수록된 관리저작물(영업용 노래반주기 판매 매출 상위 2개 업체 수록곡에 한함). 단, 노래반주기의 곡번호를 별도로 할당받아 수

- 록된 경우에는 동일한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각각을 분배대상 저작물로 한다.
2. 노래연습장에 설치된 네트워크 기능이 장착된 온라인 노래반주기에서 수집된 전체 로그데이터.
 3. 협회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지자체(시, 군, 구)별로 관리 업소수에 비례하여, 네트워크가 연결되지 않은 노래반주기 사용업소 중 샘플링 업소로 선정된 740개 이상 업소에서 무선통신 방식으로 수집한 로그데이터.
 4. 네트워크가 연결되지 않은 노래반주기 사용업소 중 샘플링 업소로 선정된 업소에는 무선통신방식의 로그수집기를 1개씩 설치하기로 한다. 단, 샘플링 업소에서 수집한 로그데이터에 에러가 발생한 경우, 그 로그데이터는 분배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5. 로그데이터 수집 샘플 업소는 매년 총 샘플업소의 25% 이상을 교체하여야 하며, 샘플 업소로 선정된 업소의 사용로그는 4년 이상 적용할 수 없다.
 6. 로그데이터의 수집이 월 10일 이상 연속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업소는 샘플 수집업소 대상에서 제외한다.
 7. 샘플업소를 정하는 경우 지자체(시, 군, 구)별 관리업소의 비율에 따라 정하고, 교체를 할 경우에는 동 비율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단, 해당 시, 군, 구에 표본대상 업소가 없거나, 업주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근지역 시, 군, 구의 업소를 선정할 수 있다.
 8. 표본대상 업소 선정 기준과 표본 업소 선정은 외부 연구용역자료에 근거하여 사무처에서 정한다.
- ② 전 항에서 정한 분배대상 사용료의 분배자료 적용 비율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수록곡	네트워크가 연결된 노래반주기에서 수집된 전체로그데이터	네트워크가 연결되지 않은 노래반주기중 샘플링업소에서 수집된 로그데이터
	30%	70%	

비고 1) 수록곡의 국내·외곡 분배적용 비율은 로그데이터의 국내·외 이용비율을 근거로 적용한다.

비고 2) 노래반주기에서 수집하는 로그데이터 중 메들리 로그는 아래와 같이 분배점수를 부여한 후 해당 메들리 로그의 관리저작물 수로 나눈 것을 개별 관리저작물의 분배자료로 사용한다.

[일반음악 점수 10점 기준]

제작길이	분배점수
5분 미만	10점
5:00 - 5:59	12점

제작길이	분배점수
6:00 - 6:59	14점
7:00 - 7:59	16점
8:00 - 8:59	18점
9분 이상	20점

비고 3) 노래반주기에서 수집하는 로그데이터 중 다음의 경우는 분배대상에서 제외한다.

1. 1분 미만 사용된 로그데이터. 단, 전체 곡 길이가 1분 미만인 곡은 제외
2. 동일한 노래반주기에서 1일 동안 동일곡의 로그데이터가 8회 이상 확인된 경우, 8회 이상의 로그데이터
3. 로그수집 일자과 시간정보가 표시되지 않는 노래반주기는 1개월 동안 동일한 노래반주기에서 동일곡의 로그데이터가 211회 이상 확인된 경우, 211회 이상의 로그데이터.
4. 업소 영업시간(통상 18시부터 익일 04시까지) 이외에 사용된 로그데이터
5. 노래반주기에서 수집하는 로그데이터 중 반주기당 9,601회 이상 사용된 로그데이터
6. 노래반주기에서 수집하는 로그데이터 중 반주기당 100회 이하 사용된 로그데이터

비고 4) 시간정보가 표시되지 않는 노래반주기에서 발생한 로그데이터는 횟수의 90%를 실제 사용된 횟수로 간주하여 분배자료로 사용한다.

③ 노래연습장의 공연사용료는 지부별로 징수한 금액을 합산하여 각 지부별 발생한 로그데이터를 분배자료로 지부별로 구분하여 분배한다.

④ 네트워크가 연결된 노래반주기가 설치된 업소에서 징수된 사용료는 네트워크가 연결된 노래반주기에서 수집한 전체 로그데이터로, 네트워크가 연결되지 않은 노래반주기 사용업소에서 징수된 사용료는 샘플링업소로 선정된 업소에서 수집한 로그데이터로 구분하여 분배한다.

⑤ 제17조 ①항 3호에서 정한 네트워크가 연결되지 않은 노래반주기에서 무선통신 방식으로 수집한 로그데이터는 일단위로 수집하며, 수집한 로그데이터는 사용료 분배 시 분배자료로 2개월간 사용한다.

제18조(게임방, 노래교실, 주민센터 사용료 분배방법) 게임방, 노래교실, 주민센터에서 징수한 사용료 분배는 노래연습장 분배대상사용료에 포함하여 분배하고, 분배기 및 분배자료는 노래연습장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19조(레스토랑 및 무도장 등의 사용료 분배방법) 레스토랑, 무도학원, 카바레, 스탠드바, 무도장, 에어로빅장 등에서 징수한 사용료 분배는 유흥주점 분배대상사용료에 포함하여 분배하고, 분배기 및 분배자료는 유흥주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20조(호텔, 백화점 등의 사용료 분배방법) ① 호텔(콘도미니엄 등 포함), 백화점(대형마트, 쇼핑센터 등 포함)의 사용료는 업종 및 사용자별로 구분하여 분배한다.

② 호텔, 백화점 등의 공연사용료의 분배자료는 호텔, 백화점 등에 음악을 공급하고, 협회와 계약을 체결한 매장음악서비스(웹캐스팅, 전송 등) 업체의 해당 연도 로그데이터를 분배자료로 활용한다. 단, 호텔, 백화점 등의 공연사용료 로그데이터의 수집은 분배월 1개월 전까지 제출된 분배자료만 활용한다.

제21조(기타 공연사용료의 분배방법) ① 사용자로부터 제출된 분배자료에 의거 분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분배자료 등이 사용료 입금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되지 않거나 일부만 제출되어 분배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협회와 계약을 체결한 매장음악서비스(웹캐스팅, 전송 등) 업체 중 저작권사용료 납부 상위 5개 업체의 해당 연도 로그데이터를 분배자료로 활용한다.

③ 단, 커피전문점,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 체력단련장 등에서 징수된 사용료에 대해 분배자료 등이 제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년도 분배된 방송, 전송, 공연, 복제 매체 비율을 토대로 징수금액을 구분하고, 각 매체별로 기본배된 분배금액비율을 적용하여 분배한다.

제4장 방송사용료

제22조(방송사용료의 구분 및 분배기) 방송사용료의 분배대상 저작물 구분 및 분배기는 아래와 같다.

방송구분	분배기	분배대상 저작물
공영방송사 및 민영방송사의 방송사용료	9월	1/4분기(1월~3월)에 징수한 사용료
	12월	2/4분기(4월~6월)에 징수한 사용료
	3월	3/4분기(7월~9월)에 징수한 사용료
	6월	4/4분기(10월~12월)에 징수한 사용료
TV 중계유선, 음악유선방송, CATV PP, SO, 위성방송, DMB방송, IPTV	7월 11월	전년도 징수한 사용료

제23조(지상파, CATV 등 방송사용료의 분배구분) 방송사용료의 분배는 저작물이 사용된 방송 사별로 각각 구분하여 분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4조(지상파, CATV 등 방송사용료의 분배자료) ① 방송사용료의 분배는 다음 각 호의 분배자료에 의거 분배한다.

1. 일반음악

- 가. 방송사(사용자)로부터 제출된 분배자료(Cue-sheet 포함)
- 나. 방송모니터 전문 기관이 모니터한 자료

2. 주제·배경·시그널 음악

- 가. 방송사(사용자)로부터 제출된 분배자료(Cue-sheet 포함)
- 나. 방송모니터 전문 기관이 모니터한 자료
- 다. 권리자가 제출한 음악사용확인서(Cue-sheet 포함)

② 제1항의 자료는 방송사(사용자)로부터 제출된 분배자료(Cue-sheet 포함)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방송사로부터 제출된 분배자료가 없을 경우, 방송모니터 전문기관이 모니터한 자료를 우선 적용한다.

③ 지상파 방송에 사용된 주제·배경·시그널 음악 중 저작물명이 식별되지 않는 음악은 매분기 중 1개월 동안에 사용된 횟수를 전수 조사하여, 이를 3개월분으로 환산한 후, 분배자료로 사용한다. 단, 권리자가 제출하는 Cue-sheet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 의거 1개월간 모니터링 할 경우, 모니터링 대상이 되는 주(週)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⑤ 제1항의 방송사(사용자)로부터 제출된 'Cue-sheet'와 권리자로부터 제출된 '음악사용확인서(Cue-sheet포함)'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료 분배 보류 및 사용료 지급 중지 등 검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1. 사용자(방송사)가 분배자료를 누락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 2. 권리자가 제출한 '음악사용확인서(Cue-sheet 포함)와 방송모니터 전문 기관이 모니터한 자료 및 방송사(사용자)로부터 제출된 분배자료(Cue-sheet 포함)가 현저히 상이하거나 허위 자료일 경우

제25조(지상파, CATV 등 방송사용료의 분배점수) 분배대상이 된 각 저작물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점수를 부여해서 각각의 점수를 곱한 것을 그 저작물의 분배 점수로 한다.

1. 사용형태별 점수(일반음악)

사용형태	점 수	
	TV	라디오
실연에 의한 사용	1점	0.5점
음반에 의한 사용	0.5점	0.25점

비고) 저작물이 음반을 통해서 방송이 되었다 하더라도, 실연자가 출연한 경우에는 실연에 의한 사용으로 간주한다.

2. 일반음악의 사용 시간별 점수

사용형태	점 수
5분까지	1점
5~10분	3점
10~15분	10점
15~20분	15점
20~25분	20점
25~30분	25점
30분 초과 매 5분마다	10점

단, 사용시간별 점수 적용은 음악이 방송에서 실제로 사용된 시간을 정확히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그 적용을 유보한다.

3. 주제, 배경, 시그널 음악 점수(일반음악 1점 기준)

주제, 배경, 시그널 음악의 점수는 전 1호의 일반음악 점수를 기준으로 사용횟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부여한다.

사용방법	점수
주제음악	1/2점
배경음악	1/10점
시그널음악	1/10점

4. 일반음악 및 주제, 배경, 시그널 음악이 방송에서 5초 미만으로 사용된 곡은 분배대상 저작물에서 제외하고, 주제 음악이 동일 프로그램(연속프로그램 및 시리즈(series) 프로그램의 경우는 방송 1회분을 말한다.)에서 주제음악 외에 배경음악 등 다른 형태로 사용된 경우에는 사용된 횟수에 비례하여 사용료를 분배한다.

5. 다음의 사용방법은 1/50점(일반음악 1점 기준)으로 한다.

- 가. 방송 개시 전 테스트 전파
- 나. 방송 개시, 종료, 프로그램 안내

- 다. 방송국 PR-SPOT
 - 라.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사이에 보내는 방송
 - 마. 교통정보
6. 다음 방송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분배대상에서 제외한다.
- 가. 프로그램 예고 안내
 - 나. 극장용 영화 소개
 - 다. 레코드 신보 소개 또는 CM
 - 라. 기타 이에 준하는 방송

비고) 저작물의 사용시간, 사용방법, 종류 등이 특이하여 위에 정한 저작물 점수에 의거해서 점수계산을 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사회회의 승인을 얻어 저작물 점수를 별도로 정할 수가 있다.

제26조(방송사용료 분배방법의 예외) ① 방송사용료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년도의 무선방송(KBS, MBC, SBS, EBS, OBS)의 라디오, TV 분배자료와 유선방송(PP)의 분배자료로 분배한다.

1. CATV SO사, 중계유선방송사에서 징수한 사용료, 그리고 년 사용료가 3,600만원 미만인 방송사 및 PP사에서 징수한 사용료
2. 방송사로부터 제출된 Cue-sheet 또는 방송모니터 전문기관이 모니터한 자료가 없는 경우
3. 사용료는 입금되었으나, 입금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분배자료를 제공받을 수 없는 방송 매체(위성방송, DMB방송, IPTV 등)로부터 징수한 사용료
4. 방송에서 사용된 분배자료가 일부 자료만이 확보되어, 곡별사용료 분배단가 또는 분배점수 산출이 불가능하여 분배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단, CATV PP사의 경우에는 제3항에 의거하여 분배할 수 있다.

② 전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용료 분배는 분배대상 금액을 무선방송(KBS, MBC, SBS, EBS, OBS)의 라디오, TV 분배자료와 유선방송(PP)의 분배자료로 기 분배한 분배금액 비율을 적용하여 사용료를 분배한다.

③ CATV PP사에서 편성된 방송물 중 일부 방송물의 자료만이 확보되어 곡별사용료 또는 분배단가의 산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아래 산식에 의하여 일부자료 확보 방송물 분배대상금액으로 확정하여 분배할 수 있으며, 자료의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방송물의 분배사용료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하여 분배한다.

단, 확보된 일부자료는 방송사에서 제공된 것만 인정하며, 징수기간 해당 채널 총 방송송출시간이 불명확한 경우 1년을 기준으로 광고방송시간 공제율(20%)을 적용한다.

$$\text{일부 자료확보 방송물 분배대상금액} = \text{해당년도 징수금액} \times \frac{\text{일부 자료확보 방송물 송출시간}}{\text{징수기간 해당 채널 총 방송송출시간}}$$

④ 제3항에 따라 확보된 분배대상금액의 분배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text{분배사용료} = \frac{\text{일부 자료확보 방송물 분배대상금액}}{\text{일부 자료확보 방송물 총 음악사용 횟수}} \times \frac{\text{해당곡 사용횟수}}{\text{일부 자료확보 방송물 총 음악사용 횟수}}$$

단, 일부자료확보 방송물의 총 음악사용횟수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아래 각 호를 적용한다.

가. 해당방송물의 표본을 2개 이상 선정하여, 평균횟수 적용

나. 해당 방송물의 표본 확보가 불가능할 경우 지상파(KBS, MBC, SBS) 방송사에서 방송한 방송물 중 분류단위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송물의 표본을 2개 이상 선정하여 방송물의 사용시간에 비례한 평균횟수 적용

⑤ 제4항에 의한 사용료 분배시 이미 해당채널의 분배가 종료된 이후에는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하여 지급하며, 해당 보류금이 모두 소진된 경우, 해당 채널의 차기 분배대상금액에서 공제하여 지급한다.

⑥ 외국 방송 채널이 국내의 CATV 또는 위성방송에서 사용되었으나, 분배자료를 제공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방송물 분배대상금액에서 수수료 등을 공제한 후, 해당 방송물의 최초 방영 국가에 속한 상호관리단체로 분배할 수 있다.

⑦ 방송 프로그램을 DVD 등 유형물의 형태로 제작하여 판매한 사용료에 대하여 방송사가 분배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에서 기 분배한 동일한 분배점수를 적용하여 분배한다.

다만, 기 분배된 자료가 없을 경우 해당기간 방송4사(KBS, MBC, SBS, EBS) 본사 TV자료의 기 분배한 동일한 분배점수를 적용하여 분배한다.

⑧ 음악유선방송사용료는 해당년도의 지상파방송 3사(KBS, MBC, SBS)의 라디오의 일 반음악 자료로 분배한다.

제5장 복제 및 대여사용료

제27조(복제사용료의 구분과 분배기 등) 복제사용료의 구분, 분배기 및 분배대상저작물, 분배 대상사용료는 아래와 같다.

복제사용료의 구분	분배대상저작물	분배기	분배대상 사용료
복제사용료	이용자가 신청하고 협회가 승인한 저작물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1월에 사용한 복제사용료 2월에 사용한 복제사용료 3월에 사용한 복제사용료 4월에 사용한 복제사용료 5월에 사용한 복제사용료 6월에 사용한 복제사용료 7월에 사용한 복제사용료 8월에 사용한 복제사용료 9월에 사용한 복제사용료 10월에 사용한 복제사용료 11월에 사용한 복제사용료 12월에 사용한 복제사용료
노래반주기 월정 사용료, 판매사용료	정산기간 말일을 기준으로 해당 업체 노래반주기에 수록되어 있고, 협회가 승인한 저작물	11월	전년도 4/4분기부터 당해년도 3/4분기까지 징수한 사용료

비고) 노래반주기 월정 사용료, 판매사용료 분배에서 2002년 6월 이전에 정액제로 승인된 곡에 대해서는 분배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8조(대여사용료의 분배방법) 대여사용료는 분배자료가 확보되고 사용료가 징수된 후 3개월 이내에 사용자로부터 제출된 분배자료에 의거 분배한다.

제6장 전송사용료

제29조(전송사용료의 구분 및 분배기) 전송사용료의 구분과 분배기는 아래와 같다.

전송의 구분	분배기
다운로드 서비스	각 업체별로 분배자료가 확보되고, 사용료가 징수된 후 3개월 이내에 분배한다.
스트리밍 서비스	
다운로드/스트리밍 혼합 등 기타 서비스	

제30조(전송사용료 분배 방법) ① 전송사용료는 저작물이 사용된 업체별로 구분하여 분배한다.
 ② 전송사용료는 사용자로부터 제출된 로그데이터에 의해 분배한다.

제31조(전송사용료의 분배 방법 예외) ① 전송사용료가 징수되었으나 분배자료가 없는 각 호의 경우에는 매출 상위 3개 업체의 해당년도 로그데이터를 분배자료로 사용하여 분배한다.

1. 사용자가 로그데이터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로그데이터가 제출되었으나 로그자료 등이 미기재 되어 분배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② 전 항에 의한 분배 시 실제 전송에 이용되었으나, 분배받지 못한 관계권리자는 제10조에 의거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

③ 분배자료가 없는 방송물재전송(VOD 등) 서비스사용료는 분배대상금액을 방송3사(KBS, MBC, SBS)의 징수금액 비율로 구분하고 각 방송사별 기 분배한 동일한 분배점수를 적용하여, 해당년도의 지상파3사(KBS, MBC, SBS)의 라디오, TV 분배자료로 분배한다.

제7장 웹캐스팅 사용료

제32조(웹캐스팅사용료의 구분 및 분배기) 웹캐스팅사용료의 분배대상 저작물 구분 및 분배기는 아래와 같다.

웹캐스팅의 구분	분배기	분배대상저작물
방송사업자동시방송 개인방송 매장음악서비스 등	7월 11월	전년도 징수한 사용료

제33조(웹캐스팅사용료 분배 방법) ① 웹캐스팅사용료는 저작물이 사용된 업체별로 구분하여 분배한다.
 ② 웹캐스팅사용료는 사용자로부터 제출된 로그데이터에 의해 분배한다.

제34조(웹캐스팅사용료 분배 방법 예외) ① 웹캐스팅사용료 중 방송사업자동시방송 사용료가 징수되었으나 분배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분배대상 금액을 방송3사(KBS, MBC, SBS)의 징수금액 비율로 구분하고, 해당년도의 지상파방송 3사(KBS, MBC, SBS)의 라디오, TV

분배자료로 분배한다.

② 웹캐스팅사용료 중 매장음악서비스와 관련한 사용료가 징수되었으나, 분배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분배자료를 제출한 해당 서비스 업체 중 저작권 사용료 납부 상위 3개 업체의 로그데이터를 분배자료로 한다.

③ 웹캐스팅사용료 중 개인방송등과 관련한 사용료가 징수되었으나 분배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년도에 분배된 방송, 전송, 공연, 복제 매체 비율을 토대로 징수금액을 구분하고, 각 매체별로 기본배된 분배금액비율을 적용하여 분배한다.

제8장 보 칙

제35조(외국단체에 대한 사용료의 분배) 외국단체에 대한 사용료의 분배는 년 4회(2, 5, 8, 11월) 분배한다.

제36조(외국단체로부터 수납한 사용료의 분배방법) ① 외국 상호관리계약단체로부터 수납한 사용료는 단체별로 구분하여 해당 단체에서 제출된 분배자료에 의거 분배한다.

② 분배자료가 없거나 일부만 확보되어 분배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년도에 외국단체로부터 수납하여 기 분배한 전체 곡별분배금액 비율에 의거 분배한다.

단, 국내 방송프로그램이 외국 지역에서 CATV 또는 위성방송으로 사용되었으나 분배자료를 제공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KBS, MBC, SBS의 분배자료를 이용하며, 각 자료의 분배점수는 제25조(지상파, CATV 등 방송사용료의 분배점수)에 의거하여 분배한다.

제37조(기타 분배방법) 본 규정 각 조항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나 적절한 분배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사용료의 산출방법, 징수한 사용료액, 사용된 저작물수, 유사한 사용매체의 분배자료 등을 참작하여 이사회(감사 1인 이상 포함) 출석이사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분배하고, 해당 내용을 협회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 한다.

제38조(분배 차액금) 분배차액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특별회계 회원복지기금으로 이관시킨다.

제39조(분배기의 변경) 각 장에서 정한 분배기에 분배대상 사용료에 대해 분배하지 못할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분배기를 변경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관광부 장관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배자료 적용의 경과 조치) 이 규정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연사용료 분배는 2002년 개정 규정이 시행될 때까지는 종전의 방법대로 분배자료를 확보하여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개정 규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승인한 날(2006. 8. 1)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008. 9. 12.)

제2조(미분배 사용료의 분배규정 적용)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징수한 저작권 사용료는 동 규정에 따라 분배한다. 단, 제22조에서 정한 주제, 배경, 시그널 등 음악 점수(일반음악 점수 기준)에 의한 새로운 분배방식은 2008년도 4/4분기 방송사용료 분배 시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흥·단란주점 및 노래연습장 분배규정 재개정에 대한 경과조치) 유흥·단란주점 및 노래연습장에 대한 분배규정과 관련하여 주무부서와 협회는 조속히 합동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동 규정에 반영하도록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009. 08. 10.)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제15조와 제16조의 적용은 2009년 9월 분배 시부터 시행하며, 시행일에 선정된 샘플업소 로그수집 기간은 이 규정 제15조 1항 4호와 제16조 1항 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 1월 로그 수집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009. 11. 1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011. 01. 03.)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011. 03. 07.)

제2조(업소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정 제16조 1항 4호와 제17조 1항 4호의 시행은 2011년 7월 분배 시부터 적용한다.

② 종전 규정(2009.8.10.) 제15조, 제16조 및 부칙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 시행일에 선정된 샘플업소의 로그 수집 기간은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구 분	적용기간
샘플업소의 25%	2011년 3월까지
샘플업소의 25%	2012년 1월까지
샘플업소의 25%	2013년 1월까지
샘플업소의 25%	2014년 1월까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012. 12. 2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014. 3. 5.)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014. 12. 31.)

제2조(무선통신 방식 로그데이터 수집기 설치의 경과조치) 이 규정 제16조 1항 3호, 4호, 6호 및 제17조 1항 3호, 4호, 6호의 적용은 무선통신 방식의 로그데이터 수집기가 샘플링 업소에 설치된 이후에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015. 09. 18.)

제2조(유형·단란주점 및 노래연습장 분배 로그데이터 수집에 대한 경과조치) 분배규정 제16조, 제17조에 의거 분배 시 지역별 반주기 기종 분포로 인하여 특정 지역 로그데이터의 수집이 불가능할 경우, 무선통신방식으로 수집한 로그데이터 외에 종전 방식으로 수집한 로그데이터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016. 12. 23.)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017. 5. 18.)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제20조②항과 제21조는 2017년 1월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9. 2. 25.)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제15조(공연사용료의 구분 및 분배기)는 분배 대상 사용료(합계의 평균 금액)의 적용이 가능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개정 후 변경되는 로그자료로 인해 누락되는 월의 로그자료는 처음 분배기에만 포함하여 분배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9. 8. 12.)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9. 9. 20.)

제2조(경과조치) 제15조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에 한정하여 커피전문점,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 생맥주 전문점, 기타주점, 체력단련장 등에서 전년도에 징수한 공연사용료를 2019년 12월까지 분배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22. 09. 06.)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23. 10. 1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24. 07. 29.)

03 관리수수료 규정

2023년 4월 27일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및 분배 등 신탁관리 전반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공제하는 수수료(이하 ‘관리수수료’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관리수수료’라 함은 저작권법(이하 ‘관련 법’이라 한다)에서 정의하는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저작재산권자 및 그 밖의 관계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수료를 말하며,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액으로부터 공제한다.

제3조(공제시기) 관리수수료는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 후 지급시점에 공제한다.

제4조(관리수수료 요율) 관리수수료 요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아래 표의 승인요율 범위 내에서 정해야 한다.

구분	항 목	사용료 징수규정	문체부 승인요율
공연	무대공연 사용료	제6조(연주회 등)	19%이내
		제8조(전문체육시설에서 하는 체육관련 공연사용료) 제10조(유원시설의 공연사용료)	19%이내
	영업장 사용료	제7조(영업장)	25%이내
	백화점등 공연사용료	제9조(경마·경륜·경정장) 제11조(호텔·콘도미니엄, 카지노 등에 대한 공연사용료) 제12조(대규모점포에 대한 공연사용료) 제13조(항공기내의 공연사용료) 제14조(기차 등)	15%이내
방송	방송사용료	제16조(지상파방송에 대한 방송사용료) 제17조(방송채널사용사업(PP)에 대한 방송사용료) 제18조(종합유선방송(SO)에 대한 방송사용료)	12.5%이내

구분	항 목	사용료 징수규정	문체부 승인요율
		제19조(위성방송에 대한 방송사용료) 제19조의2(IPTV 등에 대한 음악사용료) 제19조의3(지상파 DMB에 대한 방송사용료) 제20조(중계유선방송에 대한 방송사용료) 제21조(음악유선방송에 대한 방송사용료) 제22조(이동방송서비스 등)	
전송	전송사용료	제23조(주문형 스트리밍 서비스) 제23조의2(주문형 다운로드 서비스) 제23조의4(주문형 배경음악 서비스) 제23조의5(홈페이지 배경음악 서비스) 제24조(영상물 전송서비스) 제24조의2(방송사업자의 방송물 재전송서비스) 제24조의3(온라인 게임 및 애니메이션 등) 제25조(전화를 이용한 서비스) 제26조(전화서비스-Music On Hold의 전송사용료)	14.5%이내
	웹캐스팅 사용료	제27조(웹캐스팅)	12.5%이내
복제	녹음사용료	제28조(음반)	10%이내
		제29조(뮤직비디오 등 영상물) 제30조(음반자판기) 제31조(아케이드 게임기 등) 제32조(음악저장장치 부착 제품 등) 제33조(노래반주기) 제37조(선거홍보용 음악사용료)	12%이내
	광고사용료	제35조(광고에 대한 복제사용료)	15%이내
	출판사용료	제36조(출판)	14%이내
	교과용도서보상금	-	10%이내
대여	대여사용료	제38조(음반대여사용료)	15.5%이내
	외국입금사용료 (신탁단체입금사용료)	-	5%이내
	영화 사용료	제34조(영화 사용료)	15.5%이내

제5조(관리수수료 적용요율 변경) 본 규정 제4조에서 명시한 관리수수료 요율 범위 내에서 적용요율을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안을 이사회 의결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위탁수수료) 통합징수를 위탁한 경우, 위탁수수료는 관리수수료에서 지급해야 하며, 저작재산권자나 그 밖의 관계자로부터 별도의 위탁수수료를 받아서는 안 된다.

제7조(개정) 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2023. 04.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04 신탁계약약관

1973년 03월 07일 제정	2009년 03월 18일 개정
1986년 07월 04일 개정	2012년 02월 29일 개정
1988년 02월 23일 개정	2012년 12월 04일 개정
1991년 06월 21일 개정	2013년 03월 07일 개정
1993년 05월 17일 개정	2015년 10월 16일 개정
1995년 03월 18일 개정	2016년 11월 15일 개정
1999년 01월 20일 개정	2017년 04월 13일 개정
2002년 12월 30일 개정	

제1조(목적) 본 약관은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이하 “저작권”이라 한다.)을 위탁하는 작사자, 작곡자, 편곡자, 음악출판자 등 음악 저작권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음악 저작권을 보호하고, 그 이용의 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수탁자”라 한다.) 양자 사이의 저작권 신탁계약의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저작권 신탁계약 체결의 절차) ① 저작권을 위탁하려고 하는 자는 저작권 신탁계약신청서를 작성한 후,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수탁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저작권의 신탁을 인수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의거 신탁계약신청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승낙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자와 저작권신탁계약을 체결한 때는 (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 신속하게 신탁증서 또는 신탁을 증명하는 문서를 위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저작권재산권의 신탁) ① 위탁자는 현재 소유하고 있는 저작권 및 장차 취득하게 되는 저작권을 본 계약기간 중 신탁재산으로 수탁자에게 저작권을 이전하고, 수탁자는 위탁자를 위하여 신탁저작권을 관리하여 이로 인하여 얻어진 저작물 사용료 등을 위탁자에게 분배한다.
② 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승인을 받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저작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1. 위탁자가 사가, 교가 등 특별의뢰에 의하여 창작한 저작물의 저작권을 해당 의뢰자에게 양도할 경우

2. 위탁자가 음악출판자에게 저작물의 이용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수탁자에게 재위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저작권을 조건부 양도를 할 경우
- ③ 위탁자는 사전에 수탁자와 협의한 후 제3자를 수익자로 지정하여 변경할 수 있다.
- ④ 제①항에 의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한 저작물에 대하여 위탁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3자에게 이용허락 및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

제4조(위탁 관리범위에서의 제외) ① 위탁자는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이용형태에 대해 위탁 관리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위탁 관리범위의 제외의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가. 광고에 복제하는 경우

나. 출판으로 복제하는 경우

다. 선거홍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전항에 의거 위탁 관리범위에서 제외된 이용형태에 대해 수탁자는 저작권사용료 징수의무가 없으며, 위탁자는 직접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제5조(저작권의 신탁기간) ① 신탁계약의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상호 이의가 없는 한 5년 단위로 그 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단, 위탁자의 저작권 보호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② 본 계약은 양 당사자가 각각 상대방에게 신탁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신탁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신탁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6조(저작권의 관리범위) 수탁자는 위탁된 저작권(이하 “신탁 저작권”이라 한다.)을 다음 범위 내에서 관리한다.

1. 공연권
2. 공중송신권(방송, 전송, 디지털음성송신)
3. 복제권(녹음, 녹화 및 악보출판 등)
4. 배포권
5. 대여권
6. 교과용도서 보상금을 수령할 권리

7. 기타 저작권법 상의 관리범위

제7조(저작권의 확인 보증)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저작물에 대해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며, 동시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 보증한다.
② 수탁자는 전 항의 확인 보증한 저작물에 대하여 위탁자에게 확인보증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외국지역에 대한 관리 및 재위탁) ① 수탁자는 신탁저작권의 외국지역에서의 관리를 위하여, 외국 저작권 관리단체 등에게 재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권리의 일부를 사)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에 재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9조(저작물 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 수탁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및 분배규정에 의하여 저작물 사용료를 징수하여 위탁자에게 분배한다.

제10조(신탁저작권 및 저작물 사용료의 관리방법) ① 수탁자는 정관 및 본 약관을 준수하고, 또한 총회 또는 이사회에 의결에 따라 신탁저작권 및 이에 속한 저작물 사용료 등을 관리한다.
② 수탁자는 신탁저작권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단, 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및 분배규정에 있어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분야별 관리 이외의 방식에 따라 관리할 수 있다.

제11조(관리경비의 징수) ① 수탁자는 신탁저작권의 관리에서 얻어진 저작물 사용료 중에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정하여진 관리수수료를 사용료 분배 시 공제한다.
② 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저작물 사용료 등 신탁재산 중에서 관리수수료에 상당하는 액을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로 선불하여 충당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한 회계년도의 관리수수료 등 수입총액이 수탁자의 업무수행 경비를 초과하여 수지차익금이 발생하거나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여 수지차손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총회 의결에 따라서 처리한다.
④ 수탁자는 관리수수료, 신입회원 입회금 및 신탁계약체결금, 저작물사용료 수입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제외한 모든 자산으로 부터 발생하는 이자, 별도 규정이 없는 기타 수입

(지연손해금 등)을 업무수행 경비로 충당한다.

⑤ 저작물사용료 수입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의거 회원복지를 위하여 사용한다.

제12조(업무관할 지역) 수탁자는 다음의 지역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1. 한국 내
2. 외국저작권 관리단체 등에 관리를 위탁한 경우에 있어서 그 외국저작권관리단체 등의 업무집행지역

제13조(소권) 위탁자는 신탁 저작권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없으며, 수탁자가 제기한 소송 등에 관하여 합의 또는 취하 등을 할 수 없다.

제14조(관리유보 및 제한) ① 위탁자는 전조 제6조에 규정한 수탁자의 신탁저작권 관리범위에 대하여 미리 수탁자의 승낙을 얻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유보 및 제한할 수 있다.

1. 위탁자가 국내에서 아직 녹음물 또는 출판물로 판매되지 않았던 저작물에 대하여 녹음사용자 또는 출판업자를 지정하는 것. 단, 이 지정의 효력은 그 녹음물 또는 출판물이 최초로 판매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한한다.
 2. 위탁자가 사가, 교가 등 특별의뢰에 의하여 창작한 저작물에 대하여는 해당 의뢰자의 의뢰 목적으로 제시된 조건범위 내에서 이용할 경우
 3. 위탁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한정된 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배포할 목적으로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기념음반을 제작하는 경우
 4. 음악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공연에서 위탁자의 저작물만으로 위탁자가 공연하는 경우, 단 위탁자의 저작물 외에 다른 저작물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
- ② 관리유보 기간 중 위탁자가 제3자에게 이용허락 행위를 할 경우, 수탁자는 즉시 승인유보를 해제한다.

제15조(저작권 등록 및 등록경비) ① 다음 각 호의 수속경비는 해당 위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1. 위탁자의 의뢰로 수탁자가 주무관청에 신탁저작권에 관한 등록업무를 하였을 경우
 2. 신탁계약의 종료업무 수속을 하였을 경우
- ② 전 항의 경비는 신탁저작권의 관리에서 얻어진 저작물 사용료 중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16조(분배청구권의 양도 및 질권 설정) 위탁자는 저작물 사용료의 분배청구권을 양도하거나 질권 설정 등을 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수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료의 계산 및 분배시기) ① 수탁자는 신탁저작권의 관리에서 얻어진 저작물 사용료를 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에 의거 위탁자에게 분배한다.

② 수탁자는 각 저작물 사용료 분배시에 분배명세서 및 저작물 사용료의 계산서를 작성하여 위탁자에게 교부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자에 대하여 금전채권이 있을 때는 저작물 사용료 분배시 해당 사용료 중에서 그 채권액을 공제할 수 있다.

④ 본 계약에 근거한 저작물 사용료 등의 분배청구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함으로써 소멸한다.

제18조(사용료 징수 및 분배 유보) 수탁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용료의 징수 또는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

1. 저작권 귀속에 대하여 민, 형사의 소 제기를 한 경우
2. 저작권의 침해에 대한 민, 형사의 소 제기를 한 경우
3. 저작물 사용료에 대하여 그 분배처 또는 적용할 분배율 등이 불명확한 경우
4. 저작권의 귀속 등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5.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받을 채권 등이 있는 경우

제19조(신탁계약의 승계) ① 위탁자가 사망하거나, 합병으로 인하여 법인이 소멸한 경우에는 상속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본 신탁계약에 의거 위탁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할 수 있다.

② 전 항의 상속인 또는 총괄 승계자인 법인은 위탁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사실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①항의 상속인이 복수인 경우에는, 상속인 중에서 1명을 대표승계자로 선임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신탁계약의 해지) ① 수탁자는 위탁자가 신탁저작권의 전부를 상실하거나, 권리가 소멸된 경우에, 신탁계약을 해지한다.

- ②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자가 본 약관 제3조 제②항과 제④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위탁자가 본 약관 제16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수탁자와의 사전 협의 없이 저작물 사용료의 분배청구권을 양도하거나 질권 설정을 한 경우
 3. 위탁자가 타인의 저작권을 허위 신고하여 사용료를 수령하거나, 신탁된 저작권을 이 증으로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 ③ 위탁자의 개인적인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거나, 수탁자가 본 계약에 정한 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서면으로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④ 전 ①, ②항 수탁자에 의한 계약 해지는 위탁자가 해지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종료되며, 전 ③항 및 제25조 제2항에 의한 계약 해지는 수탁자가 해지통보를 받은 날의 익월 1일부터 기산하여 3개월이 경과되는 날에 종료된다.
- ⑤ 본조와 제25조 제②항에 의거 신탁계약이 해지된 자의 재 신탁계약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 별도 규정에 의한다.

제20조의2(위탁자의 이용허락 승계) 수탁자가 이용자에게 정액제로 이용허락을 한 수탁 저작물에 관한 노래반주기 복제 및 배포 사용료를 이의 없이 지급받은 위탁자는 신탁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더라도 수탁자가 행한 위 이용허락을 승계하기로 한다.

제21조(신탁계약의 종료) 수탁자는 신탁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저작물 사용료 미 지급분 및 이에 대한 결산서를 위탁자에게 지급 및 제출하여야 하며, 수령 시 위탁자는 지체 없이 신탁증서 또는 신탁을 증명하는 문서를 반환하고 저작권의 이전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수탁자의 통지) ① 수탁자는 본 계약에 근거한 송금은 위탁자가 신고한 송금처로 하며, 최고 그 밖의 통지는 위탁자가 신고한 주소로 한다.

- ②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 항의 송금, 최고 그 밖의 통지를 보류할 수 있다.
1. 제23조 제①항 2호, 3호에서 규정하는 신고가 되지 않을 때.

2. 위탁자로부터 신고된 주소로 보낸 최고, 그 밖의 통지가 계속해서 3회 이상 도달하지 않은 것이 확인된 때
3. 수익자로부터 신고된 송금처로 보낸 송금이 도달하지 않은 것이 확인된 때

제23조(위탁자의 신고 의무) ① 위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수탁자에게 신고하고, 소정의 수속을 밟아야 한다.

1. 신탁증서 또는 신탁을 증명하는 문서를 분실하였을 때
 2. 송금처, 개명, 개인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3. 위탁자가 법인 또는 기타의 단체일 경우, 합병, 해산, 명의변경을 하였을 때
 4. 위탁자의 대표자, 대리 또는 대리 수령자의 변경이 있을 때
 5. 위탁자가 신저작물을 발표하였을 때와 저작권의 양수 등을 하였을 때
 6. 신탁저작권의 관리범위의 유보 및 제한사유가 소멸되었을 때
- ② 수탁자는 위탁자가 전 항의 신고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4조(관리방법의 변경) 수탁자는 제10조에 규정한 신탁저작권의 관리방법을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5조(신탁계약약관 변경) ① 수탁자는 총회 의결과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본 약관, 저작권신탁계약체결절차에관한규정, 음악저작물사용료분배규정을 변경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전 항의 약관 변경에 이의가 있는 위탁자는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③ 전 항의 해지권은 서면통보에 의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
- ④ 공고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도 해지권 행사를 하지 않을 때에는 제①항의 변경사항을 위탁자가 승낙한 것으로 인정하고, 본 약관 시행 이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한 위탁자는 별도의 수속 없이 본 약관에 의하여 신탁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26조(위약 등에 대한 배상책임) ① 위탁자와 수탁자는 본 약관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손해액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가 수탁자의 명예를 훼손하여 수탁자의 신탁관리업무에 지장을 준 경우, 수탁자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전 항에 의해 발생한 손해 배상액을 신탁저작권 관리에서 얻어진 저작물 사용료 중에서 우선 공제 할 수 있다.

제27조(공고) 본 약관에 규정한 공고는 수탁자가 발행하는 회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시행한다.

제28조(재판관할) 본 약관에 의거 체결된 신탁계약에 관한 소송의 재판관할은 피고의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9조(보칙) 신탁계약을 체결한 위탁자는 본 협회의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2009. 3. 18.)

제2조(제5조 저작권관리범위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에서 정한 신탁저작권을 위탁자가 선택하여 신탁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은 저작권관리업법 제정 이후에 개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제28조 보칙에 대한 경과조치) 본 약관 개정 이전에 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퇴직 시까지 직원 신분을 유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약관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2012. 2. 29.)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2012. 12. 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2013. 3. 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2015. 10. 16.)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2016. 11. 15.)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2017. 4. 13)

제2조(관리경비의 징수의 개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약관 제11조 4항 및 5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이후 차기년도부터 적용한다.

05 이용계약약관

1997년 01월 10일 제정 2012년 03월 29일 개정
2003년 10월 04일 개정 2016년 09월 20일 개정
2005년 09월 07일 개정 2018년 05월 28일 개정
2008년 07월 18일 개정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저작권 신탁관리업체인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와 동 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음악저작물을 공연·공중송신(방송·전송·디지털음성송신) 복제·배포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 간에 준수해야 할 음악저작물의 이용 방법 및 사용허락조건 등 저작물 이용계약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의 체결) ① 협회의 음악저작물을 공연·공중송신(방송·전송·디지털음성송신)·복제·배포 등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협회와 문서로써 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회”는 본조 제2항에 열거된 경우 외에 정당한 이유없이 저작물 등의 사용승인을 거절해서는 아니 된다.

② 다만, “협회”는 “사용자”의 음악저작물 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승인을 거절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협회의 각 규정에 반하여 사용하는 경우
2. 이용자가 음악저작물의 이용에 있어 협회 이외의 다른 권리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독점적 또는 이와 유사한 이용관계를 맺음으로써 타 이용자와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경우
3. 협회에 사용료를 체납중인 업체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 사용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4. 기타 상관례에 비추어 거래의 질서를 해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제3조 (저작물 사용허락 범위 및 제한) ① 협회에서 사용허락하는 저작물은 협회에서 관리하는 음악저작물 중 사용자가 신청하여 허락해준 저작물에 한한다.

② 사용자는 협회가 사용허락한 범위 내에서 음악저작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음악저작물의 사용권리를 제3자에게 재사용하도록 양도할 수 없다.

제4조(저작자명 등의 표시) 사용자는 음악저작물을 사용할 경우 해당 저작물의 제호와 작사자·작곡자·편곡자 등의 저작자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신탁계약 해지자 공고) ① 협회와 신탁계약을 해지한 위탁자가 있을 경우, 협회는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omca.or.kr>)에 해지된 저작물명과 저작자명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협회와 포괄적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해지된 저작물명과 저작자명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저작인격권 침해의 금지) 사용자는 협회에서 사용허락을 받은 저작물의 제목이나 내용, 저작자 성명 등을 변경하여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만약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를 침해했을 경우에는 저작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제7조(사용료) ① 사용자는 음악저작물 사용료로 협회의 저작물사용료 징수 규정에서 정한 요율 또는 금액을 납부한다. 다만, 협회의 저작물사용료 징수규정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협회와 사용자 간에 합의하여 정한 요율 또는 금액으로 한다.

② 협회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을 변경하여 사용료의 증감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협회는 사용자에게 이를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8조(사용곡목의 제출 및 이용데이터 제공 등) ① 음악저작물을 공연·공중송신(방송·전송·디지털음성송신) 복제·배포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는 사용료 산정 및 분배에 필요한 사용곡목 보고서 및 LOG데이터를 전자적 방법 및 문서로써 협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사용료 산정 및 분배에 필요한 사용 LOG데이터 추출을 위한 기술적 장비 및 기기를 사용자의 음악저작물 이용기에 설치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음악저작물을 음반, 영상매체 및 출판물 등으로 복제하여 배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허락을 받아 제작한 제품 2개를 출고 전에 견본으로 납본한 후 배포하되

협회에서 교부하는 증지 등을 각 복제물의 지정하는 위치에 붙인 후 출고하여야 한다. 다만, 협회에서 정기적으로 판매보고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증지의 붙임을 면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판매실적 등의 확인) ① 협회는 사용자의 영업소에서 음반, 영상매체 및 출판물 등의 판매 실적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협회의 업무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전항에 의한 확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3일전에 통보를 한 후 실시하여야 하며, 영업자의 주된 사무소에서 영업시간 내에 행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사용자가 음악저작물의 사용료로 납부한 금액은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자가 사용허락을 받은 음악저작물을 사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용료 납부 후 10일 이내에 사용료 반환을 청구한 경우와 자동이체 등의 방법으로 사용료를 납부하던 사용자가 음악저작물 사용을 중지하였으나 자동이체 해지 등을 하지 않아 사용료가 잘못 납부되어 음악저작물 사용중지 후 60일 이내에 사용료 반환을 청구한 경우에,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제11조(연체가산금) ① 사용자는 협회와 합의한 기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기일까지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동 사용료의 3%를 가산하여 1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만약 납부기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후부터 매 1개월마다 12개월까지 1.2%의 증가산금이 가산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다만, 6개월 이상 사용료가 연체되어 협회가 사용자에게 민·형사상의 법적조치를 제기한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침해가산금 요율을 준용한다.

제12조(침해 시 조치) ① 사용자가 협회에서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을 협회의 사전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협회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이용계약 체결 및 사용료 납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협회의 요청에 따를 경우 협회는 제11조에 따른 연체가산금, 제13조에 따른 침해가산금 부과를 면제한다.

제13조(침해가산금) 협회는 사용자가 제12조에 따른 협회의 요청에 응하지 않을 때는 사용자

에게 합법적 계약체결 시 납부하는 사용료의 15% 한도 내에서 가산금을 별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제11조에 따른 연체가산금은 부과하지 않는다.

제14조(계약의 해지) ① 협회 또는 사용자는 그 상대방이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불이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전 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이 통보를 받은 때에 해지된 것으로 본다.

③ 사용자는 협회로부터 계약의 해지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협회의 음악저작물 사용을 중지하여야 하며, 해지 후에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5조(위약에 따른 손해배상) 협회 또는 사용자는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액과 그 손해액에 대한 10%의 위약금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제16조(관할법원) 협회와 사용자 간에 법률적인 대립이 발생할 경우의 관할법원은 서울지방법원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합의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부 칙

본 약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승인을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약관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2008. 7. 18.)

부 칙

본 약관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2012. 3. 29.)

부 칙

본 약관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6. 9. 20.)

부 칙

본 약관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2018. 5. 28.)

02

한국음반산업협회

1. 사용료 징수규정
2. 사용료 분배규정
3. 관리수수료 규정
4. 신탁계약약관
5. 이용계약약관

01 사용료 징수규정

2003년 03월 17일 제정	2014년 12월 04일 개정
2003년 10월 16일 개정	2015년 12월 23일 개정
2005년 10월 24일 개정	2016년 01월 25일 개정
2006년 09월 08일 개정	2016년 03월 28일 개정
2008년 02월 28일 개정	2016년 10월 19일 개정
2012년 06월 08일 개정	2018년 06월 20일 개정
2012년 12월 26일 개정	2019년 12월 06일 개정
2012년 12월 27일 개정	2023년 05월 09일 개정
2013년 01월 25일 개정	2023년 06월 26일 개정
2013년 03월 18일 개정	2023년 09월 15일 개정
2013년 05월 09일 개정	2024년 07월 31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저작권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의하여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와 사용자간의 계약에 의해 저작권법 제78조 내지 제81조에 따른 복제·배포·대여·전송권 중 협회가 신탁받아 관리하는 음반제작자의 권리(이하 '신탁권리'라 한다)의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계약의 문서화) 협회는 관리하는 신탁권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와 문서로서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구분) 협회가 관리하는 음원의 사용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온라인상 복제·전송
2.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복제·배포
3. 기타

제2장 전송사용료

제4조(주문형 스트리밍 서비스) ① 소비자가 요청하는 음악저작물(뮤직비디오를 포함한다. 이

하 이 장에서 같다)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고 이용한 횟수에 비례하여 소비자에게 이용료를 부과하는 경우 또는 특정 상품(서비스)의 판매를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6.16\text{원(곡당 단가)} \times \text{이용횟수}$$

비고1) 이용횟수는 사용자가 제공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하되 횟수 산정 기준 등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사용자는 그 자료(로그 파일)를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이하 이 장에서 같다)

비고2) 특정 상품(서비스)에는 제2항의 월정액 스트리밍 상품, 제3항의 오프라인 재생 스트리밍 상품이 포함되지 않는다.

② 제1항과 달리 월정액을 받고 음악저작물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이하 “월정액 스트리밍 상품”이라 한다)의 사용료는 다음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3.08\text{원(곡당 단가)} \times \text{이용횟수}]$ 또는 $[\text{월정 } 3,080\text{원(가입자당 단가)} \times \text{가입자수} \times \text{음악저작물관리비율}]$

2. 매출액 $\times 48.25\%$ \times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비고1) 제1호의 사용료는 사용자가 1년 단위로 선택할 수 있다.

비고2) 가입자간 회원제 운영의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회원을 말하며, 회원제와 비회원제의 혼합 또는 회원제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월간 서비스를 이용한 순방문자를 말한다. 단, 월간 서비스를 이용한 순방문자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는 별도로 협회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정한다(이하 해당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에서 같다).

비고3) 음악저작물 관리비율이란 사용자가 이용하는 음악저작물 중 협회가 관리하고 있는 음악저작물의 사용비율을 말한다(이하 같다).

비고4) 매출액이란 사용자가 직/간접적으로 운영하는 당해 서비스 사이트의 해당 서비스로부터 취득한 이용료의 수입에 광고 및 기타의 수입을 합한 총매출액(Gross Sales)을 말하며, 판매촉진 행위 등에 따라 할인된 금액을 포함한다. 다만, 광고 및 기타의 수입은 당해 서비스 사이트에서 음악이 차지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하고 매출액이 없는 경우는 별도로 협회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정한다(이하 이 장에서 같다).

비고5)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의 사용료 정산에 있어 인앱결제 서비스와 PC WEB 등의 서비스가 동일한 경우 인앱결제 서비스의 사용료는 PC WEB 등의 서비스 가격 및 정산 산식을 적용하여 정산한다. (제4조 및 제5조에 적용된다.)

비고6) 본 조에 따른 사용료의 산정 방식에도 불구하고 협회는 사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용료를 가입자 단위로 나누어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료는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단,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조에 따른 사용료의 산정 방식에 따른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

1. $[(\text{이용 가입자별 매출액} \times 48.25\% \text{ 또는 가입자 단가(월정 } 3,080\text{원) 중 많은 금액}) \times \text{이용 가입자별 음악저작물관리비율}]$ 의 총합산액

2. (미이용 가입자별 매출액 합계 $\times 48.25\%$ 또는 가입자당 단가(월정 3,080원) 합계 중 많은 금액) \times 이용 가입자별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의 평균치

* 제3항의 경우 가입자 단가는 월정 5,259.25원을 적용한다.

③ 제2항과 달리 월정액 스트리밍 상품에 소비자가 가입 기간 동안 오프라인 상에서도 재생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단, 오프라인 재생을 위해 저장된 음원이 추출, 복제, 공유 등 다운로드와 유사한 속성을 갖지 않는 경우)의 사용료는 다음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월정 5,259.25원(가입자당 단가) × 가입자수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2. 매출액 × 48.25%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 사용자는 오프라인 상에서 재생된 이용횟수를 집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과 달리 광고수익을 목적으로 소비자가 음악저작물을 청취할 때 광고가 노출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음악저작물을 소비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이하 '광고수익 기반 스트리밍 상품'이라 한다)의 사용료는 제1호와 같다. 다만, 그 금액이 제2호보다 적을 경우 제2호로 한다.

1. 3.38원(곡당 단가) × 이용횟수
2. 매출액 × 48.25% ×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비고1) 소비자가 음악저작물을 청취할 때 광고가 노출되도록 하는 방식을 취하더라도 광고수익이 목적이 아니라 특정 상품(서비스)의 판매가 목적일 경우에는 제1항이 적용된다.

⑤ 주문형 스트리밍 방식으로 이용료가 없이 총 재생시간이 한 곡당 30초를 넘지 않으며, 자신의 홈페이지 및 서버에서 음악저작물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사전 신고할 경우 다음 대상에 대하여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재생시간은 60초 이내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판매촉진을 위해 판매하고자 하는 곡과 동일한 곡으로 서비스를 하는 경우
2. 저작자, 실연자, 음반제작자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자신의 저작물이나 실연, 음반에 관계되는 작품을 업로드하는 경우

제5조(주문형 다운로드 서비스) ① 소비자가 요청하는 음악저작물을 곡당 다운로드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제1호와 같다. 다만, 그 금액이 제2호보다 적을 경우 제2호로 한다.

1. 367.5원(곡당 단가) × 다운로드횟수
2. 매출액 × 52.5% ×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비고1) 다운로드는 소비자가 관리하는 가상의 공간에 저장하는 것을 포함한다.

비고2) 다운로드횟수는 사용자가 제공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하되 횟수 산정 기준 등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사용자는 그 자료(로그 파일)를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이하 이 장에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곡 이상 30곡 미만으로 제작된 앨범단위로 판매되는 경우(편집앨범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사용료는 다음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183.75원(곡당 단가) × 조정계수 × 다운로드횟수
2. 매출액 × 52.5%(음악사용요율)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1) 연도별 조정계수는 다음과 같다.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조정계수	1.2	1.6	2.0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30곡 이상 다량 다운로드를 제공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다음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곡당 단가 × 조정계수 × 다운로드횟수
2. 매출액 × 52.5% ×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비고1) 곡당 단가는 30곡일 경우 곡당 183.75원을 기준으로 1곡 추가할 때마다 이전 단가보다 1% 할인하고, 65곡 이상일 경우는 곡당 128.63원으로 하며, 2021년 이후의 곡당단가는 곡수에 관계없이 183.75원으로 한다.

비고2)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간 내에 이용 가능한 다량 다운로드 상품을 제공하는 경우의 곡당 단가는 해당 상품의 곡수를 월간기준 상품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비고3) 다량 다운로드 상품(원 상품)에 사용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1개월 이내에 이용할 수 있는 곡수를 추가로 제공하는 경우 곡당 단가는 원 상품의 곡당 단가를 적용한다.

비고4) 연도별 조정계수는 다음과 같다.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조정계수	1.2	1.6	2.0

④ 다운로드한 음악저작물의 사용기간을 제한(1개월 이하로 한다)하거나, 그 제한된 기간 이후에는 그 곡(제3항의 경우에는 그 상품을 말한다)에 대한 재결제시에만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의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3항을 적용하되, 곡당 단가는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해진 곡당 단가의 38%로 한다. 단, 2021년 이후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해진 곡당 단가를 따른다.

⑤ 제1항의 다운로드 서비스(30곡이상 다량을 묶어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와 제4조 제2항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다음의 금액으로 한다.

$$(제4조 제2항의 스트리밍 사용료 \times 0.5) + \text{해당 다운로드 사용료}$$

비고1) 단, 2021년 이후에는 제4조 제2항의 스트리밍 사용료 + 해당 다운로드 사용료

제5조의2(상품 구성 유예) 협회는 권리자가 요구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월정액 스트리밍 상품이나 30곡 이상의 다량 다운로드상품 또는 두 상품 모두의 서비스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조의3(판매촉진 등) ① 권리자(신탁관리단체에 신탁한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유통서비스사업자가 특정 저작물 또는 서비스 상품의 홍보나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관련 권리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 주문형 스트리밍서비스나 주문형 다운로드서비스에 무료로 음원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비용으로 곡당 1만원의 금액을 협회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권리자 또는 유통서비스사업자가 홍보나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특정 서비스 상품에 대하여 이 규정에 의한 사용료 또는 통상의 사용료를 할인한 경우에는 협회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별도의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6조(주문형 배경음악 서비스) 개인홈페이지 등에 소비자가 요청하는 음악저작물을 배경음악 서비스로 제공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다음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곡당 175원×판매횟수×음악저작물 관리비율×할인율
2. 매출액×35%×음악저작물 관리비율×할인율

비고1) 할인율은 6개월 이하로 기간제한을 하는 경우 0.9로 한다.

제7조(방송물 재전송서비스) ① 음악전문 라디오 방송물(AOD)을 재전송하는 경우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음악전문 방송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사용료의 1/2로 한다.

1. 이용료 또는 광고료가 있는 경우(다만, 이 경우 사용료가 제2호보다 적을 경우 제2호 규정을 적용한다.)

$$\text{매출액} \times 2.5\% \times \text{음악저작물 관리비율}$$

2. 이용료 및 광고료가 없는 경우

$$\text{월정 60원} \times \text{이용자수} \times \text{음악저작물 관리비율}$$

비고1) 이용자수는 당해월에 재전송서비스를 이용한 중복되지 않은 이용자수를 말한다.

- ② TV방송물(VOD)을 재전송하는 경우 사용료는 제1항 규정의 1/2로 한다.

제8조 (온라인 게임 및 애니메이션 등) ① 음악을 주로 사용하는 온라인 게임 및 애니메이션(편당) 등의 음악 서비스에 대한 사용료는 다음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매출액 × 22%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2. [연간 곡당 440,000원 × 관리곡수] 또는 [6.16원 × 이용횟수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 비고1) 제2호에 따른 사용료 지급 방식은 매년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다.
 비고2) 음악을 주로 사용하는 온라인 게임 및 애니메이션이란 음악에 맞춰 게임을 조작하여야 하거나 음악이 재생되지 않을 경우 게임의 진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등 당해 서비스에서 음악이 필수적인 요소로 사용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비고3) 매출액이란 당해 사이트에서 게임 및 애니메이션이 제공하는 음악서비스로 발생한 이용료 등의 수입에 광고, 기타의 수입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소비자가 음악 재생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유료재화를 통해 발생한 수입은 제외한다). 다만, 광고 및 기타의 수입은 당해 서비스 사이트에서 음악이 차지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비고4) 음악 사용 기간이 1년 미만인 서비스에 본조 제1항 2호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에는 연간 곡당 사용료에 1/12를 곱한 월정사용료를 1개월 단위로 적용하여 사용료를 산정한다.

② 음악을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온라인 게임 및 애니메이션(편당) 등의 음악 서비스에 대한 월정 곡당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8,000\text{원} \times \text{관리곡수}$$

제9조 (홈페이지 배경음악서비스) 기업이 자사 홈페이지 등에 배경음악을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월평균 방문자수	금액
5천명 미만	8,000
5천명 이상~1만명 미만	20,000
1만명 이상	60,000

제10조 (전화를 이용한 서비스) 전화(이동전화, 일반전화 등)를 통해 벨소리, 통화연결음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음악을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text{매출액} \times 30\% \times \text{음악저작물 관리비율}$$

제10조의 2(Music On Hold 서비스) 일반전화기에 의해 수신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전화서비스의 유선송신 및 자체 송신에 의해 음악을 사용할 경우 곡당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채널 수	연간사용료
1채널~10채널	50,000원
11채널~20채널	95,000원
21채널~30채널	135,000원
31채널~50채널	170,000원
51채널~80채널	200,000원
81채널~120채널	225,000원
121채널~200채널	250,000원
201채널~300채널	300,000원
301채널~500채널	400,000원
501채널~1,000채널	600,000원
1001채널 이상	협 의

비고1) 사용이 1년 미만인 기간일 경우 사용료는 1개월 단위로 해서 상기표 연간사용료를 1/12로 한 금액을 월사용료로 할 수 있다.

제10조의 3(결합서비스의 사용료) 제5조 제5항 이외에 서비스를 결합하는 경우 사용료는 협회 규정에서 정한 각각의 사용료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합서비스의 성격을 감안하여 협회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10조의 4(해외 서비스) 해외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음악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서비스 제공 가격 등을 감안하여 협회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제3장 복제사용료

제11조 (영화 및 비디오, 광고 등 영상물) ① 영화, 비디오, 광고 등 영상물의 복제사용료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 포토앨범(웨딩, 커플, 회갑, 성장 동영상 등)을 제작할 경우 복제 및 배포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text{판매가} \times 6\% \times (\text{승인곡수/수록곡수}) \times \text{판매수량}$$

제4장 보 칙

제12조(기타 사용료) ① 사용료 징수규정이 없는 서비스의 경우, 협회는 이용자와 사용요율 또는 금액을 협의하여 이용허락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용허락을 한 경우 협회는 이용허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협회가 제1항의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계약을 갱신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다시 이용허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용료 징수규정에 근거하여야 한다.

제12조의 2(상호협의 등 관련 보칙) ① 본 규정에 따라 협회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정할 사항과 관련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정에 따른다.

② 본 규정의 해석 또는 서비스에 적용할 조항과 관련하여 협회와 사용자 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해석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6. 8.)

제1조(경과규정) ① 이 개정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제5조의 경우에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4조 및 제5조의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 개정 규정 시행 당시(2013.1.1.) 자동결제 방식의 가입자는 해당상품이 존재하고 자동결제를 유지하는 경우에 2013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12. 12.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12.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3. 18.)

제1조(시행일 및 경과규정) ① 이 개정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2항의 경우에는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4조 제2항의 서비스와 관련하여 2013년 4월 30일 이전에 자동결제 방식으로 이용하는 가입자에 대해서는 2013년 6월 30일까지 가입당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13. 5. 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12. 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12. 23.)

제1조(시행일 및 경과규정) ① 이 개정규정은 2016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4조 제2항 제1호 및 제5조 제3항의 서비스와 관련하여 2016년 2월 21일 이전에 자동결제 방식으로 이용하는 가입자에 대해서는 2016년 8월 31일까지 가입당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16. 1. 25.)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3. 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10. 19.)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6. 20.)

제1조(시행일 및 경과규정) ① 이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4조 및 제5조의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 개정규정 시행(2019.1.1.) 이전 자동결제 방식의 가입자는 해당상품이 존재하고 자동결제를 유지하는 경우에 종전의 규정을 계속 적용한다.

부 칙(2019. 12. 0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05.09.)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4조 제2항 비고5)의 경우, 2022년 6월부터 2026년 5월 판매분(4년)까지만 적용한다. <개정 2024. 07. 31.>

부 칙 (2023.06.26.)

제1조 (시행일 및 경과규정) ① 이 개정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제12조의 경우에는 개정규정 시행 이후 이 조항에 따라 신규로 이용허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3. 09. 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7. 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02 사용료 분배규정

2003년 03월 17일 제정	2011년 12월 30일 개정
2003년 10월 16일 개정	2013년 05월 09일 개정
2005년 06월 27일 개정	2017년 05월 04일 개정
2009년 06월 08일 개정	2022년 10월 28일 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신탁받은 음악저작물을 관리하여 얻어진 대가로 징수한 저작물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의 분배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권리자 : 협회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음반제작자 및 그 권리를 승계한 자를 말한다.
2. 관리저작물 : 권리자가 본 협회에 제출하여 등록된 저작물을 말한다.
3. 사용내역 : 사용자로부터 제출된 사용보고서, 음원이용내역, 매출 자료, 그 밖의 저작물 사용내역을 기재한 자료를 말하며, 협회가 외부 기관을 통해 조사하여 얻은 자료를 포함한다.
4. 과거사용료 : 권리 침해에 대한 배상금 및 합의금 등 소송 및 이에 준하는 법률행위를 통하여 미계약 상태에서 발생한 침해행위에 대한 배상 명목으로 발생한 금원 및 금원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단, 합의 등의 조건으로 발생한 배너광고 및 이벤트 유치 등 분배가 불가능한 합의사항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3조(분배대상자) ① 분배대상사용료는 분배대상저작물의 위탁자 또는 그 권리를 승계한 자에게 분배된다.

② 과거사용료는 침해시점을 기준으로 전 항에 의한 분배대상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분배한다.

제4조(분배대상저작물) ① 분배대상저작물은 분배대상사용료의 징수기간에 사용된 저작물이나 징수대상이 된 저작물로 한다.

② 분배자료에 관리저작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협회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분배

대상저작물이 아니라고 인정한 것은 분배대상저작물에서 제외한다.

- 제5조(분배자료)** ① 협회는 사용자로부터 제출받은 사용내역에 따라 사용료를 분배한다.
 ②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가 적정하지 않거나 사용내역의 확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유사한 형태의 사업자의 사용내역을 분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협회는 이사회 의결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분배금의 산정)** ① 권리자별 분배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text{권리자별 분배금} = \text{분배금 총액} / \text{분배대상저작물 사용총량} \times \text{해당 권리자의 사용량}$$

비고 1) 분배금 총액은 사업자로부터 해당 분기에 징수한 사용료 총액에서 '관리수수료규정'에 의한 관리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 ② 분배대상자의 최종 분배금은 이월분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제7조(분배조정)** 사용료가 과오 분배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당해 관계권리자에게 통보하고, 익월 사용료 분배시 그 차액을 분배받을 사용료로부터 환수 또는 추가 분배할 수 있다.

- 제8조(분배시기)** ① 협회는 사용자별로 분배자료가 확보되고 사용료가 징수된 후 3개월 이내에 분배한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분배대상사용료 및 전항에 따른 분배기의 임시적 변동이 불가피할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 제9조(예금이자의 취급)** 사용료의 수납에서 분배에 이르기까지의 이자는 회원 복지 기금으로 사용한다.

- 제10조(사용료분배의 유보)** 협회는 신탁계약약관 제8조에 따라 신탁권리의 귀속과 관련한 민·형사상의 다툼이 있는 경우 사용료의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

- 제11조(사용료 청구에 대한 보류금액)** ① 사용료 분배시 저작물 또는 분배대상자 정보의 불분명 등으로 특정하지 못하거나 사업자의 정산반환요청 등 기타의 사유로 분배자료에서 누

락된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에 정하는 비율로 분배대상금액에서 선 공제하여 보류금을 적립할 수 있다.

보류금액비율	분배대상금의 5% 이내에서 이사회 결정
---------------	-----------------------

- ② 동조에서 정한 보류금액은 해당 사용목록을 기준으로 익년 마지막 분배기에 재분배한다.
- ③ 지급하여야 할 사용료가 해당 월의 보류금액을 초과하여 분배 보류금이 부족한 경우, 해당 분배월의 직전 분배기 보류금액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지급한다.

제12조(이의신청) ① 위탁자는 분배방법 및 분배액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그의 신탁 권리가 사용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협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위탁자가 분배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서식1의 사용료 분배 이의신청서에 사용된 권리 및 권리를 사용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협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이의신청을 받을 경우 협회에 보관된 자료와 대조 등의 방법에 의하여 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적정여부를 결정한다.

④ 협회는 이의 신청서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처리하여 그 결과를 신청자 및 관련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중복 또는 이의제기 관련 분배대상 기간이 상당할 경우 등으로 인해 해당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미분배금의 공익목적 사용)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해 사용료 분배가 불가능하여 홍보매체를 통하여 사용료 지급공시를 한 날로부터 3년 경과시까지 분배금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사용료를 회원의 권리증진과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1. 분배대상자의 3년간 누적분배금이 1만원 미만인 경우
2. 분배대상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
3. 분배대상자가 분배금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14조(시행세칙) 본 규정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15조(규정의 개정) 본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2003. 3. 17)

이 규정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10. 16)

이 규정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6. 27)

이 규정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6. 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5. 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5. 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10.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

사용료 분배 이의신청서			처 리 기 간
			3개월
신 청 인	성 명		주민(사업자)번호
			회원번호
	전 화	(자 택) (사무실) (휴대폰)	Fax
			E-mail
주 소	(자 택) (사무실)	URL(홈페이지주소)	
분 배 내 용	분배대상자 (권리자)		
	분배대상 음반 (앨범명)		
	분배기간	20 년 월 ~ 20 년 월	
	분배금액		원
이 의 신 청 내 용			
<p>사용료분배규정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탁사용료 분배에 대해 이의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 청 자 :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 귀중</p>			
첨부서류	이의신청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p>1.</p> <p>2.</p>			

03 관리수수료 규정

2003년 03월 17일 제정	2011년 12월 30일 개정
2005년 09월 09일 개정	2013년 05월 09일 개정
2008년 07월 01일 개정	2016년 07월 01일 개정
2009년 10월 30일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저작권접권 신탁 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수료(이하 '관리수수료'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수수료) ① 협회의 관리수수료율은 사용료의 13% 이내로 한다.

② 협회는 제1항의 범위 내에서 관리수수료율을 매년 이사회 의결로 정하여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관리수수료의 공제시기) 관리수수료는 사용료 분배 시 공제한다. 다만, 경영여건 등에 따라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료 징수 시 관리수수료의 50% 범위 내에서 미리 공제할 수 있다.

제4조(개정) 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2003. 3. 17)

본 규정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승인을 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9. 9)

본 규정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승인을 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7.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2006년도 9월부터 2008년도 6월까지 관리수수료율은 종전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09. 10.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1.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의 관리수수료율은 종전규정에 적용한다.

부 칙 (2013. 5. 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7.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04 신탁계약약관

2003년 03월 17일 제정 2012년 04월 27일 개정
2003년 09월 02일 개정 2013년 05월 09일 개정
2005년 06월 27일 개정 2017년 04월 21일 개정
2011년 08월 17일 개정

제1조(목적) 본 약관은 음반제작자의 정당한 권리 보호와 원활한 이용허락을 위하여 음반제작자 또는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양수 또는 승계한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 와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이하 '수탁자'라 한다) 사이의 권리 신탁에 관한 계약내용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권리의 신탁) ① 위탁자는 저작권법에 규정된 음반제작자의 권리 중 다음 각호의 권리(이하 '신탁권리'라 한다)를 선택하여 본 약관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탁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신탁하고 수탁자는 위탁자를 위하여 이를 관리하고 이로 인하여 얻은 사용료 등을 위탁자에게 분배한다.

1. 유·무선 온라인상 복제/전송권
 2. 오프라인 음반의 복제/배포/대여권
 3.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복제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복제라 함은 통상적인 오프라인상의 LP, CD, MC의 음반 판매를 제외한 전자적 기록매체 등을 통하여 복제가 반복되어도 원본과의 질적 저하가 발생하지 않으며, 동시다발적으로 복제가 가능한 것을 말한다] 및 이를 통한 배포, 대여권
 4. 저작권법령상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사업자"에 대한 음원의 복제/전송/배포권
- ② 위탁자가 제 3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지체없이 수탁자에게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저작인접권의 양도·양수 및 승계된 경우에는 수익자 지정이 해지된 것으로 한다.
- ③ 위탁자는 제 1항에 의하여 수탁자에게 신탁한 권리 일부를 제 3자에게 이용허락을 하는 경우 사전에 수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3조(신탁계약의 체결절차) ① 신탁권리를 위탁하려고 하는 자는 신탁계약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신탁계약약관에 대한 충분한 고지를 하고 수탁자는 반드시 이에 대해 숙지한 후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③ 수탁자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위탁자에게 신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권리의 확인 보증)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신탁권리가 본인이 직접 음반을 제작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 또는 타 제작자로부터 적법하게 그 권리를 승계 또는 양수하였다는 사실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가 확인 보증한 권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위탁자는 지체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업무 관할지역) ① 수탁자는 다음의 지역에서 신탁권리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1. 대한민국

2. 외국

② 수탁자는 외국 지역에서의 신탁권리를 관리하기 위하여 외국의 권리관리단체 등에 재위탁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의 징수와 분배) ① 수탁자는 그 업무를 행하는 지역에서 신탁권리의 사용을 허락하고 사용료 징수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 1항의 사용료는 사용료분배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탁자에게 분배한다.

③ 수탁자는 제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별 분배대상 사용료중 분배에 필요한 경비가 분배액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거나 분배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총회의 승인을 받아 음반제작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의 계산 및 분배시기) 사용료의 계산 및 분배시기는 사용료 분배규정에 의한다.

제8조(사용허락 및 분배 유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탁권리의 사용허락 및 사용료의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

1. 신탁권리의 귀속과 관련하여 수탁자에 대해 이의제기가 있을 때

2. 위탁자가 신고한 신탁권리가 수탁자의 자료와 상이할 때

3. 저작권접권에 대한 다툼으로 소송이 진행 중이며 최종 판결 선고가 확정되지 않은 때

제9조(관리수수료의 징수) ① 수탁자는 신탁권리의 관리를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사용료 중에서 관리 수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 미리 충당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한 회계연도의 관리수수료 등 수입총액이 수탁자의 업무수행경비를 초과하여 수지차익금이 발생하거나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여 수지차익금이 발생하거나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여 수지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사회회의 결의에 따라서 처리하고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신탁회계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신탁계약자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제10조(권리관리에 따른 비용의 징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해당 위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1. 신탁권리에 대한 과세
2. 신탁권리의 등록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

제11조 (위탁자의 신고의무) ① 위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수탁자에게 신고하고 소정의 수속을 밟아야 한다.

1. 새로운 음반을 제작하거나 권리를 승계 또는 양수한 경우
2. 신탁권리의 처분을 제한하는 사유가 발생 또는 소멸한 경우
3. 신탁을 증명하는 문서를 분실한 경우
4. 법인명칭 등 명칭 및 주소나 송금처가 변경된 경우
5. 위탁자의 대표자, 대리 또는 대리 수령자가 변경된 경우
6. 기타 신탁권리의 행사에 지장이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 1항 각 호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위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2조 (신탁권리의 양도 및 질권설정) 위탁자는 수탁자의 동의 없이 신탁 권리나 사용료의 분배청구권을 양도하거나 질권 설정을 할 수 없으며, 수익자는 수익권을 양도·승계 및 담보의 제공 등 모든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다.

제13조 (계약의 승계) ① 위탁자인 개인이 사망하거나 위탁자인 법인이 합병된 경우 상속인 또는 해당 신탁권리를 승계하는 법인은 신탁계약에 의거하여 위탁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속인 또는 승계하는 법인은 위탁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사실에 대하여 지체없이 수탁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의 상속인이 복수인 경우에는 그 중에 1명을 대표자로 선임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위탁자에 대한 통지) 위탁자에 대한 제반사항의 통보는 위탁자가 신고한 주소지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외국에 거주할 경우에는 국내의 대리인 주소지로 한다.

제15조(계약기간 및 갱신) ① 신탁계약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② 위탁자가 계약기간 만료 6월전까지 서면에 의해 수탁자에게 갱신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은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하는 것으로 한다.

제16조(계약의 해지 등) ① 수탁자는 권리보호 기간의 만료 등으로 위탁자의 권리 전부가 소멸되었을 경우 신탁계약을 해지한다.

②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해산한 경우
2. 위탁자가 본 약관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위탁자가 타인의 저작권접권을 허위 신탁하여 사용료를 수령한 경우

③ 위탁자는 수탁자가 저작권 신탁관리에 따른 제반 의무를 다하지 못하거나 위탁자의 개인적인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계약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④ 본 계약에 대한 해지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해지의 효력은 그 계약 상대방이 해지통보를 받은 후 6개월이 경과한 이후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권리보호 기간의 만료로 해지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수탁자는 위탁자와의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일, 위탁자명, 위탁된 저작권접물의 앨범명곡명 등의 정보를 해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탁자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⑥ 위탁자는 신탁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후 신속하게 수탁자에게 신탁증서를 반환하고, 수탁자는 6개월 이내에 사용료 미지급분 및 이에 대한 결산서를 위탁자에게 지급 및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소권) 수탁자는 신탁권리 및 사용료 등의 관리와 관련하여 침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침해자에 대한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18조(약관 변경 통지) ① 수탁자는 본 약관이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의 약관 변경에 이의가 있는 위탁자는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동안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변경 약관에 의해 신탁계약이 변경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해지권을 행사할 경우 해지의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는 종전의 약관을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③ 사용료 분배 규정이 변경 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수탁자의 통지) 수탁자의 위탁자에 대한 송금 기타 통고는 위탁자가 신청한 주소로 한다. 만약 위탁자가 외국에 거주할 경우에는 국내의 대리 수령자의 주소로 한다.

제20조(배상책임) ① 위탁자와 수탁자는 본 약관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 1항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를 신탁권리의 관리를 통하여 얻은 사용료 중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다.

제21조(약관의 개정) 본 약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공고) 본 약관에 규정한 공고는 수탁자가 발행하는 회보 또는 수탁자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공지사항란에 게재하여 시행한다.

제23조(약관세칙의 제정) 본 약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2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본 약관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신탁법 및 민법의 규정을 준수한다.

제25조(재판관할) 본 약관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에 관한 소송의 재판관할은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합의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부 칙

본 약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승인을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8. 17)

1. 본 약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승인을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제2조 제1항 제2호의 적용은 제2조 제1항 및 제18조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승인일 이후 별도의 개별 동의 절차를 완료한 회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 칙 (2012. 4. 27.)

1. 본 약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승인을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제2조의 적용은 제18조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일 이후 별도의 개별통지절차를 완료하거나, 새롭게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 칙 (2013. 5. 9.)

제1조(시행일) 본 약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승인을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4. 21.)

제1조(시행일) 본 약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승인을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05 이용계약약관

2003년 03월 17일 제정	2012년 04월 27일 개정
2003년 10월 04일 개정	2013년 05월 09일 개정
2005년 06월 27일 개정	2016년 01월 20일 개정
2007년 06월 08일 개정	2023년 06월 26일 개정
2009년 06월 08일 개정	

제1조(목적) 본 약관은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와 현행 저작권법에 따른 복제·전송 등 협회가 신탁받아 관리하는 음반제작자의 권리(이하 ‘신탁관리’라 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간에 준수해야 할 사용방법 및 사용허락 조건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의 체결) ① 사용자는 협회와 문서로서 음원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회”는 본 조 제2항에 열거된 경우외에 정당한 이유없이 저작물 등의 사용승인을 거절해서는 아니된다.

② 다만, “협회”는 “사용자”의 음원저작물 이용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승인을 거절할 수 있다.

1. 법령 및 협회의 각 규정에 반하여 사용하는 경우
2. 이용자가 음원저작물의 이용에 있어 협회 이외의 권리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독점적 또는 이와 유사한 이용관계를 맺음으로서 타 이용자와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경우
3. 협회에 사용료를 체납중인 자 또는 그가 대표자로 있는 법인이 사용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4. 기타 상 관례에 비추어 거래의 질서를 해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제3조(사용 허락) ① 사용허락의 조건은 협회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정하며 사용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는 사용료징수규정에 의한다.

② 사용자는 협회가 사용허락한 범위내에서 신탁관리 음원을 사용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신탁관리 음원의 사용권리를 제3자에게 재사용토록 양도 등을 할 수 없다.

③ 협회에서 사용허락하는 저작물은 협회에서 관리하는 음악저작물 중 사용자가 신청하여 허락해준 저작물에 한한다.

제4조(제명 등의 표시) 사용자는 음악저작물을 사용할 경우 음반제작자명, 해당저작물의 제명, 앨범명, 작사자, 작곡자 등의 본 협회가 요구하는 제명 등을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5조(사업의 변경 통보) 사용자는 사용계약서에 명시된 사용방법, 사용지역 등에 변경이 생길 경우 협회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제6조(계약의 수정 및 변경) ① 협회와 사용자는 현행 저작권법령 및 협회의 사용료 징수규정 등 관계 규정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사항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계약을 수정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② 협회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을 변경하여 사용료의 증감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협회는 사용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사용료의 증감부분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계약 체결당시에 상호 예상하지 못한 사안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본 계약서상의 일부조항을 변경하거나 별도의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상대방과 협의하여 본 계약을 수정 및 변경 할 수 있다.

제7조(신탁계약 해지 저작물의 통보) 협회는 위탁관리하는 저작물에 대한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지된 저작물의 내역을 사업자에게 서면 또는 이메일로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확인이 가능하도록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사용자는 음악저작물 사용료로 협회의 저작물사용료 징수 규정에서 정한 요율 또는 금액을 납부한다. 다만, 협회의 저작물사용료 징수규정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협회와 사용자 간에 합의하여 정한 요율 또는 금액으로 한다.

제9조(미사용료의 반환) 사용자가 사용허락을 받았으나 부득이 이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사용하지 못하게 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관련 자료의 제공 등) ① 사용자는 협회가 관리하는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저작물의 이용보고서를 협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매출액 산정 등을 위해 협회가 요구하는 회계자료, 회원수 등을 월별로 작성하여 서비스 제공 후 2개월 이내에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는 협회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협회의 음악저작물 사용내역을 자동송신 할 수 있도록 협회의 통합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의 사정에 의해 자동송신이 어려울 경우 협회와 협의하여 전자파일로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사용실태의 확인) ① 협회는 사용자의 관리저작물의 사용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사항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실사 또는 서면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협회가 전항에 명시된 실사를 하거나 서면자료를 요청할 경우, 사용자에게 실사 또는 서면자료를 청한 날로부터 10일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필요한 제반 협력을 다한다.

제12조(연체가산금) ① 협회는 사용자가 약정된 기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최초 1개월은 납부하여야 할 사용료의 3%를 가산하여 부과하며, 그 다음 달부터 납부 시까지는 매일 0.022%씩 증가산하여 연체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단, 증가산 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②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연체가산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약정된 기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사용료 납부 기한 연장을 사전 요청한 경우

제13조(계약의 철회) 협회 또는 사용자는 본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가 서비스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제14조(계약의 해지) ① 협회 또는 사용자는 그 상대방이 본 규정 및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불이행 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이 통보를 받은 때에 해지된 것으로 본다.

③ 사용자는 협회로부터 계약의 해지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협회의 음원저작물 사용을 중지하여야 하며, 해지 후에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한다.

제15조(침해시 조치) ① 협회는 사용자가 사용계약의 범위를 초과하여 협회가 관리하는 신작 권리를 침해할 경우, 이용허락 기간에 관계없이 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협회는 사용자가 사용계약의 범위를 초과하는 침해행위가 재발할 시에는, 사용계약을 해지하고 향후 3년간 사용 승인을 보류한다.

제16조(보증금) 협회는 사용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채무의 담보 등을 위하여 사용계약 체결 시 10,000,000원을 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보증금 또는 보험증권을 받을 수 있다. 단, 월 평균 사용료가 10,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갱신 시 월 평균 사용료의 3개월분을 보증금(보험증권)으로 받을 수 있다.

제17조(손해배상) 협회 또는 사용자는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액과 그 손해액에 대한 10%의 위약금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제18조(재판 관할) 본 약관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에 관한 소송의 재판관할은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합의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부 칙 (2003. 3. 17.)

본 약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승인을 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10. 4.)

본 약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승인을 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6. 27.)

본 약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승인을 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6. 8.)

본 약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승인을 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6. 8.)

제1조(시행일) 본 약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을 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4. 27.)

제1조(시행일) 본 약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을 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5. 9.)

제1조(시행일) 본 약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을 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 20.)

제1조(시행일) 본 약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을 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6. 26.)

제1조(시행일) 본 약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을 한 날부터 시행한다.

03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1. 사용료 징수규정
2. 사용료 분배규정
3. 관리수수료 규정
4. 신탁계약약관
5. 이용계약약관

01 사용료 징수규정

2000년 11월 14일 제정	2016년 01월 25일 개정
2003년 10월 16일 개정	2016년 03월 28일 개정
2005년 10월 24일 개정	2016년 10월 19일 개정
2006년 08월 02일 개정	2016년 11월 14일 개정
2008년 02월 29일 개정	2017년 05월 31일 개정
2012년 03월 15일 개정	2018년 06월 20일 개정
2012년 06월 08일 개정	2019년 12월 09일 개정
2012년 12월 27일 개정	2023년 05월 09일 개정
2013년 01월 25일 개정	2023년 06월 26일 개정
2013년 03월 18일 개정	2023년 09월 15일 개정
2015년 11월 26일 개정	2024년 07월 31일 개정
2015년 12월 22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가 관리하는 가창·연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에 대한 사용료의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문서화) “연합회”가 관리하는 “실연”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연합회”와 문서로써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구분) “연합회”가 관리하는 실연의 사용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전송, 2. 복제, 3. 기타

제2장 전송 사용료

제4조 (주문형 스트리밍 서비스) ①소비자가 요청하는 음악저작물(뮤직비디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고 이용한 횟수에 비례하여 소비자에게

이용료를 부과하는 경우 또는 특정 상품(서비스)의 판매를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0.84\text{원(곡당 단가)} \times \text{이용횟수} \times \text{지분율}$$

- 비고1) 이용횟수는 사용자가 제공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하되 횟수 산정 기준 등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사용자는 그 자료(로그 파일)를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이하 이 장에서 같다)
- 비고2) 지분율은 당해 음악저작물에 대한 전체 실연자의 권리지분 중 연합회가 신탁관리하는 실연자의 권리지분의 비율로서, 구체적 기준은 사용료분배규정 제7조제3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한다(이하 이 규정에서 같다).
- 비고3) 특정 상품(서비스)에는 제2항의 월정액 스트리밍 상품, 제3항의 오프라인 재생 스트리밍 상품이 포함되지 않는다.

②제1항과 달리 월정액에 음악저작물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이하 “월정액 스트리밍 상품”이라 한다)의 사용료는 다음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0.42원(곡당 단가) × 이용횟수 × 지분율] 또는 [월정 420원(가입자당 단가) × 가입자수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2. 매출액 × 6.25% ×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 비고1) 제1호의 사용료는 사용자가 1년 단위로 선택할 수 있다.
- 비고2) 가입자란 회원제 운영의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회원을 말하며, 회원제와 비회원제의 혼합 또는 회원제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월간 서비스를 이용한 순방문자를 말한다. 단, 월간 서비스를 이용한 순방문자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는 별도로 연합회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정한다(이하 해당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에서 같다).
- 비고3) 매출액이란 사용자가 직/간접적으로 운영하는 당해 서비스 사이트의 해당 서비스로부터 취득한 이용료의 수입에 광고 및 기타의 수입을 합한 총매출액(Gross Sales)을 말하며, 판매촉진 행위 등에 따라 할인된 금액을 포함한다. 다만, 광고 및 기타의 수입은 당해 서비스 사이트에서 음악이 차지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하고 매출액이 없는 경우는 별도로 연합회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정한다(이하 해당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에서 같다).
- 비고4) 음악저작물 관리비율이란 사용자가 이용하는 음악저작물 중 “연합회”가 관리하고 있는 실연의 사용비율로서, 다음과 같은 곡별 사용비율을 모두 합하여 산정한다(이하 이 규정에서 같다).

$$\frac{\text{연합회 관리저작물 이용횟수}}{\text{음악저작물 총 이용횟수}} \times \text{지분율}$$

- 비고5)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의 사용료 정산에 있어 인앱결제 서비스와 PC WEB 등의 서비스가 동일한 경우 인앱결제 서비스의 사용료는 PC WEB 등의 서비스 가격 및 정산 산식을 적용하여 정산한다. (제4조 및 제5조에 적용된다.)
- 비고6) 본 조에 따른 사용료의 산정 방식에도 불구하고 연합회는 사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용료를 가입자단위로 나누어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료는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단,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조에 따른 사용료의 산정 방식에 따른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
 1. [(이용 가입자별 매출액 × 6.25% 또는 가입자당 단가(월정 420원) 중 많은 금액) × 이용 가입자별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의 총합산액

2. (미이용 가입자별 매출액 합계 × 6.25% 또는 가입자당 단가(월정 420원) 합계 중 많은 금액) × 이용 가입자별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의 평균치

* 제3항의 경우 가입자 단가는 월정 681.25원을 적용한다.

③제2항과 달리 월정액 스트리밍 상품에 소비자가 가입기간 동안 오프라인 상에서도 재생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단, 오프라인 재생을 위해 저장된 음원을 추출, 복제, 공유 등 다운로드와 유사한 속성을 갖지 않는 경우)의 사용료는 다음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월정 681.25원(가입자당 단가) × 가입자수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2. 매출액 × 6.25%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 사용자는 오프라인 상에서 재생된 이용횟수를 집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과 달리 광고수익을 목적으로 소비자가 음악저작물을 청취할 때 광고가 노출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음악저작물을 소비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이하 “광고수익 기반 스트리밍 상품”이라 한다)의 사용료는 제1호와 같다. 다만, 그 금액이 제2호보다 적을 경우 제2호로 한다.

1. 0.44원(곡당 단가) × 이용횟수 × 지분율

2. 매출액 × 6.25% ×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비고1) 소비자가 음악저작물을 청취할 때 광고가 노출되도록 하는 방식을 취하더라도 광고수익이 목적이 아니라 특정 상품(서비스)의 판매가 목적일 경우에는 제1항이 적용된다.

제5조(주문형 다운로드 서비스) ① 소비자가 요청하는 음악저작물을 곡당 다운로드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제1호와 같다. 다만, 그 금액이 제2호보다 적을 경우 제2호로 한다.

1. 45.5원(곡당 단가) × 다운로드횟수 × 지분율

2. 매출액 × 6.5% ×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비고1) 다운로드란 소비자가 관리하는 가상의 공간에 저장하는 것을 포함한다.

비고2) 다운로드횟수는 사용자가 제공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하되 횟수 산정 기준 등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사용자는 그 자료(로그 파일)를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이하 이 장에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음반제작자가 정한 사용료에 연동되어 이용료가 정해지는 경우의 사용료 제1항 제2호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곡 이상 30곡 미만으로 제작된 앨범단위로 판매되는 경

우(편집앨범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사용료는 다음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22.75원(곡당 단가) × 조정계수 × 다운로드횟수 × 지분율
2. 매출액 × 6.5% × 음악저작물관리비용

비고1) 연도별 조정계수는 다음과 같다.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조정계수	1.2	1.6	2.0

④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30곡 이상 다량 다운로드를 제공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다음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곡당 단가 × 조정계수 × 다운로드횟수 × 지분율
2. 매출액 × 6.5% × 음악저작물관리비용

비고1) 곡당 단가는 30곡일 경우 곡당 22.75원을 기준으로 1곡 추가할 때마다 이전 단가보다 1% 할인하고, 65곡 이상일 경우는 곡당 15.93원으로 하며, 2021년 이후의 곡당단가는 곡수에 관계없이 22.75원으로 한다.

비고2)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간 내에 이용 가능한 다량 다운로드 상품을 제공하는 경우의 곡당 단가는 해당 상품의 곡수를 월간기준 상품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비고3) 다량 다운로드 상품(원 상품)에 사용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1개월 이내에 이용할 수 있는 곡수를 추가로 제공하는 경우 곡당 단가는 원 상품의 곡당 단가를 적용한다.

비고4) 연도별 조정계수는 다음과 같다.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조정계수	1.2	1.6	2.0

⑤다운로드한 음악저작물의 사용기간을 제한(1개월 이하로 한다)하거나, 그 제한된 기간 이후에는 그 곡(제4항의 경우에는 그 상품을 말한다)에 대한 재결제시에만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의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4항을 적용하되, 곡당 단가는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해진 곡당 단가의 38%로 한다. 단, 2021년 이후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해진 곡당 단가를 따른다.

⑥제1항의 다운로드 서비스(30곡이상 다량을 묶어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와 제4조 제2항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다음의 금액으로 한다.

(제4조 제2항의 스트리밍 사용료 × 0.5) + 해당 다운로드 사용료

비고1) 단, 2021년 이후에는 제4조 제2항의 스트리밍 사용료 + 해당 다운로드 사용료

제5조의2(판매촉진 등) ①음반의 판매촉진 또는 당해 실연자 홍보 등을 위하여 이용료 없이

음악저작물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한다.

1. 사용자가 판매촉진을 위해 판매하고자 하는 곡과 동일한 곡으로 서비스를 하되, 한 곡당 재생시간이 60초 이내인 경우
2. 저작자, 실연자, 음반제작자가 전송의 방법으로 자신의 저작물이나 실연, 음반을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단, 음악상품 또는 권리자에게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서비스는 제외한다.)
 - ②권리자(신탁관리단체에 신탁한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또는 유통서비스사업자가 특정 저작물 또는 서비스 상품의 홍보나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관련 권리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 주문형 스트리밍서비스나 주문형 다운로드서비스에 무료로 음원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비용으로 곡당 1만원의 금액을 연합회에 지급하여야 한다.
 - ③권리자 또는 유통서비스사업자가 홍보나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특정 서비스 상품에 대하여 이 규정에 의한 사용료 또는 통상의 사용료를 할인한 경우에는 연합회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별도의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6조(주문형 배경음악 서비스) 개인홈페이지 등에 소비자가 요청하는 음악저작물을 배경음악 서비스로 제공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다음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곡당 12.5원 × 판매횟수 × 지분율 × 할인율
 2. 매출액 × 2.5% ×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 할인율
- 비고1) 할인율은 6개월 이하로 기간제한을 하는 경우 0.9로 한다.

제7조(방송물 재전송서비스) ①음악전문 라디오 방송물(AOD)을 재전송하는 경우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음악전문 방송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사용료의 1/2로 한다.

1. 이용료 또는 광고료가 있는 경우(다만, 이 경우 사용료가 제2호보다 적을 경우 제2호 규정을 적용한다.)

$$\text{매출액} \times 1.25\% \times \text{음악저작물 관리비율}$$

2. 이용료 및 광고료가 없는 경우

$$\text{월정 30원} \times \text{이용자수} \times \text{음악저작물 관리비율}$$

비고1) 이용자수는 당해 월에 재전송서비스를 이용한 중복되지 않은 이용자수를 말한다.

②TV방송물(VOD)을 재전송하는 경우 사용료는 제1항 규정의 1/2로 한다.

제8조(온라인게임 및 애니메이션 등) ①음악을 주로 사용하는 온라인 게임 및 애니메이션(편당) 등의 음악 서비스에 대한 사용료는 다음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매출액 × 3%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2. [연간 곡당 60,000원 × 관리곡수 × 지분율] 또는 [0.84원 × 이용횟수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1) 제2호에 따른 사용료 지급 방식은 매년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다.

비고2) 음악을 주로 사용하는 온라인 게임 및 애니메이션이란 음악에 맞춰 게임을 조작하여야 하거나 음악이 재생되지 않을 경우 게임의 진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당해 서비스에서 음악이 필수적인 요소로 사용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비고3) 매출액이란 당해 사이트에서 게임 및 애니메이션이 제공하는 음악서비스로 발생한 이용료 등의 수입에 광고, 기타의 수입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소비자가 음악 재생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유료재화를 통해 발생한 수입은 제외한다). 다만, 광고 및 기타의 수입은 당해 서비스 사이트에서 음악이 차지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비고4) 음악 사용 기간이 1년 미만인 서비스에 본조 제1항 2호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에는 연간 곡당 사용료에 1/12를 곱한 월정 사용료를 1개월 단위로 적용하여 사용료를 산정한다.

②음악을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온라인 게임 및 애니메이션(편당) 등의 음악 서비스에 대한 월정 곡당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2,500\text{원} \times \text{관리곡수} \times \text{지분율}$$

제9조(홈페이지 배경음악서비스) ①기업이 자사 홈페이지 등에 배경음악을 이용하는 경우 1곡당 사용료는 다음 기준에 해당 곡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월평균 방문자수	금액
5천명 미만	월 2,000원
5천명 이상~1만명 미만	월 5,000원
1만명 이상~2만명 미만	월 10,000원
2만명 이상	매 2만명 초과시마다 5,000원씩 추가

②독립도메인을 가진 개인 홈페이지 등에 배경음악을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는 제1항의 1/2로 한다.

제10조(전화를 이용한 서비스) 전화(이동전화, 일반전화 등)를 통해 벨소리, 통화연결음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음악을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text{매출액} \times 4.5\% \times \text{음악저작물관리비율}$$

제11조(전화서비스-Music On Hold) 일반전화기에 의해 수신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유선송신 및 자체 송신수단을 통해 음악을 서비스할 경우 1곡당 사용료는 다음의 금액에 지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001채널 이상인 경우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구분	채널수	연간사용료
1	1채널 ~ 10채널	30,000원
2	11채널 ~ 20채널	57,000원
3	21채널 ~ 30채널	81,000원
4	31채널 ~ 50채널	102,000원
5	51채널 ~ 80채널	120,000원
6	81채널 ~ 120채널	135,000원
7	121채널 ~ 200채널	150,000원
8	201채널 ~ 300채널	180,000원
9	301채널 ~ 500채널	240,000원
10	501채널 ~ 1000채널	360,000원

비고)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사용료는 1개월 단위로 해서 상기표 연간사용료를 1/12로 한 금액을 월정사용료로 할 수 있다.

제11조의 2(결합서비스의 사용료) 제5조 제5항 이외에 서비스를 결합하는 경우 사용료는 연합회 규정에서 정한 각각의 사용료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합서비스의 성격을 감안하여 연합회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11조의 3(해외 서비스) 해외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음악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서비스 제공 가격 등을 감안하여 연합회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제3장 복제 사용료

제12조 (편집음반) ① 당해 음반제작자가 아닌 제3자가 기존에 발매된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편집음반을 발매하는 경우 복제 및 배포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 곡당사용료[출고가 × 5.4%(음악사용요율) ÷ 수록곡수] × 관리곡수 × 지분율 × 제작수량 × 할인율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곡당사용료가 다음의 하한가 미만일 경우, 동 금액으로 한다.

음반구분	하한가
CASSETTE TAPE	6.9원
CD, CD-ROM	9.24원

비고1) 출고가란 음반 제작 후, 유통사에서 도·소매점으로 출고되는 가격을 말하며, 출고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가격의 60/100을 출고가로 간주한다.

* 소비자가격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의 대규모 점포 중 각기 다른 3곳의 장소에서 구입한 당해 음반의 평균가격을 말한다.

비고2) 할인율이란 제작·판매 과정에서 예상되는 반품·재고·폐기 등을 감안하여 할인하는 비율을 말하며, 제작자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비고3) 특정 상품의 판매촉진이나, 상품의 홍보 등을 목적으로 부가적으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음반에 대해서는 상기 하한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비매용 음반의 복제 및 배포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text{곡당사용료} \times \text{관리곡수} \times \text{지분율} \times \text{제작수량}$$

음반구분	하한가
CASSETTE TAPE	3.78원
CD, CD-ROM	5.04원

제13조(음반자판기) 음반자판기에 대한 1곡당 복제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text{음반판매가(정찰가격 - 부가세)} \times 3.5\% \div 1\text{매 당 수록곡 수} \times \text{판매수량} \times \text{지분율}$$

제14조(아케이드 게임기 등) ① 업소용 게임기에 대한 복제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40,000\text{원} \times \text{수록곡 수} \times \text{음악저작물관리비율}$$

② CD-ROM으로 제작되는 가정용 게임기에 대한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다만, CD-ROM

1매 1곡당 가격이 22원 50전 미만일 경우에는 동 금액으로 한다.

$$\text{출고가} \times 4.5\% \times \text{음악저작물관리비율} \times \text{제작수량} \times \text{할인율}$$

비고) 할인율이란 제작·판매 과정에서 예상되는 반품, 재고, 폐기 등을 감안하여 할인하는 비율을 말하며, 제작자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15조(뮤직비디오 등 영상물) ①뮤직비디오, 공연실황 및 이와 유사한 영상물에 음악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의 복제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 출고가 \times 3.5% \times 제작수량 \times 할인율 \times 음악저작물관리비율
2. 영상저작물 각 매체 1매 1곡당 가격은 다음의 가격에 지분율을 적용한 금액을 하한가로 한다.

매 체 구 분	하 한 가
V-CD	19.2원
V-TAPE	23.1원
DVD	27.5원

비고1) 출고가는 영상물 제작 후, 유통사에서 도·소매점으로 출고되는 가격을 말하며, 출고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가격의 60/100을 출고가로 간주한다.

* 소비자가격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 각기 다른 3곳의 장소에서 구입한 당해 영상물의 평균가격을 말한다.

비고2) 할인율이란 제작·판매 과정에서 예상되는 반품·재고·폐기 등을 감안하여 할인하는 비율을 말하며, 제작자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비고3) 특정 상품의 판매촉진이나, 상품의 홍보 등을 목적으로 부가적으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영상물에 대해서는 제2호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 이외에 다큐멘터리, 드라마, 교양, 시사, 취미, 홍보, 학습, 체육 등 음악저작물이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비디오 등의 영상저작물에 음악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의 복제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 출고가 \times 2.5% \times (음악저작물 합계사용시간 \div 총 재생시간) \times 제작수량 \times 할인율 \times 음악저작물관리비율
2. 영상저작물 각 매체 1매 1곡당 가격은 다음의 가격에 지분율을 적용한 금액을 하한가로 한다.

매 체 구 분	하 한 가
V-CD	11.5원
V-TAPE	13.7원
DVD	16.5원

비고1) 제1항의 비고1), 비고2), 비고3)을 준용한다.

비고2) 1편의 영상물(다큐멘터리 등)에 동일 곡이 전체사용시간 중에서 수회 반복 사용되었을 경우, 사용시간 2분 까지를 1곡으로 본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영상물을 비대용으로 제작하는 경우의 복제 사용료는 다음 가격에 지분율 및 제작수량을 곱하여 사용료 액을 산출한다.

매체구분	1매 1곡당 사용료	
	제①항의 경우	제②항의 경우
V-CD	10.5원	6원
V-TAPE	12.5원	7.5원
DVD	15원	9원

④방송물에 대한 시청자의 주문·판매 등으로 인하여 판매시마다 복제·배포에 대한 사용 허락을 받기가 곤란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연간 포괄사용허락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전송을 목적으로 수반되는 복제 사용료는 전송사용료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⑥포토앨범(웨딩, 커플, 회갑, 성장 동영상 등)을 제작할 경우 복제 및 배포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text{판매가} \times 1.5\% \times \text{판매수량} \times \text{음악저작물관리비용}$$

제16조(영화 등 영상물의 사용료) ①영화에 음악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의 곡당 사용료(복제, 배포, 전송 등에 대한 사용료를 포함한다)는 다음과 같다.

$$[150\text{만원} + (\text{스크린 당 곡단가} \times \text{개봉 첫날 스크린 수} \times \text{조정계수})] \times \text{지분율}$$

비고1) 스크린당 곡단가는 8,100원으로 한다.

비고2) 개봉 첫날 스크린 수는 영화진흥위원회 를 기준으로 한다. 영화상영관입장권통합전산망집계 를 기준으로 한다.

비고3) 조정계수는 한국영화 전체 매출액 중 온라인, 패키지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최근 3년간 공표된 평균 비율을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순제작비 10억 미만 영화의 경우 곡당 사용료는 2만원에 지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영화제 상영작의 경우 곡당 사용료는 1만원에 지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해당 영화가 ‘영화제 상영’ 이후 개봉한 경우 곡당 사용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금액에서

이항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 차액으로 한다.

제17조(광고) ① 상업용 광고에 음악저작물을 이용할 경우의 1곡당 복제사용료는 다음의 가격에 지분율을 적용한다.

〈단위 : 만원〉

구분	지상파TV	라디오	케이블TV(위성TV, 지상파 DMB 포함)	인터넷	극장	기타(옥외, 지하철 차량 등)
1개월 미만	75	50	50	15	15	25
3개월 미만	125	75	75	25	25	50
6개월 미만	175	125	125	35	35	62.5
9개월 미만	225	175	175	40	40	75
12개월 미만	275	225	225	50	50	85

② 12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다.

12개월 사용료 + (해당 개월 수 사용료 × 80%) × 음악저작물관리비용

③ 상업용 광고가 아닌 공익광고의 경우에는 ①항 사용료의 50%로 한다.

제4장 보 칙

제18조(기타 사용료) ① 사용료 징수규정이 없는 서비스의 경우, 연합회는 사용자와 사용요율 또는 금액을 협의하여 이용허락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용허락을 한 경우 연합회는 이용허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연합회가 제1항의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계약을 갱신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다시 이용허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용료 징수규정에 근거하여야 한다.

제18조의 2(상호협의를 등 관련 보칙) ① 연합회는 본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 주요 사용자와의 자율적 협의를 진행하고, 협의 결과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서면으로 제출한다.

② 본 규정에 따라 연합회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정할 사항과 관련하여 협의회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정에 따른다.

③본 규정의 해석 또는 서비스에 적용할 조항과 관련하여 연합회와 사용자 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해석에 따른다.

제19조(사용료 산정 관련 보칙) 이용되는 음악저작물 수가 상당하여 지분을 또는 음악저작물 관리비율을 파악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이용된 음악저작물에 연합회 관리저작물 데이터 베이스에 부여되어 있는 식별코드와 동일한 코드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사용자와 협의하여 유사 이용형태 등을 통해 집계된 지분을 또는 음악저작물 관리비율을 준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2008.05.01.)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2012.03.15.)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경과규정) ①이 개정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2012.06.08.)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제5조의 경우에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4조 및 제5조의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 개정 규정 시행 당시(2013.01.01.) 자동결제 방식의 가입자는 해당상품이 존재하고 자동결제를 유지하는 경우에 2013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2013.01.01.)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및 경과규정) ①이 개정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2항의 경우에는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4조 제2항의 서비스와 관련하여 2013년 4월 30일 이전에 자동결제 방식으로 이용하는 가입자에 대해서는 2013년 6월 30일까지 가입당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2015.11.26.)로부터 시행하되, 제18조의 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및 경과규정) ①이 개정규정은 2016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②제4조 제2항 제1호 및 제5조 제3항의 서비스와 관련하여 2016년 2월 21일 이전에 자동결제 방식으로 이용하는 가입자에 대해서는 2016년 8월 31일까지 가입당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2016.01.25.)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2016.03.28.)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2016.10.19.)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2016.11.14.)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2017.05.31.)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및 경과규정) ①이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4조 및 제5조의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 개정규정 시행(2019.01.01.) 이전 자동결제 방식의 가입자는 해당상품이 존재하고 자동결제를 유지하는 경우에 종전의 규정을 계속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2019.12.09.)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2023.05.09.)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2항 비고5)의 경우, 2022년 6월부터 2026년 5월 판매분(4년)까지만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및 경과규정) ①이 개정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2023.06.26.)로부터 시행한다.

②제18조의 경우에는 개정규정 시행 이후 이 조항에 따라 신규로 이용허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2023.09.15.)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2024.07.31.)로부터 시행한다.

02 사용료 분배규정

2000년 11월 14일 제정	2015년 01월 16일 개정
2004년 11월 26일 개정	2015년 06월 27일 개정
2008년 09월 03일 개정	2017년 02월 14일 개정
2009년 02월 16일 개정	2018년 03월 20일 개정
2009년 10월 30일 개정	2018년 05월 29일 개정
2011년 08월 16일 개정	2019년 09월 20일 개정
2012년 03월 02일 개정	2023년 06월 26일 개정
2013년 02월 26일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이하 ‘음실련’이라 한다)가 신탁 받은 실연자의 가창·연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실연(이하 “실연 등”이라 한다)에 대한 권리의 대가로 징수한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의 분배방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반”은 저작권법 제2조의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을 말한다(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3항의 ‘음원’을 포함한다)
2. “실연자”는 저작권법 제69조 및 제74조에 따라 실연자의 복제·전송사용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청구권을 상속, 양도 또는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
3. “주실연”은 가창 또는 연주 실연 중에서 그 명의로 공표되는 등 다른 실연보다 현저히 중요한 실연을 말하며, 피쳐링(With, Duet, Main Vocal등의 표기방법으로 곡명에 해당 실연자의 성명이 함께 표기된 경우 등)과 MR, 연주곡 등으로 표기된 곡의 지휘 실연을 제외한 모든 실연을 포함한다.
4. “부실연”은 가창 또는 연주 실연 중에서 “주실연”을 제외한 실연을 말하며, 코러스(백 그라운드 보컬)와 12인 미만으로 구성된 가창 또는 연주의 지휘실연을 포함한다.
5. “지휘실연”은 12인 이상으로 구성된 가창 또는 연주를 지휘한 실연을 말한다.
6. “사용자료”는 사업자가 복제·전송에 사용한 음반의 사용내역(실연정보, 사용량 등)을 말한다.

제3조(분배대상자) 분배대상자는 “음실련”에 권리를 신탁한 자 중 “음실련” 실연정보DB에

등록된 자료 한다.

- 제4조(분배자료)** ①“음실련”은 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사용자료”에 따라 사용료를 분배한다.
 ②“사용자료”의 확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제출된 자료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사한 형태의 사업자의 “사용자료”를 분배자료로 한다.
 ③전항의 분배자료를 활용하기 부적합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분배자료로 활용할 자료를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결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분배시기 및 분배대상 사용료) “음실련”이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사용료의 분배시기 및 분배대상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분배시기	분배대상사용료
2월말	전년도 10~12월까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사용료
5월말	1~3월까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사용료
8월말	4~6월까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사용료
11월말	7~9월까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사용료

제6조(분배조정) 사용료가 과오 분배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해당 권리자에게 통보 후 과오 분배된 금액을 직접 환수하거나 해당 권리자가 분배받을 사용료에서 가감하여 분배할 수 있다.

제7조(분배대상곡) 사용료의 분배대상곡은 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사용자료 중 제3조 분배 대상자가 실연에 참여한 곡으로 한다.

제8조(분배금산정) ①총량제 징수에 의한 분배대상자의 분배금은 분배대상자의 곡별 분배금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분배대상자의 곡별 분배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text{사용료 징수시 반영된 곡단가} \times \text{해당 곡별 사용량} \times \text{부문별 분배율} \times \text{개인별 분배율}$$

②관리비용을 적용해 징수한 사용료의 분배금은 분배대상자의 곡별 분배금의 합에 분배

대상자의 분배율에 의한 분배금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1. 분배대상자의 곡별 분배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frac{\text{해당분기사용료총액}}{\text{해당분기분배대상곡총량}} \times \text{해당 곡별 사용량} \times \text{부문별 분배율} \times \text{개인별 분배율}$$

비고 1) 해당 분기 사용료 총액은 해당 사업자로부터 해당 분기에 해당 서비스별로 징수한 사용료 총액을 말한다.
비고 2) 해당 분기 분배대상곡 총량은 해당 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사용자료” 등의 해당분기 해당 서비스별 분배대상곡 총량을 말한다.

2. 분배대상자의 분배율에 의한 분배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left(\text{부문별 분배금 총액} - \text{부문별 전체 분배대상자의 곡별 분배금의 합} \right) \times \frac{\text{부문별 해당 분배대상자의 곡별 분배금의 합}}{\text{부문별 전체 분배대상자의 곡별 분배금의 합}}$$

③부문별 분배율은 주실연, 부실연, 지휘실연의 분배율을 말하며 다음과 같다.

부문	주실연	부실연	지휘실연	비고
주실연만 있는 경우	1	-	-	
주실연과 부실연이 공동실연한 경우	0.6	0.4	-	
주실연과 부실연, 지휘실연이 공동실연한 경우	0.54	0.36	0.1	
주실연, 지휘실연이 공동실연한 경우	0.6	-	0.4	

④개인별 분배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공동실연자간에 별도로 정한 분배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에 의한다.

$$\begin{aligned} \text{단독실연인 경우} &= 1 \\ \text{공동실연인 경우} &= 1/n \end{aligned}$$

비고) 밴드명으로 공표된 음반의 경우 참여한 모든 실연의 분배율은 동일한 것으로 본다.

⑤수인(數人)의 실연자가 공동실연 하였으나 전체 또는 부문별 실연자 수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전년도 분배된 곡의 전체 또는 부문별 평균 실연자 수 등을 감안하여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다.

⑥동일한 실연자가 동일한 곡에 수개의 실연을 한 경우 각각의 실연에 대해 분배금을 산정한다.

⑦산정된 분배대상자의 분배금은 관리수수료 및 유보금을 제외한 금액을 분배한다.

제9조(분배금) 음실련이 신탁자에게 분배하는 분배금은 사업자로부터 징수한 총 사용료에서 관리수수료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관리수수료를 공제하고 전기이월분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0조(예금이자의 취급) 사용료의 수납에서 분배에 이르기까지의 예금이자는 회원복지 관련 비용으로 사용한다.

제11조(분배절차) ① “음실련”은 제5조의 분배시기에 따라 분배한다.

② “음실련”은 권리자에게 분배할 금액이 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분배하지 아니하고 천원 미만으로 분배하지 아니한 누적 금액이 천원을 초과한 권리자에 대해서는 년 1회 분배를 실시한다.

③ “음실련”은 사용료를 분배할 때 해당 권리자에게 분배상세내역서를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단, 해당 권리자가 음실련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분배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분배상세내역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제12조(분배보류) “음실련”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용료를 분배하지 않고 보류한다.

1. 해당 권리자가 해당 사용료의 권리자인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저작권접권의 침해 또는 귀속, 금액 등에 대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이의신청을 포함한다)
3. 사용료 관련 “사용내역”이 제출되지 않았거나 불명확하여 적절한 분배를 할 수 없는 경우

제13조(분배에 대한 이의신청) ① 사용료 분배에 이의가 있는 실연자는 분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서식 1의 ‘사용료 분배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음실련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음실련은 제1항의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 그 결과를 신청자 및 관련 권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중복 등으로 인해 해당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유보금) ① 사용료 분배 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해당분기 징수금액의 5%를 분배하지 아니하고 유보한다.

- ②전항의 유보금은 분배여건을 고려하여 이사회 의결로 5% 이내로 정할 수 있다.
- ③이의신청자에 대한 분배금과 사업자의 정산오류금은 유보금에서 지급한다.
- ④사용료 분배 후 3년이 경과한 유보금 잔액은 해당 사용내역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차기 사용료 분배 시 합산하여 분배한다.

제15조(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개정) 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2008.09.03.)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분배시기가 연 1회에서 연 4회 분배로 변경됨에 따라 '08. 1/4분기와 2/4분기 사용료의 경우 3/4분기 사용료에 합산하여 분배시기에 따라 분배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2009.10.30.)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2011.08.16.)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제9조에 따른 사용료의 이자는 2012.01.01. 발생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2012.03.02.)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2013.02.26.)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2015.01.16.)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2015.06.27.)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2017.02.14.)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2018.03.20.)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제9조에 따른 사용료의 이자는 2018년 1월1일 발생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2018.05.29.)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2019.09.20.)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배금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제7조 제3항(부문별 분배율)의 개정사항은 2020년 1월분 사용료의 분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2023.06.26.)로부터 시행한다.

03 관리수수료 규정

2000년 11월 14일 제정	2008년 07월 01일 개정
2003년 06월 27일 개정	2011년 03월 15일 개정
2004년 11월 09일 개정	2016년 01월 28일 개정
2005년 07월 11일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협회(이하 '음실련'이라 한다)의 저작권접권 신탁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수료(이하 '관리수수료'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수수료) 음실련의 관리수수료율은 이용료의 20% 범위 내에서 매년 이사회 의결로 정하여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상호관리계약, 해외유통계약, 기타 특약 등에 의거 외국에서 징수하여 국내에 분배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 동 금액의 5% 범위 내에서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관리수수료의 공제시기) 관리수수료는 사용료 분배 시 공제한다. 다만, 경영여건 등에 따라 관리수수료의 50% 범위 내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리수수료를 미리 공제할 수 있다.

제4조(개정) 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2011.03.15.)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2016.01.28.)로부터 시행한다.

2000년 11월 14일 제정	2015년 10월 21일 개정
2005년 06월 27일 개정	2017년 05월 18일 개정
2008년 11월 17일 개정	2018년 05월 17일 개정
2010년 03월 24일 개정	2023년 05월 02일 개정
2015년 06월 27일 개정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실연자의 권리 보호와 실연의 원활한 이용 허락을 위하여 실연자 또는 실연자의 권리를 승계한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이하 '수탁자'라 한다) 사이에 실연자의 권리 신탁에 관한 계약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리의 신탁) ① 위탁자는 현재 가지고 있는 권리(신탁계약일 이전에 당해 권리로 인해 발생한 미수채권을 포함한다)와 장차 가지게 될 권리(이하 '신탁목적권리'라 한다)를 신탁계약약관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수탁자는 위탁자를 위하여 이를 관리하고 이로 인하여 얻은 사용료 등을 위탁자에게 분배한다. 단, 방송에서 실연한 경우 전체 프로그램 중 음악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각 회차에서의 음악실연만을 신탁목적권리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권리 중 별도로 지정한 실연에 대한 제5조 각호의 권리를 위탁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이 약관에 의거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신탁증서를 교부한다.

④ 위탁자는 수탁자의 동의를 얻어 제3자를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위탁자를 대리하여 위탁자의 신탁계약 체결일 이전 발생한 미수 채권 양도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제3조(권리의 신탁방법) 위탁자는 신탁목적권리를 수탁자에게 직접 신탁하여야 한다.

제4조(권리의 보증)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신탁목적권리가 본인이 직접 실연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 또는 실연자로부터 적법하게 그 권리를 승계하였다는 사실을 보증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가 보증한 권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위탁자는 이를 지체 없이 제출한다.

제5조(권리의 관리 범위) 수탁자는 신탁목적권리를 다음의 범위 내에서 관리한다.

1. 실연자의 복제권
2. 실연자의 대여권
3. 실연자의 방송권
4. 실연자의 전송권
5. 기타 저작권법상의 관리범위

제6조(업무 관할 지역) 수탁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다음의 지역에서 신탁목적권리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1. 대한민국
2. 외국

제7조(외국지역에 대한 관리) 수탁자는 외국 지역에서 신탁목적권리를 관리하기 위하여 외국 관리단체 등 외국에서의 수탁자 권리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당사자에 재위탁 등을 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의 관리 방법) 수탁자는 정관과 이 약관을 준수하고 사용료 징수 및 분배규정 등 관련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관리한다.

제9조(사용료의 징수와 분배) ① 수탁자는 그 업무를 행하는 지역에서 실연의 이용을 허락하고 사용료징수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료분배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탁자에게 분배한다.

③ 수탁자는 사용료 분배공고 후 10년이 경과하였으나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분배가 불가능한 경우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전체실연자의 권리증진과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1. 분배대상자의 10년간 누적 분배금이 1만원 미만인 경우

2. 분배대상자를 알 수 없거나 그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
3. 분배대상자가 분배금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10조(사용료의 계산방법 및 분배시기) 사용료의 계산방법과 분배시기 등은 사용료분배규정에서 정한다.

제11조(이용허락 및 사용료 분배 유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실연의 이용허락 및 사용료의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

1. 신탁목적권리의 귀속과 관련하여 민·형사상의 다툼이 있을 때
2. 위탁자가 신고한 신탁목적권리가 수탁자의 자료와 상이할 때

제12조(관리 수수료의 징수) ① 수탁자는 신탁목적권리의 관리를 위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② 수탁자는 사용료 중에서 관리 수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 미리 충당할 수 있다.

제13조(권리 관리에 따른 비용의 징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해당 위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1. 수탁자가 위탁자를 대리하여 관할 관청에 저작권접권을 등록할 경우 그 수수료
2. 신탁목적권리에 대한 과세
3. 신탁목적권리의 귀속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송비용

제14조(위탁자의 신고 의무) ① 위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수탁자에게 신고하고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1. 실연을 유형물에 고정된 경우
2. 신탁목적권리의 처분을 제한하는 사유가 발생 또는 소멸한 경우
3. 신탁증서를 분실한 경우
4. 위탁자의 대표자, 대리인 또는 대리 수령자가 변경되는 경우
5. 성명, 예명, 수익자, 송금처 및 주소가 변경된 경우

- ② 위탁자는 신탁 기간 중에 신탁목적권리의 행사에 지장이 있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미리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위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5조(신탁목적권리의 양도 및 질권설정 금지) 위탁자는 수탁자의 동의 없이 신탁목적권리를 양도하거나 질권설정을 할 수 없다.

제16조(신탁계약의 승계) ① 위탁자인 개인이 사망하거나 위탁자인 법인이 합병된 경우 상속인 또는 해당 신탁목적권리를 승계하는 법인은 신탁계약에 의거하여 위탁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속인 또는 승계하는 법인은 위탁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사실을 지체 없이 수탁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상속인이 복수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1명을 대표자로 선임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위탁자에 대한 통지) 수탁자는 위탁자에 대하여 송금, 기타 필요한 사항의 통지는 위탁자가 신고한 주소지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국내의 대리인 주소지로 한다.

제18조(신탁계약 기간 및 자동갱신) 신탁계약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위탁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한 5년 단위로 그 기간이 자동 연장된다.

제19조(신탁계약의 해지 등) ① 수탁자는 보호기간의 만료 등으로 위탁자의 권리 전부가 소멸되었을 경우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신탁계약 기간 내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신탁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단, 신탁계약해지 이전에 행하여진 실연의 이용허락 등에 대하여는 해지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20조(소권) ① 수탁자는 신탁목적권리 및 사용료 등의 관리와 관련하여 이용자로부터 위탁자의 권리를 부당히 이용하여 침해가 있을 경우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제1항의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 하였을 시는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위탁자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변경 통지) ① 수탁자는 이 약관 및 사용료 분배규정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통지하는 한편 수탁자의 회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약관 변경에 이의가 있는 위탁자는 공고일로부터 3월 이내에 서면으로 신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위탁자가 이 기간 동안 해지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 변경 사항을 승낙한 것으로 본다.

제22조(계약위반에 대한 배상책임) ① 위탁자와 수탁자는 이 약관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를 신탁목적권리의 관리를 통하여 얻은 사용료 중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다.

제23조(신탁계약약관의 개정) 이 약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약관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신탁법 및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재판관할) 이 약관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수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약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2015.10.21.)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2017.05.18.)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2018.07.01.)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2023.05.02.)로부터 시행한다.

05 이용계약약관

2000년 11월 14일 제정	2012년 03월 29일 개정
2003년 10월 04일 개정	2013년 01월 21일 개정
2008년 09월 03일 개정	2016년 09월 20일 개정
2011년 03월 15일 개정	2023년 06월 26일 개정
2011년 08월 16일 개정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협회(이하 ‘음실련’이라 한다)와 음실련에서 관리하고 있는 음악저작물(이하 ‘관리저작물’이라 한다)을 복제·전송 등 현행 저작권 관련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방법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간에 준수해야 할 음악저작물의 이용 방법 및 사용허락조건 등 저작물 이용계약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방식) ①음실련이 관리하는 신탁목적권리가 미치는 실연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음실련과 문서(저작권라이선스관리시스템에 의한 전자계약을 포함한다.)로서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음실련은 본 조 제2항에 열거된 경우 외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작물 등의 사용승인을 거절해서는 아니 된다.

②다만, 음실련은 이용자의 신탁목적권리가 미치는 실연의 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승인을 거절할 수 있다.

1. 법령 및 음실련의 각 규정에 반하여 사용하는 경우
2. 이용자가 신탁목적권리가 미치는 실연의 이용에 있어 음실련 이외의 권리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독점적 또는 이와 유사한 이용관계를 맺음으로서 타 이용자와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경우
3. 음실련에 사용료를 체납중인 자 또는 그가 대표자로 있는 법인이 사용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4. 기타 상관례에 비추어 거래의 질서를 해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권리’라 함은 음실련이 관리하는 실연자의 신탁목적권리로써, 현행 저작권법상의 복제권, 전송권 등의 권리를 말한다.

제4조(제명 등의 표시) 이용자는 음악저작물을 사용할 경우 해당저작물의 제명, 실연자명(가창, 연주 등), 앨범명, 작사자, 작곡자 등의 음실련이 요구하는 제명 등을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저작인격권 침해의 책임) 이용자는 관리저작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실연자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실연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져야 한다.

제6조(이용허락 및 사용료) ①이용허락의 조건은 음실련과 이용자가 협의하여 정하며 사용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승인 받은 사용료징수규정에 의한다.

②음실련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을 변경하여 사용료의 증감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음실련은 이용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이용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7조(사업의 변경 통보) 이용자는 이용방법, 이용지역 등에 변경이 생길 경우 변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음실련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관련자료의 통보) ①이용자는 전송 사용료 산정 및 분배를 위해 음실련에 제출해야 하는 음악저작물 사용내역, 매출액, 회원수를 월별로 작성하여 서비스 제공 후 3개월 이내에 전자적 방법 및 문서로 음실련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이용자는 음실련과 사전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음실련은 본 조 제1항의 데이터 자료 추출을 위한 기술적 장비 및 시스템을 이용자의 음악저작물 이용기에 설치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③이용자가 음악저작물을 복제하여 배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실련의 사용 허락을 통해 제작한 제작물의 견본 2장을 출고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견본 제출이 불가능 시에는 해당 제작물이 확인되는 URL 주소를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실태의 확인) ①음실련은 이용자의 관리저작물의 사용실태 등 저작권 관리업무상 필요사항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실사 또는 서면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음실련은 전항에 명시된 실사를 하거나 서면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용자에게 실사 또는 자료 요청 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용자는 필요한 제반협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10조(연체가산금) ①음실련은 이용자가 약정된 기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최초 1개월은 납부하여야 할 사용료의 3%를 가산하여 부과하며, 그 다음 달부터 납부 시까지는 매일 0.022%씩 증가산하여 연체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음실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연체가산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약정된 기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사용료 납부 기한 연장을 사전 요청한 경우

제11조(침해대응) ①음실련은 이용자의 침해행위 발견 시 해당 서비스에 대한 즉각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②음실련은 이용자가 본 조 제2항의 서비스 중지 요청을 거부하거나 침해행위를 지속할 시 사용계약을 해지하고, 향후 2년간 사용 승인을 보류할 수 있다.

제12조(계약철회) 음실련과 이용자는 본 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가 서비스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제13조(계약의 수정 및 변경) ①음실련과 이용자는 현행 저작권법령 및 음실련의 사용료징수 규정 등 관계 규정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사항에 따라 계약을 수정 및 변경할 수 있다.

②계약 체결당시에 상호 예상하지 못한 사안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본 계약서상의 일부조항을 변경하거나 별도의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상대방과 합의하여 본 계약을 수정 및 변경할 수 있다.

③이용자가 사용허락을 받았으나 부득이 이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제14조(계약의 해지) ①음실련 또는 이용자는 그 상대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불이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이 통보를 받은 때에 해지된 것으로 본다.

③이용자는 음실련으로부터 계약의 해지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음실련의 실연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하며, 해지 후에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한다.

제15조(신탁계약 해지자 공고) 음실련은 신탁계약을 해지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음실련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이용계약을 체결한 업체에 위 사실을 전자메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손해배상) 음실련과 이용자는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액과 그 손해액에 대한 10%의 위약금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제17조(재판관할) 이 약관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합의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약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2011.03.15.)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2011.08.16.)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2012.03.29.)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2013.01.21.)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2016.09.20.)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2023.06.26.)로부터 시행한다.

04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

1. 사용료 징수규정
2. 사용료 분배규정
3. 관리수수료 규정
4. 신탁계약약관
5. 이용계약약관

01 사용료 징수규정

2014년 09월 12일 제정	2021년 01월 05일 개정
2015년 12월 22일 개정	2023년 05월 09일 개정
2016년 01월 25일 개정	2023년 06월 26일 개정
2016년 03월 28일 개정	2023년 09월 15일 개정
2016년 10월 19일 개정	2024년 07월 31일 개정
2018년 03월 26일 개정	2025년 03월 13일 개정
2018년 06월 20일 개정	2025년 05월 07일 개정
2019년 02월 25일 개정	2025년 06월 24일 개정
2019년 12월 06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와 협회에서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이하 “관리저작물”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 간의 관리저작물 사용에 따른 공정한 사용료 산정 및 징수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의 체결] 본 협회의 관리저작물을 복제, 배포, 공연, 공중송신(전송, 방송, 디지털 음성송신), 대여 등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협회와 문서로써 저작권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조 [이용계약약관 등과의 관계] 본 규정에 따른 음악저작권 이용계약은 협회가 정한 이용계약약관 등에 의한다.

제4조 [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악저작물 -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음으로 표현한 창작물로서 가사 및 악곡을 말한다.
2. 음악저작물관리비율 - 이용자가 이용하는 총 음악저작물 중 본 협회의 관리저작물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산정한다. 다만, 각 이용형태를 감안하여 구체적인 이용횟수를 파악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유사 이용형태 등을 통해 집계된 수치를 준용할 수 있다.

가. 공연, 방송, 전송

$$\frac{\text{관리저작물 총 이용횟수}}{\text{저작물 총 이용횟수}} \times \text{지분율}$$

나. 복제·배포

$$\frac{\text{관리곡수}}{\text{총 수록곡수}} \times \text{지분율}$$

비고1) 지분율은 협회의 각 관리저작물에 따른 신탁회원의 권리비율로서 구체적 기준은 협회가 제공한다.

제5조 [이용구분] 협회의 관리저작물의 이용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연
2. 방송
3. 전송
4. 웹캐스팅
5. 복제 및 배포
6. 대여 및 기타

제 2 장 공연 사용료

제6조 [연주회 등] ① 연주회 등에서 입장료 등 매출액이 발생하는 공연 1회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무료공연의 사용료는 입장료를 2,000원으로 간주하고 좌석수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매출액으로 하여 아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1. 콘서트, 디너쇼, 연주회 등 음악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연

$$\text{매출액} \times 3\%(\text{음악사용료율}) \times \text{음악저작물관리비율}$$

2. 악극, 뮤지컬, 오페라, 발레 등 연극적 요소와 결합한 공연

$$\text{매출액} \times 2\%(\text{음악사용료율}) \times \text{음악저작물관리비율}$$

3. 패션쇼, 서커스, 무용회, 아이스스케이팅쇼 등 음악을 부수적으로 사용하는 공연

$$\text{매출액} \times 1\%(\text{음악사용료율}) \times \text{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1) 매출액이란 총 입장료 수입에서 부가가치세 및 입장료 판매 대행수수료는 공제하고 협찬 및 기부금 등은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비고2) 입장료가 5,000원 미만이거나 초대권의 경우에는 1매당 5천원으로 간주하여 입장료 수입을 산정하되, 초대권 수는 전체 좌석수의 20% 이내만 인정한다. 단, 입장료 금액이 표시되어 있는 초대권의 경우에는 입장료 액면가의 80%를 입장료 수입으로 산정하되 협찬금 등을 받은 기업 등에게 초대권을 배부한 경우의 초대권은 매출액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비고3) 디너쇼에 있어서의 입장료는 당해 공연 시 제공되는 음식료와 관련하여 총 입장료의 60%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와 관련하여 공연장의 좌석이 기존 좌석과 별도의 공간으로 혼재되어 있거나, 좌석이 없이 별도의 공간만이 존재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공연장의 좌석수는 다음 각 호의 계산방식에 의거 산출한다.

1. 기존 좌석과 별도의 공간이 혼재된 경우 공연장 좌석수

$$\text{기존 좌석수} + [(\text{별도 공간의 총면적} - \text{무대설치 면적}) \div 1\text{m}^2]$$

2. 기존 좌석이 없이 별도의 공간만 존재하는 경우 공연장 좌석수

$$(\text{공연장 총면적} - \text{무대설치 면적}) \div 1\text{m}^2$$

③ 공연종료 후 2주 이내에 이용자가 사용료 산출에 필요한 입장객수 및 입장료 수입, 사용음악저작물 목록(공연실황의 녹음·녹화내용 또는 사용 곡명이 표시된 팸플릿 등 자료 포함)등 제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연장의 전체 좌석수를 적용하여 매출액을 산정한다.

④ 당해 공연장 또는 공연기획사에서 동 공연에 대한 연간 사용계약을 원하는 경우에는 음악사용량과 공연 횟수를 감안하여 연간 사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이용자는 전년도 공연사용료를 납부한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고, 협회는 연간 사용료를 20% 감액한다.

⑤ 회원 자신이 주최하는 무대공연에서 자신의 저작물을 직접 실연하는 경우 공연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6조의2 [온라인 공연] ① 온라인으로 제6조 제1항 각호의 연주회 등을 하는 경우 1회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이하 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6조를 준용한다).

1. 매출이 있는 공연 : 제6조 제1항 각호의 산식을 적용한다.

2. 매출이 없는 무료공연

$$\text{제6조 제1항 1호} : \text{이용자 수} \times 60\text{원} \times \text{음악저작물 관리비율}$$

제6조 제1항 2호 : 이용자 수 × 40원 ×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제6조 제1항 3호 : 이용자 수 × 20원 ×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비고1) 온라인 공연이란 제6조 제1항 각호의 연주회 등을 온라인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해당 공연이용자를 대상으로 1회에 한하여 재방송[리스트리밍], 지연송출[딜레이스트리밍] 등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징수규정 제3장 방송 사용료, 제4장 전송 사용료, 제5장 웹캐스팅의 적용을 받는 서비스는 제외한다.

비고2) 이용자 수란 중복되지 않은 온라인 공연을 이용한 자의 수를 말하며(온라인 공연의 특성을 감안하여 1인의 멀티뷰는 1인으로 본다.), 이용자 수를 파악하기 어려운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비고3) 제6조를 준용하는 경우 이용자 수는 제6조의 좌석수로 본다.

② 제1항과 제6조 제1항 각호의 연주회 등이 혼합(결합)된 공연의 경우는 각각의 사용료를 합산한 금액으로 정산한다. 다만, 각각의 이용료(입장료 등)를 구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 매출액과 총 이용자 수로 사용료를 정산한다.

제7조 [영업장] ① 나이트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및 극장식 식당에서의 공연사용료는 다음 기준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등급	영업허가면적	월정액(원)	비 고
1	66㎡ 미만	31,000	농어촌 지역의 읍·면 단위에서는 1등급씩 하향 적용한다. (1등급 제외)
2	66㎡ 이상 99㎡ 미만	40,000	
3	99㎡ 이상 132㎡ 미만	49,000	
4	132㎡ 이상 165㎡ 미만	58,000	
5	165㎡ 이상 198㎡ 미만	68,000	
	198㎡ 이상 매 33㎡ 초과시 마다	9,000원씩 추가 최고 287,000원	

② 단란주점에서의 공연사용료는 다음 기준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등급	영업허가면적	월정액(원)	비 고
1	66㎡ 미만	27,000	농어촌 지역의 읍·면 단위에서는 1등급씩 하향 적용한다. (1등급 제외)
2	66㎡ 이상 99㎡ 미만	35,000	
3	99㎡ 이상 132㎡ 미만	43,000	
4	132㎡ 이상 165㎡ 미만	52,000	
5	165㎡ 이상 198㎡ 미만	60,000	
	198㎡ 이상 매 33㎡ 초과시 마다	8,000원씩 추가 최고 230,000원	

③ 무도학원, 에어로빅장, 노래교실 등에서의 공연사용료는 다음 기준에 음악저작물관리 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등급	수강생 수	월정액(원)	비 고
1	50명 미만	21,000	수강생 수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무도장, 카바레 등에서의 공연등급을 적용한다.
2	50명 이상 100명 미만	26,000	
3	100명 이상 150명 미만	31,000	
4	150명 이상 200명 미만	36,000	
5	200명 이상 250명 미만	42,000	
6	250명 이상 300명 미만	52,000	
7	300명 이상 350명 미만	63,000	
8	350명 이상 400명 미만	73,000	
9	400명 이상 500명 미만	89,000	
10	500명 이상	105,000	

④ 무도장, 카바레, 스탠드바 등에서의 공연사용료는 다음 기준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등급	영업허가면적	월정액(원)	비 고
1	66㎡ 미만	23,000	농어촌 지역의 읍·면 단위에서는 1등급씩 하향 적용한다. (1등급 제외)
2	66㎡ 이상 99㎡ 미만	28,000	
3	99㎡ 이상 132㎡ 미만	34,000	
4	132㎡ 이상 165㎡ 미만	46,000	
5	165㎡ 이상 231㎡ 미만	57,000	
6	231㎡ 이상 330㎡ 미만	69,000	
7	330㎡ 이상 495㎡ 미만	92,000	
8	495㎡ 이상 660㎡ 미만	115,000	
9	660㎡ 이상 990㎡ 미만	138,000	
10	990㎡ 이상	172,000	

⑤ 노래연습장에서의 공연사용료는 방 1개당 면적별 월정액을 합산한 총액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등급	방 면적	월정액(원)	비 고
1	6.6㎡ 미만	5,000	농어촌 지역의 읍·면 단위에서는 방당 500원씩 감한다.
2	6.6㎡ 이상 13.2㎡ 미만	6,000	
3	13.2㎡ 이상 19.8㎡ 미만	7,000	
4	19.8㎡ 이상	8,000	

⑥ 레스토랑, 커피숍, 카페, 뷔페 등에서 생음악 공연시 공연사용료는 다음 기준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등급	영업허가면적	월정액(원)	비 고
1	66㎡ 이상 99㎡ 미만	23,000	
2	99㎡ 이상 132㎡ 미만	28,000	
3	132㎡ 이상 165㎡ 미만	34,000	
4	165㎡ 이상 231㎡ 미만	46,000	
5	231㎡ 이상 330㎡ 미만	57,000	
6	330㎡ 이상 495㎡ 미만	69,000	
7	495㎡ 이상 660㎡ 미만	81,000	
8	660㎡ 이상 990㎡ 미만	92,000	
9	990㎡ 이상	103,000	

⑦ 커피 전문점,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에서의 공연사용료는 다음 기준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등급	영업허가면적	월정액(원)	비 고
1	50㎡ 이상 100㎡ 미만	2,000	- 농어촌 지역의 읍·면 단위에서는 1등급씩 하향 적용한다. (1등급 제외)
2	100㎡ 이상 200㎡ 미만	3,600	
3	200㎡ 이상 300㎡ 미만	4,900	
4	300㎡ 이상 500㎡ 미만	6,200	- 영업허가면적 50㎡ 미만은 징수대상에서 제외한다.
5	500㎡ 이상 1,000㎡ 미만	7,800	
6	1,000㎡ 이상	10,000	

⑧ 체력단련장(헬스클럽 등) 등에서의 공연사용료는 다음 기준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등급	영업허가면적	월정액(원)	비 고
1	50㎡ 이상 100㎡ 미만	5,700	- 농어촌 지역의 읍·면 단위에서는 1등급씩 하향 적용한다. (1등급 제외)
2	100㎡ 이상 200㎡ 미만	11,000	
3	200㎡ 이상 300㎡ 미만	14,400	
4	300㎡ 이상 500㎡ 미만	18,500	
5	500㎡ 이상 1,000㎡ 미만	23,200	- 영업허가면적 50㎡ 미만은 징수대상에서 제외한다.
6	1,000㎡ 이상	29,800	

⑨ 게임방, 멀티방 등에서 노래반주기, 댄스게임기 또는 멀티기기에 의한 공연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금액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1. 노래반주기 : 기기 1대당 월 3,000원
2. 댄스게임기 : 기기 1대당 월 2,000원
3. 멀티기기 : 기기 1대당 월 2,000원

비고1) 멀티기기관 1대의 기기로 게임, 노래, 영화감상 등을 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

⑩ 주민자치센터, 시·군·구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 등에서 비영리목적으로 음악을 이용하는 프로그램(노래교실과 에어로빅 프로그램)을 개설한 경우 그 공연사용료는 다음 기준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등급	수강생 수	음악사용시간에 따른 월정액(원)				
		10시간미만	10시간이상 30시간미만	30시간이상 60시간미만	60시간이상 100시간미만	100시간 이상
1	30명 미만	6,000	7,000	9,000	11,000	13,000
2	30명 이상 ~ 60명 미만	7,000	9,000	11,000	13,000	15,000
3	60명 이상 ~ 90명 미만	8,000	11,000	13,000	15,000	17,000
4	90명 이상 ~ 120명 미만	9,000	13,000	15,000	17,000	19,000
5	120명 이상 ~ 150명 미만	10,000	15,000	17,000	19,000	21,000
6	150명 이상 ~ 180명 미만	11,000	17,000	19,000	21,000	23,000
7	180명 이상 ~ 210명 미만	12,000	19,000	21,000	23,000	25,000
8	210명 이상 ~ 240명 미만	13,000	21,000	23,000	25,000	27,000

등급	수강생 수	음악사용시간에 따른 월정액(원)				
		10시간미만	10시간이상 30시간미만	30시간이상 60시간미만	60시간이상 100시간미만	100시간 이상
9	240명 이상	14,000	23,000	25,000	27,000	29,000

비고1) 다수의 음악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수강생수와 음악사용시간을 합산 적용한다. 다만, 영리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8조 [전문체육시설에서 하는 체육관련 공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전문체육시설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전문체육시설에서 하는 체육관련 공연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text{입장료 수입} \times 0.2\%(\text{음악사용료율}) \times \text{음악저작물관리비율}$$

② 입장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1경기당 평균 사용료가 30,000원 미만으로 산출될 경우 1경기당 사용료는 30,000원으로 하되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비고1) 입장료수입에서 운동장사용료 및 입장권 발매수수료 등으로 10%를 공제한다.

제9조 [경마·경륜·경정장] ① 경마장에서의 공연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text{전년도총수입} \times \text{순수익률} \times \text{특별적립공제비율} \times 0.01\%(\text{음악사용료율}) \times \text{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1) 순수익률이란 총수입금액 중 고객환급 및 제세금, 기타경비를 공제한 순수익금의 비율을 말한다.

비고2) 특별적립공제비율이란 축산발전기금 및 농어촌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적립금의 비율을 말한다.

② 경륜·경정장에서의 공연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text{전년도총수입} \times \text{조정발매수득금률} \times 0.01\%(\text{음악사용료율}) \times \text{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1) 조정발매수득금률이란 총수입금액 중 고객환급 및 제세금을 공제한 이익금(발매수득금)의 90%를 말한다.

제10조 [유원시설 등의 공연사용료] ①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에서의 공연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text{입장료 수입} + \text{음악사용놀이기구 이용료 수입}) \times 0.11\%(\text{음악사용료율}) \times \text{음악저작물관리비율}$$

②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키장에서의 공연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text{개장기간 중 수입총액} \times 0.05\%(\text{음악사용료율}) \times \text{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1) 수입총액이란 장비대여료 및 강습비를 제외한 리프트, 곤돌라 이용료 수입과 시즌권 판매수입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1조 [호텔·콘도미니엄, 카지노, 골프장 등에 대한 공연사용료] ①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 콘도미니엄의 공연사용료는 다음 기준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7조에 해당하는 영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징수한다.

등급	객실 수	월정액(원)	비 고
1	50개 미만	20,000	○ 월정액은 특급호텔 기준임. 1급은 특급의 90%, 2급은 특급의 80%, 3급은 특급의 70%를 적용함 ○ 콘도미니엄은 특급호텔의 50%를 적용함
2	50개 이상 100개 미만	40,000	
3	100개 이상 200개 미만	80,000	
4	200개 이상 300개 미만	140,000	
5	300개 이상 400개 미만	210,000	
6	400개 이상 500개 미만	280,000	
7	500개 이상	350,000	

② 카지노에서의 공연사용료는 다음 기준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등급	영업허가면적	월정액(원)	비 고
1	1,000㎡ 미만	35,000	
2	1,000㎡ 이상 1,500㎡ 미만	70,000	
3	1,500㎡ 이상 2,000㎡ 미만	140,000	
4	2,000㎡ 이상 2,500㎡ 미만	200,000	
5	2,500㎡ 이상 3,000㎡ 미만	260,000	
6	3,000㎡ 이상	320,000	

③ 골프장에서의 공연사용료는 다음 기준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7조에 해당하는 영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징수한다.

등급	음악사용 시설(건물) 수	월정액(원)
1	1개	50,000
2	2개	75,000
3	3개	100,000
4	4개	125,000

등급	음악사용 시설(건물) 수	월정액(원)
5	5개	150,000

5개 초과시 매 1개당 15,000원씩 월정액 추가

비고 1) 골프장 음악사용 시설(건물)은 주차장, 클럽하우스, 그늘집을 말한다.

제12조[대규모점포에 대한 공연사용료]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전문점·백화점·쇼핑센터·복합쇼핑몰·그 밖의 대규모 점포(단, 전통시장은 제외)에서의 공연사용료는 다음 기준에 음악저작물관리비용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7조에 해당하는 영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징수하고, 별도 징수하는 영업장의 면적은 대규모점포 영업장 면적에서 제외한다.

등급	영업장면적	월정액(원)	비 고
1	3,000㎡ 이상 5,000㎡ 미만	80,000	영업장면적이 매장면적의 125%를 초과하는 경우 매장면적의 125%를 영업장면적으로 간주
2	5,000㎡ 이상 10,000㎡ 미만	150,000	
3	10,000㎡ 이상 15,000㎡ 미만	300,000	
4	15,000㎡ 이상 20,000㎡ 미만	500,000	
5	20,000㎡ 이상 30,000㎡ 미만	700,000	
6	30,000㎡ 이상 40,000㎡ 미만	900,000	
7	40,000㎡ 이상 50,000㎡ 미만	1,100,000	
8	50,000㎡ 이상	1,300,000	

제13조 [항공기 내의 공연사용료] 여객용 항공기 내의 기내음악서비스에 대한 공연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월 탑승중 음악사용료 + 월 비행중 음악사용료) × 음악저작물관리비용 × 비행기수 × 12개월

비고1) 월 탑승중 음악사용료 및 비행중 음악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구 분	월 탑승중 음악사용료	월 비행중 음악사용료
200석 미만	17,000	69,000
200석 이상 - 300석 미만	22,000	92,000
300석 이상	26,000	115,000

제14조 [기차 등] 철도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여객용 열차 및 해운법의 규정에 의한 해상여객 운송사업용 선박의 공연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승차(선)료 수입 × 0.02%(음악사용료율)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 조정계수

비고1) 승차(선)료 수입이란 운임과 서비스요금을 포함한 것으로 한다.

제15조 [공연사용료 징수의 부가기준] ① 제7조, 제11조 및 제12조의 경우 영업일수가 10~20일인 경우에는 사용료의 50%를 징수하고 10일 미만이면 당해 월의 사용료를 면제한다(공적인 기관의 근거자료 필요).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말 또는 지정일 등의 특정일에만 개설되어 월 15시간 미만으로 사용하는 경우 월정사용료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사용료를 산정하되, 월 사용 총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월정사용료를 적용한다.

각 등급의 월정액 × [월정음악사용시간÷15시간]

제3장 방송 사용료

제16조 [지상파방송에 대한 방송사용료] ① 한국방송공사, (주)문화방송(지역문화방송 제외), (주)에스비에스의 방송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매출액 × 1.2%(음악사용료율) × 조정계수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1) 매출액이란 방송사의 전년도 수신료(전년도 특수방송운영비와 EBS지원금을 공제한다) 및 광고수입(협찬 수입 포함)을 합산한 금액에서 일반 징수경비, 광고대행수수료 등 제반 지출경비를 감안하여 20/100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다른 사업자의 방송, 전송, 웹캐스팅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인한 매출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비고2) 조정계수는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다만, 수신료 인상이나 광고규제 완화 등의 사유로 매출액의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계수를 조정할 수 있다.

연 도	2014년	2015년	2016년 이후
조정계수	0.588	0.632	0.679

비고3) 방송사용료의 대상에는 이 규정에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방송되지 않는 공연(제6조), 방송물 전송(제24조)이나 웹캐스팅(제27조) 및 영상물 복제·배포(제29조) 등은 제외되고, 방송사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방송용 공연(공연의 2분의 1 이상을 방송하는 경우에 한함)과 복제(싱크로나이제이션 이용) 등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방송, 전송, 웹캐스팅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을 포괄한다.

비고4) 방송사용료의 적정한 인상을 기하기 위해 최종 산출된 방송사용료에서 (주)문화방송과 (주)에스비에스는 2014년에 10%, 2015년에 5%를 각각 감액한다.

② 지역문화방송, (주)케이엔엔, (주)대구방송, (주)대전방송, (주)광주방송, (주)오비에스경인티브이, (주)울산방송, (주)청주방송, (주)전주방송, (주)강원민방, (주)제주방송 등의 방송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다만, (주)오비에스경인티브이의 조정계수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text{매출액} \times 1\%(\text{음악사용료율}) \times 0.72(\text{조정계수}) \times \text{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1) 매출액이란 방송사의 전년도(방송초기 연도와 그 익년도 및 방송종료 연도에 한해 당해 연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수신료 및 광고수입을 합산한 금액에서 징수경비, 광고대행수수료 등 제반 지출 경비를 감안하여 30/100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이하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이 조에서 같다.)

③ 교육방송의 방송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text{매출액} \times 45/100(\text{조정계수}) \times 0.35\%(\text{음악사용료율}) \times \text{음악저작물관리비율}$$

④ 기독교방송, 불교방송, 평화방송, 원음방송, 경기방송의 방송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다만, 경기방송의 조정계수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text{매출액} \times 46/100(\text{조정계수}) \times 1.2\%(\text{음악사용료율}) \times \text{음악저작물관리비율}$$

⑤ 교통방송의 방송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text{매출액} \times 46/100(\text{조정계수}) \times 1.35\%(\text{음악사용료율}) \times \text{음악저작물관리비율}$$

⑥ 극동방송의 방송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text{매출액} \times 46/100(\text{조정계수}) \times 0.7\%(\text{음악사용료율}) \times \text{음악저작물관리비율}$$

⑦ 국군방송의 방송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text{매출액} \times 1\%(\text{음악사용료율}) \times 0.72(\text{조정계수}) \times \text{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1) 매출액이란 전년도 TV 및 라디오 방송제작과 관련된 정부예산을 말하며 제반 지출 경비를 감안하여 30/100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⑧ 아리랑FM 등 외국어 라디오방송의 방송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text{매출액} \times 1.35\%(\text{음악사용료율}) \times \text{조정계수} \times \text{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1) 매출액이란 전년도 수신료 및 광고수입(협찬수입포함)을 합산한 금액에서 수수료 등 제반 지출경비를 감안하여 30/100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아리랑 FM의 매출액은 전년도 정부지원금(방송통신발전기금) 중 FM 방송제작비를 말한다.

비고2) 조정계수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연도	2014년	2015년
조정계수	0.90	1.00

⑨ 국악방송의 방송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text{매출액} \times 0.7\%(\text{음악사용료율}) \times \text{조정계수} \times \text{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1) 매출액이란 일체의 전년도 정부지원금, 기금수입 및 광고수입 등을 말한다. 다만, 방송시설 운영비, 노후장 비교체, 전국화 비용을 공제한다.

비고2) 조정계수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연도	2014년	2015년
조정계수	0.90	1.00

⑩ YTN라디오의 방송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text{매출액} \times 46/100(\text{조정계수}) \times 0.6\%(\text{음악사용료율}) \times \text{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1) 매출액이란 전년도 방송협찬수입과 광고판매수입을 합산한 금액에서 제반 지출 경비를 감안하여 30/100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제17조 [방송채널사용사업(PP)에 대한 방송사용료] ① 홈쇼핑채널(PP)의 방송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text{기준 매출액} \times \text{조정계수} \times 2.5\%(\text{음악사용료율}) \times \text{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1) 기준 매출액은 전년도 매출 총이익의 15%로 하며, 광고대행수수료 등 제반 경비 지출을 감안하여 60/100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비고2) 조정계수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② 종합편성채널의 방송사용료는 이용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③ 홈쇼핑채널이외 방송채널사용사업(PP)의 방송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text{매출액} \times \text{조정계수} \times \text{음악사용료율} \times \text{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1) 매출액이란 전년도 수신료 수입 및 광고수입의 합산액을 말하며, 광고대행수수료 등 제반 경비 지출을 감안하여 40/100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비고2) 연도별 조정계수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비고3) 채널별 음악사용료율은 다음과 같다.

음악전문채널: 4%, 음악·버라이어티채널: 2.3%, 오락채널: 1.1%, 교양·종교채널: 1%, 스포츠채널: 0.6%, 보도채널: 0.5%, 기타 채널: 0.35%

제18조 [종합유선방송(SO)에 대한 방송사용료] 종합유선방송(SO)의 방송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text{방송총수입} \times \text{공제계수} \times 45/100(\text{조정계수}) \times 0.5\%(\text{음악사용료율}) \times \text{연도별 차등적용율} \\ \times \text{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1) 방송총수입이란 방송사의 전년도 수신료 및 광고수입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비고2) 공제계수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19조 [위성방송에 대한 방송사용료] 위성방송에 대한 방송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text{매출액} \times 45/100(\text{조정계수}) \times 1\%(\text{음악사용료율}) \times \text{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1) 매출액이란 전년도 수신료수입 PPV채널수입, 광고 수입을 합산한 금액에서 일반 징수경비, 채널사용사업자 수신료배분비율, 광고대행수수료 등 제반 지출경비를 감산하여 50/100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19조의 2 [IPTV 등에 대한 음악사용료] IPTV에 대한 방송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text{매출액} \times 1.2\%(\text{음악사용료율}) \times 0.47(\text{조정계수}) \times \text{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1) 매출액이란 당해 연도 수신료수입(유료수신료 수입 포함), 광고수입(협찬수입 포함) 및 기타 본 서비스관련 수입(지원금, 판권수입)의 합산액을 말한다. 다만, 광고수입 중 광고대행수수료로 30%를 공제하기로 한다.

제19조의 3 [지상파 DMB에 대한 방송사용료] 지상파 DMB에 대한 방송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text{매출액} \times 45/100(\text{조정계수}) \times 1\%(\text{음악사용료율}) \times \text{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1) 매출액이란 당해 연도 광고수입을 말하며, 일반 징수경비 및 광고대행수수료 등 제반지출 경비를 감산하여 30/100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20조 [중계유선방송에 대한 방송사용료] 중계유선방송에 대한 방송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text{수신료수입} \times 0.2\%(\text{음악사용료율}) \times \text{음악저작물관리비율}$$

제21조 [음악유선방송에 대한 방송사용료] 음악유선방송에 대한 방송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text{수신료수입} \times 2\%(\text{음악사용료율}) \times \text{음악저작물관리비율}$$

제22조 [이동방송서비스 등] 철도(전철, 기차)에서 제공되는 영상서비스에 대한 방송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text{매출액} \times 0.1\%(\text{음악사용료율}) \times \text{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1) 매출액이란 이동방송을 실시함으로써 발생하는 상업광고수입, 협찬광고수입 및 기타 방송과 관련한 수입의 합산액을 말한다.

제4장 전송 사용료

제23조 [주문형 스트리밍 서비스] ① 소비자가 요청하는 음악저작물(뮤직비디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고 이용한 횟수에 비례하여 소비자에게 이용료를 부과하는 경우 또는 특정 상품(서비스)의 판매를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4\text{원(곡당 단가)} \times \text{이용횟수} \times \text{지분율}$$

비고1) 이용횟수는 이용자가 제공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하되 횟수 산정 기준 등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이용자는 그 자료(로그 파일)를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이하 이 장에서 같다)

비고2) 특정 상품(서비스)에는 제2항의 월정액 스트리밍 상품, 제3항의 오프라인 재생 스트리밍 상품이 포함되지 않는다.

② 제1항과 달리 월정액을 받고 음악저작물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이하 “월정액 스트리밍 상품”이라 한다)의 사용료는 다음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0.7\text{원(곡당 단가)} \times \text{이용횟수} \times \text{지분율}]$ 또는 $[\text{월정 } 700\text{원(가입자당 단가)} \times \text{가입자수} \times \text{음악저작물관리비율}]$

2. $\text{매출액} \times 10.5\%(\text{음악사용료율}) \times \text{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1) 제1호의 사용료는 이용자가 1년 단위로 선택할 수 있다.

비고2) 가입자란 회원제 운영의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회원을 말하며, 회원제와 비회원제의 혼합 또는 회원제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월간 서비스를 이용한 순방문자를 말한다. 단, 월간 서비스를 이용한 순방문자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는 별도로 협회와 이용자가 협의하여 정한다(이하 해당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에서 같다).

비고3) 매출액이란 사용자가 직/간접적으로 운영하는 당해 서비스 사이트의 해당 서비스로부터 취득한 이용료의 수입에 광고 및 기타의 수입을 합한 총매출액(Gross Sales)을 말하며, 판매촉진 행위 등에 따라 할인된 금액을 포함한다. 다만, 광고 및 기타의 수입은 당해 서비스 사이트에서 음악이 차지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하고 매출액이 없는 경우는 별도로 협회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정한다.(이하 해당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에서 같다).

비고4)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의 사용료 정산에 있어 인앱결제 서비스와 PC WEB 등의 서비스가 동일한 경우 인앱결제 서비스의 사용료는 PC WEB 등의 서비스 가격 및 정산 산식을 적용하여 정산한다. (제23조 및 제23조의 2에 적용된다.)

비고5) 본 조에 따른 사용료의 산정 방식에도 불구하고 협회는 사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용료를 가입자 단위로 나누어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료는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단,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

한 경우에는 본 조에 따른 사용료의 산정 방식에 따른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

1. [(이용 가입자별 매출액 × 10.5% 또는 가입자당 단가(월정 700원) 중 많은 금액) × 이용 가입자별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의 총합산액
 2. (미이용 가입자별 매출액 합계 × 10.5% 또는 가입자당 단가(월정 700원) 합계 중 많은 금액) × 이용 가입자별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의 평균치
- * 제3항의 경우 가입자 단가는 월정 1,144.5원을 적용한다.

③ 제2항과 달리 월정액 스트리밍 상품에 소비자가 가입기간 동안 오프라인 상에서도 재생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단, 오프라인 재생을 위해 저장된 파일의 음원 추출, 복제, 공유 등 다운로드와 유사한 속성을 갖지 않는 경우)의 사용료는 다음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월정 1,144.5원(가입자당 단가) × 가입자수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2. 매출액 × 10.5%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 이용자는 오프라인 상에서 재생된 이용횟수를 집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과 달리 광고수익을 목적으로 소비자가 음악저작물을 청취할 때 광고가 노출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음악저작물을 소비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이하 “광고수익 기반 스트리밍 상품”이라 한다)의 사용료는 제1호와 같다. 다만, 그 금액이 제2호보다 적을 경우 제2호로 한다.

1. 0.74원(곡당 단가) × 이용횟수 × 지분율
2. 매출액 × 10.5%(음악사용료율)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1) 소비자가 음악저작물을 청취할 때 광고가 노출되도록 하는 방식을 취하더라도 광고수익이 목적이 아니라 특정 상품(서비스)의 판매가 목적일 경우에는 제1항이 적용된다.

⑤ 이용자가 이용료가 없는 주문형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23조 내지 제23조의 2의 상품의 판매를 촉진하거나, 구매내역의 확인을 위해 사용상품(미리듣기 서비스)을 제공하는 경우,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사용료를 면제한다.

1. 총 재생시간이 한 곡당 30초를 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재생시간은 60초 이내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이용자가 구축한 서버 및 이를 통한 홈페이지 등 이내의 이용에 한한다.
3. 무료로 제공하는 곡은 이용자가 판매하고자 하는 곡과 동일하여야 한다.

제23조의2 [주문형 다운로드 서비스] ① 소비자가 요청하는 음악저작물을 곡당 다운로드 방식

으로 제공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제1호와 같다. 다만, 그 금액이 제2호보다 적을 경우 제2호로 한다.

1. 77원(곡당 단가) × 다운로드횟수 × 지분율
2. 매출액 × 11%(음악사용료율)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1) 다운로드는 소비자가 관리하는 가상의 공간에 저장하는 것을 포함한다.

비고2) 다운로드횟수는 이용자가 제공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하되 횟수 산정 기준 등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이용자는 그 자료(로그 파일)를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이하 이 장에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곡 이상 30곡 미만으로 제작된 앨범단위로 판매되는 경우(편집앨범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사용료는 다음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38.5원(곡당 단가) × 조정계수 × 다운로드횟수 × 지분율
2. 매출액 × 11%(음악사용료율)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1) 연도별 조정계수는 다음과 같다.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조정계수	1.2	1.6	2.0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30곡 이상 다량 다운로드를 제공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다음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곡당 단가 × 조정계수 × 다운로드횟수 × 지분율
2. 매출액 × 11%(음악사용료율)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1) 곡당 단가는 30곡일 경우 곡당 38.5원을 기준으로 1곡 추가할 때마다 이전 단가보다 1% 할인하고, 65곡 이상일 경우는 곡당 26.95원으로 하며, 2021년 이후의 곡당단가는 곡수에 관계없이 38.5원으로 한다.

비고2)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간 내에 이용 가능한 다량 다운로드 상품을 제공하는 경우의 곡당 단가는 해당 상품의 곡수를 월간기준 상품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비고3) 다량 다운로드 상품(원 상품)에 이용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1개월 이내에 이용할 수 있는 곡수를 추가로 제공하는 경우 곡당 단가는 원 상품의 곡당 단가를 적용한다.

비고4) 연도별 조정계수는 다음과 같다.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조정계수	1.2	1.6	2.0

④ 다운로드한 음악저작물의 사용기간을 제한(1개월 이하로 한다)하거나, 그 제한된 기간 이후에는 그 곡(제3항의 경우에는 그 상품을 말한다)에 대한 재결제시에만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의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3항을 적용하되, 곡당 단가는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해진 곡당 단가의 38%로 한다. 단, 2021년 이후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서 정해진 곡당 단가를 따른다.

⑤ 제1항의 다운로드 서비스(30곡 이상 다량을 묶어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와 제23조 제2항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다음의 금액으로 한다.

$$(제23조 제2항의 스트리밍 사용료 \times 0.5) + 해당 다운로드 사용료$$

비고1) 단, 2021년 이후에는 제23조 제2항의 스트리밍 사용료 + 해당 다운로드 사용료

제23조의3 [판매촉진 등] ① 권리자(신탁관리단체에 신탁한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또는 유통서비스사업자가 특정 저작물 또는 서비스 상품의 홍보나 판매 촉진 등을 목적으로 관련 권리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 주문형 스트리밍서비스나 주문형 다운로드서비스에 무료로 음원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비용으로 곡당 1만원의 금액을 협회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권리자 또는 유통서비스사업자가 홍보나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특정 서비스 상품에 대하여 이 규정에 의한 사용료 또는 통상의 사용료를 할인한 경우에는 협회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별도의 할인을 적용할 수 있다.

제23조의4 [주문형 배경음악 서비스] 이용자가 카페, 블로그, 홈페이지 등 개인용 커뮤니티 서비스에 소비자가 요청하는 음악저작물을 배경음악 서비스로 제공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다음 각 호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곡당 25원 × 판매횟수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 할인율
2. 매출액 × 5%(음악사용료율)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 할인율

비고1) 할인율은 6개월 이하로 기간제한을 하는 경우 0.9로 한다.

제23조의5 [홈페이지 배경음악서비스] ① 영리여부를 불문하고 기업, 단체 등이 자사 홈페이지 등에 배경음악을 이용하는 경우 1곡당 사용료는 다음 기준에 해당 곡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월평균 방문자수	금액
5천명 미만	월 4,000원
5천명 이상 ~ 1만명 미만	월 10,000원
1만명 이상 ~ 2만명 미만	월 20,000원
2만명 이상	매 2만명씩 초과시 마다 10,000원씩 추가

② 독립 도메인을 가진 개인 홈페이지 등에 배경음악을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는 제1항의 1/2로 한다.

제24조 [방송물 재전송서비스] ① 음악전문 라디오 방송물(AOD)을 재전송하는 경우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음악 전문방송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사용료의 1/2로 한다.

1. 이용료 또는 광고료가 있는 경우(다만, 이 경우 사용료가 제2호보다 적을 경우 제2호 규정을 적용한다.)

$$\text{매출액} \times 2.5\%(\text{음악사용료율}) \times \text{음악저작물관리비율}$$

2. 이용료 및 광고료가 없는 경우

$$\text{월정 60원} \times \text{이용자수} \times \text{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1) 이용자수는 당해 월에 재전송서비스를 이용한 중복되지 않은 이용자수를 말한다.

② TV방송물(VOD)을 재전송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제1항 규정의 1/2로 한다.

제24조의 2 [온라인 게임 및 애니메이션 등] ① 음악을 주로 사용하는 온라인 게임 및 애니메이션(편당) 등의 음악 서비스에 대한 사용료는 다음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매출액 × 5%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2. [연간 곡당 100,000원 × 관리곡수 × 지분율] 또는 [1.4원 × 이용횟수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1) 제2호에 따른 사용료 지급 방식은 매년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다.

비고2) 음악을 주로 사용하는 온라인 게임 및 애니메이션이란 음악에 맞춰 게임을 조작하여야 하거나 음악이 재생되지 않을 경우 게임의 진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등 당해 서비스에서 음악이 필수적인 요소로 사용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비고3) 매출액이란 당해 사이트에서 게임 및 애니메이션이 제공하는 음악서비스로 발생한 이용료 등의 수입에 광고, 기타의 수입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소비자가 음악 재생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유료재화를 통해 발생한 수입은 제외한다). 다만, 광고 및 기타의 수입은 당해 서비스 사이트에서 음악이 차지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비고4) 음악 사용 기간이 1년 미만인 서비스에 본조 제1항 2호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에는 연간 곡당 사용료에 1/12를 곱한 월정사용료를 1개월 단위로 적용하여 사용료를 산정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음악을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온라인 게임 및 애니메이션(편당) 등의 음악 서비스에 대한 월정 곡당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4,200\text{원} \times \text{관리곡수} \times \text{지분율}$$

제25조 [전화를 이용한 장식형(데코레이션) 서비스] 전화(이동전화, 일반전화 등)를 통해 벨소리, 통화연결음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음악을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text{매출액} \times 9\%(\text{음악사용료율}) \times \text{음악저작물관리비율}$$

제26조 [전화서비스-Music On Hold의 전송사용료] 일반전화의 통화대기·보류 시, 유선송신 내지 자체 송신에 의해 음악을 제공하는 형태(Music On Hold)로 이용하는 경우 1곡당 사용료는 다음 기준에 해당 곡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1,000회선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구분	회선수	연간사용료
1	1회선~10회선	50,000원
2	11회선~20회선	95,000원
3	21회선~30회선	135,000원
4	31회선~50회선	170,000원
5	51회선~80회선	200,000원
6	81회선~120회선	225,000원
7	121회선~200회선	250,000원
8	201회선~300회선	300,000원
9	301회선~500회선	400,000원
10	501회선~1,000회선	600,000원

비고1) 사용이 1년 미만인 기간일 경우 사용료는 1개월 단위로 해서 상기 표 연간사용료를 1/12로 한 금액을 월정 사용료로 할 수 있다.

제26조의 2 [결합서비스의 사용료] 제23조의 2 제5항 이외에 서비스를 결합하는 경우 사용료는 협회 규정에서 정한 각각의 사용료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합서비스의 성격을 감안하여 협회와 이용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26조의 3 [해외 서비스] 해외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음악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서비스 제공 가격 등을 감안하여 협회와 이용자가 협의하여 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제5장 웹캐스팅

제27조 [웹캐스팅] ① 음악이 주(主)가 되는 웹캐스팅의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료(정보료) 또는 광고료가 있는 경우
 - 가. 방송사업자 동시방송(simulcast), 개인방송 : 다음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 월정 75원 × 가입자수 × 음악저작물관리비용
 - 매출액 × 2.5%(음악사용료율) × 음악저작물관리비용
 - 나. 매장음악서비스 : 다음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 월정 800원 × 가입자수 × 음악저작물관리비용
 - 매출액 × 4%(음악사용료율) × 음악저작물관리비용
2. 이용료(정보료) 및 광고료가 없는 경우
 - 월정 60원 × 가입자수 × 음악저작물관리비용

비고1) 웹캐스팅이란 온라인상 실시간으로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악서비스를 말한다.
 비고2) 가입자란 회원제 운영의 경우에는 웹캐스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회원, 회원제와 비회원제의 혼합 또는 회원제를 운영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복되지 않은 월간 웹캐스팅 서비스를 이용한 자”를 말한다. “월간 웹캐스팅 서비스를 이용한 자”를 파악하기 어려운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비고3) 매출액이란 당해 사이트에서 웹캐스팅 서비스로 발생한 이용료 등의 수입에 광고, 기타의 수입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광고 및 기타의 수입은 음악서비스 항목이 당해 사이트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② 음악이 부가적으로 서비스되는 웹캐스팅의 경우 제1항 규정의 1/2로 한다.

제6장 복제 및 배포 사용료

제28조 [음반] ① 상업용 음반의 복제 및 배포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 곡당사용료[출고가 × 9%(음악사용료율) ÷ 수록곡수] × 관리곡수 × 지분율 × 제작수량 × 할인율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곡당사용료가 다음의 하한가 미만일 경우, 동 금액으로 한다.

음반구분	하한가
CASSETTE TAPE	15원
CD, CD-ROM, LP	20원

비고1) 출고가란 음반 제작 후, 유통사에서 도·소매점으로 출고되는 가격을 말하며, 출고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가격의 60/100을 출고가로 간주한다.

* 소비자가격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의 대규모 점포 중 각기 다른 3곳의 장소에서 구입한 당해 음반의 평균가격을 말한다.

비고2) 할인율이란 제작·판매 과정에서 예상되는 반품·재고·폐기 등을 감안하여 할인하는 비율을 말하며, 제작자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비고3) 특정 상품의 판매촉진이나, 상품의 홍보 등을 목적으로 부가적으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음반에 대해서는 상기 하한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비매용 음반의 복제 및 배포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text{곡당사용료} \times \text{관리곡수} \times \text{지분율} \times \text{제작수량}$$

음반구분	하한가
CASSETTE TAPE	6.3원
CD, CD-ROM, LP	8.4원

제29조 [뮤직비디오 등 영상물] ① 음악저작물이 주된 목적으로 사용되는 영상물(뮤직비디오, 공연실황 등)의 복제 및 배포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 곡당사용료[출고가 × 7%(음악사용료율) ÷ 수록곡수] × 관리곡수 × 지분율 × 제작수량 × 할인율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곡당사용료가 다음의 하한가 미만일 경우, 동 금액으로 한다.

매체구분	하한가
V-CD	38.5원
V-TAPE	46.2원
DVD	55원

② 음악저작물이 부수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영상물(제1항 이외의 다큐멘터리, 드라마, 교양, 시사, 취미, 홍보, 학습, 체육 등)의 복제 및 배포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 곡당사용료[출고가 × 5%(음악사용료율) ÷ 수록곡수 × (음악저작물 합계사용시간 ÷ 총 재생시간)] × 관리곡수 × 지분율 × 제작수량 × 할인율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곡당사용료가 다음의 하한가 미만일 경우, 동 금액으로 한다.

매 체 구 분	하 한 가
V-CD	23.1원
V-TAPE	27.5원
DVD	33원

③ 제1항 및 제2항의 영상저작물을 비매용으로 제작하는 경우의 복제 및 배포사용료는 다음의 곡당사용료에 지분을 및 제작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매체구분	곡당 사용료	
	제①항의 경우	제②항의 경우
V-CD	21원	12원
V-TAPE	25원	15원
DVD	30원	18원

비고1) 제28조의 비고1), 비고2), 비고3)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준용한다. 이 경우 음반은 영상물로 본다.
비고2) 제2항에 있어 1편의 영상물(다큐멘터리 등)에 동일곡이 전체사용시간 중에서 수회 반복 사용되었을 경우, 사용시간 2분까지를 1곡으로 본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있어 방송물에 대한 시청자의 주문·판매 등으로 인하여 판매시마다 복제·배포에 대한 사용허락을 받기가 곤란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와 협의하여 연간 포괄사용허락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 포토앨범(웨딩, 커플, 회갑, 성장 동영상 등)을 제작할 경우 복제 및 배포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text{곡당사용료}[\text{판매가} \times 3\%(\text{음악사용료율}) \div \text{수록곡수}] \times \text{관리곡수} \times \text{지분율} \times \text{판매수량}$$

제30조 [음반자판기] 음반자판기에 대한 1곡당 복제 및 배포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text{음반판매가}(\text{정찰가격} - \text{부가세}) \times 7\%(\text{음악사용료율}) \div 1\text{매 당 수록곡 수} \times \text{지분율} \times \text{판매수량}$$

제31조 [아케이드 게임기 등] ① 업소용 게임기의 복제 및 배포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280,000\text{원} \times \text{관리곡수} \times \text{지분율}$$

② 가정용 게임기에 사용될 목적으로 제작되는 복제물에 대한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다만, 곡당사용료는 22.5원 이상이어야 한다.

곡당사용료[출고가 × 9%(음악사용료율) ÷ 수록곡수] × 관리곡수 × 지분율 × 제작수량 × 할인율
 비교1) 할인율이란 제작·판매 과정에서 예상되는 반품, 재고, 폐기 등을 감안하여 할인하는 비율을 말하며, 이용자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32조 [음악저장장치 부착 제품 등] ① 완구, 오르골 등에 음악저작물을 복제하여 배포할 경우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 곡당사용료[부품 출고가 × 5%(음악사용료율) ÷ 수록곡수] × 관리곡수 × 지분율 × 제작수량 × 할인율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곡당사용료가 다음의 하한가 미만일 경우, 동 금액으로 한다.

구분	하한가
판매용	2.2원
비매용	1.1원

비교1) 부품이란 멜로디 IC CHIP 그 밖의 음을 저장하는 전자장치 또는 음을 기록하는 기계장치를 말한다.
 비교2) 할인율이란 제작·판매 과정에서 예상되는 반품, 재고, 폐기 등을 감안하여 할인하는 비율을 말하며, 이용자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이하 본조에서 동일하다).

② 휴대폰에 음악저작물 내지 음악영상물을 복제하여 배포할 경우,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text{곡당사용료} \times \text{관리곡수} \times \text{지분율} \times \text{제작수량} \times \text{할인율}$$

구분	곡당사용료
음악저작물	8.4원
음악영상물	21원

③ MP3플레이어 등 멀티미디어 기기에 음악저작물 내지 음악영상물을 복제하여 배포할 경우,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text{곡당사용료} \times \text{관리곡수} \times \text{지분율} \times \text{제작수량} \times \text{할인율}$$

구분	곡당사용료
음악저작물	15.4원
음악영상물	38.5원

제33조 [노래반주기] ① 영업용 노래반주기

노래연습장이나 유흥주점 등 상업적인 장소에 배포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노래반주기 및 그 저장매체에 대한 음악저작물의 사용료는 제1호와 제2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신곡 사용료

곡당사용료[신곡 출고가 × 9%(음악사용료율) ÷ 수록곡수] × 관리곡수 × 지분율 × 판매수량

다만, 곡당 사용료가 5원 미만일 경우에는 동 금액으로 한다.

비고1) 신곡 사용료란 정산 대상 기간 동안 해당 노래반주기 및 저장매체에 추가된 음악저작물에 대한 사용료를 말한다. 제2항 제1호 및 제3항 제1호도 이와 같다.

비고2) 신곡 출고가를 노래반주기 사업자가 정산 대상기간 동안 신곡을 판매하기 위해 도매상 등에게 공급하는 가격을 말한다. 제2항 제1호도 이와 같다.

2. 노래반주기 등의 복제 및 배포를 위한 사용료

다음의 월정사용료에 지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관리 곡수	월정 사용료
500곡까지	600,000원
500곡 초과 1,000곡 까지	1,200,000원
1,000곡 초과 20,000곡 까지	매 1,000곡당 각 1,200,000원씩 가산한 금액
20,000곡 초과 시	매 2,000곡당 각 2,000,000원씩 가산한 금액

비고1) 월정 사용료란 제1항에 따라 신곡 사용료를 납부한 곡을 계속적으로 추가 이용하는 경우, 월단위로 복제 및 배포수량에 제한 없이 책정한 사용료를 말한다. 제2항 제2호 및 제4항 제2호도 이와 같다.

② 연주인용 노래반주기

연주인들에게 배포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악보 재생 기능이 포함된 노래반주기 및 그 저장매체의 복제 및 배포사용료는 제1호와 제2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신곡 사용료

곡당사용료[신곡출고가 × 9%(음악사용료율) ÷ 수록곡수] × 관리곡수 × 지분율 × 판매수량

다만, 곡당사용료가 11원 미만일 경우에는 동 금액으로 한다.

2. 노래반주기 등의 복제 및 배포를 위한 사용료

다음의 월정사용료에 지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관리 곡수	월정 사용료
500곡 까지	100,000원
500곡 초과 1,000곡 까지	150,000원

관리 곡수	월정 사용료
1,000곡 초과 20,000곡 까지	매 1,000곡당 각 150,000원씩 가산한 금액
20,000곡 초과 시	매 2,000곡당 각 250,000원씩 가산한 금액

③ 가정용 노래반주기

가정 및 차량 등 비상업적인 장소에서 이용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노래반주기 및 그 저장매체의 복제 및 배포사용료는 제1호와 제2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신곡 사용료

$$5\text{원} \times \text{관리곡수} \times \text{지분율} \times \text{판매수량}$$

비고1) 이전 정산기간에 신곡사용료를 정산한 노래반주기 및 저장매체라 하더라도, 해당 정산기간에 동일 수록곡의 노래반주기 및 저장매체에 대한 판매수량이 있는 경우에는 신곡사용료를 정산한다.

2. 노래반주기 등의 복제 및 배포를 위한 사용료

가. DVD 및 MEMORY CARD 등 별도 저장매체를 판매한 경우

$$\text{저장매체 출고가} \times 9\%(\text{음악사용료율}) \times \text{공제계수} \times \text{판매수량} \times \text{음악저작물관리비율}$$

나. 음악저작물이 복제된 노래반주기를 판매한 경우

$$\text{노래반주기 출고가} \times 3.5\%(\text{음악사용료율}) \times \text{공제계수} \times \text{판매수량} \times \text{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1) 공제계수란 특허기술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출고가에서 공제하는 계수를 말한다.

출고가	공제계수
10만원 미만	1
10만원이상 20만원미만	0.9
20만원이상 50만원미만	0.8
50만원이상	0.7

④ 통신 노래반주기

상업적인 장소에서 스트리밍 방식의 전송을 통하여 노래반주기를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는 제1호와 제2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서비스 사용료

$$\text{매출액} \times 9\%(\text{음악사용료율}) \times \text{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1) 매출액이란 통신용 노래반주기 서비스 사업자가 노래반주 서비스 이용 업소에서 징수하는 영업상 수입의

총계를 말한다. 다만, 서비스 이용 노래반주기 1대당 1개월의 전송서비스 이용료가 11,000원 미만일 경우 동 금액을 하한가로 한다.

2. 노래반주기 등의 복제를 위한 사용료

다음의 월정사용료에 지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사용된 관리곡수에 따른 월정 사용료	
관리 곡수	월정사용료
500곡 까지	500,000원
500곡 초과 1,000곡 까지	1,000,000원
1,000곡 초과 20,000곡 까지	매 1,000곡당 각 1,000,000원씩 가산한 금액
20,000곡 초과 시	매 2,000곡당 각 1,800,000원씩 가산한 금액

⑤ 기타 노래반주기

노래반주기능이 부가적으로 탑재된 멀티미디어 기기 및 제1항 내지 제4항을 적용하기 곤란한 노래반주기의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6\text{원} \times \text{관리곡수} \times \text{지분율} \times \text{판매수량}$$

⑥ 제1항 제2호, 제2항 제2호 및 제4항 제2호에 의해 산출된 월정 사용료가 당해 사업자가 해당 정산기간 동안 판매한 노래반주기 1대당 곡당 사용료(5원)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해 산출되는 사용료를 납부한다.

$$5\text{원} \times \text{관리곡수} \times \text{지분율} \times \text{판매수량}$$

비고1) 판매수량은 당해 사업자가 해당 정산기간 동안 판매한 노래반주기 수량을 말한다.

⑦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각 제2호의 월정사용료 산정을 위한 관리곡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관리곡과 합산하여 산출하되, 2002년 5월 31일 이전에 정액제로 이용을 허락받은 곡은 관리곡수에서 제외한다.

⑧ 제3항 제2호의 사용료 산정 시, 2002년 5월 31일 이전에 정액제로 이용허락을 받은 음악저작물에 대해서는 다음의 비율에 따라 사용료에서 공제한다.

1. 공제 비율

정액제 승인곡 비율	공제비율
30% 이상	0.3
20% 이상 30% 미만	0.25
10% 이상 20% 미만	0.15
5% 이상 10% 미만	0.07
1% 이상 5% 미만	0.02

2. 정액제 승인곡 비율은 아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frac{\text{정액제 승인곡수}}{\text{관리곡수}} \times \text{지분율} \times 100\%$$

비고1) 관리곡수 및 정액제 승인곡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합산하여 산출하되, 정액제 승인곡 수가 불명확할 경우에는 공제비율을 이용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34조 [영화 사용료] ① 영화에 음악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복제·배포·공연 등을 일괄적으로 허락하는 경우의 곡당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300만원 + (\text{스크린당 곡단가} \times \text{개봉 첫날 스크린 수})] \times \text{지분율}$$

비고1) 스크린당 곡단가는 13,500원으로 한다.

비고2) 개봉 첫날 스크린 수는 영화진흥위원회 극장 입장권전산망 집계를 기준으로 한다.

비고3) 순제작비 10억 미만 영화의 경우, 위 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사용료의 1/10로 한다.

비고4) 저작권격권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저작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영화에 음악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복제와 공연 등을 별도로 허락하기로 특약이 있는 경우 곡당 복제사용료는 아래 표의 금액에 지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사용량에 따른 구분	5초 이상 1분 미만	1분 이상 5분 미만	5분 이상
영화제 출품	4만원	8만원	12만원

비고1) 별도 영화개봉(공연)시의 공연사용료는 (스크린당 곡단가 × 개봉 첫날 스크린 수) × 지분율로 하고, 위 ①항의 비고1) 내지 비고4)를 준용한다.

제35조 [광고에 대한 복제사용료] ① 상업용 광고에 음악저작물을 이용할 경우의 1곡당 복제 사용료는 다음의 금액에 지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단, 저작권격권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저작자의 사전 승낙을 얻어야 한다.

(단위: 만원)

기간 \ 범위	지상파TV	라디오	케이블TV (위성TV, 지상파 DMB포함)	인터넷	극장	기타(옥외, 지하철차량 등)
1개월 미만	150	100	100	30	30	50
3개월 미만	250	150	150	50	50	100
6개월 미만	350	250	250	70	70	125
9개월 미만	450	350	350	80	80	150
12개월 미만	550	450	450	100	100	170

② 12개월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다.

$$12개월 사용료 + (\text{해당 개월수 사용료} \times 80\%)$$

③ 상업용 광고가 아닌 공익광고의 경우에는 제1항 사용료의 50%로 하되, 저작권격권과 관련된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한다.

제36조 [출판] ① 음악출판물(음악도서, 교본 및 피스 등 음악저작물을 주로 이용하는 출판물에 복제할 경우)의 사용료

1. 곡당사용료[판매가 × 10%(음악사용료율) ÷ 수록곡수 × 음악저작물 게재비율] × 관리곡수 × 지분율 × 제작수량 × 할인율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곡당사용료가 다음의 하한가 미만일 경우에는 동 금액으로 한다.

구분	하한가
판매용 출판물	5원
비매용 출판물	3원

비고1) 할인율이란 제작·판매 과정에서 예상되는 반품, 재고, 폐기 등을 감안하여 할인하는 비율을 말하며, 제작자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비고2) 음악저작물 게재비율이란 출판물의 총 면수 중 음악저작물이 게재된 면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② 일반 출판물(출판물이나 휘장, 수건, 패널, 포스터 등 음악저작물을 부수적으로 이용하는 출판물에 복제할 경우)의 1곡당 사용료는 다음의 금액에 지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부수	10,000미만	10,000이상~ 30,000미만	30,000이상~ 50,000미만	50,000이상~ 100,000미만	100,000이상~ 300,000미만	300,000이상~ 500,000미만	500,000이상
판매용	18,000원	36,000원	60,000원	96,000원	144,000원	180,000원	240,000원
비매용	10,000원	21,000원	36,000원	57,000원	86,000원	108,000원	144,000원

③ 결합출판물(사운드북, 동요카드 등 음악출판물과 타 매체가 결합된 상품에 복제할 경우)의 사용료

1. 곡당사용료[판매가 × 5%(음악사용료율) ÷ 수록곡수] × 관리곡수 × 지분율 × 제작수량 × 할인율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곡당 사용료가 다음의 하한가 미만일 경우 동 금액으로 한다.

구분	하한가
판매용 출판물	5원
비매용 출판물	3원

비고1) 할인율이란 제작·판매 과정에서 예상되는 반품·재고·폐기 등을 감안하여 할인하는 비율을 말하며, 제작자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37조 [선거홍보용 음악사용료] 선거 홍보용으로 음악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는 다음의 금액에 지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저작인격권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저작자의 사전 승낙을 얻어야 한다.

선거의 종류	선출대상	곡당 사용료
대 통 령 선 거	대통령	2,000,000원
정 당 용	국회의원 등	2,000,000원
광역단체장선거	광역시장, 도지사	1,000,000원
기초단체장선거	시장, 구청장, 군수	500,000원
국회의원선거	국회의원	500,000원
광 역 의 원	광역시, 도의원	250,000원
기 초 의 원	시·군·구의원	125,000원
교육감 선거	시, 도 교육감	500,000원
교육의원 선거	시, 도 교육의원	250,000원

제7장 대여 사용료

제38조 [음반대여사용료] 음반대여에 따른 음악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text{총매출액} \times 5\%(\text{음악사용료율}) \times \text{음악저작물관리비용}$$

제8장 보 칙

제39조[기타사용료] ① 사용료 징수규정이 없는 서비스의 경우 협회는 이용자와 사용요율 또는 금액을 협의하여 이용허락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용허락을 한 경우 협회는 이용허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협회가 제1항의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계약을 갱신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다시 이용허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용료 징수규정에 근거하여야 한다.

제39조의 2 [상호협의 등 관련 보칙] ① 본 규정에 따라 협회와 이용자가 협의하여 정할 사항과 관련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정에 따른다.

② 본 규정의 해석 또는 서비스에 적용할 조항과 관련하여 협회와 이용자 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해석에 따른다.

제40조 [가산금] 협회와 연간 포괄사용허락 계약을 체결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자는 음악저작물의 사용내역(프로그램명, 저작물명, 저작자명, 가수명, 이용횟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2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와 관련하여 협회는 방송사가 사용내역을 원활히 제출할 수 있도록 주제곡, 배경음악, 시그널 뮤직에 대한 자료(음원 또는 특징점 정보 : DNA)를 방송사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제8조 내지 제10조, 제13조, 제14조의 공연사용료
2. 제16조 내지 제22조의 방송사용료
3. 제23조 내지 제25조의 전송사용료

- 4. 제27조의 웹캐스팅사용료
- 5. 제33조의 복제사용료

부 칙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12.22)

제1조(시행일 및 경과규정) ① 이 개정규정은 2016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23조 제2항 제1호 및 제23조의2 제3항의 서비스와 관련하여 2016년 2월 21일 이전에 자동결제 방식으로 이용하는 가입자에 대해서는 2016년 8월 31일까지 가입당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2016.1.25)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3.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10.19)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3.26)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8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6.20)

제1조(시행일 및 경과규정) ① 이 개정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 제23조의2, 제23조의3의 경우에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23조 및 제23조의2의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 개정규정 시행(2019.1.1.) 이전 자동결제 방식의 가입자는 해당상품이 존재하고 자동결제를 유지하는 경우에 종전의 규정을 계속 적용한다.

부 칙 (2019.2.25)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9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1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5.9)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 제2항 비고4)의 경우, 2022년 6월부터 2026년 5월 판매분(4년)까지만 적용한다. <개정 2024. 7. 31.>

부 칙 (2023.6.26)

제1조(시행일 및 경과규정) ① 이 개정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

행한다.

② 제39조의 경우에는 개정규정 시행 이후 이 조항에 따라 신규로 이용허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3.9.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7.31)

제1조(시행일 및 경과규정) ① 이 개정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3.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5.7.)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6.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02 사용료 분배규정

2014년 09월 12일 제정 2017년 05월 18일 개정
2015년 04월 13일 개정 2025년 06월 24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사)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이하 “본 협회”라 한다.)가 신탁 받은 음악저작물을 관리하여 얻어진 대가로 징수한 저작물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의 분배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계권리자 : 한 저작물에 관계되는 작곡자, 작사자, 편곡자, 역사자(이들의 저작재산권의 승계자를 포함한다) 또는 음악출판자를 말한다.
2. 저작물자료 : 작품신고, 편곡신고, 역사신고, 국제표, 기타 이에 준하는 저작물의 관계권리자, 분배율을 기재한 자료를 말한다.
3. 관리저작물 : 관계권리자가 본 협회에 신탁하여 등록된 저작물을 말하며, 상호관리계약을 체결한 단체가 관리하는 저작물을 포함한다.
4. 분배자료 : 사용자로부터 제출된 이용곡목보고서, 외국저작권관리 단체(이하 ‘외국단체’라 한다)로부터 송부된 분배명세서, 그 밖의 저작물 사용내역을 기재한 자료를 말하며, 본 협회가 사용료 분배를 위해 관계권리자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자료와 외부기관을 통해 조사하여 얻은 자료를 포함한다.
5. 국제표 : 외국 음악저작권단체와 관리저작물에 대한 권리자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 작성되는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표준양식을 말한다.
6. 분배대상사용료 : 각 분배기에 있어서 분배대상이 되는 사용료를 말한다.
7. 분배대상저작물 : 분배대상사용료의 분배대상이 되는 관리저작물을 말한다.
8. 큐시트(Cue-sheet) : 영화나 방송프로그램의 시작부터 끝까지의 전 과정을 방송진행표를 바탕으로 저작물, 그 관계권리자 및 사용시간 등을 일정한 형식에 따라 기재한 자료를 말한다.

- 9. 곡별사용료 : 저작물별로 금액을 산정하고 징수하는 방식의 사용료를 말한다.
- 10. 포괄사용료 : 곡별사용료 이외의 방법으로 금액을 산정하고 징수하는 사용료를 말한다.
- 11. 실연 : 실연자가 음악저작물을 가창·연주 등의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 12. 음반 : 음(음성·음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을 말한다(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에 따른 ‘음원’을 포함한다).

제3조 [분배대상자] ① 사용된 관리저작물의 관계권리자는 해당 사용료의 분배대상이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작곡만으로 이루어진 저작물에 작곡자의 허락을 얻어 가사를 붙여 사용할 경우 작사자는 해당 가사가 사용된 경우에 한해 분배의 대상이 된다. 다만, 해당 작사자가 관계권리자가 되는 것을 다른 관계권리자가 인정할 경우 계속 분배대상이 된다.

③ 편곡자 또는 역사자는 해당 편곡 또는 역사가 사용되었을 경우에만 분배대상이 된다.

④ 신탁계약 체결 및 해지에 의한 해당 월의 사용료 분배대상자 확정 기준은 신탁계약 체결일과 해지(효력발생일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1. 분배자료가 일자별로 생성되지 않을 경우에는 신탁계약 체결자는 체결일 당월초일을 기준으로 하고, 신탁계약 해지자는 해지일 당월말일자로 기산하여 분배대상자를 확정한다.
- 2. 승계(양도 등 특정 승계와 포괄승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음악출판계약 등, 권리의 변동이 이루어질 경우, 권리변동으로 인한 신규 신탁계약 체결일이 15일 이후에는 익월 분배대상자로 확정한다.

제4조 [분배대상 저작물] 분배대상저작물은 분배대상사용료의 징수기간에 사용된 저작물이나 징수대상이 된 저작물로 한다.

제5조 [관계권리자의 확정방법] ① 관계권리자는 저작물자료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확정한다. 다만, 저작물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본 협회가 관계권리자로 인정할 수 있었던 자는 해당 저작물의 관계권리자로서 확정할 수 있다.

② 저작물자료가 없는 등의 이유로 본 협회가 제3조 제4항에서 정하는 확정기준일까지 관계권리자를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료 분배를 보류할 수 있다.

제6조 [분배대상 저작물 자료 확정] 각 분배기에 있어서 분배대상 저작물 자료확정은 분배기(매월 23일) 당월 10일까지 등록된 저작물 자료에 의거 확정하고 분배한다.

제7조 [분배자료] ① 사용료의 분배는 분배자료에 의하여 분배한다.

② 분배자료에 관리저작물로 기재되어 있다하더라도 본 협회가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여 분배대상 저작물이 아니라고 인정한 것은 분배대상 저작물에서 제외한다.

제8조 [분배계산방법] ① 포괄 사용허락 방식의 분배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다.

$$(\text{각 저작물에 대한 분배액}) = \frac{\text{각 저작물의 분배점수}}{\text{분배대상 저작물의 분배점수의 합}} \times \text{분배대상 사용료}$$

② 곡별 사용허락 방식의 분배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다.

$$(\text{각 저작물에 대한 분배액}) = \frac{\text{분배대상사용료}}{\text{승인곡수}}$$

제9조 [분배의 조정] 사용료가 과오 분배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당해 관계권리자에게 통보하고, 익월 사용료 분배 시 그 차액을 분배받을 사용료로부터 환수 또는 추가하여 분배할 수 있다.

제10조 [분배 보상 청구 및 지급] ① 분배대상 저작물의 관계권리자가 해당 저작물에 관련된 사용료의 분배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저작물이 사용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관계 자료를 첨부해서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전 항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검증하여 관계권리자로 확인된 경우, 해당 사용료 분배 시 분배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분배 보류금액에서 지급한다. 다만, 11조 제1항의 매체를 제외한 경우는 제11조 제2항의 방식으로 분배보상금을 지급한다.

③ 저작권 신탁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관계권리자와 매 분배기에 관계권리자이나 협회에 저작물 자료를 등록하지 않아 사용료 분배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소급하여 분배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1조 [분배보상 청구에 대한 보류 금액] ① 저작물 사용료 분배시 저작물 및 저작권자 정보가

부정확하여, 미 매칭되거나 분배자료에서 누락되어 분배를 받지 못한 경우의 분배보상을 위하여 다음에 정하는 비율의 사용료만큼 매 분배기 분배대상금액에서 선공제하여 분배 보상금으로 한다.

사용료명	방 송	전송/디지털음성송신
보류금액비율	4% 이내	2% 이내

- ② 전항에 의거 분배 보류금을 공제하지 않은 타 매체에 대해서는 차기 분배대상 금액에서 해당 저작물을 차기 분배자료에 추가하여 분배보상금을 지급한다.
- ③ 동조에서 정한 보류금액 중 해당 분배기로부터 3년간 추가로 확인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남은 보류금은 매체별로 기 분배한 당해 연도 곡별분배금액 비율로 익년도 4월에 분배한다.
- ④ 지급하여야 할 보상금이 해당 분배기 보류금액을 초과하여 분배 보류금이 부족한 경우, 부족한 분배보상금은 누적기간이 오래된 분배 보류금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하여 지급한다.

제12조 [소송 등을 통해 징수한 사용료의 분배] 소송 또는 이용자와의 합의로 과거 사용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제출한 분배자료에 의거 분배한다. 다만, 분배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제21조, 제26조, 제31조, 제34조에 따라 분배한다.

- 제13조 [국제기준]** ① 관계권리자가 외국 저작권 관리단체에 속하는 경우에는 협회가 외국 상호관리단체와 체결하고 있는 상호관리계약에서 정하는 기준 또는 CISAC(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분배할 수 있다.
- ② 미확인 외국저작물은 미확인 저작물 리스트를 작성하여 국내(외국 저작권을 관리하는) 음악출판사 등의 권리자와 상호관리계약 단체에 회람하여 상호관리계약 단체가 제공하는 정보로 관계권리자를 확정할 수 있다.

제2장 분 배 율

제14조 [분배율] 저작물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관계권리자에게 분배하는 비율은 아래와 같

다. 다만, 관계권리자간 분배비율에 관한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분배한다.

관계권리자	분배율	관계권리자	분배율
1. 작곡자	12/12	7. 작곡자	8/12
2. 작곡자	10/12	음악출판자	4/12
편곡자	2/12	8. 작곡자	6/12
3. 작곡자	6/12	편곡자	2/12
작사자	6/12	음악출판자	4/12
4. 작곡자	5/12	9. 작곡자	4/12
작사자	5/12	작사자	4/12
편곡자	2/12	음악출판자	4/12
5. 작곡자	5/12	10. 작곡자	3/12
작사자	5/12	작사자	3/12
역사자	2/12	편곡자	2/12
6. 작곡자	5/12	음악출판자	4/12
작사자	5/12	11. 작곡자	3/12
편곡자	1/12	작사자	3/12
역사자	1/12	역사자	2/12
		음악출판자	4/12
		12. 작곡자	3/12
		작사자	3/12
		편곡자	1/12
		역사자	1/12
		음악출판자	4/12

제3장 공연사용료

제15조 [공연사용료의 구분 및 분배기] 공연사용료의 구분 및 분배대상 사용료는 아래와 같다.

공연구분	분배기	분배대상 사용료	로그자료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단란주점의 공연사용료	5월	1월 사용료	1월
		2월 사용료	2월
		3월 사용료	3월
	8월	4월 사용료	4월
		5월 사용료	5월
		6월 사용료	6월
	11월	7월 사용료	7월

공연구분		분배기	분배대상 사용료	로그자료
			8월 사용료	8월
			9월 사용료	9월
		2월	10월 사용료	10월
			11월 사용료	11월
			12월 사용료	12월
기 타 공 연 사 용 료	항공사, 기차, 선박, 경기장 등의 공연사용료	7월 11월	전년도에 징수한 사용료	
	호텔, 콘도, 백화점, 대형마트, 유원시설 등의 공연사용료	4월 10월	7 ~ 12월에 징수한 사용료 1 ~ 6월에 징수한 사용료	
	연주회(무대공연) 및 영화 등의 공연사용료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1월에 징수한 사용료 2월에 징수한 사용료 3월에 징수한 사용료 4월에 징수한 사용료 5월에 징수한 사용료 6월에 징수한 사용료 7월에 징수한 사용료 8월에 징수한 사용료 9월에 징수한 사용료 10월에 징수한 사용료 11월에 징수한 사용료 12월에 징수한 사용료	

제16조 [유흥·단란주점 사용료 분배방법] ① 유흥·단란주점 사용료의 분배자료는 매월 수집된 다음 각 호의 자료로 한다.

1. 유흥·단란주점에 설치된 노래반주기에 녹음 수록된 관리저작물(영업용 노래반주기 판매 매출 상위 2개 업체와 연주인용 노래반주기 매출 상위 1개 업체 수록곡에 한함). 다만, 노래반주기의 곡번호를 별도로 할당받아 수록된 경우에는 동일한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각각을 분배대상 저작물로 한다.
2. 유흥·단란주점에 기 설치된 네트워크 기능이 장착된 온라인 노래반주기에서 수집된 전체 로그데이터.
3. 협회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지자체(시, 군, 구)별로 관리 업소수에 비례하여, 오프라인 노래반주기 업소 중 샘플링 업소로 선정된 500~600개 업소에서 수집한 로그데이터
4. 로그데이터 수집 샘플 업소는 매년 총 샘플업소의 25% 이상을 교체하여야 하며, 샘플

업소로 선정된 업소의 사용로그는 4년 이상 적용할 수 없다.

5. 샘플업소를 정하는 경우 지자체(시, 군, 구)별 관리업소의 비율에 따라 정하고, 교체를 할 경우에는 동 비율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시, 군, 구에 표본대상 업소가 없거나, 업주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근지역 시, 군, 구의 업소를 선정할 수 있다.
 6. 표본대상 업소 선정 기준과 표본 업소 선정은 사무국이 결정하여 전무이사가 이사회에 보고한다.
- ② 전 항에서 정한 분배대상 사용료의 분배자료 적용 비율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수록곡	온라인 데이터	오프라인 데이터
	30%	70%	

단,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분배대상 사용료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수록곡	온라인 데이터
	30%	70%

비고1) 수록곡의 국내·외곡 분배적용 비율은 로그데이터의 국내·외 이용비율을 근거로 적용한다.

비고2) 노래반주기에서 수집하는 로그데이터 중 다음의 경우는 분배대상에서 제외한다.

1. 1분 미만 사용된 로그데이터. 다만, 전체 곡 길이가 1분 미만인 곡은 제외
2. 동일한 노래반주기에서 1일 동안 동일곡의 로그데이터가 6회 이상 확인된 경우, 6회 이상의 로그데이터.
3. 로그수집 일자과 시간정보가 표시되지 않는 노래반주기는 1개월 동안 동일한 노래반주기에서 동일곡의 로그데이터가 151회 이상 확인된 경우, 151회 이상의 로그데이터.
4. 업소 영업시간(통상 20시부터 익일 04시까지) 이외에 사용된 로그데이터

비고3) 시간정보가 표시되지 않는 노래반주기에서 발생한 로그데이터는 횡수의 90%를 실제 사용된 횡수로 간주하여 분배자료로 사용한다.

- ③ 유흥·단란주점의 공연사용료는 지부별로 징수한 금액을 합산하여 각 지부별 발생한 로그데이터를 분배자료로 지부별로 구분하여 분배한다.
- ④ 온라인 노래반주기가 설치된 업소에서 징수된 사용료는 온라인 로그데이터로, 오프라인 노래반주기가 설치된 업소에서 징수된 사용료는 오프라인 로그데이터로 구분하여 분배한다. 단,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분배대상 사용료는 노래반주기의 구분에 관계없이 온라인 로그데이터만을 기준으로 분배한다.
- ⑤ 본조 제1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오프라인 노래반주기 로그 수집은 연 6회(씩수달) 수집하며, 수집한 로그데이터는 사용료 분배시 분배자료로 2개월간 사용한다. 단, 본항은 2016년 1월 1일 이후의 분배부터 적용한다.

제17조 [노래연습장 사용료 분배방법] ① 노래연습장 사용료의 분배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자료로 한다.

1. 노래연습장에 설치된 노래반주기에 녹음 수록된 관리저작물(영업용 노래반주기 판매 매출 상위 2개 업체 수록곡에 한함). 다만, 노래반주기의 곡번호를 별도로 할당받아 수록된 경우에는 동일한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각각을 분배대상 저작물로 한다.
2. 노래연습장에 설치된 네트워크 기능이 장착된 온라인 노래반주기에서 수집된 전체 로그데이터.
3. 협회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지자체(시, 군, 구)별로 관리 업소 수에 비례하여, 오프라인 노래반주기 업소 중 샘플링 업소로 선정된 500~600개 업소에서 수집한 로그데이터.
4. 로그데이터 수집 샘플 업소는 매년 총 샘플업소의 25% 이상을 교체하여야 하며, 샘플업소로 선정된 업소의 사용로그는 4년 이상 적용할 수 없다.
5. 샘플업소를 정하는 경우 지자체(시, 군, 구)별 관리업소의 비율에 따라 정하고, 교체를 할 경우에는 동 비율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시, 군, 구에 표본대상 업소가 없거나, 업주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근지역 시, 군, 구의 업소를 선정할 수 있다.
6. 표본대상 업소 선정 기준과 표본 업소 선정은 사무국이 결정하여 전무이사가 이사회에 보고한다.

② 전 항에서 정한 분배대상 사용료의 분배자료 적용 비율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수록곡	온라인 데이터	오프라인 데이터
	30%	70%	

비고1) 수록곡의 국내·외곡 분배적용 비율은 로그데이터의 국내·외 이용비율을 근거로 적용한다.

비고2) 노래반주기에서 수집하는 로그데이터 중 다음의 경우는 분배대상에서 제외한다.

1. 1분 미만 사용된 로그데이터. 다만, 전체 곡 길이가 1분 미만인 곡은 제외
2. 동일한 노래반주기에서 1일 동안 동일곡의 로그데이터가 8회 이상 확인된 경우, 8회 이상의 로그데이터
3. 로그수집 일자과 시간정보가 표시되지 않는 노래반주기는 1개월 동안 동일한 노래반주기에서 동일곡의 로그데이터가 211회 이상 확인된 경우, 211회 이상의 로그데이터.
4. 업소 영업시간(통상 18시부터 익일 04시까지) 이외에 사용된 로그데이터

비고3) 시간정보가 표시되지 않는 노래반주기에서 발생한 로그데이터는 횡수의 90%를 실제 사용된 횡수로 간주하여 분배자료로 사용한다.

③ 노래연습장의 공연사용료는 지부별로 징수한 금액을 합산하여 각 지부별 발생한 로그

데이터를 분배자료로 지부별로 구분하여 분배한다.

④ 온라인 노래반주기가 설치된 업소에서 징수된 사용료는 온라인 로그데이터로, 오프라인 노래반주기가 설치된 업소에서 징수된 사용료는 오프라인 로그데이터로 구분하여 분배한다.

⑤ 본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오프라인 노래반주기 로그 수집은 년 6회(작수 달) 수집하며, 수집한 로그데이터는 사용료 분배시 분배자료로 2개월간 사용한다.

⑥ 본조 제2항, 제4항, 제5항의 규정은 제16조 제2항, 제4항, 제5항의 단서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18조 [게임방 및 노래교실 사용료 분배방법] 게임방 및 노래교실에서 징수한 사용료 분배는 노래연습장 분배대상사용료에 포함하여 분배하고, 분배기 및 분배자료는 노래연습장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19조 [레스토랑 및 무도장 등의 사용료 분배방법] 레스토랑, 무도학원, 카바레, 스탠드바, 무도장, 에어로빅장 등에서 징수한 사용료 분배는 유흥주점 분배대상사용료에 포함하여 분배하고, 분배기 및 분배자료는 유흥주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20조 [호텔, 백화점 등의 사용료 분배방법] ① 호텔(콘도미니엄 등 포함), 백화점(대형마트, 쇼핑센터 등 포함)의 사용료는 각각 구분하고, 지부별로 징수한 금액을 합산하여 분배한다.
 ② 호텔, 백화점 등의 공연사용료의 분배자료는 호텔, 백화점 등에 음악을 공급하고, 협회와 계약을 체결한 매장음악 서비스 업체의 해당년도 로그데이터를 분배자료로 한다.
 ③ 제2항에서 로그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위 2개 업체의 해당년도 로그데이터를 분배자료로 한다.
 ④ 호텔, 백화점의 공연사용료 로그데이터의 수집은 년 2회(2월, 8월) 수집한다.

제21조 [기타 공연사용료의 분배방법] 기타 공연사용료는 사용자로부터 제출된 분배자료에 의거 분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분배자료 등이 사용료 입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유사한 사용매체의 상위 2개 업체의 해당년도 로그데이터를 분배자료로 한다.

제4장 방송사용료

제22조 [방송사용료의 구분 및 분배기] 방송사용료의 분배대상 저작물 구분 및 분배기는 아래와 같다.

방송구분	분배기	분배대상 저작물
공영방송사 및 민영방송사의 방송사용료	9월	1/4분기(1월~3월)에 징수한 사용료
	12월	2/4분기(4월~6월)에 징수한 사용료
	3월	3/4분기(7월~9월)에 징수한 사용료
	6월	4/4분기(10월~12월)에 징수한 사용료
TV 중계유선, 음악유선방송, CATV PP, SO, 위성방송, DMB방송, IPTV 등	7월 11월	전년도 징수한 사용료

제23조 [지상파, CATV 등 방송사용료의 분배구분] 방송사용료의 분배는 저작물이 사용된 매체(TV, 라디오 구분) 및 방송사별로 각각 구분하여 분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4조 [지상파, CATV 등 방송사용료의 분배자료] ① 방송사용료의 분배는 다음 각 호의 분배자료에 따라 분배한다.

1. 방송사(사용자)로부터 제출된 분배자료(Cue-sheet 포함)
 2. 방송모니터 전문 기관이 모니터한 자료
 3. 방송사로부터 제출된 분배 자료 및 방송 모니터 전문기관이 모니터한 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저작물은 분배대상저작물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권리자가 방송에 사용되었음을 음악사용확인서(Cue-sheet 등) 등으로 입증할 경우 분배대상저작물에 포함한다.
- ② 제1항의 자료는 방송사(사용자)로부터 제출된 분배자료(Cue-sheet 포함)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방송사로부터 제출된 분배자료가 없을 경우, 방송모니터 전문 기관이 모니터한 자료를 우선 적용한다.
- ③ 제1항의 방송사(사용자)로부터 제출된 'Cue-sheet'와 권리자로부터 제출된 '음악사용확인서(Cue-sheet포함)'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료 분배 보류 및 사용료 지급 중지 등 검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사용자(방송사)가 분배자료를 누락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2. 권리자가 제출한 ‘음악사용확인서(Cue-sheet 포함)와 방송모니터 전문 기관이 모니터한 자료 및 방송사(사용자)로부터 제출된 분배자료(Cue-sheet 포함)가 현저히 상이하거나 허위 자료일 경우

제25조 [지상파, CATV 등 방송사용료의 분배점수] 분배대상이 된 각 저작물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점수를 부여해서 각각의 점수를 곱한 것을 그 저작물의 분배 점수로 한다.

1. 사용 형태별 점수

사용형태	실연	음반
점수	4	1

2. 곡당 사용 시간별 점수

사용시간	점 수
30초 이하	1
31초~90초	2
91초~150초	3
151초 이상	4

3. 다음 방송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분배대상에서 제외한다.

- 가. 방송 개시 전 테스트 전파
- 나. 방송국 PR-SPOT
- 다.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사이에 보내는 방송
- 라. 기타 이에 준하는 방송

비고1) 저작물의 사용시간, 사용방법, 종류 등이 특이하여 위에 정한 저작물 점수에 의거해서 점수계산을 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저작물 점수를 별도로 정할 수가 있다.

제26조 [방송사용료 분배방법의 예외] ① 방송사용료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년도의 지상파방송 3사(KBS, MBC, SBS)의 라디오, TV 분배자료로 분배한다.

1. CATV SO사, 중계유선방송사에서 징수한 사용료, 그리고 연간 사용료가 3,600만원 미만인 방송사 및 PP사에서 징수한 사용료. 다만, 특정 장르의 보호를 위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특수 채널은 별도로 분배한다.
2. 방송사로부터 제출된 Cue-sheet 또는 방송모니터 전문기관이 모니터한 자료가 없는 경우

3. 사용료는 입금되었으나, 입금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분배자료를 제공받을 수 없는 방송 매체(위성방송, DMB방송, IPTV 등)로부터 징수한 사용료
4. 방송에서 사용된 분배자료가 일부 자료만이 확보되어, 곡별사용료 분배단가 또는 분배점수 산출이 불가능하여 분배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다만, CATV PP사의 경우에는 제3항에 의거하여 분배할 수 있다.

② 전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용료 분배는 분배대상 금액을 방송3사(KBS, MBC, SBS)의 징수금액 비율로 구분하고, 각 방송사별 기 분배한 동일한 분배점수를 적용하여, 사용료를 분배한다.

③ CATV PP사에서 편성된 방송물 중[지상파 TV방송3사(KBS, MBC, SBS)의 방송물을 제외한] 일부 방송물의 자료만이 확보되어 곡별사용료 또는 분배단가의 산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아래 산식에 의하여 일부자료 확보 방송물 분배대상금액으로 확정하여 분배할 수 있으며, 자료의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방송물의 분배사용료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하여 분배한다.

다만, 확보된 일부자료는 방송사에서 제공된 것만 인정하며, 징수기간 해당 채널 총 방송 송출시간이 불명확한 경우 1년을 기준으로 광고방송시간 공제율(20%)을 적용한다.

$$\frac{\text{일부 자료확보 방송물 분배대상금액}}{\text{분배대상금액}} = \text{해당년도 징수금액} \times \frac{\text{일부 자료확보 방송물 송출시간}}{\text{징수기간 해당 채널 총 방송송출시간}}$$

④ 제3항에 따라 확보된 분배대상금액의 분배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text{분배사용료} = \text{일부 자료확보 방송물 분배대상금액} \times \frac{\text{해당곡 사용횟수}}{\text{일부 자료확보 방송물 총 음악사용 횟수}}$$

다만, 일부자료확보 방송물의 총 음악사용횟수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아래 각 호를 적용한다.

가. 해당방송물의 표본을 2개 이상 선정하여, 평균횟수 적용

나. 해당 방송물의 표본 확보가 불가능할 경우 지상파(KBS, MBC, SBS) 방송사에서 방송한 방송물 중 분류단위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송물의 표본을 2개 이상 선정하여 방송물의 사용시간에 비례한 평균횟수 적용

⑤ 제4항에 의한 사용료 분배시 이미 해당채널의 분배가 종료된 이후에는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하여 지급하며, 해당 보류금이 모두 소진된 경우, 해당 채널의 차기 분배대상금액에서 공제하여 지급한다.

- ⑥ 외국 방송 채널이 국내의 CATV 또는 위성방송에서 사용되었으나, 분배자료를 제공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방송물 분배대상금액에서 수수료 등을 공제한 후, 해당 방송물의 최초 방영 국가에 속한 상호관리단체로 분배할 수 있다.
- ⑦ 방송 프로그램을 DVD 등 유형물의 형태로 제작하여 판매한 사용료에 대하여 방송사가 분배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에서 기 분배한 동일한 분배점수를 적용하여 분배한다.
- 다만, 기 분배된 자료가 없을 경우 해당기간 방송4사(KBS, MBC, SBS, EBS) 본사 TV자료의 기 분배한 동일한 분배점수를 적용하여 분배한다.
- ⑧ 음악유선방송사용료는 해당년도의 지상파방송 3사(KBS, MBC, SBS)의 라디오의 일 반음악 자료로 분배한다.

제5장 복제 및 대여사용료

제27조 [복제사용료의 구분과 분배기 등] 복제사용료의 구분, 분배기 및 분배대상저작물, 분배 대상사용료는 아래와 같다.

복제사용료의 구분	분배대상저작물	분배기	분배대상 사용료
복제사용료	이용자가 신청하고 협회가 승인한 저작물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1월에 사용한 복제사용료 2월에 사용한 복제사용료 3월에 사용한 복제사용료 4월에 사용한 복제사용료 5월에 사용한 복제사용료 6월에 사용한 복제사용료 7월에 사용한 복제사용료 8월에 사용한 복제사용료 9월에 사용한 복제사용료 10월에 사용한 복제사용료 11월에 사용한 복제사용료 12월에 사용한 복제사용료
노래반주기 월정 사용료, 판매사용료	정산기간 말일을 기준으로 해당 업체 노래반주기에 수록되어 있고, 협회가 승인한 저작물	11월	전년도 4/4분기부터 당해 연도 3/4분기까지 징수한 사용료

비고1) 노래반주기 월정 사용료, 판매사용료 분배에서 2002년 6월 이전에 정액제로 승인된 곡에 대해서는 분배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8조 [대여사용료의 분배방법] 대여사용료는 분배자료가 확보되고 사용료가 징수된 후 3개월 이내에 사용자로부터 제출된 분배자료에 의거 분배한다.

제6장 전송사용료

제29조 [전송사용료의 구분 및 분배기] 전송사용료의 구분과 분배기는 아래와 같다.

전송의 구분	분배기
다운로드 서비스	각 업체별로 분배자료가 확보되고, 사용료가 징수된 후 3개월 이내에 분배한다.
스트리밍 서비스	
다운로드/스트리밍 혼합 등 기타 서비스	

제30조 [전송사용료 분배 방법] ① 전송사용료는 저작물이 사용된 업체별로 구분하여 분배한다.
 ② 전송사용료는 사용자로부터 제출된 로그데이터에 의해 분배한다.

제31조 [전송사용료의 분배 방법 예외] ① 전송사용료가 징수되었으나 분배자료가 없는 각 호의 경우에는 매출 상위 3개 업체의 해당년도 로그데이터를 분배자료로 사용하여 분배한다.

1. 사용자가 로그데이터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로그데이터가 제출되었으나 로그자료 등이 미기재 되어 분배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② 전 항에 의한 분배 시 실제 전송에 이용되었으나, 분배받지 못한 관계권리자는 제10조에 의거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분배자료가 없는 방송물재전송(VOD 등) 서비스사용료는 분배대상금액을 방송3사(KBS, MBC, SBS)의 징수금액 비율로 구분하고 각 방송사별 기 분배한 동일한 분배점수를 적용하여, 해당년도의 지상파3사(KBS, MBC, SBS)의 라디오, TV 분배자료로 분배한다.

제7장 웹캐스팅사용료

제32조 [웹캐스팅사용료의 구분 및 분배기] 웹캐스팅사용료의 분배대상 저작물 구분 및 분배기는 아래와 같다.

웹캐스팅의 구분	분배기	분배대상저작물
방송사업자동시방송 개인방송 매장음악서비스 등	7월 11월	전년도 징수한 사용료

제33조 [웹캐스팅사용료 분배 방법] ① 웹캐스팅사용료는 저작물이 사용된 업체별로 구분하여 분배한다.

② 웹캐스팅사용료는 사용자로부터 제출된 로그데이터에 의해 분배한다.

제34조 [웹캐스팅사용료 분배 방법 예외] ① 웹캐스팅사용료 중 방송사업자동시방송 및 개인방송등과 관련한 사용료가 징수되었으나 분배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분배대상 금액을 방송3사(KBS, MBC, SBS)의 징수금액 비율로 구분하고, 해당년도의 지상파방송 3사(KBS, MBC, SBS)의 라디오, TV 분배자료로 분배한다.

② 웹캐스팅사용료 중 매장음악서비스와 관련한 사용료가 징수되었으나, 분배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분배자료를 제출한 해당 서비스 업체 중 저작권 사용료 납부 상위 3개 업체의 로그데이터를 분배자료로 한다.

제8장 보 칙

제35조 [외국단체에 대한 사용료의 분배] 외국단체에 대한 사용료의 분배는 연 4회(2, 5, 8, 11월) 분배한다.

제36조 [외국단체로부터 수납한 사용료의 분배방법] ① 외국 상호관리계약단체로부터 수납한 사용료는 단체별로 구분하여 해당 단체에서 제출된 분배자료에 의거 분배한다.

② 분배자료가 없거나 일부만 확보되어 분배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년도에

외국단체로부터 수납하여 기 분배한 전체 곡별분배금액 비율에 의거 분배한다.

다만, 국내 방송프로그램이 외국 지역에서 CATV 또는 위성방송으로 사용되었으나 분배 자료를 제공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KBS , MBC, SBS의 분배자료를 이용하며, 각 자료의 분배점수는 제25조(지상파, CATV 등 방송사용료의 분배점수)에 의거하여 분배한다.

제37조 [기타 분배방법] 본 규정 각 조항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나 적절한 분배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사용료의 산출방법, 징수한 사용료액, 사용된 저작물수, 유사한 사용매체의 분배자료 등을 참작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분배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제38조 [분배기의 변경] 각 장에서 정한 분배기에 분배대상 사용료에 대해 분배하지 못할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분배기를 변경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015. 4. 13)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017. 5. 18)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025. 6. 24)

03 관리수수료 규정

2014년 09월 12일 제정 2025년 06월 24일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이하 '협회')의 음악저작권 신탁 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수료(이하 '관리수수료'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리수수료] 관리수수료는 별지에서 정하는 요율의 범위 내에서 매년 이사회의 의결로 정하여 총회에 보고한 요율에 사용료를 곱하여 얻은 액으로 한다.

제3조 [관리수수료의 공제시기] 관리수수료는 사용료 분배 시 공제한다. 다만, 경영여건 등에 따라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료 징수 시 관리수수료의 50% 범위 내에서 미리 공제할 수 있다.

제4조 [규정의 개정] 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총회에 보고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을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구분		관리 수수료율	비고 (예시)	
항 목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공연	무대공연 사용료	제6조 [연주회 등]	콘서트, 뮤지컬	
		제8조 [전문체육시설에서 하는 공연사용료]	프로스포츠클럽 등 경기장	
		제10조 [유원시설 등의 공연사용료]	유원시설	
	영업장 사용료	제7조 [영업장] ① 유흥주점, ② 단란주점	22%이내	유흥주점, 단란주점
		제7조 [영업장] ⑤ 노래연습장	22%이내	노래연습장
		제7조 [영업장] ③ 무도학원 등, ④ 무도장 등	22%이내	무도학원, 무도장
		제7조 [영업장] ⑥ 생음악 공연	25%이내	레스토랑, 커피숍, 카페,
		제7조 [영업장] ⑦ 게임방, 멀티방	22%이내	게임방, 멀티방 내 기기
		제7조 [영업장] ⑧ 주민자치센터, 문화센터	22%이내	노래교실, 에어로빅교실
	백화점 등 공연사용료 (자가 유선 사용료)	제9조 [경마, 경륜·경정장]	15%이내	경마, 경륜·경정장
		제11조 [호텔·콘도미니엄에 대한 공연사용료]		호텔, 콘도미니엄
		제12조 [대규모점포에 대한 공연사용료]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제13조 [항공기 내의 공연사용료]		여객용 항공기
		제14조 [기차 등]		여객용열차 및 해상여객운송사업용 선박
방송	방송사용료	제16조 [지상파방송에 대한 방송사용료]	12.5%이내	KBS, MBC, SBS
		제17조 [방송채널사용사업(PP)에 대한 방송사용료]	12.5%이내	홈쇼핑채널, 종합편성채널, 기타 PP
		제18조 [종합유선방송(SO)에 대한 방송사용료]		종합유선방송(SO)
		제19조 [위성방송에 대한 방송사용료]		위성방송
		제19조의 2 [IPTV 등에 대한 방송사용료]	12.5%이내	IPTV
		제19조의 3 [지상파 DMB에 대한 방송사용료]		지상파DMB
		제20조 [중계유선방송에 대한 방송사용료]		중계유선방송
		제21조 [음악유선방송에 대한 방송사용료]		음악유선방송
제22조 [이동방송서비스 등]		이동방송서비스		
전송	전송사용료	제23조 [주문형 스트리밍 서비스]	14%이내	
		제23조의 2 [주문형 다운로드 서비스]		
		제23조의 4 [주문형 배경음악 서비스]		
		제23조의 5 [홈페이지 배경음악서비스]		
		제24조 [방송물 재전송서비스]		
		제24조의 2 [온라인 게임 및 애니메이션 등]		
		제25조 [전화를 이용한 장식용 서비스]		
제26조 [전화서비스-Music On Hold의 전송사용료]				
웹캐스팅 사용료	제27조 [웹캐스팅] / 기타 UCC, 블로그	12.5%이내		
복제	녹음사용료	제28조 [음반]	9%이내	상업용, 비매용 음반
		제29조 [뮤직비디오 등 영상물]	12%이내	뮤직비디오, 공연실황
		제30조 [음반자판기]		
		제31조 [아케이드게임기 등]		업소용 게임기

구 분		관리 수수료율	비고 (예시)
항 목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영화사용료 광고사용료 출판사용료	제32조 [음악저장장치 부착제품 등]		완구, 오르골, 휴대폰 영업용, 연주인용, 가정용, 통신 등 노래반주기
	제33조 [노래반주기]		
	제37조 [선거 홍보용 음악]		
	제34조 [영화 사용료]	14.5%이내	
	제35조 [광고에 대한 복제사용료]	14%이내	
	제36조 [출판]	14%이내	
교과용도서보상금*		10%이내	
대여	대여사용료 제38조 [음반대여사용료]	15.5%이내	
	외국입금사용료(해외단체입금사용료)	5%이내	
영화 등 상영권 공연사용료	제34조 [영화 사용료]	15.5%이내	

※ 교과용도서보상금은 추후 (사)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간 약정에 따라 관리수수료율 확정

KOSCAP 신탁관리 수수료율

구 분		문체부 승인요율	KOSCAP 시행요율	
항 목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공연	무대공연 사용료	제6조 [연회 등]	19%이내	10%
		제8조 [전문체육시설에서 하는 공연사용료]		
		제10조 [유원시설 등의 공연사용료]		
	영업장 사용료	제7조 [영업장] ① 유흥주점, ② 단란주점	22%이내	20%
		제7조 [영업장] ⑤ 노래연습장		
		제7조 [영업장] ③ 무도학원 등, ④ 무도장 등		
		제7조 [영업장] ⑥ 생음악 공연		
		제7조 [영업장] ⑦ 게임방, 멀티방		
	제7조 [영업장] ⑧ 주민자치센터, 문화센터			
	백화점 등 공연사용료 (자가 유선 사용료)	제9조 [경마, 경륜·경정장]	15%이내	14%
		제11조 [호텔·콘도미니엄에 대한 공연사용료]		
		제12조 [대규모점포에 대한 공연사용료]		
제13조 [항공기 내의 공연사용료]				
방송	제14조 [기차 등]	12.5%이내	10%	
	제16조 [지상파방송에 대한 방송사용료]			
	제17조 [방송채널사용사업(PP)에 대한 방송사용료]			
	제18조 [종합유선방송(SO)에 대한 방송사용료]			
	제19조 [위성방송에 대한 방송사용료]			
	제19조의 2 [IPTV 등에 대한 방송사용료]			
제19조의 3 [지상파 DMB에 대한 방송사용료]				

구분		문체부 승인요율	KOSCAP 시행요율	
항 목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제20조 [중계유선방송에 대한 방송사용료]		
		제21조 [음악유선방송에 대한 방송사용료]		
		제22조 [이동방송서비스 등]		
전송	전송사용료	제23조 [주문형 스트리밍 서비스]	14%이내	9%
		제23조의 2 [주문형 다운로드 서비스]		
		제23조의 4 [주문형 배경음악 서비스]		
		제23조의 5 [홈페이지 배경음악서비스]		
		제24조 [방송물 재전송서비스]		
		제24조의 2 [온라인 게임 및 애니메이션 등]		
		제25조 [전화를 이용한 장식용 서비스]		
		제26조 [전화서비스-Music On Hold의 전송사용료]		
웹캐스팅 사용료		제27조 [웹캐스팅] / 기타 UCC, 블로그	12.5%이내	12.5%
복제	녹음사용료	제28조 [음반]	9%이내	11%
		제29조 [뮤직비디오 등 영상물]	12%이내	
		제30조 [음반자판기]		
		제31조 [아케이드게임기 등]		
		제32조 [음악저장장치 부착제품 등]		
		제33조 [노래반주기]		
		제37조 [선거 홍보용 음악]		
	영화사용료	제34조 [영화 사용료]	14.5%이내	5%
	광고사용료	제35조 [광고에 대한 복제사용료]	14%이내	5%
	출판사용료	제36조 [출판]	14%이내	11%
		교과용도서보상금*	10%이내	5%
대여	대여사용료	제38조 [음반대여사용료]	15.5%이내	15.5%
		외국입금사용료(해외단체입금사용료)	5%이내	5%
영화 등 상영권공연사용료		제34조 [영화 사용료]	15.5%이내	12%

2014년 09월 12일 제정	2019년 07월 10일 개정
2016년 12월 23일 개정	2020년 07월 13일 개정
2017년 05월 17일 개정	2022년 12월 06일 개정
2017년 11월 17일 개정	2025년 06월 24일 개정
2019년 02월 25일 개정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업자인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와 음악저작권을 신탁하는 작사자, 작곡자, 편곡자, 음악출판자 등 음악저작권자(이하 '위탁자'라 한다) 간에 저작권 신탁계약 체결에 관한 제반 업무절차 및 양자 간 권리의무관계를 정하여 음악저작권자의 정당한 권리보호 및 원활한 이용허락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탁계약 신청자의 자격요건] 협회에 저작권 신탁계약(본 약관에 따른 저작권 신탁계약을 지칭하며, 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하는 자는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발행하려는 목적으로 음악저작권을 적법하게 보유한 자여야 한다.

제3조 [신탁계약 체결절차] ① 저작권을 위탁하려고 하는 저작권자는 저작권 신탁계약신청서를 작성한 후, 소정의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제1항의 신청에 대해 저작권 신탁을 맡는데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별도 규정 상의 소정의 비용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이를 승낙한다.

③ 협회는 위탁자와 저작권 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 신속하게 신탁증서를 위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저작권의 신탁] ① 위탁자는 본 약관에 따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저작권 및 장래 취득하게 되는 모든 저작권을 본 신탁계약 기간(이하 '신탁기간'이라 한다) 중, 신탁재산으로 협회에 이전하며, 협회는 위탁자를 위해 그 저작권을 관리하고 그로 인해 얻은 저작권 사용료 등을 수익자에게 분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자가 협회에 신탁한 저작물에 대하여 위탁자는 본 약관에서 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제3자에게 이용허락 기타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

③ 위탁자는 본 계약에 따라 신탁계약의 수익자가 된다. 다만, 위탁자는 협회와 사전 협의하여 제3자를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회는 지체 없이 제3자인 수익자에게 수익자로 지정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관리위탁 범위의 선택] 위탁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해 관리위탁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외된 저작재산권은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회에 이전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① 이용형태에 따른 선택

1. 악보, 도서 등을 출판하는 경우
2. 영화, 광고에 복제하는 경우(싱크로나이제이션)
3. 선거로고송에 복제하는 경우
4. 음반, 음반자판기 및 뮤직비디오 등 영상물을 복제하는 경우
5. 아케이드 게임기, 음악저장장치 부착제품 등을 복제하는 경우
6. 노래반주기에 복제하는 경우
7. 전송(주문형 스트리밍, 주문형 다운로드, 주문형 배경음악, 홈페이지 배경음악, 방송물 재전송(VOD, AOD), 온라인 게임 및 애니메이션, 전화를 이용한 장식형 서비스, 전화 서비스-Music on Hold 등)
8. 웹캐스팅
9. 방송
10. 공연

② 관리범위에 따른 선택

1. 전곡신탁
2. 일부신탁 : 이 경우, 제4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제6조 [음악출판자와의 복수의 저작권 신탁계약] 음악출판자인 위탁자(법인에 한한다)는 협회의 사전허락을 얻어, 협회와 사업부 단위로 복수의 저작권 신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조 [저작권의 신탁기간 등] ① 신탁계약의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의 저작권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 ② 본 계약은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신탁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신탁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신탁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 ③ 위탁자는 본 계약의 갱신 시에 본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탁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자는 신탁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협회에 그 사실을 통지하거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④ 전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관리위탁범위를 변경 요청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이사회에서 심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8조 [저작권의 관리범위] 협회는 위탁된 저작권(이하 “신탁 저작권”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관리한다.

1. 복제권(녹음, 녹화 및 악보출판 등)
2. 공연권
3. 공중송신권(방송, 전송, 디지털음성송신)
4. 배포권
5. 대여권
6. 교과용도서 보상금을 수령할 권리
7. 기타 저작권법 상의 관리범위

비고1) 회원 자신이 주최하는 무대공연에서 자신의 저작물을 직접 실연하는 경우 공연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9조 [저작권의 보증] ① 위탁자는 협회에 위탁하는 모든 저작물에 대해 유효하고 적법하게 저작권을 보유하며,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며 이를 보증한다.

② 협회는 제1항에 필요한 확인 내지 보증에 관해 필요한 경우, 위탁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외국지역 등에 대한 관리 등을 위한 위탁] ① 협회는 외국지역에서의 관리를 위해 신탁 저작권을 외국 저작권 관리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허락의 방법, 그 대가인 저작권 사용료 등의 결정, 기타 업무집행 방법은 해당 외국지역의 법령 및 외국 저작권 관리단체 등의 규약에 따른다.

② 협회는 제8조 제6호에 따른 관리를 위해 권리의 일부를 (사)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11조 [공연권 관리에 대한 위탁] ① 협회는 제8조 제2호(공연권)의 원활한 신탁 관리를 위해 제3자에게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전항에 따라 공연권을 위탁할 경우 사용 계약, 규정에 근거한 저작권 사용료 결정, 징수, 침해 구제 등의 신탁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 [저작권 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 협회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및 분배규정에 의하여 저작권 사용료를 징수하여 위탁자에게 분배한다.

제13조 [신탁 저작권 및 저작권 사용료 등의 관리방법] ① 협회는 정관 및 본 약관을 준수하고, 이사회 또는 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 저작권 및 이로 인한 저작권 사용료 등을 관리한다.

② 협회는 신탁 저작권에 관한 저작물의 관계권리자에 관한 정보를 기록해서 보관하는 방법으로 신탁 저작권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다만, 저작권 사용료 징수 및 분배 업무에 있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 분야별 관리 이외의 방식에 따라 관리할 수 있다.

③ 위탁자 또는 수익자는 협회에 대해 제2항의 관리 실태에 대한 정보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제14조 [관리수수료의 공제 등] ① 협회는 신탁 저작권의 관리에서 얻어진 저작권 사용료 중에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정하여진 관리수수료를 저작권 사용료 분배 시 공제한다.

② 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사용료 등 신탁재산 중에서 관리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로 선불하여 충당할 수 있다.

③ 협회는 한 회계연도의 관리수수료 등 수입총액이 협회의 업무수행 경비를 초과하여 수지차익금이 발생하거나 지출총액이 수입총액을 초과하여 수지차손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처리한다.

④ 협회는 관리수수료, 입회금 등 제반비용, 자산(신탁회계를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 용도제한이 없는 기부금 및 기타 수입을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한다.

제15조 [업무관할지역]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에서 관리위탁업무를 수행한다.

1. 대한민국
2. 외국

제16조 [소권] 협회는 본 계약에 따라 신탁 저작권 및 이로 인한 저작권 사용료 등의 관리에 관하여 민·형사상 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자는 신탁 저작권에 대해 소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협회가 제기한 소송 등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합의 또는 취하 등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다.

제17조 [신탁재산의 양도 등] 위탁자는 제4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협회의 승낙을 얻어 신탁재산인 저작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포기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있다.

1. 위탁자가 사가, 교가 등 특정한 목적 및 용도를 위해 제3자의 의뢰에 따라 창작한 저작물의 저작권을 해당 의뢰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2. 위탁자가 음악출판자에게 저작물의 이용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관리위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저작권을 양도하는 경우
3. 위탁자가 특정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포기하거나 일반에게 기증하여 누구든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경우

제18조 [관리유보] 위탁자는 본 약관에서 정하는 저작재산권의 관리위탁 범위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전에 협회의 승낙을 얻어 관리범위에서 유보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위탁자가 국내에서 아직 녹음물 또는 출판물로 판매되지 않았던 저작물에 대하여 녹음사용자 또는 출판업자를 지정하는 것. 단, 이 지정의 효력은 그 녹음물 또는 출판물이 최초로 공표 내지 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한한다.
2. 위탁자가 신탁 저작물의 관계권리자(저작권 사용료 분배규정 제2조 제1호의 관계권리자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전원의 동의를 얻어 국내에서 저작물을 스스로 사용하는 경우. 다만, 위탁자가 이에 대해 대가를 얻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위탁자가 사가, 교가 등 특별한 의뢰에 따라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 해당 의뢰자에게 해당 의뢰의 목적으로 사용을 인정하는 경우
4. 위탁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한정된 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배포 내지 전송할 목적으로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기념음반을 제작하는 경우

제19조 [저작권의 등록 및 비용 부담] ① 협회는 신탁 저작권의 등록(저작권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신탁의 등록 및 신탁에 의한 권리변동 등록을 의미한다. 이하 ‘등록’이라 약칭한다)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회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해야 한다.

1. 위탁자 또는 수익자로부터 청구를 받은 경우
2. 신탁 저작권에 대해 제3자가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협회의 저작권 관리사업 수행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현저히 발생한 경우
3. 신탁 저작권이 신탁재산에 속함을 제3자에게 대항할 구체적인 필요가 발생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등록 및 등록말소를 위해 필요한 비용은 위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경우 협회는 위탁자의 신탁 저작권 관리로 얻은 저작권 사용료 중에서 그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제20조 [수익권의 처분 등] 위탁자는 저작권 사용료의 분배청구권 등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설정 등 처분행위를 하는 경우, 사전에 협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1조 [저작권 사용료의 분배] ① 협회는 관리저작물의 사용을 통해 얻어진 저작권 사용료를 저작권 사용료 분배규정에 의거하여 위탁자에게 분배한다.

② 협회는 저작권 사용료 분배 시, 소정의 양식에 따른 분배명세서 및 계산서를 발행하여 위탁자에게 교부한다.

③ 협회는 위탁자(또는 수익자)에 대해 금전채권을 보유한 경우, 저작권 사용료 등의 분배 시 해당 금액에서 그 채권을 공제할 수 있다.

④ 본 계약에 따른 위탁자의 저작권 사용료 지급청구권은 협회가 각 위탁자에게 사용료 분배명세서를 발행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함으로써 소멸한다.

제22조 [저작권 사용료 분배 보류 및 위탁관리의 정지] ① 협회는 신탁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합리적인 범위 및 기간을 정해 해당 저작물로부터 발생한 저작권 사용료 등의 분배를 보류할 수 있다.

1. 관계권리자, 분배율, 기타 수익자에게 분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2. 저작권의 존재여부 또는 귀속에 관하여 의문이 생긴 경우
3. 다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로 인해 제3자로부터 법적 분쟁이 발생하거나, 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제3자로부터 통지를 수령한 경우
 - ② 협회는 제1항 제2호의 사유로 인해 의문의 해소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인 범위 및 기간을 정해 해당 저작물에 관한 이용허락 및 저작권 사용료 등의 징수를 정지할 수 있다.
 -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저작물을 필요한 범위에서 신탁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제2항을 적용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의문이 해소되지 않아, 본 계약 신탁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1항 제3호로 인한 법적분쟁에 대해 침해사실이 인정되는 등의 사유로 인해 판결이 확정되거나, 기타 침해사실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④ 협회는 본조 각 항의 조치를 강구하는 경우 해당 저작물의 위탁자 및 수익자에게 그 취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 [위탁자 지위의 승계] ① 위탁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또는 수증자(유증에 따른 포괄 수증자 및 특정수증자를 포함한다. 이하 ‘상속인 등’이라 한다) 또는 위탁자인 법인의 합병이나 회사 분할에 의해 해당 법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법인은 본 약관에 의해 위탁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제1항의 ‘상속인 등’과 포괄승계자인 법인은 위탁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상속인 등’이 복수인 경우, 본 계약상 위탁자의 권리(‘상속인 등’이 수익권도 승계한 경우 위탁자의 권리 및 수익권)를 대표해서 행사하는 자 1인을 호선하여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4조 [신탁계약의 해지] ① 위탁자는 신탁계약기간 중이라도 협회에 서면 통지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가 협회에 도달한 날의 익월 1일부터 3개월이 경과 후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② 협회는 위탁자가 신탁 저작권의 전부를 상실하거나 권리가 소멸된 경우 최고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그 시정 또는 이행을 서면으로 최고하고, 해당 기간 내에 위탁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자가 타인의 저작물을 허위신고하거나 저작권 보증의무를 위반한 경우 및 신탁 저작권을 이중으로 양도하는 경우
2. 제1호 이외에 위탁자가 본 약관에서 정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위탁자가 협회의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제25조 [신탁계약의 종료] 본 계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 종료된다.

1. 위탁자가 파산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거나 법인 해산한 경우
2. 위탁자가 제28조 제1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고 주소를 변경하거나 거소를 이탈하여 협회가 합리적인 조사를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재 불명인 경우

제26조 [신탁의 청산] ① 본 계약이 종료된 경우, 본 약관 및 신탁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산을 행한다.

- ② 협회는 본 계약이 종료한 후에도 청산이 종료될 때까지 저작권 사용료를 위탁자 등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 ③ 본 계약의 종료에 따른 잔여재산은 위탁자에게 귀속한다. 다만, 위탁자가 협회의 동의를 얻어 제3자를 귀속 권리자로 지정한 경우 해당 제3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제27조 [협회의 통지 등] ① 협회는 본 계약에 따른 송금, 최고, 기타 통지에 대해 위탁자가 신청한 주소 또는 송금처로 발송하기로 한다. 다만, 대리 수령인이 선임된 때에는 그 사람에게 발송한다.

- ②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송금, 최고, 기타의 통지를 보류할 수 있다. 이 경우 협회의 의무이행 장소는 주사무소로 한다.
1. 제23조 제2항 내지 제3항의 신고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2. 위탁자가 신고한 주소로 발송한 최고, 기타 통지가 계속해서 3번 이상 도달하지 않는 경우
3. 위탁자가 신고한 송금처로 보낸 송금이 도달하지 않는 경우
4. 분배청구권에 대한 질권 실행, 체납처분, 기타 압류가 내려진 경우

제28조 [위탁자의 통지의무] ①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협회에 신고하고,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수익자에게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와 같다.

1. 신탁증서 또는 신고한 인감을 분실한 경우
2. 송금처, 개명, 주소 또는 거소, 인감을 변경하려는 경우
3. 위탁자가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합병·회사 분할, 해산 또는 그 명칭 등을 변경하는 경우
4. 위탁자의 대표자, 대리인 또는 저작권 사용료의 대리 수령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5. 위탁자가 새로운 저작물을 창작·공표하였을 때와 저작권을 양도한 경우
6. 신탁 저작권의 관리범위의 유보 또는 제한 사유가 소멸한 경우

② 제1항 제5호의 신고에는 위탁자가 협회에 관리를 위탁하지 않은 지분권 및 이용형태에 따른 권리정보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송금, 최고, 기타 통지에 대한 국내 대리인의 주소 및 성명을 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협회는 위탁자가 본조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9조 [개인정보의 안전관리] ① 협회는 보유하고 있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유출방지 기타 안전 관리를 위해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는 본 계약에 따라 협회로부터 제3자의 개인 정보를 제공받은 때에는 그 유출 방지, 기타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일정한 경우, 위탁자의 동의를 얻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④ 협회는 본 약관 외에 위탁자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및 위탁에 관해 이 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여 이에 따라 관련 업무를 처리한다.

제30조 [관리방법의 변경] 수탁자는 제12조에 규정한 신탁 저작권의 관리방법을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1조 [신탁계약약관 변경] ① 협회는 총회의 의결 및 주무관청의 승인에 따라 본 약관, 저작권 사용료 분배규정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며, 위탁자 등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약관 변경에 이의가 있는 위탁자는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문서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③ 본 약관의 개정 공고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해도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을 때에는 제1항의 변경사항에 대해 위탁자가 승낙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절차 없이 개정 약관에 따라 저작권 신탁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제32조 [위약 등에 대한 배상책임] ① 위탁자와 협회는 본 약관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손해액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②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협회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신탁 저작물 관리로 인해 발생한 저작권 사용료 중에서 손해액을 우선 공제할 수 있다.

제33조 [공고] 본 약관에서 정하는 공고는 협회가 발행하는 회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시행한다.

제34조 [재판관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한 재판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약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약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6. 12. 23)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약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7. 5. 17)

부 칙

제1조 [시행일 및 경과규정] ① 이 개정약관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약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9. 2. 25)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약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9. 7. 10)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약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020. 7. 13)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약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022. 12. 06)

05 이용계약약관

2014년 09월 12일 제정 2024년 06월 24일 개정
2018년 10월 16일 개정 2025년 06월 24일 개정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저작권 신탁관리업자인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와 본 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음악저작물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방송·전송·디지털음성송신), 배포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 간에 준수해야 할 음악저작물의 이용허락범위 및 이용조건, 기타 제반 업무절차 등 권리의 무관계를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의 체결] ① 협회의 음악저작물(이하 ‘관리저작물’이라 한다)을 복제·공연·공중송신(방송·전송·디지털음성송신)·배포 등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협회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써 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회는 제2항에 열거된 경우 외에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작물 등의 이용승인을 거절해서는 아니 된다.

② 협회는 이용자의 음악저작물 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승인을 거절할 수 있다.

1. 저작권법 등 관계법령, 기타 협회의 각 규정에 반하여 사용하는 경우
2. 이용자가 음악저작물의 이용에 있어 협회 이외의 다른 권리자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독점적 또는 이와 유사한 불공정한 거래관계를 맺음으로써 타 이용자와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기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공정한 이용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3. 협회에 사용료를 체납중인 업체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 이용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4. 기타 상관행에 비추어 거래의 질서를 해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제3조 [저작물 이용허락 범위] ① 본 약관에 따른 이용허락범위는 본 약관에 의거하여 양자간 협의하여 정한다.

② 협회에서 이용허락하는 저작물은 관리저작물 중 이용형태 및 방법에 따라 이용자가 신청하여 허락해준 저작물에 한한다.

③ 이용자는 협회가 이용허락한 범위 내에서 관리저작물을 이용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

우에도 관리저작물의 이용권한을 제3자에게 재이용하도록 허락하거나 위임 또는 양도할 수 없다.

④ 협회의 관리저작물을 이용중인 이용자가 해당 관리저작물에 대한 이용방법 및 조건 등 이용허락 범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서로써 협회의 사전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4조 [사용료] ① 이용자는 관리저작물의 이용대가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에 따른 저작권 사용료를 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협회의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협회와 이용자 간에 협의하여 이용허락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개월 이내에 이용자와의 협의내용을 반영한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승인받은 규정에 의하여 사후 정산한다.

② 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을 변경하여 사용료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이용자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용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다만, 이용자는 변경내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 [신탁계약 해지자에 대한 공고 및 통보] ① 협회는 관리저작물 중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용자 기타 제3자가 확인 가능하도록 협회 홈페이지(<http://www.koscap.or.kr>)에 해지된 저작물명과 저작자명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포괄적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제1항과 별도로 해지된 저작물명과 저작자명 등의 내역을 문서로써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이용내역의 제공의무] ① 협회의 관리저작물을 복제·공연·공중송신(방송·전송·디지털 음성송신)·배포 등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협회가 사용료 산정 및 분배에 필요하여 제공한 양식에 따른 이용곡목 보고서 또는 이용내역(Log데이터 등 명칭 및 형태를 불문한다)을 문서로써 협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관리저작물을 음반, 영상매체 및 출판물 등으로 복제하여 배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회의 사용허락을 받아 제작한 제작물 2매를 출고 전에 납본하여야 하며, 협회에서 교부하는 증지 등을 각 복제물의 지정하는 위치에 붙인 후 출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방법 및 형태에 비추어 증지를 붙이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정기적으로 판매내역

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관련하여 협회는 인터넷 또는 통신망, 기타 전자적 기기(노래방, 유흥주점 등 공연에 해당)를 통해 관리저작물이 이용되는 경우, 관리저작물의 이용내역을 자동송신할 수 있도록 기술적 장비 및 시스템을 이용자의 시스템에 연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이용형태 또는 이용자의 사정에 의해 자동송신이 어려운 경우, 전자문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 [판매실적 등의 확인] ① 협회는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관리저작물의 사용료 산정에 필요한 판매실적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면 자료를 통하여 실제 거래사실과 일치하지 않거나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등의 경우, 협회는 이용자에게 실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협회는 제2항에 의한 실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7일전에 통보를 한 후 상호 협의된 범위 내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영업자의 주된 사무소에서 영업시간 내에 행하는 것으로 한다.

④ 협회는 본조의 실사를 위해 공신력있는 기술, 회계분야의 전문가에게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사용료의 반환] ① 이용자가 납부한 저작권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용자가 이용허락을 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이를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사용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회에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자동이체 등의 방법으로 사용료를 납부하던 이용자가 관리저작물 이용을 중지한 후, 협회에 문서로써 이를 통지하였으나 자동이체 해지 등을 하지 않아 사용료가 과오납된 경우, 이용자는 관리저작물 사용중지 후 60일 이내에 협회에 사용료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협회는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 [연체가산금] ① 이용자는 계약상 약정된 기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기일까지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3%를 가산하여 1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만약, 납부기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후부터 매일

0.022%씩 증가산하여 연체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단, 증가산 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다만, 6개월 이상 사용료가 연체되어 협회가 사용자에게 민·형사상의 법적조치를 제기한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침해가산금 요율을 준용한다.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연체가산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약정된 기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사용료 납부 기한 연장을 사전 요청한 경우

제10조 [계약의 해지] ① 협회 또는 이용자는 그 상대방이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불이행시 문서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협회는 이용자가 본 계약 체결 후, 상당한 기간 동안 관리저작물의 이용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이용의사의 유무를 최고한 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저작권 사용료를 일시불로 완납하는 형태로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이 통보를 받은 때에 해지된 것으로 본다.

④ 이용자는 협회로부터 계약의 해지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리저작물의 이용을 중지하여야 하며, 해지 후에도 계속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1조 [침해시 조치] ① 사용자가 협회에서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을 협회의 사전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협회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이용계약 체결 및 사용료 납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협회의 요청에 따른 경우 협회는 제9조에 따른 연체가산금, 제12조에 따른 침해가산금 부과를 면제한다.

제12조 [침해가산금] 협회는 사용자가 제11조에 따른 협회의 요청에 응하지 않을 때는 사용자에게 합법적 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사용료의 15% 한도 내에서 가산금을 별도 납부하

게 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제9조에 따른 연체가산금은 부과하지 않는다.

제13조 [손해배상] 협회 또는 이용자는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액과 그 손해액에 대한 10%의 위약금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제14조 [성명표시 등] ① 이용자는 협회의 관리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해당 저작물의 제호와 작사자·작곡자·편곡자 등의 저작자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의 목적,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이용자는 협회에서 이용허락을 받은 관리저작물의 제목이나 내용, 저작자 성명 등을 변경하거나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만약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를 침해했을 경우에는 저작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관할법원] 본 약관과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한 재판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

본 약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약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2018.10.16.)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024.06.24.)

05

한국방송작가협회

1. 사용료 징수규정
2. 사용료 분배규정
3. 관리수수료 규정
4. 신탁계약약관
5. 이용계약약관

01 사용료 징수규정

1988년 09월 20일 제정 2006년 04월 06일 개정
2001년 04월 25일 개정 2011년 12월 28일 개정
2003년 06월 28일 개정 2020년 02월 14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방송작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와 협회에서 관리하는 저작물(이하 “관리저작물”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간의 저작물 사용에 따른 사용료 산정 및 징수 기준의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의 체결) 협회의 관리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협회와 문서로 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 약관) 본 규정에 따른 저작물 이용계약은 협회가 정한 저작물 이용계약 약관 등에 의한다.

제4조(재방송료) ① TV 또는 라디오 등의 프로그램을 최초 1회 방송 후 재방송하는 경우 사용료는 저작물 사용 1건 1회당 방송사의 ‘방송제작비 지급규정’으로 정한 ‘기본극본료’에 다음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구분	사용요율
한국방송공사 (KBS) (주)문화방송 (MBC)	기본극본료의 30%
(주)서울방송 (SBS) 교육방송공사 (EBS)	기본극본료의 25%
(주)경인방송 (ITV)	기본극본료의 20%
부산방송(주), (주)대구방송 (주)대전방송, (주)광주방송 (주)울산방송, (주)청주방송	기본극본료의 15%

구분	사용요율
(주)전주방송, (주)제주방송 (주)강원민방	

- ② 재방송 이후의 사용료는 재방송 사용료의 50%로 한다.
- ③ 프로그램을 전국중계방송 이외의 로컬방송으로 재방송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제1항에 의거해 산출된 금액의 40%를 지급한다.

제5조(네트방송 사용료) ① ‘네트방송’이란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방송사의 프로그램을 수급사가 네트로 받아 방송하는 것을 말하며, 네트사용료란 프로그램을 네트방송으로 이용함에 따라 지급하는 저작물 사용료를 말한다.

- ② 전국네트로 프로그램을 네트방송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1건 1회당 방송사의 방송제작비 지급규정으로 정한 ‘기본극본료’에 다음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구분	사용요율
(주) 문화방송 (MBC)	기본극본료의 15%
부산방송(주), (주)대구방송, (주)대전방송 (주)광주방송, (주)울산방송, (주)청주방송 (주)전주방송, (주)제주방송, (주)강원민방	기본극본료의 13%

- ③ 전국네트 이외의 네트방송 사용료에 대해서는 각 방송사업자의 지역적, 경제적 사정을 감안해서 사용료율을 정한다.

제6조(복제·배포 사용료) 방송사 등 저작물 이용자가 직접 또는 제3자를 지정하여 프로그램을 국내외에서 복제, 배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용료를 지급한다. 단 원작이 따로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료는 해당 사용료의 60%를 지급한다.

1. 해외방송사 또는 유선방송사에 공급하는 경우
 - 가. 드라마 프로그램: 공급금액의 3.5%
 - 나. 드라마 이외의 프로그램: 공급금액의 3%
- * 공급금액은 제세금, 외국어판 제작비 (외국방송사업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외국어판을 제작하는 경우)를 공제하여 산정한다.
2.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국내, 외에서 일반공중에게 배포하는 경우: 공급금액의 4.5%

* 공급금액에서 제세금 및 재제작비(발생시) 공제

3.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국내에서 복제판매를 허용하여 배포하는 경우 : 공급금액의 5.5%

* 공급금액에서 제세금 및 재제작비(발생시) 공제

4. 프로그램을 종합유선방송사에 공급하는 경우 : 공급금액의 6%

* 공급금액은 제세금 및 20%의 필요경비 공제

* 이 항의 사용료에는 종합유선방송사에 방송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프로그램을 CD-ROM TITLE 제작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CD-ROM TITLE로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 : 공급금액의 5.5%

* 공급금액은 제세금을 공제하여 산정한다. 단 CD-ROM TITLE 제작에 작가의 방송대본 일부 및 전부를 그대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한국방송작가협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6. 프로그램을 DVD, VCD로 제작하여 공급하는 경우

가. 방송사가 직접 제작, 공급하는 경우: 공급금액의 3.5%

나. 제3자에게 공급하여 제작하는 경우: 수입금의 4.5%

7. 상기 이외의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복제, 배포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호 별도 협의하여 정한다.

제7조(전송사용료) 방송사 등 저작물 이용자가 프로그램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하여 유, 무선 인터넷상에 전송하여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용료를 지급한다.

1.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방송 프로그램을 실시간으로 방송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2. 프로그램을 유, 무선 인터넷상의 VOD, AOD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순수익의 8%
3. 유, 무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방송대본 다시보기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순수익의 10%
4. 프로그램을 모바일 등 무선인터넷으로 전송하여 사용하는 경우: 순수익의 8%
5. 위 2. 내지 4호까지의 순수익이란 유료콘텐츠 서비스 결과로 얻어지는 순수익을 말한다.

제8조(기타 사용료) 사용료 징수규정이 없는 사용형태의 경우, 협회는 이용자와 사용요율 또는 금액을 협의하여 이용허락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개월 이내에 이용자와의 협의내용을 반영한 징수규정 개정안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승인받은 규정에 의하여 사후 정산한다.

제9조(방송 사용료 면제) 방송사 등 저작물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을 녹음, 녹화, 편집하여 사용하거나 복제, 배포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저작물 이용자가 회사내부에서 업무상 사용하는 경우
2. 프로그램의 직접적인 홍보를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
3. 국내외 프로그램 경연에 출품하는 경우
4. 학교, 기타 교육기관 및 비영리 연구기관에 교육목적 또는 연구를 위해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5. 비과세 대상의 자선사업 등 사회봉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단체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6. 프로그램의 판매를 위해서 프로그램 견본시장에 출품하는 경우
7. 연속 또는 시리즈물을 종합 편집하여 종합편집물에 대한 원고료를 별도로 지급하고 방송에 사용하는 경우
8. 정전, 방송기기의 고장,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재방송을 하게 되는 경우
9. 국가 홍보적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해외방송사에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부 칙 (1988.09.20.)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04.25)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06.28)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04.06)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12.28)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02.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02 사용료 분배규정

1988년 09월 20일 제정 2006년 04월 06일 개정
2001년 04월 25일 개정 2011년 12월 28일 개정
2003년 06월 28일 개정 2024년 07월 23일 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방송작가협회가 저작물을 관리하여 얻어진 저작물 사용료의 분배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분배란 저작물 사용자로부터 협회가 징수한 저작물사용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별도로 정한 관리수수료를 공제하고 위탁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분배자료) ① 분배자료란 저작물 이용자가 제출한 이용 내역서 및 이에 준하여 이용된 저작물을 기재한 자료를 말하며, 협회에서 조사하여 확인한 자료 등을 포함한다.
② 협회가 관리하는데 분배자료에 나타나지 아니한 것은 분배대상 저작물에서 제외한다.
③ 본 규정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나 적절한 분배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 사용료의 산출방법, 징수한 사용료 총액, 유사한 사용매체의 분배자료 등을 참작하여 그 분배방법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4조 (분배대상 저작물) 분배대상 저작물은 분배대상 사용료의 징수 대상이 된 저작물로 한다.

제5조 (사용료 분배방법) ① 사용료는 제3조의 분배자료에 의거해 분배한다.
② 저작물 이용자가 저작물을 포괄적으로 이용하여 분배자료에 개별 저작물의 사용료를 산출 및 구분하기 어려워 사용료 총액만으로 통지해 온 경우 각 저작물의 장르별 기본원고료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되는 금액에 따라 분배한다.
③ 전항의 기본원고료란 협회가 매년 지상파 방송 3사와 정하는 '방송원고료 기준표' 상의 조항별 기본극본료를 말한다.
④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중 '기타 사용료'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분배방법은 해당 사용료의 산출방법, 징수한 사용료액 및 사용된 저작물 수를 참작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6조 (분배대상 사용료 및 분배시기) ① 협회가 이용자로부터 징수한 분배대상 사용료 및 분배시기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당해 연도 분기 별 징수한 분배대상 사용료는 징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2. 당해 연도 반기 별 징수한 분배대상 사용료는 징수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조 제3항의 경우 분배대상 사용료 및 분배시기는 이 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7조 (이의신청) ① 위탁자는 저작물 사용료의 분배내역, 금액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15일 이내에 저작권위원회를 소집하여 검토하고 그에 대한 결과를 수탁자에게 통보한다.

부 칙 (1988.09.20)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04.25)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06.28)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04.06)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12.28)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07.23)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03 관리수수료 규정

1988년 09월 20일 제정 2003년 06월 28일 개정
2001년 04월 25일 개정 2006년 04월 06일 개정

사단법인 한국방송작가협회는 저작물 사용료를 분배할 때 다음에 정한 비율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한다.

이 수수료는 저작물 사용료 중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한다.

1. 신탁 / 저작물 사용료의 20% 이내
2. 대리 / 저작물 사용료의 10% 이내
3. 중개 / 저작물 사용료의 10% 이내

부 칙 (1988.09.20)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04.25)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06.28)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4.06)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04 신탁계약약관

1988년 09월 20일 제정	2011년 12월 28일 개정
2001년 04월 25일 개정	2017년 03월 23일 개정
2003년 06월 28일 개정	2019년 04월 30일 개정
2006년 04월 06일 개정	2021년 01월 13일 개정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방송을 주목적으로 창작된 각본(이하 “저작물”이라 한다)의 저작권 옹호와 원활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방송작가 등 저작권을 가진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사단법인 한국방송작가협회(이하 “수탁자”라 한다) 사이에 다음과 같이 저작권 신탁에 관한 계약내용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 (저작권의 신탁) ① 위탁자는 현재 소유하고 있는 저작권 및 장차 취득하는 저작권을 저작권신탁계약서에 규정(이하 ‘신탁저작권’이라 한다)한 바에 따라 수탁자에게 신탁한다. 수탁자는 위탁자를 위해 이를 관리하여 얻어진 사용료 등 수익을 위탁자에게 분배한다.
② 위탁자는 자기 저작물의 방송권, 공연권, 복제권, 배포권, 전송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탁할 수 있으며, 신탁자는 위탁자를 위해 신탁저작권을 관리하여 얻어진 사용료 등을 위탁자에게 분배한다.
③ 수탁자는 본 약관에 의거 신탁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신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 (저작권의 신탁기간) 신탁계약의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계약 종료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안에 계약종료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5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단, 위탁자의 저작권 보유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제4조 (저작권의 확인보증)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신탁한 모든 저작물에 자신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음과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 보증한다.
② 수탁자는 전항에서 확인 보증한 저작물에 대하여 필요시에는 위탁자에게 그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위탁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업무 관할지역) 수탁자는 다음의 지역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1. 대한민국내
2. 외국
3. 외국저작권 관리단체 등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그 외국 저작권관리단체 등의 업무집행 지역

제6조 (외국지역에 대한 저작권 관리) 수탁자는 외국지역에 대한 신탁저작권의 관리를 직접 맡거나 외국 저작권관리단체 등에 재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소권) 수탁자는 신탁저작권 및 이에 속하는 저작물사용료 등의 징수관리에 관하여 형사 또는 민사상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8조 (신탁저작권 및 저작물사용료의 관리방법) 수탁자는 정관 및 본 약관을 준수하고 또한 총회의 의결에 따라 신탁저작권 및 이에 속한 저작물사용료 등을 관리한다.

제9조 (비회원 신탁관리) 협회는 비회원 작가와 저작권사용료 지급을 위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 (저작물사용료의 징수와 분배) ① 수탁자는 그 업무를 행하는 지역에서 신탁저작권의 행사에 관계되는 저작물의 사용을 허락하고 수탁자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정하여진 사용료 징수규정에 따른 저작물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저작물 사용료는 수탁자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정한 분배 방법에 따라 수익자에게 분배한다.

③ 본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적용이 어려운 경우 해당 사용료의 산출방법, 징수한 사용료액, 사용된 저작물 수, 유사한 사용 매체의 분배 자료 등을 참작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분배한다.

제11조 (미분배금의 처리) 분배대상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분배대상자가 분배금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사용료를 회원의 권리증진과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본항의 결과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보고한다.

제12조 (사용료의 계산 및 분배시기) ① 수탁자는 신탁저작권의 관리에서 얻어진 저작물 사용료를 ‘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에 의거 위탁자에게 분배한다.

② 수탁자는 각 분배시와 신탁계약 종료시에 저작물 사용료의 계산서를 작성하여 위탁자에게 교부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자에 대하여 금전 채권이 있을 시는 저작물 사용료 분배시 해당사용료 중에서 그 채권액을 공제할 수 있다.

제13조 (사용허락, 사용료 징수 및 분배보류) 수탁자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저작물의 사용허락, 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저작권의 침해 또는 저작권의 귀속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소 제기중일 때 또는 수탁자에게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2. 위탁자의 저작물 신고내용이 수탁자의 자료와 상이하고 수탁자가 저작권의 귀속 등에 의문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3. 저작물 사용료의 분배처 또는 분배율 등이 불명확한 경우

제14조 (관리수수료 징수) ① 수탁자는 신탁저작권 관리에서 얻어진 저작물 사용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정하여진 관리수수료를 사용료 분배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저작물 사용료 등 신탁재산 중에서 관리수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로 선불하여 충당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한 회계연도의 관리수수료 등 수입총액이 수탁자의 업무수행 경비를 초과하여 수지차액금이 발생할 경우 이사회 승인 및 총회의 결의를 거쳐 방송작가의 지위향상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관리수수료,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별도 규정에 없는 기부금 및 기타 수입을 업무수행 경비로 충당한다.

제15조 (신탁저작권 관리에 따른 비용의 징수) ① 다음 각 호의 경비는 해당 위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1. 위탁자의 의뢰로 수탁자가 저작물 등록 등의 업무를 대리하였을 경우
 2. 위탁자가 집필한 저작물의 저작권 귀속 등에 관한 분쟁 및 소송 비용
- ② 제1항의 경비는 신탁저작권의 관리에서 얻어진 저작물 사용료 중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16조 (신탁계약의 승계) ① 위탁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신탁계약에 의거 위탁자의 권리 의무를 승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속인은 권리의무를 상속한 것을 지체없이 수탁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상속인이 복수인 경우에는 상속인중에서 1명을 선임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 (신탁계약의 해지) ① 수탁자는 위탁자가 신탁저작권의 전부를 상실하였을 경우 신탁 계약을 해지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가 협회와 협의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저작권 양도계약의 체결등 신탁의 본 뜻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신탁을 해지 할 수 있다.

③ 위탁자는 수탁자가 저작권 신탁관리에 따른 제반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위탁자의 개인적인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본 계약에 대한 해지는 그 계약 상대방이 해지통보를 받은 때로부터 한다.

제18조 (신탁계약의 종료) 위탁자의 저작권은 신탁계약의 종료와 동시에 위탁자에게 귀속되며 위탁자는 지체없이 수탁자에게 신탁증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9조 (수탁자의 통지) 수탁자는 위탁자에 대하여 사용료 송금 등 필요한 사항의 통고를 위탁자가 신청한 주소로 한다. 만약 위탁자가 외국에 거주할 경우에는 국내의 대리수령자의 주소로 한다.

제20조 (위탁자의 신고의무) ① 위탁자는 신탁계약을 체결할 때 저작권 행사에 제한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수탁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 위탁자는 신탁기간 중 신탁저작권 행사에 지장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미리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자기의 인감을 수탁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도 수탁자에게 알리고 등록하여야 한다.

④ 위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시는 지체없이 수탁자에게 신고하고 소정의 수속을 밟아야한다.

1. 위탁증서 및 등록인감을 분실하였을 경우

2. 송금처, 개명, 개인주소를 변경하였을 경우
3. 위탁자가 새로운 저작물을 저작하였을 때
4. 신탁저작권의 관리범위의 유보 및 제한 사유가 소멸하였을 때
- ⑤ 위탁자가 제1,2,3항의 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는 위탁자의 부담으로 하고 제4항의 수속을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수탁자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1조 (신탁계약 약관의 변경 및 공고) ① 수탁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본 약관을 변경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위탁자에 통지하고, 수탁자의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약관 변경에 이의가 있는 위탁자는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해지권의 행사는 서면에 의하여만 한다.
- ④ 공고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도 해지권 행사를 하지 않을 때는 제1항의 변경 사항을 위탁자가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1988. 09. 20)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04. 25)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06. 28)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04. 06)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2. 28)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03. 23)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04. 30)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01. 13)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05 이용계약약관

2016년 03월 02일 제정 2022년 11월 23일 개정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저작권 신탁관리업체인 사단법인 한국방송작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와 신탁 받아 관리하고 있는 저작물(이하 ‘관리저작물’이라 한다)을 공중송신(방송, 전송, 디지털음성송신), 복제, 배포, 공연, 2차적저작물작성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라고 한다)간에 준수해야 할 저작물의 이용방법 및 이용허락조건 등에 대한 저작물 이용계약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의 체결) ① 협회의 관리저작물을 공중송신(방송, 전송, 디지털음성송신), 복제, 배포, 공연, 2차적저작물작성 등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협회와 문서로써 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회는 본조 제2항에 열거된 경우 외에 정당한 이유없이 저작물 등의 이용승인을 거절해서는 아니 된다.

② 협회는 이용자의 저작물 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승인을 거절할 수 있다.

1. 저작권법 등 관계법령, 기타 협회의 각 규정에 반하여 사용하는 경우
2. 이용자가 관리저작물의 이용에 있어 협회 이외의 다른 권리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독점적 또는 이와 유사한 불공정한 거래관계를 맺음으로써 타 이용자와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기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공정한 이용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3. 협회에 사용료를 체납중인 이용자 및 업체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 이용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4. 기타 상관례에 비추어 거래의 질서를 해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제3조 (저작물 이용허락 범위) ① 본 약관에 따른 이용허락범위는 본 약관에 의거하여 양자간 협의하여 정한다.

② 협회에서 이용허락하는 저작물은 관리저작물 중 이용형태 및 방법에 따라 이용자가 신청하여 허락해준 저작물에 한한다.

③ 이용자는 협회가 이용허락한 범위 내에서 관리저작물을 이용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

우에도 관리저작물의 이용권한을 제3자에게 재이용하도록 허락하거나 위임 또는 양도할 수 없다.

④ 협회의 관리저작물을 이용중인 이용자가 해당 관리저작물에 대한 이용방법 및 조건 등 이용허락 범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서로써 협회의 사전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4조 (신탁계약 해지자에 대한 공고 및 통보) ① 협회는 관리저작물 중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용자 및 기타 제3자가 확인 가능하도록 협회 홈페이지(<http://www.ktrwa.or.kr>)에 해지된 저작물명과 저작자명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포괄적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전항과 별도로 해지된 관리저작물명과 저작자명 등의 내역을 문서로써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저작자명의 표시) 이용자는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저작자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저작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 (저작인격권 침해의 금지) 이용자는 협회에서 이용 허락을 받은 관리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 등을 변경하여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만약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를 침해했을 경우에는 저작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제7조 (사용료) 이용자는 저작물 사용료로 협회의 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에서 정한 요율 또는 금액을 납부한다. 다만, 협회의 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에 정해진 바가 없는 경우에는 협회와 이용자간에 협의하여 이용허락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개월 이내에 이용자와의 협의내용을 반영한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승인 받은 규정에 의하여 사후 정산한다.

제8조 (이용내역의 제출 및 자료의 납본 등) 협회의 관리저작물을 공중송신(방송, 전송, 디지털 음성송신), 복제, 배포, 공연, 2차적저작물작성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협회가 사용료 산정 및 분배에 필요하여 제공한 양식에 따른 저작물 이용내역을 전자적 방법 및 문서로써 협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 (판매실적 등의 확인) 협회의 관리저작물을 이용하여 제작한 방송 프로그램 및 2차적저

작물작성 등의 판매실적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내역을 요청할 경우 이용자는 이를 제공하고, 그 밖에도 이용자는 협회가 사용료의 산정과 분배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료의 반환) 이용자가 관리저작물의 사용료로 납부한 금액은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용자가 이용허락을 받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용료 납부 후 10일 이내에 사용료 반환을 청구한 경우 및 착오로 과오납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제11조 (연체가산금) ① 이용자는 협회와 합의한 기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 사용료의 3%를 가산한 금액을 1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기한 1개월 경과 후에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사용료(제1항에 의한 가산금 제외)의 0.022%에 해당하는 증가산금을 매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12개월에 한정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미납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가산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 (계약의 해지) ① 협회 또는 이용자는 그 상대방이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불이행 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전 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이 통보를 받은 때에 해지된 것으로 본다.

③ 이용자는 협회로부터 계약의 해지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협회의 관리저작물 이용을 중지하여야 하며, 해지 후에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3조 (침해시 조치) ① 이용자가 협회의 이용허락범위를 초과하거나 제3자에게 재이용하는 등 이용허락범위와 무관하게 관리저작물을 이용하여 협회의 신탁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이용자는 협회의 요청에 따라 침해행위를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② 협회가 제1항의 침해행위의 중지를 요청하였으나, 이용자가 이에 불응하는 경우 협회

는 이용자와의 저작물이용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제14조 (위약에 따른 손해배상) 협회 또는 이용자는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액과 그 손해액에 대한 10%의 위약금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 (관할법원) 협회와 이용자간에 법률적인 대립이 발생할 경우의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합의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부 칙 (2016.03.02.)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11.23.)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06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1. 사용료 징수규정
2. 사용료 분배규정
3. 관리수수료 규정
4. 신탁계약약관
5. 이용계약약관

01 사용료 징수규정

2000년 11월 14일 제정	2017년 02월 08일 개정
2007년 10월 11일 개정	2021년 01월 19일 개정
2009년 11월 09일 개정	2021년 05월 24일 개정
2012년 11월 30일 개정	2024년 04월 03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신탁관리하고 있는 저작물을 이용자에게 이용 허락하는 경우에 징수할 사용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계약) ① 본 협회의 관리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본 협회와 이용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본 규정에서의 저작물 사용료는 달리 표시하지 않을 경우 1개 작품을 기준으로 한다.

③ 본 규정에 의한 이용계약은 본 협회가 정한 이용계약 약관 등에 의한다.

제3조 (이용 구분) 협회가 신탁관리하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다음 구분에 따라 그 사용료를 정한다.

1. 복사
2. 복제(복사제외) 및 배포
3. 전송
4. 방송, 영상, 공연 등
5. 광고, 홍보 등
6. 기타

제2장 복사사용료

제4조(복사업소 등의 복사) 복사업소 등의 복사이용에 대한 복사기 1대당 연간 저작물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 연간 저작물 사용료 = 사용료 × 연간 복사사용량
2. 복사 이용되는 저작물의 1면당 사용료는 10원으로 한다. 단, 아래와 같이 조정계수를 적용한다.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조정계수	0.6	0.8	1.0

3. 연간 복사사용량은 아래 1)에서 6)까지의 항목 값을 곱하여 산출한다.

항목	단위	유인복사기	무인복사기
1) 1일 복사량	면수	800면	160면
2) 저작물 복사 비율	%	50	25
3) 월 영업 일수	일	20	
4) 연간 영업 월수	월	9	
5) 점포등급(*)	%	100,90,80,70,60,50	
6) 영리 비영리	%	영리 100 / 비영리 : 60	

* 점포등급은 아래의 표의 1) 소재지, 2) 설치장소, 3) 설치위치에 부여된 배점의 평균값(최대 100)으로 하며, 10 미만은 절삭

항목	분류	배점
1) 소재지	특별시 및 광역시	100
	도청소재지, 특별자치도 및 특별자치시	90
	특례시, 시청소재지	70
	군지역 및 기타	50
2) 설치장소	종합대학, 일반대학	100
	기능목적대학	90
	예체능목적 대학, 군사목적대학	70
	대학가 주변 영리	50
3) 설치위치	중앙도서관	100

항목	분류	배점
	단과대학도서관(단과대 건물 내)	90
	학생회관	70
	기타(타공간에 위치, 대학가주변)	50

제5조 (관공서 등의 공중용 복사) 관공서 등의 공중용 복사 저작물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 연간 저작물 사용료 = 사용료 × 연간 총 복사사용량
2. 복사 이용되는 저작물의 1면당 사용료는 10원으로 한다.
3. 연간 총 복사사용량은 다음과 같다.

연간 총 복사사용량 = ① 직종인원수 × 복사량 + ② 직종인원수 × 복사량 + ③ 직종인원수 × 복사량
단, 직종구분에 따른 복사량은 다음과 같다.

직종구분	복사량(1인당, 연간)	비고
① 일반직	200면	영업 관리부서 등
② 연구·기획직	1,000면	연구실·기획부서 등
③ 기능직	100면	기능직부서

4. 제1호, 제2호,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이용량에 따른 정산을 원할 경우 복사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단, 이용자는 이용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text{저작물 사용료} = 10\text{원} \times \text{복사량}$$

제6조 (개인 등의 공중용 복사) 개인 등이 공중용 복사기기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 복사사용료는 면당 20원으로 한다.

제3장 복제 및 배포사용료

제7조(단행본, 전집, 선집류 복제·배포) 협회 관리저작물의 전편을 사용하여 단행본, 전집, 선집을 발행하는 경우, 이 장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와 협의하여 다음 산식 중 선택하여 사용료를 산출할 수 있다.

가. 도서정가 × 인세율 × 발행부수

나. 도서정가 × 인세율 × 판매부수

〈인세율〉

복제·배포 부수	인세율(%)
3,000부 이하	10

* 3,000부를 초과하여 발행하는 경우, 협의하여 인세율을 정한다.

제8조(서책형도서로의 어문저작물 복제·배포) 서책형도서로의 어문저작물의 복제·배포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사용료 (단위: 원/3년)〉

구간	이용량	운문류		소설류	산문류, 동화	
		0.5편~1편	0.5편 미만	200자원고지 1매	200자원고지 1매	전편
3,000부 이하		76,870	61,490	6,380 (단, 3매 이하 이용은 24,200)	6,380 (단, 3매 이하 이용은 24,200)	199,850
3,001부 ~ 1만부 이하		83,860	67,080	6,970 (단, 3매 이하 이용은 26,400)	6,970 (단, 3매 이하 이용은 26,400)	218,020
1만1부~ 2만부 이하		90,840	72,670	7,550 (단, 3매 이하 이용은 28,600)	7,550 (단, 3매 이하 이용은 28,600)	236,190

* 동화의 경우, 전편 분량이 200자 원고지 32매 이상일 경우 1매당 단가로 계산한다.

** 2만부를 초과하여 발행하는 경우, 2만1부 이상 발행분은 발행부수에 비례하여 사용료를 추가 계산한다.

비고) 용어의 정의(이하 해당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다.)

운문류	시, 동시, 시조, 동시조, 기타 시류를 포함함
소설류	소설, 희곡, 기타 유사한 부류의 저작물을 포함함
동화	아동용 이야기, 기타 유사한 부류의 저작물을 포함함
산문류	수필, 평론, 논설, 설명, 학술, 교양, 기타 유사한 부류의 저작물을 포함함

제9조(학습참고서형도서로의 어문저작물 복제·배포) 학습참고서형 도서로의 어문저작물의 복제·배포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사용료 (단위: 원/1년)〉

구간	이용량	운문류		소설류	산문류, 동화	
		0.5편~1편	0.5편 미만	200자원고지 1매	200자원고지 1매	전편
3,000부 이하		27,210	22,410	2,280 (단, 1매 이용은 3,780원)	2,280 (단, 1매 이용은 3,780원)	70,760
3,001부 ~ 1만부 이하		29,800	24,550	2,490 (단, 1매 이용은 4,140원)	2,490 (단, 1매 이용은 4,140원)	77,500

* 동화의 경우, 전편 분량이 200자 원고지 32매 이상일 경우 1매당 단가로 계산한다.

** 1만부를 초과하여 발행하는 경우, 1만1부 이상 발행분은 발행부수에 비례하여 사용료를 추가 계산한다.

비고) 학습참고서형 도서란 서책형 도서 중, 유치원, 초, 중, 고교의 교과 관련 학습서, 참고서, 문제집, 지도서, 연구서, 기타 유사한 부류의 도서를 포함함

제10조(서책형도서 및 학습참고서형 도서로의 이미지 저작물의 복제·배포) 서책형도서 및 학습참고서형 도서로의 이미지 저작물의 복제·배포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사용료 (단위: 1컷, 원)〉

구간	이용량	서책형도서	학습참고서형 도서
		3년	1년
3,000부 이하		142,700	50,400
3,001부~1만부 이하		155,670	55,200
1만1부~2만부 이하		168,640	-

* 2만부(학습참고서형은 1만부)를 초과하여 발행하는 경우, 2만1부(학습참고서형은 1만1부) 이상 발행분은 발행부수에 비례하여 사용료를 추가 계산한다.

비고) 이미지 저작물이란 미술, 사진, 만화, 삽화, 도안, 기타 유사한 부류의 저작물을 포함함(이하 해당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다.)

제4장 전송사용료

제11조 (학술논문 등의 전송사용료) 학술논문 등의 전송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분류	디지털 파일의 제공여부	전송사용료율
저작물의 판매량	· 데이터 제작 : 사업자	사용료=판매가×판매수량 ×30%이내
회원제 서비스	· 데이터 제작 : 사업자	사용료=매출액×30%이내×협회가 관리하는 저작물의 비율

비고1) 전송사용료는 읽기전용 및 출력을 위한 파일형태로 제공되는 경우에 적용되며,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최종 형태가 프린터물일 경우에는 복사사용료를 적용한다.

비고2) 전송사용료 규정은 저작자, 출판사, 사업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며, 별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공지하고 그 금액을 적용한다.

비고3) 데이터베이스 등에 관련된 전송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12조(서책형 도서의 어문저작물 전자책 및 전송서비스) 서책형 도서의 어문저작물 전자책 및 전송서비스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사용료 (단위: 원/3년)〉

이용자	이용량	운문류		소설류	산문류, 동화	
		0.5편~1편	0.5편 미만	200자원고지 1매	200자원고지 1매	전편
3,000명 이하		63,800	51,030	5,300 (단, 3매 이하 이용은 20,000)	5,300 (단, 3매 이하 이용은 20,000)	165,880
3,001명 ~ 1만명 이하		69,600	55,670	5,780 (단, 3매 이하 이용은 21,900)	5,780 (단, 3매 이하 이용은 21,900)	180,960
1만1명~ 2만명 이하		75,400	60,310	6,260 (단, 3매 이하 이용은 23,700)	6,260 (단, 3매 이하 이용은 23,700)	196,040

* 동화의 경우, 전편 분량이 200자 원고지 32매 이상일 경우 1매당 단가로 계산한다.

** 2만명을 초과하여 전송되는 경우, 2만1명 이상 이용분은 이용자수에 비례하여 사용료를 추가 계산한다.

비고) 이용자는 회원 및 비회원 등이 중복되지 않는 이용자 수를 말한다. 단, 이용자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는 협의하여 정한다.(이하 해당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장에서 같다.)

제13조(학습참고서형 도서의 어문저작물의 전자책 및 전송서비스) 학습참고서형 도서의 전자책 및 전송서비스의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사용료 (단위: 원/1년)〉

이용자	운문류		소설류	산문류, 동화	
	0.5편~1편	0.5편 미만	200자원고지 1매	200자원고지 1매	전편
3,000명 이하	22,680	18,680	1,900 (단, 1매 이용시 3,150)	1,900 (단, 1매 이용시 3,150)	58,960
3,001명 ~1만명 이하	24,840	20,450	2,080 (단, 1매 이용시 3,450)	2,080 (단, 1매 이용시 3,450)	64,580

* 동화의 경우, 전편 분량이 200자 원고지 32매 이상일 경우 1매당 단가로 계산한다.

** 1만명을 초과하여 전송되는 경우, 1만1명 이상 이용분은 이용자 수에 비례하여 사용료를 추가 계산한다.

제14조(이미지 저작물 등의 전자책 및 전송서비스) 전자책 및 전송서비스에서 사용하는 이미지 저작물의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사용료 (단위: 1컷, 원)〉

이용자	이용량	서책형도서	학습참고서형 도서
		3년	1년
3,000명 이하		118,440	42,000
3,001명~1만명 이하		129,200	46,000
1만1명~2만명 이하		139,970	-

* 2만명(학습참고서형은 1만명)을 초과하는 경우, 2만1명(학습참고서형은 1만1명) 이상 이용자는 이용자수에 비례하여 사용료를 추가 계산한다.

제5장 방송, 영상, 공연 등 사용료

제15조(방송 사용) 협회 관리저작물의 방송사용료는 사용자와 본 협회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16조(방송용 등 영상물의 제작 사용) 협회 관리저작물의 영상물제작 사용료는 사용자와 본 협회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17조(영화제작 사용) 협회 관리저작물의 영화제작 사용료는 사용자와 본 협회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18조(공연 사용) 협회 관리저작물의 공연사용료는 사용자와 본 협회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6장 광고, 홍보 등 사용료

제19조(광고, 홍보 등의 제작 및 서비스) ① 협회 관리저작물의 광고, 홍보 등의 제작 및 서비스에 대한 저작물 사용료는 1용도, 1년 사용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기본 사용료(단위: 원)〉

구분	윤문	
사용단위	0.5~1편	0.5편 미만
금액	150,000	100,000

〈유형별 사용용도 계수(단위: %)〉

용도	상세용도	계수	사용용도 계수
온라인 세트	홈페이지, 웹/모바일/앱 배너광고, 이메일, E-카다로그, 전자브로슈어, 소셜미디어, (유튜브, 페이스북, 블로그 등), 앱 페이지 및 아이콘 탑재용 개인 휴대 전자제품(스크린세이버, 월페이퍼)	1용도	100
		SET	250
홍보판촉 세트(인쇄)	브로슈어, DM, 카다로그, 팸플릿, 전단지, 봉투, 사외용 기업, 리포트/보고서(연차보고서 등)	1용도	130
		SET	250
사내용세트·실내 전시	사내배포용 브로슈어, 뉴스레터, 교육자료, 포트/보고서, 프리젠테이션, 이메일, 웹진 및 인트라넷/엑스트라넷, 사내 디스플레이, 포스터, 벽면장식(비광고성, 실내용), 박물관 디스플레이 (비광고성, 비영리/교육목적의 전시회에 한함), 액자용 인화(사내 및 개인소장용)	1용도	100
		SET	250
캘린더	홍보판촉용 캘린더 (탁상용, 벽걸이)	1용도	150
	판매용 캘린더	1용도	250
TV 광고(CF)	중앙방송(KBS, MBC, SBS, EBS), 지방방송, 케이블방송, IPTV, 인터넷방송	1용도	300
광고용세트(인쇄/옥외)	신문광고, 잡지광고, 신문/잡지 속 전단광고, 옥외광고, 차량광고, 디스플레이(포스터, POP, 디스플레이), 지하철역사내광고, 자판기/	1용도	200

용도	상세용도	계수	사용용도 계수
	현금인출기/노래방기기/티켓발권기 등의 전자화면, 극장 스크린 광고, 전화번호부/디렉토리 광고	SET	600
옥외 전시	옥외에 디스플레이, 패널, 벽면 등에 불특정 방문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	1용도	200

② 다만, 동일 저작물을 2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저작물 사용료가 낮은 용도의 사용에 대해서는 50% 추가적인 할인계수를 적용한다. 2개 용도를 초과하여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의 협의를 통해 추가 할인 계수를 적용한다.

제7장 보 칙

제20조(기타 사용료) ① 사용료 징수규정이 없는 이용에 대해서는 협회와 사용자가 사용 요율 또는 금액을 협의하여 이용허락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용허락을 한 경우 협회는 이용허락후 3개월 이내에 그 이용허락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협회가 제1항의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다시 이용허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용료 징수규정에 근거하여야 한다.

제20조의 2(상호협의 관련 보칙) 협회와 이용자가 협의하여 정할 사항과 관련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0. 1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1. 09)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11. 30)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02. 08)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01. 19)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05. 24)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04. 03)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기한) 이 규정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년간 유효하다.

02 사용료 분배규정

2000년 11월 14월 제정	2018년 04월 11월 개정
2007년 10월 11월 개정	2021년 01월 19일 개정
2009년 05월 25월 개정	2021년 05월 24일 개정
2012년 11월 30월 개정	2021년 07월 16일 개정
2016년 12월 28월 개정	2024년 09월 24일 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저작물을 관리하여 얻어진 대가로 징수한 저작물 사용료의 분배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계 권리자 : 한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저작물 자료 : 신고한 저작물에 대한 관계 권리자 및 분배율을 기재한 자료를 말한다.
3. 분배 : 저작물 이용자로부터 협회가 징수한 저작물 사용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한 수수료를 공제하고 관계권리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4. 분배 자료 : 저작물 이용자가 제출한 저작물 이용 관련 각종 보고서 및 이에 준하여 이용된 저작물을 기재한 자료를 말하며, 외국단체가 송부한 분배명세서 및 본 협회가 조사하여 얻은 자료를 포함한다.
5. 분배 대상 사용료 : 각 분배기간에 있어서 분배 대상이 되는 사용료를 말한다.
6. 분배 대상 저작물 : 분배 대상 사용료의 분배 대상이 되는 관리저작물을 말한다.
7. 회원단체 : 협회에 회원으로 가입되어있는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관계 권리자의 확정) ① 관계 권리자는 저작물 자료에 기재되어 있는 자를 권리자로 확정한다.

- ② 저작물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본 협회의 이사회가 해당저작물의 관계 권리자로 의결하여 확정할 수 있다.
- ③ 저작물 자료가 없어서 본 협회가 정한 확정 기준일까지 관계 권리자를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료 분배를 연기한다.

제4조 (분배 대상 저작물 자료 확정) 분배 대상 저작물 자료는 분배 당월 10일까지 등록된 저작물 자료에 의거하여 확정한다.

제5조 (분배 자료) ① 사용료는 분배 자료에 의거하여 분배한다.

② 분배 자료에 관리 저작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본 협회가 관리하는데 적당하지 않은 저작물이라고 결정한 경우에는 분배 대상 저작물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 (복사사용료 분배 시기 및 분배 방법) ① 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제4조내지 제6조에 의거하여 징수한 복사사용료의 분배는 회원단체 및 협회를 통해 시행하고, 회원단체를 통한 분배는 상호가 체결한 약정에 의거하여 분배한다. 단,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상호협의하고 복사·전송권관리위원회에 보고한다.

② 분배는 개별허락계약과 포괄허락계약을 구별하여 시행한다. 포괄허락계약의 경우에 분배 비율은 사용된 저작물의 종류 및 총 저작물 사용료 수입에서 해당 저작물의 저작물 사용료가 차지하는 비율 등에 의하여 복사·전송권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협회는 분배상세내역서를 관계권리자 및 회원 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복사사용료는 연 1회 분배한다. 단, 약정에 의해 협의가 있을 경우 협의에 따른다.

제7조 (복사사용료 외 사용료 분배시기 및 분배방법) ① 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제7조 내지 제20조에 의거 징수한 사용료 분배는 분배 자료에 의하여 관계 권리자에게 분배한다. 단, 포괄허락계약의 경우에 분배 비율은 사용된 저작물의 종류 및 총 저작물 사용료 수입에서 해당 저작물의 저작물 사용료가 차지하는 비율 등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정한다.

② 협회는 분배상세내역서를 관계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분배는 월, 분기, 반기, 연간 1회의 정기 일자에 분배한다.

④ 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제10조의 기타 사용료에 대한 분배방법은 해당 사용료의 산출방법, 징수한 사용료 금액 및 사용된 저작물 수를 참작하여 이사회 승인을 얻어 이사회장이 정한다.

제8조 (분배위원회 등) ① 협회는 포괄허락계약의 사용료 분배·관리 등을 위하여 관계 권리자 및 회원단체로 구성된 분배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분배위원회의 구성은 협회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분배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한다.

1. 분배실태조사 실시 및 관리
2. 직접 및 간접 분배 비율
3. 저작권자 간의 분배비율
4. 기타 분배와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등

제9조(분배보류) 협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분배 대상 사용료를 분배하지 않고 보류할 수 있다.

1. 해당 권리자가 해당 사용료의 권리자인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저작권의 침해 또는 귀속, 금액 등에 대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이의신청을 포함한다)

제10조(분배 조정) 사용료가 과오 분배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해당 권리자에게 통보 후 과오 분배된 금액을 직접 환수하거나 해당 권리자가 분배받을 사용료에서 가감하여 분배할 수 있다.

제11조(분배에 대한 이의신청) ① 사용료 분배에 이의가 있는 위탁자는 분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서식1의 ‘저작물 사용료 분배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협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협회는 이의 신청서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처리하여 이의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그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12조(미분배금의 처리)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용료 분배공고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나 분배가 불가능한 경우 당해연도 사용료에 합산하여 분배할 수 있다.

1. 분배대상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
2. 분배대상자가 분배금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13조(소송 등을 통한 징수 사용료의 분배) 소송 또는 이용자와의 합의로 사용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저작물 이용자가 제출한 분배 자료에 의거 분배한다. 다만, 분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료의 산출 방법, 징수한 사용료 금액 및 사용된 저작물 수를 참작하여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14조(외국단체로부터 수납한 사용료의 분배방법) 외국 상호관리계약 단체로부터 수납한 사용료는 단체별로 구분하여 해당 단체에서 제출된 분배자료에 의거하여 분배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0. 1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05. 25)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11. 30)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12. 28.)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04. 1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01. 19)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05. 24)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07. 16)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09. 24)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제6조 1항 및 2항의 복사·전송권관리위원회는 2025년 7월 26일까지 이사회가 대신한다.

03 관리수수료 규정

2000년 11월 14일 제정 2021년 01월 19일 개정
 2007년 10월 11일 개정 2021년 05월 24일 개정
 2012년 11월 30일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신탁받아 관리하는 저작물의 이용에 따라 징수한 저작권사용료에 대한 관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충당하기 위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저작물신탁관리수수료) 협회가 신탁받아 관리하는 저작물 사용료의 관리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구분		관리수수료율
항목	사용료징수규정	
복사 사용료	제3조(복사업소의 복사 사용료)	30% 이내
	제4조(관공서 등의 공중용 복사)	
	제5조(개인 등의 공중용 복사)	
복제 및 배포 사용료	제6조(서책형 도서 등으로의 복제·배포)	20% 이내
	제7조(서책형 학습참고서류 등으로의 복제·배포)	
전송 사용료	제8조(학술논문 등의 전송사용료)	15% 이내
	제9조(서책형 학습참고서류 등으로의 전송)	20% 이내
기타 사용료	제10조(기타 사용료)	20% 이내

제3조 (보칙) ① 협회가 신탁 관리 등을 수행한 경우의 수수료는 전조에서 정한 비율을 기준으로 하되, 그 업무의 성질 및 업무 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사유와 금액을 미리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0. 1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11. 30)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01. 19)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05. 24)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000년 11월 14일 제정	2017년 12월 28일 개정
2007년 10월 11일 개정	2021년 01월 19일 개정
2012년 11월 30일 개정	2021년 05월 24일 개정
2016년 12월 29일 개정	2024년 09월 24일 개정
2017년 08월 08일 개정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문학·학술·예술 분야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의 보호 및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의 도모를 위하여 저작권자로부터 권리를 양도받은 자 등 저작재산권을 보유하는 자와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저작권의 신탁계약 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저작재산권의 신탁) ① 위탁자는 본 계약기간 중 소유하는 저작재산권 및 장차 취득하게 되는 저작재산권을 신탁재산으로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수탁자는 신탁 받은 저작재산권(이하 “신탁 저작권”이라 한다)을 위탁자를 위하여 관리하여 이로 인하여 얻어진 저작물 사용료 등을 위탁자에게 분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관리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외된 건의 신탁관리는 수탁자가 제외통보를 받은 날의 익월 1일부터 기산하여 6개월이 경과되는 날 종료하고, 해지시점 이전 체결된 수탁자와 이용자간 이용계약에 의한 사용료 산정, 징수 및 분배는 수탁자의 징수 및 분배 관련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1. 저작물의 복제, 배포, 공중송신(방송·전송·디지털음성송신) 전시, 공연, 대여, 2차적저작물작성 등의 지분권을 선택하여 통지하는 경우
2. 저작물별로 선택하여 통지하는 경우
3. 저작물의 이용형태에 따라 선택하여 통지하는 경우

③ 위탁자는 제2항의 통지를 하는 경우 수탁자가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제외하는 권리 등의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와 이용자 간 이용계약이 체결된 저작물에 대해 위탁자가 제2항에 따라 관리범위에서 제외할 경우 이용계약에 따른 사용료 산정, 징수 및 분배가 완료된 때로부터 해당

저작물을 제외하는 것으로 한다.

⑤ 위탁자가 최초 출판하거나 발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저작권은 관리범위에서 제외 한다. 다만, 위탁자가 신탁할 것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수탁자는 위탁자와 저작권신탁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때는 신탁증서 또는 신탁을 증명하는 문서를 위탁자에게 신속하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 (저작권의 신탁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상호 이의가 없는 한 5년 단위로 그 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단, 위탁자의 저작권 보유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② 본 계약은 양 당사자가 각각 상대방에게 신탁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신탁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신탁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4조 (저작권의 관리범위) 수탁자는 신탁저작권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신탁 받아 관리한다.

1. 어문(단 방송극본, 영화시나리오, 뉴스는 제외한다)·사진·연극·영상·미술 저작물의 저작권
 - 가. 복제권
 - 나. 배포권
 - 다. 공중송신권(방송, 전송, 디지털음성송신)
 - 라. 전시권
 - 마. 공연권
 - 바. 대여권
 - 사. 2차적저작물작성권
 - 아. 기타 저작권법 상의 관리범위
2. 어문(악보, 방송대본, 시나리오, 뉴스 등)·사진·미술 저작물의 복사·전송에 관한 권리

제5조 (저작권의 확인 보증)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저작물에 대해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며, 동시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 보증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확인 보증한 저작물에 대하여 위탁자에게 확인보증에 필요한 자료

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외국지역에 대한 관리 및 재위탁) 수탁자는 신탁저작권의 외국지역에서의 관리를 위하여, 외국지역에 대한 신탁저작권의 관리를 직접 맡거나 외국 저작권 관리단체 등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

제7조(저작물 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 수탁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및 분배규정에 의하여 저작물 사용료를 징수하여 위탁자에게 분배한다.

제8조(신탁저작권 및 저작물 사용료의 관리방법) ① 수탁자는 정관 및 본 약관을 준수하고, 또한 총회 의결에 따라 신탁저작권 및 이에 속한 저작물 사용료 등을 관리한다.

② 수탁자는 신탁저작권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단, 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및 분배규정에 있어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분야별 관리 이외의 방식에 따라 관리할 수 있다.

제9조(관리경비의 징수) ① 수탁자는 신탁저작권의 관리에서 얻어진 저작물 사용료 중에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정하여진 관리수수료를 사용료 분배 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탁자는 저작물 사용료 등의 재산 중에서 관리수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로 우선 충당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한 회계연도의 관리수수료 등 수입 총액이 수탁자의 업무수행 경비를 초과하여 수지차액금이 발생하거나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여 수지차손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총회 의결에 따라서 처리한다.

④ 저작물 사용료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특별회계 회원복지기금으로 이관한다.

제10조(업무관할 지역) 수탁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다음의 지역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1. 한국내
2. 외국
3. 외국저작권관리단체 등에 관리를 위탁한 경우에 있어서 그 외국저작권 관리단체 등의 업무집행지역

제11조(소권) ① 위탁자는 신탁 저작권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없으며, 수탁자가 제기한 소송 등에 관하여 합의 또는 취하 등을 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제1항의 민, 형사상의 소를 제기 하였을 시는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위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분배청구권의 양도 및 질권 설정) 위탁자는 저작물 사용료의 분배청구권을 양도하거나 질권 설정 등을 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수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료의 계산 및 분배시기) ① 수탁자는 신탁저작권의 관리에서 얻어진 저작물 사용료를 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에 의거 위탁자에게 분배한다.

② 수탁자는 각 저작물 사용료 분배시에 분배명세서 및 저작물 사용료의 계산서를 작성하여 위탁자에게 교부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자에 대하여 금전채권이 있을 때는 저작물 사용료 분배시 해당 사용료 중에서 그 채권액을 공제할 수 있다.

제14조(사용료 징수 및 분배 유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징수 또는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

1. 저작권 귀속에 대하여 민·형사의 소 제기를 한 경우
2. 저작권의 침해에 대한 민·형사의 소 제기를 한 경우
3. 저작물 사용료에 대하여 그 분배처 또는 적용할 분배율 등이 불명확한 경우
4. 저작권의 귀속 등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5.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받을 채권 등이 있는 경우

제15조 (신탁계약의 해지와 종료) ① 수탁자가 본 계약에 정한 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서면으로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신탁계약은 수탁자가 해지통보를 받은 날의 익월 1일부터 기산하여 6개월이 경과되는 날 종료한다.

②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위탁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신탁계약은 위탁자가 해지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종료한다.

1. 신탁저작물에 대해 위탁자가 저작권을 상실하거나 저작권이 소멸된 경우

2. 위탁자가 협회와의 사전 협의 없이 사용료의 분배청구권을 양도하거나 질권 설정을 한 경우
3. 위탁자가 타인의 저작권을 허위 신고하여 사용료를 수령하거나, 신탁된 저작권을 이 증으로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지 시점 이전 체결된, 수탁자와 이용자간 이용계약에 의한 사용료 산정, 징수 및 분배는 수탁자의 징수 및 분배 관련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 ④ 신탁계약 해지 후 해당 저작물 사용료 미지급분은 수탁자의 분배 관련 규정에 따라 분배하여야 하며, 위탁자는 신탁증서 또는 신탁을 증명하는 문서를 반환하고 저작권의 이전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신탁계약의 승계) ① 위탁자가 사망하거나, 합병으로 인하여 법인이 소멸한 경우에는 상속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본 신탁계약에 의거 위탁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상속인 또는 총괄 승계자인 법인은 위탁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사실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상속인이 복수인 경우에는, 상속인 중에서 1명을 대표승계자로 선임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수탁자의 통지) 수탁자는 위탁자에 대하여 송금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의 통고는 위탁자가 신청한 주소에 서면으로 행하며, 위탁자가 외국에 거주할 경우에는 국내 대리 수령자의 주소로 행할 수 있다.

제18조(위탁자의 신고 의무) ① 위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수탁자에게 신고하고,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1. 신탁증서 또는 신탁을 증명하는 문서를 분실하였을 때
2. 송금처, 개명, 개인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3. 위탁자가 법인 또는 기타의 단체일 경우, 합병, 해산, 명의변경을 하였을 때
4. 위탁자의 대표자, 대리 또는 대리 수령자의 변경이 있을 때
5. 위탁자가 신저작물을 공표하였을 때와 저작권의 양수 등을 하였을 때
6. 신탁저작권의 관리범위의 유보 및 제한사유가 소멸되었을 때

7. 신탁된 저작물 또는 출판물에 관한 권리가 제3자에게 양도 되거나 질권을 설정했거나 또는 그 권리를 행사하는 권한을 위탁자가 상실한 경우에는 위탁자는 그 사실을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수탁자는 위탁자가 전 항의 신고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9조(관리방법의 변경) 수탁자는 제8조에 규정한 신탁저작권의 관리방법을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20조(신탁계약 약관 변경)** ① 수탁자가 본 약관을 변경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위탁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② 전 항의 약관 변경에 이의가 있는 위탁자는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신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해지권 행사를 하지 않을 때에는 제1항의 변경사항을 위탁자가 승낙한 것으로 인정하고, 본 약관 시행 이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한 위탁자는 별도의 절차 없이 본 약관에 의하여 신탁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 ④ 제2항에 따라 이의제기한 위탁자의 경우, 동 규정 제3조의 자동연장 개시일 전까지는 이의가 해소되지 않은 개정 조항에 한하여, 개정 전 조항을 적용한다.

- 제21조(위약 등에 대한 배상책임)** ① 위탁자와 수탁자는 본 약관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손해액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② 위탁자가 수탁자의 명예를 훼손하여 수탁자의 신탁관리업무에 지장을 준 경우, 수탁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수탁자는 전 항에 의해 발생한 손해액을 신탁저작권 관리에서 얻어진 저작물사용료 중에서 우선 공제 할 수 있다.

- 제22조(공고 및 고지)** ① 본 약관에 규정한 공고는 수탁자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시행한다.
- ② 본 약관에 규정한 고지는 우편, 이메일, 문자메세지, 전자고지 등으로 시행한다.

제23조(재판관할) 본 약관에 의거 체결된 신탁계약에 관한 소송의 재판관할은 수탁자의 주소

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0. 1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11. 30)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12. 29.)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08. 08.)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12. 28.)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01. 19.)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05. 24.)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09. 24.)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05 이용계약약관

2000년 11월 14일 제정	2016년 12월 28일 개정
2007년 10월 11일 개정	2021년 01월 19일 개정
2012년 11월 30일 개정	2021년 05월 24일 개정
2014년 03월 10일 개정	2022년 08월 30일 개정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저작권 신탁관리업체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와 신탁 받아 관리하고 있는 저작물(이하 ‘관리저작물’이라 한다)을 복제, 배포, 공중송신(방송, 전송, 디지털음성송신), 전시, 공연, 대여, 2차적저작물작성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라고 한다)간에 준수해야 할 저작물의 이용방법 및 이용허락조건 등에 대한 저작물 이용계약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의 체결) ① 협회의 신탁관리에 관한 계약 약관 제4조에 따라 협회가 관리하는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협회와 문서로써 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회는 본조 제2항에 열거된 경우 외에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작물 등의 이용승인을 거절해서는 아니 된다.

② 협회는 이용자의 저작물 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승인을 거절할 수 있다.

1. 저작권법 등 관계법령, 기타 협회의 각 규정에 반하여 사용하는 경우
2. 이용자가 관리저작물의 이용에 있어 협회 이외의 다른 권리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독점적 또는 이와 유사한 불공정한 거래관계를 맺음으로써 타 이용자와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기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공정한 이용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3. 협회에 사용료를 체납중인 이용자 및 업체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 이용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4. 기타 상관례에 비추어 거래의 질서를 해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제3조(복제기기 등에서의 복사·전송 이용) ① 협회가 관리하는 어문(악보, 방송대본, 시나리오, 뉴스 등)·사진·미술 저작물을 복제기기 등에서 복사복제(그 복제물에서 행하는 복사를 포함한다. 이하“복사”라 한다)하거나 전송하는 것은 다음의 것으로 한다.

1. 복제기기에 의한 복사 또는 수신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으로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되는 전송
2. 사진기기에 의한 복사(마이크로 필름, 마이크로 피쉬 등을 작성하는 기기에 의한 복사 및 이들로부터의 리더 프린터 등에 의한 복사를 포함한다)
3. 기타 복제기기에 의한 복사·전송의 권리에 관계되는 복사 및 전송
 - ② 협회가 행하는 허락의 범위는 도서 또는 저작물 전체의 복사·전송은 허용하지 아니하고, 배포를 목적으로 하여서도 아니 되며 저작물의 소부분에 대한 소부수의 복사 및 전송에 한정한다.
 -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협회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한다.
 1. 제2항의 범위를 초과하는 복사·전송
 2. 다음에 해당하는 복사·전송
 - 가. 가사·악곡의 연주 등을 목적으로 할 때
 - 나. 감상을 목적으로 하여 출판된 미술, 사진의 감상을 목적으로 할 때
 - 다. 학교, 학원 등의 교재 채택을 목적으로 할 때
 - 라. 기타 복사·전송에 관계되는 권리를 가진 자가 특별한 허락조건에 의한 취지를 표시하고 있는 저작물일 때

제4조(저작물 이용허락 범위) ① 본 약관에 따른 이용허락범위는 본 약관에 의거하여 양자 간 협의하여 정한다.

- ② 협회에서 이용허락하는 저작물은 관리저작물 중 이용형태 및 방법에 따라 이용자가 신청하여 허락해준 저작물에 한한다.
- ③ 이용자는 협회가 이용허락한 범위 내에서 관리저작물을 이용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관리저작물의 이용권한을 제3자에게 재이용하도록 허락하거나 위임 또는 양도할 수 없다.
- ④ 협회의 관리저작물을 이용 중인 이용자가 해당 관리저작물에 대한 이용방법 및 조건 등 이용허락 범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서로써 협회의 사전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5조 (복사·전송 허락계약의 종류) 허락계약의 종류를 정함에 있어서 허락과 사용료의 산출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이용자는 복사·전송의 분량, 태양 등에 따라 어느 방식이든 선택할 수 있다.

1. 개별허락계약 - 복사·전송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저작물을 특정한 개별신청에 의거하여 산출한 사용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제3조의 범위 내에서 허락하는 방식
2. 포괄허락계약 - 일정한 기간, 일정한 조건으로 저작물을 특정하지 않고 복사·전송의 방법으로 이용하는데 대하여 제3조의 범위 내에서 포괄적으로 허락 하는 방식으로써,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식이 있다.
 - 가. 실액방식 - 기간 내에 행해진 복사·전송의 실태에 의거하여 사용료를 산출하는 방식
 - 나. 정액조사방식 - 미리 행하는 조사에 의하여 추산하는 저작물로부터의 복사·전송량에 의거하여 사용료를 산출하는 방식
 - 다. 간이방식 - 미리 행하는 조사에 같음하여 복사·전송의 이용 상황, 영업의 형태 등을 감안하여 추정하는 저작물로부터의 복사·전송량에 따라 사용료를 산출하는 방식

제6조 (포괄허락계약 방식의 변경) 본 협회 저작물 사용료 규정에서 정한 포괄허락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실액방식, 정액조사방식, 또는 간이방식의 어느 방식을 불문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계약체결 후 1년간은 다른 방식으로 변경하거나, 또는 다른 방식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제7조 (해외 저작물의 복사·전송 사용료) 해외 저작물의 복사·전송 이용에 대해서는 각국의 복사·전송에 관계되는 권리의 관리 단체 등과의 상호계약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제8조(저작자 성명 표시) 이용자는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저작자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저작인격권 침해의 금지) 이용자는 협회에서 사용허락을 받은 저작물의 제목이나 내용, 저작자 성명 등을 변경하여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만약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를 침해했을 경우에는 저작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제10조(신탁계약 해지자 공고) 협회와 신탁계약을 해지한 위탁자가 있을 경우, 협회는 해지한 위탁자의 저작물의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 이용자는 협회의 저작권사용료 징수규정에서 정한 요율 또는 금액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한다.

제12조(이용내역의 제출 의무) 저작물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방송, 전송, 디지털음성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작성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는 협회가 사용료 산정 및 분배에 필요하여 제공한 양식에 따른 저작물 이용내역을 전자적 방법 및 문서로써 협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3조(판매실적 등의 확인) 협회의 관리저작물을 이용하여 제작한 자료의 판매실적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내역을 요청할 경우 이용자는 이를 제공하고, 그 밖에도 이용자는 협회가 사용료의 산정과 분배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료의 반환) 이용자가 관리저작물의 사용료로 납부한 금액은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용자가 이용허락을 받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용료 납부 후 10일 이내에 사용료 반환을 청구한 경우 및 착오로 과오납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제15조(연체가산금) 이용자는 협회와 합의한 기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 사용료의 3%를 가산한 금액을 1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기한 1개월 경과 후에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사용료(제1항에 의한 가산금 제외)의 0.022%에 해당하는 증가산금을 매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12개월에 한정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경우 이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1항에 의한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계약의 해지) ① 협회 또는 이용자는 그 상대방이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불이행 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이 통보를 받은 때에 해지된 것으로 본다.

③ 이용자는 협회로부터 계약의 해지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협회의 관리저작물 이용을 중지하여야 하며, 해지 후에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침해시 조치) ① 이용자가 협회에서 관리하는 저작물을 협회의 사전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협회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용자에게 이용계약 체결 및 사용료 납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제1항에 따른 협회의 요청에 따른 경우 협회는 제15조에 따른 연체가산금, 제18조에 따른 침해가산금 부과를 면제한다.

제18조(침해가산금) 협회는 이용자가 제17조 제1항에 따른 협회의 요청에 응하지 않을 때는 이용자에게 합법적 계약 체결시 납부하는 사용료의 15% 한도 내에서 가산금을 별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제15조에 따른 연체가산금은 부과하지 않는다.

제19조(위약에 따른 손해배상) 협회 또는 이용자는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액과 그 손해액에 대한 10%의 위약금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제20조(관할법원) 협회와 이용자 간에 법률적인 대립이 발생할 경우의 관할 법원은 협회의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합의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0. 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11.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03.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12.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01. 19.)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05. 24.)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08. 30.)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07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1. 사용료 징수규정
2. 사용료 분배규정
3. 관리수수료 규정
4. 신탁계약약관

01 사용료 징수규정

2001년 09월 12일 제정

제1장 저작물 사용에 관한 계약 약관

제1조(계약체결) 사단법인 영상시나리오작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관리하는 신탁 저작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협회와 문서로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조(사용료 지불) 협회에 대해 사용자가 지불해야 할 저작물 사용료는 제2장의 저작물 사용료 규정에 의한 것으로 한다.

제3조(계약의 해지) 사용자가 사용료의 지불을 태만히 하거나 협회와 체결한 사용계약을 위반했을 때는 협회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4조(사용내역 송부) 사용자는 협회가 신탁관리하고 있는 저작물을 사용했을 때는 지체없이 해당 저작물의 사용내역서를 협회에 송부해야 한다.

제2장 저작물 사용료

제5조(사용료 구분 및 금액) 협회가 관리하는 저작물의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 극장용 영화의 최초 영상화 각본료는 저작재산권자와 사용자의 합의로 결정한다.
2. 텔레비전 방영 : 완성된 영화를 텔레비전에서 방영할 때에는 그로 인하여 사용자가 영화제작자 등에게 지불한 금액의 4%
3. 유선 방송에서의 방영 : 완성된 영화를 유선방송에서 방영할 때에는 그로 인하여 사용자가 영화제작자 등에게 지불한 금액의 4%
4. 재상영 : 계약기간 종료 후 재상영할 때에는 그로 인하여 사용자가 영화제작자에게

- 지급한 금액의 4%
5. 국외수출 : 완성된 영화를 외국으로 수출한 때에는 수출가격의 4%
 6. 정규극장 외 상영 : 완성된 영화를 국내 정규극장 이외의 장소에서 상영할 때에는 사용자가 영화제작자들에게 지급한 금액의 4%
 7. 비디오 테이프화 : 완성된 영화를 비디오 테이프화할 경우 사용자가 영화제작자 등에게 지급한 금액의 4%
 8. 기타 기기 : 완성된 영화가 향후 개발될 새로운 기기에 이용될 경우 사용자가 영화제작자들에게 지급한 금액의 4%
 9. 제4호 내지 제8호의 경우 영화제작자들이 직접 상영, 복제·배포 등을 한 경우 수익금의 4%

제6조(기타 사용료) 제5조의 각 호에 규정한 이외의 방법으로 관리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관리저작물의 성질, 이용의 목적 및 형태, 기타 사정에 따라 사용자와 협의해서 정하기로 한다.

제7조(사용료 지급의 특례) 제5조 제2호 내지 제8호의 경우 저작물 사용자 이외의 자인 영화제작자 등이 저작물 사용료를 지급할 것을 협회와 약정한 경우에는 영화제작자가 저작물 사용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영화제작자가 사용자를 대신하여 제1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면제) ① 각종 예술제, 학술연구, 교육 등 비영리·공익 목적으로 저작물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제5조 제2호 내지 제9호의 사용료는 당해 영화의 이용으로 인한 수입이 제작비(홍보비 및 프린트비 포함)를 초과하지 못한 때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영화제작자는 협회에 수입이 제작비를 초과하지 못하였음을 소명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02 사용료 분배규정

2001년 09월 12일 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영상시나리오작가협회가 저작물을 관리하여 얻어진 저작물 사용료의 분배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분배란 저작물 사용자로부터 협회가 징수한 저작물 사용료를 문화관 광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별도로 정한 관리수수료를 공제하고 수익자에게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분배자료) ① 분배자료란 사용자로부터 제출된 사용저작물 목록등 사용료 징수 대상이 된 저작물에 대한 자료를 말한다
② 사용료의 분배는 분배자료에 의하여 분배한다.

제4조 (분배대상 저작물) 분배 대상저작물은 분배대상 사용료의 징수 대상이 된 저작물로 한다.

제5조 (사용료 분배방법) ① 분배대상이 된 저작물의 사용료가 1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사용자로부터 수령 즉시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② 사용료가 10만원 미만일 때는 수익자가 수령할 것을 희망하지 않는 한 수탁자가 보관하고 합계 금액이 10만원 이상이 된 때에 지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 회계연도 말에는 모든 수익자의 사용료를 정산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④ 협회 업무상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또는 분배업무수행에 곤란한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는 분배시기 등 분배방법을 총회의 승인을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이의신청) 수익자가 저작물사용료분배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직접 이의 신청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15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03 관리수수료 규정

2001년 09월 12일 제정

사단법인 영상시나리오작가협회는 저작물 사용료를 분배할 때 다음에 정한 비율에 따라 관리수수료를 징수한다.

이 관리수수료는 저작물 사용료 중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한다.

저작물 관리수수료 : 저작물 사용료의 20% 이내

단, 저작물 사용료 규정 제 5조 제1호(극장용 영화의 최초영상화 각본료)의 관리수수료는 저작물 사용료의 5% 이내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저작권 관련 약관 및 규정

허가일자 2001년 9월 12일

04 신탁계약약관

2001년 09월 12일 제정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극장용 영화 영상화를 주목적으로 창작된 각본(이하 “저작물”이라 한다)의 저작권 보호와 원활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저작물의 저작권을 가진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사단법인 영상시나리오작가협회(이하 “수탁자”라 한다)사이 에 저작권의 신탁에 관한계약 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저작권의 신탁) ① 위탁자는 현재 가지고 있는 권리와 장차 가지게 될 권리를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수탁자는 위탁자를 위해 이를 관리하고 이로써 얻은 사용료 등 수익을 위탁자에게 분배한다.

② 수탁자는 본 약관에 의거 신탁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신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 (저작권 신탁 기간) 신탁계약의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기간에 대한 쌍방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5년 단위로 그 기간이 자동 연장된다.

제4조 (저작권의 보증)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신탁하는 저작권에 관하여 적법한 권리자임 과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지 않음을 보증한다.

② 수탁자는 전 항의 보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에는 위탁자 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5조 (신탁저작권의 재위탁) 수탁자는 국내 또는 외국저작권 관리 단체들에 신탁저작권을 재 위탁 할 수 있다.

제6조 (저작물 사용료의 징수와 분배) ① 수탁자는 그 업무를 행하는 지역에서 저작물의 사용 을 허락하고 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전항의 저작물 사용료는 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에 따라 위탁자에게 분배한다.

제7조 (관리수수료 징수) ① 수탁자는 신탁저작권 관리에서 얻어진 저작물 사용료 중에서 문화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관리수수료를 사용료 분배시 공제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저작물 사용료 중에서 관리수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등의 분배 이전에 공제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저작물사용료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수입을 업무수행경비로 충당할 수 있다.

④ 한 회계연도의 관리수수료등 수입총액이 수탁자의 업무수행경비를 초과하여 수지차의 금액이 발생하거나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여 수지차손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총회 결의에 따라서 처리한다.

제8조 (업무 관할 지역) 1. 한국내

2. 외 국

3. 외국저작권 관리단체 등에 관리를 재위탁하는 경우, 그 외국 저작권 관리 단체 등의 업무 집행지역

제9조 (소권) ① 수탁자는 신탁저작권의 관리에 따르는 형사 또는 민사상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전항의 소송을 제기할 경우 사전에 당해 위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신탁저작권 관리에 따른 비용의 징수) ① 다음 각 호의 경비는 당해 위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1. 위탁자의 의뢰로 수탁자가 저작권등록 등의 업무를 행하는 경우

2. 신탁저작권에 대한 조세

3. 신탁저작권의 귀속에 관한 소송 비용

② 전항의 경비는 신탁저작권의 관리에서 얻어진 저작물 사용료 중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11조 (사용료 징수 및 분배 유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해당 신탁저작권의 이용허락 및 사용료의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

1. 신탁저작권의 침해 또는 저작권의 귀속 등에 관하여 민·형사상의다툼이 있을 때

2. 저작물 사용료에 대하여 그 분배 대상자가 불명확한 경우

제12조 (신탁계약의 승계) 위탁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신탁계약에 의거 신탁자의 권리 의무를 승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속인은 권리 의무를 승계한 것을 지체없이 수탁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신탁계약의 해지) ① 위탁자의 신탁저작권이 소멸 또는 상실되었을 경우 수탁자는 사실확인을 거쳐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신탁계약 기간내 위탁자, 수탁자 쌍방은 본 약관에서 정한 권한과 의무,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탁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발생한 손해 또는 비용은 귀책사유를 제공한 측에서 그 책임을 진다.

제14조 (신탁계약의 종료) 위탁자의 저작권은 신탁계약의 종료와 동시에 위탁자에게 귀속되며 신탁자는 지체없이 수탁자에게 신탁증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 (위탁자의 신고 의무) ① 위탁자는 신탁계약을 체결할 때 저작권 행사에 제한이 있을 경우 예는 그 사실을 수탁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는 신탁기간 중 신탁저작권의 이전 등으로 인한 권리변동과 질권 설정 등으로 권리 제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지체없이 수탁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시는 지체없이 수탁자에게 신고하고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1. 신탁증서 및 등록인감을 분실하였을 때
2. 사용료의 입금에 필요한 사항, 거주지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3. 위탁자가 새로운 저작물을 저작하였을 때
- ④ 위탁자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신고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6조 (인감 신고 의무) ① 위탁자는 자기의 인감을 수탁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도 같다.

② 수탁자는 전항의 등록인감의 도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7조 (신탁계약 약관의 변경) ① 수탁자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본 약관을 변경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약관 변경에 이의가 있는 신탁자는 공고일로부터 3월 이 내에 신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해지권의 행사는 서면에 의하여만 한다.

④ 공고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해지권 행사를 하지 않을 때에는 제1항의 변경사항을 위탁자가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8조 (공고) 본 약관에 규정한 공고는 수탁자가 발행하는 회원 회보로 시행한다.

부 칙

1. 이 약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08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1. 사용료 징수규정
2. 사용료 분배규정
3. 관리수수료 규정
4. 신탁계약약관
5. 이용계약약관

01 사용료 징수규정

2001년 08월 10일 제정 2021년 01월 05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와 협회가 관리하는 저작권접권(방송실연자의 실연과 관련된 권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미치는 실연이 담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간에 사용료의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문서화) 협회가 관리하는 저작권접권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협회와 문서로써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약관) 이 규정에 따른 저작권접권 이용계약의 약관은 별도로 정한다.

제2장 사용료

제4조(재방송료) ① TV 또는 라디오 등의 프로그램을 최초 1회 방송 후 재방송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방송사의 “방송제작비 지급규정(외주제작 시 준용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한 “기본 출연료”에 아래 표의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구 분	사용요율
한국방송공사	기본출연료의 20%
(주)문화방송	기본출연료의 20%
(주)S B S	기본출연료의 14.75%
한국교육방송공사	기본출연료의 20%
(주)경인방송	기본출연료의 13%

구 분	사용요율
지방문화방송	기본출연료의 7%
지역민방	기본출연료의 7%
종합편성채널 방송사	기본출연료의 10%

② 재방송 이후의 사용료는 재방송 사용료의 50%로 한다. 단, 교육방송공사의 4방 이상은 25%로 한다.

제5조(네트 방송 사용료) ① ‘네트 방송’이란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방송사의 프로그램을 수급사가 네트로 받아 방송(본방송 및 재방송 포함)하는 것이며, ‘네트사용료’란 프로그램을 네트 방송으로 사용함에 따라 지급하는 사용료를 말한다.

② 본방송을 전국 네트 방송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1건 1회당 방송사의 방송제작비 지급 규정으로 정한 “기본출연료”에 다음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구 분	사용요율
지방문화방송	기본출연료의 5%
지역민방	기본출연료의 3%

③ 재방송을 네트방송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본방송 네트사용료의 50%로 하며, 재방송 이후의 네트사용료는 재방송 네트사용료의 50%로 한다.

④ 이 규정에서 정한 네트방송 사용료에 해당하지 않는 네트방송에 대해서는 각 방송사업자의 지역적 특성과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사용료를 정한다.

제6조(방송 사용료의 면제) 방송사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방송사가 내부에서 업무상 재방송하는 경우 (자체 시험방송 포함)
2. 정전, 중계 기기의 고장 등 사고 및 기타재해로 인하여 재방송을 하는 경우
3. 수익이 없는 특수방송에서 방송하는 경우
4. 방송사가 시청자 편의제공 및 프로그램 홍보를 위해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경우

제7조(복제·배포 사용료) “방송사 등 프로그램 사용자”가 직접 또는 “제3자”를 지정하여 프로

그램을 국내·외에서 복제·배포하는 경우 그 프로그램에 출연한 방송실연자에 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방송사업자에게 복제·배포하는 경우

드라마	공급금액의 10%
만화영화	공급금액의 7%
기타 프로그램	공급금액의 5%

2. 제3의 사업자에게 복제판매를 허용하여 복제·배포하는 경우

공급금액의 10%

3. 일반공중에게 복제·배포하는 경우

공급금액의 7%

제8조(기타 사용료) 프로그램을 제4조 내지 제7조 이외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의 목적 및 형태, 기타 사정에 따라 사용자와 협의하여 이용을 허락할 수 있으며, 3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2021. 1. 5.)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02 사용료 분배규정

2002년 02월 21일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방송실연자의 저작인접권(방송실연자의 실연과 관련된 권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신탁 관리하여 그 대가로 징수한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의 분배 방법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분배란 프로그램 사용자로부터 협회가 징수한 사용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한 관리수수료 및 원천징수액을 공제하고 위탁자에게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분배 자료) ① 방송사로부터 제시 받은 프로그램 사용보고서를 분배자료로 하여 사용료를 분배한다.
② 분배자료가 없을 경우 그 분배방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4조(분배 대상 프로그램) 분배대상 프로그램은 분배대상 사용료의 징수 대상이 된 프로그램으로 한다.

제5조(분배대상 사용료 및 분배시기) 협회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사용료의 분배대상 사용료 및 분배시기는 다음과 같다.

분배대상 사용료	분배시기
1~3월	5월말
4~6월	8월말
7~9월	11월말
10~12월	익년2월말

제6조(사용료 분배방법) ① 분배 대상이 된 사용료가 30,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위탁자가 수

- 령할 것을 희망하지 않는 한 수탁가가 보관하고 합계금액이 30,000원이 된 때에 지급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 회계연도 말에는 모든 위탁자의 사용료를 정산하여 위탁자에게 지급한다.
- ③ 사용료 징수규정 제7조에 규정된 복제·배포 사용료 및 제8조에 규정된 기타 사용료의 분배방법은 각 프로그램에 출연한 개별 방송실연자의 기본출연료를 기준으로 하여 분배한다.
- ④ 협회 업무상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또는 분배업무 수행에 곤란한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는 분배시기 등 분배방법을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이의 신청)** ① 위탁자는 사용료의 분배내역, 금액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 ② 협회는 이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결과를 위탁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분배액을 산출하여 지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03 관리수수료 규정

2002년 02월 21일 제정 2023년 12월 08일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저작인접권 신탁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수료(이하 “관리수수료”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수수료) 협회의 관리수수료율은 사용 유형에 따라 다음의 범위 내에서 매년 이사회 의결로 정하여 대의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사용료 징수규정 제4조, 제5조의 재방송료, 넷방송사용료: 사용료의 6% 이내
2. 사용료 징수규정 제7조의 복제·배포 사용료
 - (2024년~2026년) 사용료의 13% 이내
 - (2027년 이후) 사용료의 14% 이내
3. 기타 사용료
 - (2024년~2026년) 사용료의 13% 이내
 - (2027년 이후) 사용료의 14% 이내

제3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의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문화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12. 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 1. 1.부터 시행한다.

04 신탁계약약관

2002년 02월 21일 제정 2017년 06월 07일 개정

제1조(목적) 이 약관은 방송실연자의 권리보호와 실연의 원활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방송실연자 또는 방송실연자의 권리를 승계한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사단법인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이하 “수탁자”라 한다) 사이에 방송실연자의 권리 신탁에 관한 계약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리의 신탁) ① 위탁자는 현재 가지고 있는 권리와 장차 가지게 될 권리(이하 “저작인접권”이라 한다)를 신탁계약약관에 규정한 바에 따라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수탁자는 위탁자를 위해 이를 관리하고 이로 인하여 얻어진 사용료 등 수익을 위탁자에게 분배한다.
② 수탁자는 이 약관에 의거 신탁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신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수탁자의 동의를 얻어 제3자를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권리의 신탁기간) 신탁계약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5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단, 위탁자는 수탁자의 권리보유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제4조(권리의 관리범위) 위탁자는 저작권법 상 인정하는 방송실연자의 권리범위 내에서 저작인접권을 관리한다.

제5조(권리의 신탁방법) 위탁자는 저작인접권을 수탁자에게 직접 신탁하여야 한다.

제6조(권리의 확인보증)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신탁한 저작인접권이 본인이 직접 실연을 했다는 사실 또는 실연자로부터 그 권리를 승계했다는 사실을 보증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가 보증한 권리와 관련해 필요시에는 위탁자에게 그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위탁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관할지역) 수탁자는 대한민국 및 외국에서 직접 저작인접권을 관리하며 필요한 경우 외국의 저작권관리단체에 재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8조(소권) ① 수탁자는 저작인접권의 관리와 관련하여 이용자가 위탁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 경우 민·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제1항의 민·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위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의 관리방법) 수탁자는 정관 및 이 약관을 준수하고 사용료 징수 및 분배규정 등 관련규정에 의해 사용료를 관리한다.

제10조(사용료의 징수와 분배) ① 수탁자는 그 업무를 행하는 지역에서 저작인접권의 행사에 관계되는 방송물의 사용을 허락하고 수탁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 사용료 징수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수탁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 사용료 분배규정에 따라 위탁자에게 분배한다.

③ 수탁자는 분배에 필요한 경비가 수령한 액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거나 분배하는 것이 적절치 못할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배하지 않고 회원의 복지와 지위향상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의 계산 분배시기) ① 사용료의 계산방법과 분배시기 등은 사용료 분배규정에서 정한다.

② 수탁자는 사용료 분배 시와 신탁계약 종료 시에 저작물 사용료의 계산서를 작성하여 위탁자에게 교부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자에 대하여 금전적인 채권이 있을 경우 사용료 분배액 중에서 그 채권액을 공제할 수 있다.

제12조(이용허락 및 분배보류)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실연의 이용허락 및 사용료의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

1. 저작인접권의 귀속과 관련하여 민·형사상의 소 제기중일 경우

2. 위탁자가 신고한 저작권접권이 수탁자의 자료와 상이할 경우
3. 사용료의 분배율 등이 불명확한 경우

제13조(권리의 양도 및 질권 설정) 위탁자는 저작권접권을 양도하거나 질권 설정 등을 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수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관리수수료 징수) ① 수탁자는 저작권접권 관리에서 얻어진 사용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정하여진 관리수수료를 사용료 분배 시 공제한다.
 ② 수탁자는 관리수수료,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별도규정이 없는 기타수입을 업무수행 경비로 충당한다.
 ③ 수탁자는 사용료 중에서 관리수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로 선불하여 충당할 수 있다.

제15조(권리관리에 따른 비용징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해당 위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1. 수탁자가 위탁자를 대리하여 관할 관청에 저작권접권을 등록할 경우의 그 수수료
2. 저작권접권에 대한 과세

제16조(위탁자의 신고의무) 위탁자는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시에는 지체 없이 수탁자에게 신고하고 소정의 수속을 밟아야 한다.

1. 위탁증서 및 등록인감을 분실한 경우
2. 송금처, 성명(예명 포함), 주소가 변경된 경우
3. 위탁자의 대표자, 대리인 및 대리수령자가 변경된 경우

제17조(신탁계약의 승계) ① 위탁자인 개인이 사망하거나 법인이 합병된 경우 상속인 또는 저작권접권을 승계한 법인은 이 신탁계약에 의거 위탁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속인은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을 지체 없이 수탁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상속인이 복수인 경우 그 중에서 1명을 대표자로 선임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신탁계약의 해지) ① 수탁자는 보호기간의 만료 등으로 위탁자의 권리가 소멸되거나 위탁자가 신탁의 본뜻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②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신탁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 ③ 신탁계약 해지는 그 계약 상대방이 해지 통보를 받은 때로부터 한다.

제19조(수탁자의 통지) 수탁자는 위탁자에 대하여 사용료 송금 등 필요한 사항의 통지를 위탁자가 신고한 주소로 한다. 만약 위탁자가 외국에 거주할 경우 국내의 대리 수령자에게 한다.

제20조(신탁계약 약관의 개정) ① 이 약관을 개정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의원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신탁계약약관이나 사용료 분배규정을 개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통지하는 한편 회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약관 변경에 이의가 있는 위탁자는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기간 내에 해지권 행사가 없을 때에는 변경 내용을 위탁자가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1조(재판 관할) 이 약관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 법원은 수탁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약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약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2017. 6. 7.)로부터 시행한다.

05 이용계약약관

2002년 02월 21일 제정 2018년 11월 14일 개정
2010년 10월 01일 개정 2022년 11월 23일 개정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사단법인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관리하는 저작권접권(방송실연자의 실연과 관련된 권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미치는 방송물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방식) 협회가 관리하는 저작권접권이 미치는 방송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협회와 문서로써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조(이용허락) 이용허락의 조건은 협회와 이용자가 협의하여 정하며 사용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한 사용료 징수규정에 의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의 납부는 협회 사무국 또는 협회 은행계좌로 한다.

제5조(사업의 변경 통보) 사용자는 이용방법, 이용지역 등에 변경이 생길 경우 변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협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보고서 송부) 이용자는 협회가 신탁관리하고 있는 방송실연을 사용했을 시에는 해당 방송물의 사용보고서를 서면으로 협회에 송부하여야 한다.(방송편성표 및 국내 및 해외 판매보고서 등)

제7조(이용실태의 확인) 협회는 이용실태 등에 대하여 직접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연체가산금) ① 이용자는 계약상 약정된 기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 사용료의 3%를 가산한 금액을 1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기한 1개월 경과 후에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사용료(제1항에 의한 가산금 제외)의 0.022%에 해당하는 증가산금을 매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12개월에 한정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미납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가산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계약의 해지) 협회는 이용자가 사용료의 지급을 태만히 하거나 협회와 체결한 이용계약을 위반할 경우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손해배상) 협회와 이용자는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서상의 사용료 이외에 사용료의 10%를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재판 관할) 이 약관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협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부 칙(2010. 10. 1)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11. 14)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11. 23)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09

한국영화제작가협회

1. 사용료 징수규정
2. 사용료 분배규정
3. 관리수수료 규정
4. 신탁계약약관
5. 이용계약약관

01 사용료 징수규정

2005년 11월 09일 제정 2018년 07월 25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영화제작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관리하는 영상 저작물(이하 “관리저작물”이라 한다.)의 이용에 따른 공정한 사용료 산정 및 징수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의 체결) 협회의 관리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문서로써 저작물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약관) 본 규정에 따른 관리저작물 이용계약약관은 별도로 정한다.

제4조(이용구분) 협회 관리저작물의 이용구분은 다음과 같다.

1. 공연
2. 공중송신(방송, 전송, 그 밖의 공중송신)
3. 복제
4. 배포
5. 그 밖에 저작권법상 부여되는 권리에 따른 이용

제5조(사용료) ① 온라인 주문형 스트리밍 서비스 또는 온라인 다운로드 서비스에 대한 전송 사용료는 다음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매출액 × 0.55
2. 1,000원 × 0.55 × 관리저작물 이용횟수

비고 1) 매출액이란 당해 사이트에서 발생한 제협 관리 저작물의 사용료에 회비, 광고 등의 수입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회비, 광고 또는 기타의 수입은 이 서비스 항목이 당해 사이트의 전체 서비스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전체 서비스 저작물 중 제협 관리저작물이 차지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② 기타 공연 시설에 대한 온라인 전송사용료는 다음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매출액 × 0.55
2. 2,000원 × 0.55 × 관리저작물 이용횟수

비고 1) 매출액이란 온라인 전송업자가 공연자(시설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징수한 제협 관리 저작물의 사용료에 회비, 광고 등의 수입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회비, 광고 또는 기타의 수입은 이 서비스 항목이 당해 사이트의 전체 서비스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전체 서비스 저작물 중 제협 관리저작물이 차지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③ 온라인 주문형 스트리밍 방식으로 총 재생시간이 한 편당 3분을 넘지 아니하며, 자신의 홈페이지 및 서버에서 영화파일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사전 신고할 경우 다음 대상에 대하여 사용료를 면제한다.

1. 온라인 주문형 스트리밍 서비스 또는 다운로드 서비스를 하는 자나 영화판매업자가 판매 촉진을 위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영화와 동일한 영화를 제공하는 경우
2. 위탁자가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경우
3. 저작재산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가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경우

제6조(전송사용료의 예외) 사용료가 없이 총 재생 시간이 한 편당 3분을 넘지 않으며, 사전 신고할 경우 다음 각 항에 대하여 전송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영화 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영화 파일 등의 판매촉진을 위해 판매 하고자 하는 영화와 동일한 영화로 서비스를 하는 경우
2. 협회의 위탁자가 스스로 창작한 작품 또는 관리 저작물을 위탁자 자신의 홈페이지에 업로드 하는 경우
3. 저작재산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자신의 영화 저작물에 관계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7조(기타 사용료) 사용료 징수규정이 없는 서비스의 경우 협회는 우선 이용허락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개월 이내에 이용자와 사용료율 또는 금액을 협의하여 이를 반영한 징수규정개정안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승인받은 규정에 의하여 정산한다.

제8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세칙의 제정) 이 규정이 정한 것 외에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을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02 사용료 분배규정

2005년 11월 09일 제정 2023년 02월 01일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영화제작가협회(이하 “제협”이라 한다)가 신탁저작권을 관리하여 얻어진 사용료(온라인 영화저작물 불법복제 및 유통 단속으로 얻어진 손해배상금 포함)의 분배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배대상자) 분배대상자는 제협의 신탁계약약관에 의한 위탁자 또는 그 권리를 승계한 자로 한다.

제3조(분배자료) 사용료의 분배는 사용자가 제출한 사용보고서, 제협이 조사한 사용명세 등의 분배자료에 의하여 분배한다.

제4조(분배시기) ① 제협이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사용료 분배는 매월 단위로 한다.
② 제협의 업무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분배시기에 분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분배시기를 정할 수 있다.

제5조(분배금) ① 제협이 위탁자에게 분배하는 분배금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사용료에서 관리수수료를 공제하고 전기이월 분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개별 위탁자에게 분배할 분배금이 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위탁자가 수령을 희망하지 않는 한 차기 분배금에 가산한다.

제6조(이의신청) ① 위탁자가 저작물사용료 분배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그 신탁저작권이 사용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제협에 직접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은 제협의 ‘사용료분배 이의신청서’에 기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협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협은 이의신청 접수 후 90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위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세칙의 제정) 이 규정이 정한 것 외에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03 관리수수료 규정

2005년 11월 09일 제정 2024년 05월 17일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영화제작가협회(이하 “제협”이라 한다)가 신작저작권을 관리함에 있어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수료(이하 “관리수수료”라 한다)를 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관리수수료) 제협의 관리수수료율은 사용 유형에 따라 다음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 의 결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사용료 징수규정에서 정한 사용료의 30% 이내
2. 영화저작물 불법복제 및 유통 단속활동으로 얻어진 손해배상금 중 민·형사상의 소송 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30% 이내

제3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 결을 거쳐 문화관광부 장관 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04 신탁계약약관

2005년 11월 09일 제정 2016년 09월 01일 개정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영상저작물(영화 및 비디오물, 매체와 관계없이 이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모든 저작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저작권 보호와 원활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상저작물의 저작권을 가진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사단법인 한국영화제작가협회(이하 “수탁자”라 한다) 사이에 저작권 신탁계약의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저작권의 신탁) ① 위탁자는 현재 가지고 있거나 앞으로 가지게 될 영상저작물에 대한 제4조에 규정된 권리를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수탁자는 위탁자를 위하여 이를 관리하고 이로 인하여 얻어진 사용료 등의 수익을 위탁자에게 분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별도의 서면에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제1항에서 규정하는 권리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권리를 신탁하고자 하는 자는 신탁계약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탁자가 앞으로 저작권을 취득하게 될 영상저작물의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수탁자는 신탁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위탁자에게 신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⑥ 위탁자는 사전에 수탁자와 협의한 후 제3자를 수익자로 지정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3조(저작권의 신탁 기간) ① 신탁 계약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단, 위탁자의 저작권 보유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계약 기간에 대한 상호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한 계약은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라도 계약기간 중에 수탁자에 의해 진행된 이용허락 기간은 보장되어야 한다.

제4조(저작권의 관리범위)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위탁자로부터 저작권(이하 “신탁저작권”이라 한다.)을 수탁하여 관리한다.

1. 공연권
2. 공중송신권(방송, 전송, 그 밖의 공중송신)
3. 복제권
4. 배포권
5. 그 밖에 저작권법상 부여되는 권리

제5조(신탁저작권의 관할) ① 수탁자는 대한민국에서의 신탁저작권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의 의사에 따라 외국 지역에 대한 신탁저작권 관리 업무를 위탁자로부터 수탁받아 외국의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등에 재 위탁 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외국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 저작물을 수탁 관리 할 수 있다.

제6조(저작권의 확인 보증)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신탁한 모든 저작권의 적법한 권리자임과 그 대상인 저작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지 않음을 보증한다.
② 수탁자는 전항에서 위탁자가 확인 보증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모든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위탁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저작물 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 수탁자는 그 업무를 행하는 지역에서 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허락하고 저작물 사용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및 분배 규정에 따라 징수하고 분배한다.

제8조(관리수수료의 징수) ① 수탁자는 신탁저작권 관리에서 얻어진 저작물 사용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관리수수료를 저작물 사용료 분배 시 공제한다.
② 수탁자는 저작물 사용료 및 모든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별도규정에 없는 기타 수입을 업무수행 경비로 충당할 수 있다.

제9조((신탁저작권관리에 따른 경비 부담) ① 다음 각 호의 경비는 해당 위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1. 신탁저작권에 대한 과세
2. 신탁저작권의 등록에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
3. 신탁저작권의 귀속에 관련한 분쟁에 발생한 비용
4. 기타 위탁자의 요청에 따라 수탁자가 이를 수행한 경우 소요된 비용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경비는 신탁저작권의 관리에서 얻어진 저작물 사용료 중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10조(신탁저작권의 양도 및 질권 설정) 위탁자가 저작물 사용료의 분배 청구권을 양도하거나 질권 설정 등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이용 허락 및 분배 유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신탁저작권의 이용허락 및 사용료의 징수 또는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

1. 신탁저작권의 침해 또는 저작권의 귀속 등에 관하여 민·형사상의 소제기 또는 수탁자에 대해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
2. 저작물 사용료에 대하여 분배 대상 또는 분배율 등이 불명확한 경우.
3. 위탁자가 신고한 저작물의 귀속 등에 의문점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제12조(소권) ① 수탁자는 제2조 각항에 해당하는 신탁저작권 관리와 관련하여 침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침해자에 대한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수탁자는 위탁자에 대한 제반사항을 제13조(제반 사항의 통지)에 따라 통지한다.

② 위탁자는 신탁 저작권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없으며, 수탁자가 제기한 소송 등에 관하여 합의 또는 취하 등을 할 수 없다.

제13조(제반 사항의 통지) ① 수탁자는 위탁자에 대한 제반 사항의 통지를 위탁자가 신고한 주소지로 한다. 만약, 위탁자가 외국에 거주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통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대리인의 주소지로 한다.

② 수탁자는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송금과 그 밖의 통지를 보류할 수 있다.

1. 제 14조 제①항 4호에서 규정하는 신고가 되지 않을 때.
2. 위탁자로부터 신고 된 주소로 보낸 최고, 그 밖의 통지가 계속해서 3회 이상 도달하지 않은 것이 확인된 때.
3. 수탁자가 송금한 금액이 위탁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것이 확인된 때.

제14조(위탁자의 신고의무) ① 위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수탁자에게 신고하고 소정의 수속을 밟아야 한다.

1. 위탁자가 새로운 저작물을 저작하였을 경우.
2. 신탁저작권 행사에 제한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소멸한 경우.
3. 신탁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 인감을 분실한 경우.
4. 위탁자의 법인명칭, 대표자, 대리인, 주소, 송금처 등이 변경된 경우.
5. 기타 신탁저작권 관리에 지장이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위탁자가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신고의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수탁자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5조(신탁 계약의 승계) ① 위탁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위탁자의 권리 의무를 승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속인은 위탁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을 지체 없이 수탁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합병 또는 해산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 상속인 또는 해당 권리를 승계하는 법인은 위탁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속인 또는 승계하는 법인은 위탁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을 지체 없이 수탁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상속인 또는 승계하는 법인이 복수인 경우 상속인 중에서 1명을 대표자로 선임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신탁 계약의 해지) 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신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자의 신탁저작권이 소멸 또는 상실 되었을 경우.
2. 위탁자가 본 약관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위탁자가 파산 선고를 받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4. 위탁자가 본 약관에 따라 수탁자에게 통보 또는 협의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위탁자가 타인의 저작권을 허위 신고하여 사용료를 수령하거나, 신탁된 저작권을 이 중으로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② 위탁자는 수탁자가 저작권 신탁 관리에 따른 제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위탁자의 개인적인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비용은 귀책사유를 제공한 측에서 책임을

진다.

④ 신탁계약에 대한 해지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해지의 효력은 계약 상대방이 해지 통보를 받은 후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권리보호기간의 만료로 해지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신탁 계약의 종료) 수탁자는 신탁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효력 발생 후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신탁증서를 반환하여 신탁저작권을 이전하여야 하며 180일 이내에 해당 저작물 사용료 미지급분 및 결산서를 위탁자에게 지급 및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신탁 계약 약관의 변경 통지) ① 수탁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본 약관을 변경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수탁자의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위탁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약관 변경에 이의가 있는 위탁자는 공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기간 동안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제1항의 변경사항을 위탁자가 승낙한 것으로 본다.

제19조(배상책임) ① 위탁자와 수탁자는 본 약관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액을 신탁저작권 관리에서 얻어진 저작물 사용료 중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다.

제20조(약관의 개정) 이 약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세칙의 제정) 이 약관이 정한 것 외에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2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약관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신탁법, 저작권법 및 민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3조(재판관할) 이 약관에 의하여 체결된 신탁계약에 관한 소송의 재판관할은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이 약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05 이용계약약관

2005년 11월 09일 제정 2023년 02월 01일 개정
2016년 06월 16일 개정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사단법인 한국영화제작가협회(이하 “제협”이라 한다)와 제협이 신탁 받아 관리하는 영화저작물 저작권자의 권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 간에 준수해야 할 영화저작물의 이용방법 및 이용허락 조건 등에 대한 이용계약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의 체결) ① 사용자는 제협과 문서로서 영화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제협은 제2항에 열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작물 사용승인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

② 제협은 사용자의 영화저작물 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승인을 거절할 수 있다.

1. 법령 및 제협의 각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
2. 사용자가 영화저작물의 사용에 있어 제협 이외의 관리자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독점적 또는 이와 유사한 이용관계를 맺음으로써 타 이용자와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경우
3. 제협에 저작물 사용료를 체납중인 자 또는 그가 대표자로 있는 법인이 사용 승인을 요청한 경우.
4. 기타 상관례에 비추어 거래질서를 해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제3조(이용허락) 이용허락의 조건은 제협과 사용자가 협의하여 정하며 사용료는 문화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사용료징수규정에 의한다.

제4조(사용의 범위) ① 사용자는 제협이 이용허락한 영화저작물을 제협의 허락없이 어떠한 형태로든 변환, 가공할 수 없으며 이용허락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방법, 사용지역 등에 변경이 생길 경우 제협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영화저작물의 사용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용을 허락할 수 없다.

제5조(온라인 복제방지시스템의 사용) 사용자가 온라인 복제/전송 서비스 업체인 경우 제협이 승인한 복제방지시스템을 적용하여야 하며, 복제방지시스템 미적용으로 제협에 손해를 입힌 경우 사용자는 그 손해 또는 비용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6조(사용실태 보고 등) ① 사용자는 매월 해당 저작물에 대한 사용내역서를 제협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협은 필요에 의한 사용실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회원의 탈퇴 등으로 영상저작물이 제협의 관리자작물에서 제외된 경우 제협은 지체없이 그 내용을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연체 가산금) ① 사용자는 계약상 약정된 기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 사용료의 3%를 가산한 금액을 1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기한 1개월 경과 후에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사용료(제1항에 의한 가산금 제외)의 0.022%에 해당하는 증가산금을 매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12개월에 한정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미납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가산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계약의 해지) ① 제협 또는 사용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불이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제2조 제2항의 각호에서 규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이 통보를 받은 때에 해지된 것으로 본다.

③ 사용자는 제협으로부터 사용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경우 지체없이 제협의 신탁저작물 사용을 중지하여야 하며, 해지 후 신탁저작물 사용을 중지하지 않았을 경우 저작권법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 제9조(침해시 조치)** ① 사용자가 사용계약의 범위를 초과하여 협회가 관리하는 신탁저작권을 침해할 경우, 이용 허락 기간에 관계없이 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② 사용계약의 범위를 초과하는 침해행위가 재발할 시에는, 사용계약을 해지하고 향후 1년간 사용 승인을 보류한다.

제10조(약관의 개정) 이 약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세칙의 제정) 이 약관이 정한 것 외에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2조(재판관할) 이 약관에 의하여 체결된 이용허락계약에 관한 소송의 재판관할은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이 약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10

한국언론진흥재단

1. 사용료 징수규정
2. 사용료 분배규정
3. 관리수수료 규정
4. 신탁계약약관
5. 이용계약약관
6. 위탁관리규정

01 사용료 징수규정

2006년 06월 07일 제정 2018년 07월 25일 개정
2010년 11월 01일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 신탁관리하고 있는 뉴스 저작물의 이용자(재단과 뉴스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말하고, 이하 같다)에게 이용허락하는 경우에 징수할 사용료를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계약의 체결) 재단이 신탁관리하는 뉴스저작물의 권리(복제, 배포, 공중송신 등)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재단과 문서로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조 (계약약관) 본 규정에 따라 체결되는 계약은 재단이 정한 뉴스저작권 이용계약약관 등에 의한다.

제4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뉴스저작물 -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시사보도, 여론형성, 정보전파 등을 목적으로 표현한 저작물로서 어문저작물·사진저작물·영상저작물·음악저작물(방송뉴스 등을 위해 고유하게 작성된 음향·음악)을 포함한다.
2. 공공기관 -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및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 나.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
 -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 라.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기관
 - 마.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 바.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국·공립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이들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

3. 교육기관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서 본 규정 제6조 제6호의 뉴스제공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 한정한다.
4. 공공도서관 - 「도서관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 및 제18조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법」에 따른 국회도서관, 「법원도서관규칙」에 따른 법원도서관으로서 본 규정 제8조 제3호의 뉴스제공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 한정한다.
5. 대학도서관 - 「도서관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도서관으로서 본 규정 제8조 제4호의 뉴스제공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 한정한다.

제5조 (이용형태의 구분) 사용료 산정의 편의를 위하여 구분한 뉴스저작물 이용형태는 다음과 같다.

1. 매체별 뉴스제공서비스 : 정기간행물로 발행되는 지면형태의 뉴스 및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인터넷뉴스 등 뉴스저작물을 전자장치를 통해 열람하거나 전자장치에 저장할 수 있도록 매체별로 제공하는 전송서비스
2. 검색어단위 뉴스제공서비스 : 소비자(재단 및 이용자와 계약을 맺고 뉴스저작물을 실제 사용하는 자를 말하고, 이하 ‘소비자’라고 한다.)가 사전에 설정한 검색어를 기준으로 뉴스저작물 데이터베이스 내의 검색어가 포함된 뉴스를 제공하는 전송서비스
3. 뉴스 데이터베이스 공급서비스 : 특정 기간내 뉴스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모든 뉴스를 제공하는 전송서비스
4. 뉴스의 복제 및 배포 : 뉴스를 도서 등에 이용하여 복제, 배포하고자 하는 경우
5. 뉴스를 이용한 용역 제공 : 뉴스를 이용한 부가적인 용역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6. 기타 이용방법

제6조(매체별 뉴스제공서비스의 사용료) 소비자가 요청하는 뉴스저작물(어문, 사진, 음악, 영상 등을 모두 포함한다)을 매체별 뉴스제공서비스를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에서 뉴스저작물 원문을 열람하거나 내부 직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뉴스를 공유하기 위해 전자장치에 전송하는 목적으로 월단위로 이용하는 경우

내부직원 수		사용료(매체당 월별 판매액 기준)
1그룹	3,000명 이상	판매금액의 62% 또는 170,500원 중 많은 금액
2그룹	2,000명~2,999명	판매금액의 62% 또는 136,400원 중 많은 금액
3그룹	1,000명~1,999명	판매금액의 62% 또는 102,300원 중 많은 금액
4그룹	500명~999명	판매금액의 62% 또는 75,020원 중 많은 금액
5그룹	100명~499명	판매금액의 62% 또는 54,560원 중 많은 금액
6그룹	1~99명	판매금액의 62% 또는 34,100원 중 많은 금액

비고1) 내부 직원은 규정으로 정해진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비고2)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전자장치에 전송하는 경우는 기관 소속 직원만이 로그인 절차를 통해 접속가능한 게시판 서비스(또는 모바일 게시판 서비스)에서 뉴스를 열람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

비고3) 제4조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기관은 3,000명 이상(1그룹)을 적용하며 그 외의 공공기관은 임직원 정원에 따라 사용료의 차등을 둔다.

비고4) 열람을 위해 제공되는 계정 수의 최대 2개로 한정하며, 2개를 초과하는 경우 개당 13,640원의 사용료를 가산한다.

비고5) 방송뉴스 영상파일을 제공받거나 기관내 단말기를 통해 뉴스영상을 전송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매체별 월 204,600원의 사용료를 가산한다.

2. 공공기관에서 뉴스저작물 원문을 열람하여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뉴스를 공유하기 위해 전자장치에 전송을 하거나 특정 목적으로 기관과 관련된 뉴스를 공중의 구성원에 전송하는 경우

내부직원 수		사용료(매체당 월별 판매액 기준)
1그룹	3,000명 이상	판매금액의 75% 또는 330,000원 중 많은 금액
2그룹	2,000명~2,999명	판매금액의 75% 또는 288,750원 중 많은 금액
3그룹	1,000명~1,999명	판매금액의 75% 또는 247,500원 중 많은 금액
4그룹	500명~999명	판매금액의 75% 또는 173,250원 중 많은 금액
5그룹	100명~499명	판매금액의 75% 또는 148,500원 중 많은 금액
6그룹	1~99명	판매금액의 75% 또는 123,750원 중 많은 금액

비고1) 내부 직원은 규정으로 정해진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비고2)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전자장치에 전송하는 경우는 기관 소속 직원만이 로그인 절차를 통해 접속가능한 게시판 서비스(또는 모바일 게시판 서비스)에서 뉴스를 열람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

비고3) 특정 목적으로 기관과 관련된 뉴스를 공중의 구성원에 전송하는 경우란 계약서에 기입한 기관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뉴스를 게시하는 경우 또는 기관이 사전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 동의를 얻어 수집한 메일주소에

뉴스를 발송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비고4) 제4조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3,000명 이상(1그룹)을 적용하며 그 외의 공공기관은 임직원 정원에 따라 사용료의 차등을 둔다.
- 비고5) 열람을 위해 제공되는 계정의 수는 최대 2개로 한정하며, 2개를 초과하는 경우 개당 16,500원의 사용료를 가산한다.
- 비고6) 방송뉴스 영상파일을 제공받거나 기관내 단말기를 통해 뉴스영상을 전송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매체별 월 247,500원의 사용료를 가산한다.

3. 공공기관을 제외한 법인에서 뉴스저작물 원문 열람을 목적으로 월단위로 이용하는 경우

매체별 월 판매금액의 62% 또는 17,050원 중 많은 금액

- 비고1) 열람을 위해 제공되는 계정의 수는 최대 1개로 한정하며, 1개를 초과하는 경우 개당 13,640원의 사용료를 추가한다.
- 비고2) 계정을 5개 단위로 일괄 판매하는 경우 매체별 월 판매금액의 62% 또는 34,100원의 사용료를 징수한다.

4. 공공기관을 제외한 법인에서 뉴스저작물 원문을 열람하여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뉴스를 공유하기 위해 전자장치에 전송하는 목적으로 월단위로 이용하는 경우

구분	사용료 (매체당 월별 판매액 기준)
게시판 서비스	매체별 월 판매금액의 62% 또는 81,840원 중 많은 금액
모바일 접속이 가능한 게시판 서비스	매체별 월 판매금액의 62% 또는 150,040원 중 많은 금액

5. 개인이 뉴스저작물 원문 열람을 목적으로 월단위로 이용하는 경우

매체별 월 판매금액의 62% 또는 17,050원 중 많은 금액

- 비고) 열람을 위해 제공되는 계정의 수는 최대 1개로 한정하며, 2개를 초과하는 경우 개당 13,640원의 사용료를 추가한다.

6. 교육기관에서 뉴스활용교육 등을 위한 목적으로 뉴스저작물 원문을 열람, 복제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연 판매금액의 65% 또는 1,300,000원 중 많은 금액

- 비고1) 열람을 위해 제공되는 계정의 수는 교육기관 내 교원 및 학생의 수로 한정한다.
- 비고2) 열람을 위해 제공되는 매체의 수는 계약시 지정한 45개 매체로 한정한다.

7.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단말기를 설치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구분	사용료 (매체당 월별 판매액 기준)
일반매체	단말기 1대당 매체별 월 판매금액의 62% 또는 34,100원 중 많은 금액
패키지 구성	단말기 1대당 개별 매체의 월 판매금액의 62% 또는 17,050원 중 많은 금액

제7조(검색어단위 뉴스제공서비스) 소비자가 요청하는 뉴스저작물(어문, 사진, 음악, 영상 등을 모두 포함한다)을 검색어단위 뉴스제공서비스를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 수집된 뉴스를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뉴스를 공유하기 위해 전자장치에 전송을 하거나 특정 목적으로 기관과 관련된 뉴스를 공중의 구성원에 전송하는 경우

내부직원 수		사용료(매체당 월별 판매액 기준)
1그룹	3,000명 이상	판매금액의 72% 또는 1,077,120원 중 많은 금액
2그룹	2,000명~2,999명	판매금액의 72% 또는 934,560원 중 많은 금액
3그룹	1,000명~1,999명	판매금액의 72% 또는 807,740원 중 많은 금액
4그룹	500명~999명	판매금액의 72% 또는 562,320원 중 많은 금액
5그룹	100명~499명	판매금액의 72% 또는 483,120원 중 많은 금액
6그룹	1~99명	판매금액의 72% 또는 403,920원 중 많은 금액

비고1) 내부 직원은 규정으로 정해진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비고2)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전자장치에 전송하는 경우는 기관 소속 직원만이 로그인 절차를 통해 접속가능한 게시판 서비스(또는 모바일 게시판 서비스)에서 뉴스를 열람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

비고3) 특정 목적으로 기관과 관련된 뉴스를 공중의 구성원에 전송하는 경우란 계약서에 기입한 기관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뉴스를 게시하는 경우 또는 기관이 사전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 동의를 얻어 수집한 메일주소에 뉴스를 발송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비고4) 기타 수익사업·상업이용 목적 등으로 뉴스를 재배포, 재전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용도로는 이용할 수 없음

제8조(뉴스 데이터베이스 공급서비스) 소비자가 요청하는 뉴스저작물(어문, 사진, 음악, 영상 등을 모두 포함한다)을 뉴스 데이터베이스 공급서비스를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 수집된 뉴스를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뉴스를 공유하기 위해 전자장치에 전송을 하거나 특정 목적으로 기관과 관련된 뉴스를 공중의 구성원에 전송하는 경우

선택 매체수		사용료(월별 판매액 기준)
1그룹	51개 이상	판매금액의 72% 또는 7,128,000원 중 많은 금액
2그룹	41~50개	판매금액의 72% 또는 6,336,000원 중 많은 금액
3그룹	31~40개	판매금액의 72% 또는 5,544,000원 중 많은 금액
4그룹	21~30개	판매금액의 72% 또는 4,752,000원 중 많은 금액
5그룹	11~20개	판매금액의 72% 또는 3,960,000원 중 많은 금액
6그룹	1~10개	판매금액의 72% 또는 3,168,000원 중 많은 금액

비고1)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전자장치에 전송하는 경우는 기관 소속 직원만이 로그인 절차를 통해 접속가능한 게시판 서비스(또는 모바일 게시판 서비스)에서 뉴스를 열람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

비고2) 기타 수익사업·상업이용 목적 등으로 뉴스를 재배포, 재전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용도로는 이용할 수 없음

2. 불특정 다수에게 뉴스를 이용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선택 매체수		사용료(월별 판매액 기준)
1그룹	51개 이상	9,900,000원
2그룹	41~50개	8,800,000원
3그룹	31~40개	7,700,000원
4그룹	21~30개	6,600,000원
5그룹	11~20개	5,500,000원
6그룹	1~10개	4,400,000원

3. 수집된 뉴스를 공공도서관에서 회원을 대상으로 뉴스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전자장치에 전송하는 경우

회원수(인원)		사용료(연간 판매액 기준)
1그룹	33,000명 이상	판매금액의 70% 또는 23,100,000원 중 많은 금액
2그룹	18,000명 이상~ 33,000명 미만	판매금액의 70% 또는 19,250,000원 중 많은 금액
3그룹	13,000명 이상 ~ 18,000명 미만	판매금액의 70% 또는 15,400,000원 중 많은 금액
4그룹	8,000명 이상 ~ 13,000명 미만	판매금액의 70% 또는 11,550,000원 중 많은 금액
5그룹	3,000명 이상 ~ 8,000명 미만	판매금액의 70% 또는 7,700,000원 중 많은 금액
6그룹	3,000명 미만	판매금액의 70% 또는 4,620,000원 중 많은 금액

- 비고1) 공공도서관의 회원수는 공공도서관 내 회원명부를 따른다.
 비고2) 공공도서관은 회원 이외의 이용자가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접속제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비고3) 회원수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 1그룹으로 산정한다.

4. 수집된 뉴스를 대학도서관에서 회원을 대상으로 뉴스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전자장치에 전송하는 경우

회원수(인원)		사용료(연간 판매액 기준)
1그룹	25,000명 이상	판매금액의 70% 또는 30,800,000원 중 많은 금액
2그룹	20,000명 이상 ~ 25,000명 미만	판매금액의 70% 또는 23,100,000원 중 많은 금액
3그룹	15,000명 이상 ~ 20,000명 미만	판매금액의 70% 또는 19,250,000원 중 많은 금액
4그룹	10,000명 이상 ~ 15,000명 미만	판매금액의 70% 또는 15,400,000원 중 많은 금액
5그룹	5,000명 이상 ~ 10,000명 미만	판매금액의 70% 또는 11,550,000원 중 많은 금액
6그룹	5,000명 미만	판매금액의 70% 또는 7,700,000원 중 많은 금액

- 비고1) 대학도서관의 회원수는 대학도서관 내 회원명부를 따르되 그 중 교직원 및 재학생 수만 합산한다.
 비고2) 대학도서관은 교직원 및 재학생 회원 이외의 이용자가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접속제한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비고3) 회원수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 1그룹으로 산정한다.

제9조 (뉴스의 복제 및 배포) 1. 이용자가 요청하는 뉴스저작물(어문, 사진)을 복제, 배포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수량 분류	사용료(기사 1건당)				사용예시
	5천부 미만	5천부~ 1만부 미만	1만부~ 5만부 미만	5만부 이상	
출판	150,000원	350,000원	600,000원	1,000,000원	잡지, 단행본, 교재, 화보, 기관지, 전문지, 의정보고서, 논문 등
광고	300,000원	700,000원	1,200,000원	2,000,000원	카달로그, 팸플릿, 브로슈어, 전단지 등
온라인 이용	비상업용: 150,000원 상업용: 300,000원				인터넷 웹사이트 및 모바일 게재

- 비고) 해당 사용료는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로 사용 가능한 금액으로 1년을 초과할 때마다 동일 사용료를 가산한다.

2. 소비자가 요청하는 뉴스보도사진을 이용자가 이용허락을 목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개별 보도사진 1건당 판매금액의 62%

제10조 (뉴스를 이용한 용역 제공) 뉴스저작물(어문, 사진, 음악, 영상 등을 모두 포함한다)을 이용한 부가적인 용역업무를 제공할 때의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 소비자가 이용허락을 받은 매체의 기사를 수집·배열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매체별 월 판매금액의 20% 또는 22,000원 중 많은 금액

2. 기사를 수집·배열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지면기사: 매체별 월 판매금액의 62% 또는 27,500원 중 많은 금액

지면기사 및 온라인 기사: 매체별 월 판매금액의 62% 또는 41,250원 중 많은 금액

제11조 (해외 서비스) ① 해외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서비스 제공 가격 등을 감안하여 재단과 이용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해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제12조 (판매촉진 등) ① 특정 저작물 또는 서비스 상품의 홍보나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무료로 뉴스저작물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무료 제공 기간은 1개월을 넘을 수 없다.

② 제1항의 목적으로 무료로 뉴스저작물을 제공하는 경우 사전에 관련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무료 제공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단과 이용자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정한다.

제13조 (사용료 징수) 재단이 권리를 신탁관리하고 있는 뉴스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 규정에서 정한 요율 또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기타 사용료) ① 제6조 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를 적용하기 어렵거나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목적 및 이용형태,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재단과 이용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사용료를 정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징수규정 개정안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승인받은 규정에 의하여 사후 정산한다.

제15조(사용료의 산정 및 징수 기간) ① 사용료는 1개월마다 산정하여야 하고, 재단은 1개월마다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단,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단은 이용자와 사용료의 산정 및 징수 기간을 상호 별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16조 (가산금) 재단과 계약을 체결하는 이용자는 뉴스저작물의 이용내역(계약서, 계정 제공 현황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납된 사용료 외의 별도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비자와의 계약서에 규정한 범위 외의 계정을 추가로 소비자에게 제공한 경우, 추가 제공 계정에 대해 정상 요금으로 정산하되, 해당 판매금액의 20%의 가산금을 부과함
2. 소비자와의 계약서에 규정한 범위 외의 매체를 추가로 소비자에게 제공한 경우, 추가 제공 매체에 대해 정상 요금으로 정산하되, 해당 판매금액의 20%의 가산금을 부과함
3.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판매촉진 범위를 초과하는 기간을 추가로 소비자에게 제공한 경우, 추가 제공 범위에 대해 정상 요금으로 정산하되, 해당 판매금액의 20%의 가산금을 부과함
4. 소비자에게 계정의 중복접속을 허용한 경우, 중복접속을 허가한 계정이 포함된 계약의 총 계약금액의 20%를 가산금으로 부과함
5. 소비자와의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누락한 경우, 미제출·누락 계약에 대해 정상 요금으로 정산하되, 해당 계약금액의 10%를 가산금으로 부과함
6. 재단과 사전 협의 없이 해외 소비자를 대상으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기타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해당 매출을 정상 요금으로 정산하되, 발생한 해당 매출의 20%를 가산금으로 부과함

제17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뉴스저작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8조 (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뉴스저작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02 사용료 분배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 신탁관리하고 있는 뉴스 저작물의 이용자(재단과 뉴스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말하고,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의 분배에 관한 내용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탁자 : 뉴스저작권신탁계약에 따라 뉴스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을 재단에 신탁한 자를 말한다.
2. 과거사용료 : 권리 침해에 대한 배상금 및 합의금 등 소송 및 이에 준하는 법률행위를 통하여 미계약 상태에서 발생한 침해행위에 대한 배상 명목으로 발생한 금원 및 금원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분배대상자) ①위탁자 또는 그 권리를 승계한 자를 분배대상자로 한다.

②과거사용료는 침해시점을 기준으로 제1항에 따른 분배대상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분배한다.

제4조 (사용료의 분배) ①사용료의 분배는 이용자가 제출한 사용료정산내역서 기타 사용료산정에 필요한 자료에 기초하여 분배한다.

②재단은 이용자로부터 월별로 사용료를 징수하여 위 사용료에서 뉴스저작권관리수수료 규정에 따른 관리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위탁자에게 사용료분배금으로 지급한다.

③그 지급 시기는 징수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하며, 저작물사용료 수입에서 이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뉴스저작권운영위원회에서 사용방법을 별도로 정하고, 이자의 사용에 대해서는 사후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제5조 (외국에서 징수하는 사용료 등의 분배) ①제4조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징수하는 사용료, 뉴스저작물사용료징수규정 제14조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에 관하여는 뉴스저작권운영위원회에서 그 분배방법과 분배시기를 정한다.

②뉴스저작권운영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배방법과 분배시기를 정함에 있어서 위탁자에 대한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이의신청) ①위탁자는 뉴스저작물의 사용료분배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당해 뉴스저작물이 이용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뉴스저작권운영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위탁자는 제1항의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 재단이 정한 양식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뉴스저작권운영위원회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후 3개월 이내에 그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규정의 개정) 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뉴스저작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 (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뉴스저작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03 관리수수료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 신탁 받은 뉴스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이하 '신탁저작권'이라 한다)을 관리함에 있어서 신탁저작권을 재단에게 신탁한 자(이하 '위탁자'라고 한다)로부터 지급받을 수수료(이하 '관리수수료'라 한다)를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관리수수료) ①위탁자가 재단에게 지급하는 관리수수료는 뉴스저작물의 이용자(재단과 뉴스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말하고,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의 15% 이내로 하고, 구체적인 관리수수료율은 위탁자와 재단이 협의하여 정하되, 위탁자와 재단은 구체적인 관리수수료율의 결정에 관하여 이를 뉴스저작권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②뉴스저작물 불법이용 및 유통 단속활동으로 얻어진 손해배상금의 경우 관리수수료는 민·형사상의 소송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15% 이내로 한다.

③제1항의 관리수수료율은 뉴스저작물의 이용형태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제3조 (관리수수료의 공제시기) 관리수수료는 사용료 분배 시 공제한다.

제4조 (규정의 개정) 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뉴스저작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04 신탁계약약관

_____ (이하 “위탁자”라 한다)과 저작권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뉴스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위탁자의 뉴스저작권을 수탁자에게 신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 기명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위탁자의 뉴스저작권을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수탁자가 이를 관리함에 있어서 위탁자의 뉴스저작권을 보호하고 위탁자의 뉴스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권리의무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뉴스저작물’이라 함은 시사보도, 여론형성, 정보전파 등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신문 기타 정기간행물(‘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인터넷신문’을 포함하고, 이하 같다)에 수록되어 공표된 저작물, 위와 같은 정기간행물에 수록되어 공표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저작물,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뉴스통신에 의하여 공표되거나 공표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저작물, 방송법상의 ‘보도’에 관한 프로그램, 기타 위탁자가 뉴스저작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는 저작물을 말하고, 그것의 존재 형태는 이를 불문하며, 편집저작물을 포함한다. 다만, 위탁자가 뉴스저작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이더라도 그것의 저작물성 내지 저작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제외한다.
2. ‘매체’라 함은 위 1호 기재의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기타 뉴스저작물의 공표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간행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신탁의 범위) ①위탁자는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장차 보유하게 될 뉴스저작물에 관하여 이를 복제할 권리와 전송·배포할 권리(이하 ‘신탁저작권’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신탁할 수 있다. 일부 신탁의 범위는 특정 콘텐츠, 특정 사업 등으로 약정

하며 뉴스 저작권 신탁계약 체결 시 부속계약서에 명시하는 방법으로 정의한다.

②위탁자는 신탁할 뉴스저작물을 매체별 또는 보도프로그램별로 특정하고, 그 명칭은 아래와 같다.

매체 또는 보도프로그램의 명칭: _____

③위탁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특정한 매체 또는 보도프로그램 이외의 다른 매체 또는 보도프로그램이 담고 있는 뉴스저작물을 추가로 신탁할 수 있다.

④위탁자는 제1항 및 제2항, 제3항에 의하여 신탁할 뉴스저작물의 범위를 특정한 경우에도 당해 매체 또는 보도프로그램이 담고 있는 뉴스저작물의 일부를 신탁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⑤수탁자는 대한민국과 외국의 모든 지역에서 신탁저작권에 관한 관리권한을 갖는다. 다만, 위탁자는 수탁자의 동의를 얻어 외국에서의 신탁저작권에 관한 관리권한을 유보할 수 있다.

⑥위탁자가 제1항 및 제2항, 제3항, 제4항에 의하여 신탁한 뉴스저작물 중 이미 공표된 뉴스저작물은 본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신탁의 효력이 발생하고, 아직 공표되지 아니한 뉴스저작물은 공표된 때에 신탁의 효력이 발생한다.

⑦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아직 공표되지 아니한 뉴스저작물을 제공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를 공표하는 것을 허락한 것으로 본다.

⑧제1항 및 제2항, 제3항, 제4항에 규정된 신탁 목적인 뉴스저작물의 변경은 위탁자가 당해 매체 또는 보도프로그램 등의 명칭과 추가로 신탁 또는 신탁 제외하고자 한다는 뜻을 담은 공문을 수탁자에게 발송하고, 수탁자가 당해 공문 내용에 동의하는 취지의 공문을 위탁자에게 발송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이러한 변경 전에 체결된 수탁자와 이용자 간의 뉴스저작물 이용 계약에 대해서는 당해 계약만료일까지 기존 계약을 인정한다.

제4조 (저작권의 보증) ①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신탁한 모든 뉴스저작물에 관하여 위탁자에게 저작권이 있거나,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이를 보증한다.

②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신탁한 뉴스저작물에 관하여 위탁자에게 저작권이 없거나 위탁자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이유로 하여 수탁자와 제3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한다.

③수탁자는 필요한 경우 위탁자가 진정한 저작권자인지 여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지 아니한지 여부에 관한 자료를 위탁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위탁자는 위 요구를 받는 즉시 수탁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자가 관련 자료의 제출을 거절하거나 충분하지 않은 자료를 제출할 경우 수탁자는 신탁계약을 거절·해지할 수 있다.

- 제5조 (신탁저작권의 관리방법)**
-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탁자를 위하여 신탁 저작권을 관리하여야 하고, 신탁저작권을 양도, 담보제공 등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없다.
 - ② 수탁자는 신탁저작권의 이용관계를 모니터링하고, 제3자에 의한 저작권의 침해 예방하며, 침해행위가 있을 경우 침해행위의 중지와 손해배상청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③ 수탁자는 신탁저작권 및 사용료 등의 관리와 관련하여 위탁자의 권리에 대한 침해행위가 있을 경우 형사고소, 민사소송 등 일체의 행위를 할 권리가 있다.
 - ④ 수탁자는 제3항의 형사고소 또는 민사소송 등의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를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탁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수탁자는 수탁업무의 일부를 이용업체(수탁자와 뉴스저작물이용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또는 다른 저작권신탁관리단체에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수탁자는 사전에 뉴스저작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⑥ 수탁자는 외국에서의 신탁저작권 관리를 외국의 저작권관리단체 또는 저작권관리단체들의 국제적 연합기구에 위탁(신탁, 대리중개, 사용료징수권의 위탁 등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수탁자는 사전에 위탁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6조 (관리수수료)**
- ① 위탁자는 신탁저작권 관리수수료로 제8조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되, 위 비율은 ‘뉴스저작권 관리수수료규정’ 제2조에 따라 정한다.
 - ② 수탁자는 제8조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분배함에 있어서 신탁저작권 관리수수료를 공제하고 분배할 수 있고,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자에게 신탁저작권 관리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본다.

- 제7조 (사용료의 징수와 분배)**
- ① 수탁자는 제3자에게 뉴스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고, ‘뉴스저작물 사용료징수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뉴스저작물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수탁자는 위탁자가 지정하는 범위의 이용자에 대하여는 뉴스저작물을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뉴스저작물 사용료분배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제1항에 의하여 징수한 사용료를 위탁자에게 분배한다.

제8조 (신탁관리 및 사용료 분배의 유보) ①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뉴스저작물의 경우 그 이용허락이나 사용료의 징수 등의 관리업무를 일시 중지하거나 징수한 사용료의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

1. 관리하는 뉴스저작물에 관하여, 위탁자에게 저작권이 없거나 위탁자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이유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2. 관리하는 뉴스저작물에 관하여, 제3자가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며 저작권 또는 신탁저작권의 귀속관계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할 때

②수탁자는 제1항 각 호의 경우 위탁자에게 저작권이 있거나, 위탁자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확인된 때에는 정상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유보되어 있던 분배금을 위탁자에게 분배한다.

제9조 (비용 등의 부담) ①다음 각 호의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1. 위탁자의 의뢰로 수탁자가 뉴스저작물의 저작권 등록업무를 하였을 때 그 실비
2.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그 종료에 관한 업무수속에 필요한 비용
3. 신탁저작권에 직접 부과되는 세금이나 공과금
4. 관리하는 뉴스저작물에 관하여, 위탁자에게 저작권이 없거나 위탁자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이유로 하는 소송에 수탁자가 대응함으로써 발생한 비용

②수탁자는 제1항의 비용을 제8조 제2항에 따른 분배금에서 미리 공제할 수 있다.

제10조 (위탁자의 통지의무) ①위탁자는 신탁계약을 체결할 때 신탁할 뉴스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거나 저작권의 행사에 제한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위탁자는 신탁기간 중 신탁저작권의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실을 미리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위탁자는 신탁저작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경우 사전에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저작권사용료 분배청구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경우 지체 없이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수탁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위탁자의 이름이나 명칭, 주소, 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2. 신탁저작물이나 신탁저작권의 종류, 범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⑤위탁자가 제1항 내지 제4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위탁자와 수탁자의 손해는 모두 위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1조 (수탁자의 통지의무) ①수탁자는 정기적으로 뉴스저작물의 이용 상황, 사용료 산정내역, 사용료 징수현황 등을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수탁자의 인터넷홈페이지 로그인 아이디(login ID)를 부여하고 위탁자가 위 로그인 아이디로써 수탁자의 인터넷홈페이지에서 뉴스저작물의 이용 상황, 사용료 산정내역, 사용료 징수현황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제1항의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 (위탁자의 자료열람·제출청구권) ①위탁자는 수탁자에게 뉴스저작물의 이용 상황, 사용료 산정내역, 사용료 징수현황, 기타 신탁업무와 관련된 회계서류 등에 관한 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을 청구할 수 있고, 수탁자는 위탁자의 위 청구에 성실하게 따라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수탁자는 다른 위탁자의 이해에 관계되는 사항이나 다른 위탁자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 등에 관하여는 뉴스저작권운영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 (권리의무의 승계) ①개인인 위탁자의 사망 또는 법인인 위탁자의 합병이나 영업양도 등의 경우 상속인 또는 신탁저작권을 승계하는 법인은 본 계약에 의한 위탁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승계자는 위탁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사실을 지체 없이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계약의 해지) ①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자가 신탁저작권의 전부를 상실한 경우
2. 위탁자가 관련 법령이나 본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고 수탁자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여 더 이상 신탁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②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신탁관리에 따른 제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위탁자에게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더 이상 신탁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경우
-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본 계약의 해지는 문서로 하여야 하고, 해지의 효력은 상대방이 해지 통보를 받은 후 6개월이 경과한 때 발생하되, 해지 이전에 발생한 권리의무 및 손해배상의 청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④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 수탁자는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후 6개월 이내에 사용료 미분배분 및 이에 대한 결산서를 위탁자에게 지급 및 제출하여야 한다.
- ⑤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본 계약의 해지는 해지의 통지 이전에 수탁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이용자의 이용권이나 이용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제4항에 의한 결산 이후에도 뉴스저작물 사용료가 계속 발생할 경우 수탁자는 추가로 결산하여야 한다.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합의 해지한 경우에도 같다.

제15조 (본 계약체결 이전의 협의 등의 효력) 본 계약 이전에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체결되었던 양해각서(MOU), 신탁계약, 대리중개 계약은 모두 본 계약으로 대치되며, 본 계약의 내용과 상이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본 계약의 내용이 우선한다.

제16조 (재판관할) 본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우선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통하여 해결하며, 조정이 불성립될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7조 (계약기간) ①본 계약의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의 3년으로 하고, 위탁자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에 의하여 계약종료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3년씩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②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본 계약이 종료된 경우 제14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18조 (약관 등의 변경) ①수탁자는 이 약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 ‘뉴스저작권신탁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수탁자는 이 약관을 개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통지하며,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위탁자가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위탁자는 개정 약관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4조 제3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한다.

④위탁자가 제3항의 기간 동안 신탁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 약관에 의해 신탁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제19조 (부속계약) ①본 계약서 내용에 관하여 별도로 합의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 내용을 기재한 부속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 날인하여 본 계약서 말미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본 계약서 말미에 첨부된 부속계약서는 본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년 월 일

법 인 명

한국언론진흥재단

주 소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태평로1가)

대표자 _____ (인)

이사장 _____ (인)

05 이용계약약관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과 _____ (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재단”이 신탁관리하고 있는 뉴스저작물(이하 ‘뉴스저작물’이라고 한다)의 이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 기명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재단과 이용자 사이에 준수해야 할 이용방법 및 이용계약조건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뉴스저작물 -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시사보도, 여론형성, 정보전파 등을 목적으로 표현한 저작물로서 어문저작물·사진저작물·영상저작물·음악저작물(방송뉴스 등을 위해 고유하게 작성된 음향·음악)을 말한다.
2. 저작자 - 뉴스저작권신탁계약에 따라 뉴스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을 재단에 신탁한 자를 말한다.

제3조 (이용허락의 범위) ①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의 범위는 이용자가 사전에 신청하여 재단으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뉴스저작물에 한한다.

②이용자는 뉴스저작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고 이로써 수익을 얻고자 할 경우 재단과 협의 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재단이 운영하는 뉴스저작권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③이용자는 뉴스저작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고 이로써 수익을 얻음에 있어서 재단과 협의한 방식(「뉴스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제__조에 해당하는 서비스)으로만 뉴스저작물을 이용하여야 하고, 다른 방식으로 뉴스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재단의 서면승낙을 얻어야 한다.

④이용자가 뉴스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은 대한민국으로 한정하고, 대한민국 이외

의 지역에 대해서는 재단이 운영하는 뉴스저작권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이용자는 뉴스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해당 뉴스저작물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해서는 아니되며, 만약 저작인격권을 침해했을 경우에는 저작자에 대해 그 책임을 져야 한다.

⑥이용자는 재단으로부터 제공받은 뉴스저작물 중 재단의 신탁관리권이 소멸하였다고 통지받은 뉴스저작물에 관하여는 위 통지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그 이용을 중지하고, 이용료 정산을 완료하며, 그 복제물을 폐기하여야 한다.

제4조 (복제방지시스템 등) ①이용자는 이용 허락받은 뉴스저작물을 제3자가 불법복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재단은 복제방지시스템이나 저작권표시시스템에 따라 일정한 표시를 뉴스저작물에 부착할 수 있고, 이용자는 위 복제방지시스템이나 저작권표시시스템에 따라 부착된 표시를 손상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5조 (사용료) ①이용자는 재단에게 재단의 ‘뉴스저작물 사용료징수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뉴스저작물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이용자는 월별로 사용료를 정산하여 익월 20일까지 지급하여야 하되, 당월의 정산내역서를 익월 5일까지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재단은 이용자가 제출한 정산내역서가 불성실하거나 기타 그 내역을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뉴스저작물 이용과 관련된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고, 이용자는 재단의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이용자는 월별사용료의 지급을 연체할 경우 월 사용료의 3%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1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고, 위 기간 내에 사용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 1개월마다 1.2%의 증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증가산금 부과기간은 최대 12개월로 한정한다.

⑤재단은 ‘뉴스저작물 사용료징수규정’이 변경되어 사용료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이를 통보해야 하며, 변경된 사용료는 변경 이후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에 대해 적용한다.

제6조 (이용자료의 제출 등) ①이용자는 뉴스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재단이 사용료의 산정

을 위하여 뉴스저작물의 이용실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재단은 이용자에게 사용료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열람 및 제공을 청구할 수 있고, 이용자는 재단의 위 청구에 따라야 한다.

③재단은 이용자의 뉴스저작물 이용실적이나 뉴스저작물과 관련된 거래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위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재단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사용료의 산정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가산금) 이용자는 ‘뉴스저작물 사용료징수규정’에 따른 가산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 동 규정에 따라 재단에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계약의 해지) ①재단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권한 없이 뉴스저작물을 이용하거나 제3조가 정한 이용허락의 범위를 초과하여 뉴스저작물을 이용한 경우(이용자가 제3조 각 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가 당연히 포함된다)
2. 이용자가 제4조 제1항의 불법복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복제방지시스템이나 저작권표시시스템에 따라 부착된 표시를 손상시킨 경우
3. 이용자가 제출한 사용료에 관한 정산내역서가 허위인 경우
4. 이용자가 저작물을 이 약관에 반하여 이용하는 경우
5. 이용자가 재단 이외의 권리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독점적 또는 이와 유사한 이용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다른 이용자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경우
6. 이용자가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거나 그 체납자가 대표자로 있는 법인의 경우
7. 기타 상관례에 비추어 거래의 질서를 해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경우

②이용자는 재단에게 뉴스저작물에 관한 신탁관리권이 없음이 판명된 경우(재단이 뉴스저작물에 관한 신탁관리권이 소멸하였음을 이용자에게 미리 통보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 (본 계약체결 이전의 협의 등의 효력) 본 계약 이전에 재단과 이용자 사이에 체결되었던 재단이 신탁관리하고 있는 뉴스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이전의 양해각서(MOU) 및 뉴스저작물 이용 계약은 모두 본 계약으로 대체되며, 본 계약의 내용과 상이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본 계약의 내용이 우선한다.

제10조 (재판관할) 본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우선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통하여 해결하며, 조정이 불성립될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1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부터까지로 하고, 계약기간의 만료 3개월 전까지 쌍방 모두가 서면에 의하여 계약종료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1년씩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제12조 (부속계약) ①본 계약서에 있지 아니한 내용에 관하여 별도로 합의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내용을 기재한 부속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 날인하여 본 계약서 말미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본 계약서 말미에 첨부된 부속계약서는 본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년 월 일

(인)

한국언론진흥재단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태평로1가)
이사장 _____ (인)

2010년 03월 22일 제정 2018년 06월 01일 개정
2016년 11월 01일 개정 2021년 03월 18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정관 제3조에서 정한 뉴스 저작권 위탁관리 사업(뉴스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신탁관리, 대리·중개 업무. 이하 '위탁관리'라 한다)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뉴스저작물'이란 시사보도, 여론형성, 정보전파 등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정기간행물(인터넷신문을 포함한다)에 수록되어 공표된 저작물(저작권자가 시사보도, 여론형성, 정보전파 등을 목적으로 정기간행물에 수록하지 않고 공표한 저작물을 포함한다),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뉴스통신 및 방송법상 '보도에 관한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2. '신탁'이란 뉴스저작물의 저작권자가 재단에 뉴스저작물의 복제, 전송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3. '대리·중개'란 재단이 저작권자를 위하여 뉴스저작물 이용에 관한 권리를 대리 또는 중개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사업) 재단은 뉴스저작물의 효율적 보호와 언론관계 데이터베이스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뉴스저작물의 저작권 등에 관한 위탁관리 업무
2. 기타 위탁관리와 관련하여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뉴스저작권 운영위원회

제4조 (뉴스저작권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뉴스저작권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재단에 뉴스저작권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13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둔다.

③ 위원장은 신문유통원장이 맡도록 한다. <개정 2018.6.1.>

④ 재단 이사장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의 위원을 위촉할 수 있고, 나머지 위원은 저작권위탁자들이 구성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위원이 해당 직무를 현저히 해태하였을 경우 협회는 재단 이사장에 대해 위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운영위원회의 소집) ① 운영위원회는 정기운영위원회 및 임시운영위원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 운영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임시 운영위원회는 위원 재적위원 2분의 1이상의 요구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 전 까지 문서로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운영위원회의 의결방법)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 부의할 사항 중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의결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장은 그 결과를 차기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위원 과반수가 운영위원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는 위원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뉴스저작권 사업에 관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뉴스저작권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3. 뉴스저작권 위탁관련 약관 및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4. 관리수수료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기타 운영상 필요로 하는 사항

제3장 회계 및 예산

제8조 (회계 구분 및 관리·운영) 뉴스저작권 회계는 저작권법에 따라 재단의 다른 회계와 구별하여 독립된 계정으로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 (회계결산) 뉴스저작권 신탁회계의 결산에 관한 기준은 재단 회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 (사업계획 및 예산) 뉴스저작권 사업계획 및 수입예산은 재단의 법인 사업계획과 회계규정 절차를 준용한다.

제11조 (사업보고 및 결산) 뉴스저작권 사업보고 및 결산은 재단의 법인 사업결산과 회계규정 절차를 준용한다.

제4장 보 칙

제12조 (자문위원단 설치) ① 운영위원회는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자문위원단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자문위원단은 뉴스저작권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하고 위원장이 임명한다.
- ③ 자문위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3조 (규정 개정) ① 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 재적위원 2/3 이상 출석에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이 규정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14조 (업무보고)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사업실적은 매 사업연도 3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

제15조(회의록) 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은 재단 위탁관리 담당 팀에서 작성하고 위원장 및 출석위원 2인이 확인하여 이에 서명하고 위탁관리 담당 팀에서 보관토록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11

한국문화정보원

1. 사용료 징수규정
2. 사용료 분배규정
3. 관리수수료 규정
4. 신탁계약약관
5. 이용계약약관
6. 신탁관리 업무규정

01 사용료 징수규정

2013년 09월 23일 제정 2021년 01월 05일 개정
2015년 03월 06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문화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이 권리를 신탁관리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에 대한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사용료 징수) 정보원이 권리를 신탁관리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이 규정에서 정한 요율 또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장 음악저작물 사용료

제3조(음악저작물의 전송서비스 사용료) ① 주문형 스트리밍(streaming) 서비스에 대한 전송 사용료는 다음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월정액 × 이용자 수 × 관리비율
2. 매출액 × 기여계수 × 관리비율

비고 1) “이용자”는 회원제 운영의 경우 저작물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회원을 말하고, 회원제와 비회원제의 혼합 또는 회원제를 운영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복되지 않은 월간 저작물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한 자”를 말하며, “월간 저작물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한 자”를 파악하기 어려운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선정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제3의 기관이 정하도록 한다. 그리고 “회원제”는 명칭과 유·무료를 불문하고 일정한 조건과 절차에 따라 경우에만 해당 사이트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를 일정기간 유지·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비고 2) “매출액”이란 저작물의 해당 서비스로 발생하는 사용료, 광고료, 회비 등 모든 수입을 말한다. 다만, 사용료 이외의 회비, 광고수입, 그 밖의 수입에 대하여는 해당 사이트의 전체 콘텐츠 중 해당 저작물이 차지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음)

비고 3) “관리비율”이란 이용자가 이용하는 총 저작물 중 협회 관리저작물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며, 정보원과 이용자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하 같음)

비고 4) “월정액”과 “기여계수”는 다음과 같다.

- 월정액 : 저작자인 경우 62.5원, 실연자인 경우 31.25원, 음원제작자인 경우 250원

- 기여계수 : 저작권자인 경우 2.5%, 실연자인 경우 1.25%, 음원제작자인 경우 10%

② 다운로드 서비스에 대한 전송 사용료는 다음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저작물의 단가 × 다운로드 횟수 × 관리비율
2. 매출액 × 기여계수 × 관리비율

비고 1) “저작물의 단가”는 정보원과 공공저작권을 정보원에 위탁한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협의하여 산정한다.

비고 2) “다운로드 횟수”는 이용자가 제공한 수치를 기준으로 하되, 수치를 파악하기 어렵거나 정보원과 이용자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선정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제3의 기관이 결정하도록 한다. (이하 같음)

비고 3) 다운로드의 “기여계수”는 다음과 같다.

- 저작자인 경우 4.5%, 실연자인 경우 2.25%, 음반제작자인 경우 14%

③ 전화정보서비스 및 휴대폰서비스에 대한 전송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 매출액 × 기여계수 × 관리비율

비고 1) 전화정보서비스 및 휴대폰서비스의 “기여계수”는 다음과 같다.

- 저작자인 경우 2.5%, 실연자인 경우 1.25%, 음반제작자인 경우 10%

④ WAP/SMS/ME 방식 등 무선인터넷을 통하여 신탁저작물을 이용할 경우의 월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 매출액 × 기여계수 × 관리비율

비고 1) “매출액”이란 이동통신회사에서 매월 정보이용자에게 청구한 정보 사용료 중 당월 징수한 총액을 말한다.

비고 2) 무선인터넷의 “기여계수”는 다음과 같음

- 저작자인 경우 4.5%, 실연자인 경우 2.25%, 음반제작자인 경우 14%

⑤ 음악카드, 게임, 애니메이션 등의 서비스에 대한 전송 사용료는 상기 스트리밍 및 다운로드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의 1/2로 한다.

제4조(음악저작물의 복제·배포서비스 사용료) ① 음악저작물을 음반으로 제작하는 경우의 복제·배포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 출고가 × 기여계수 × (승인곡수 ÷ 수록곡수) × 제작수량 × 할인율

비고 1) “기여계수”는 다음과 같다.

- 저작자인 경우 4.5%, 실연자인 경우 2.25%, 음반제작자인 경우 14%

비고 2) “할인율”이란 제작·판매 과정에서 예상되는 반품, 재고, 폐기 등을 감안하여 할인하는 비율을 말한다.

② 음악저작물 위주로 구성된 뮤직비디오, 공연실황 등의 영상저작물에 사용하는 경우의 복제·배포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 출고가 × 기여계수 × (승인곡수 ÷ 수록곡수) × 제작수량

비고 1) “기여계수”는 다음과 같다.

- 저작자인 경우 2.5%, 실연자인 경우 1.25%, 음반제작자인 경우 10%

③ 음반자판기에 대한 복제사용료는 각 1곡당 복제사용료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1곡당 복제사용료 = 음반판매가(정찰가격 - 부가세) × 기여계수 ÷ 1매당수록곡수
× 판매수량

비고 1) “기여계수”는 다음과 같다.

- 저작자인 경우 4.5%, 실연자인 경우 2.25%, 음반제작자인 경우 14%

④ 시뮬레이션 게임기에 대한 복제·배포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 업소용 게임기에 대한 1곡당 복제 및 배포사용료 = 곡당 사용료 × 수록곡수

비고 1) “곡당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 저작자인 경우 280,000원, 실연자인 경우 140,000원, 음반제작자인 경우 560,000원

2. CD-ROM으로 제작되는 가정용 게임기 사용료 = 출고가 × 기여계수 ×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 제작수량

비고 1) “기여계수”는 다음과 같다.

- 저작자인 경우 4.5%, 실연자인 경우 2.25%, 음반제작자인 경우 14%

⑤ 멜로디 IC CHIP의 복제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 출고가 × 4% ×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 제작수량 × 조정계수

비고 1) “조정계수”는 CHIP 출고가 중 음악저작물 기여도를 고려하여 차등 적용한다.

⑥ 노래반주기의 복제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반주기 등 하드웨어에 음악데이터를 저장하여 이용하는 영업용
의 경우

가. 신곡사용료 : 곡당단가 × 이용곡수 × 판매수량

비고 1) “곡당단가”는 다음과 같다. 다만, 1곡당 가격이 4원 50전 미만일 경우에는 동 금액으로 한다.

- 신곡 입력 출고가 × 4.5% ÷ 수록곡수

나. 노래반주기 등의 복제·배포를 위한 사용료

이용된 관리 곡수에 따른 월정 사용료	
이용 곡수	월정 사용료
10곡까지	6,000원
10곡 초과 20곡 까지	12,000원
20곡 초과 80곡 까지	매 20곡당 각 12,000원씩 가산한 금액
80곡 초과시	매 40곡당 각 12,000원씩 가산한 금액

2. 가정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장소에서 노래반주기 등 하드웨어에 음악데이터를 저장하여 작동하거나, CD-ROM 또는 DVD 등 매체타이틀을 구동하는 방식으로 이용하는 가정용의 경우

가. 신곡사용료 : 곡당단가 × 이용곡수 × 판매수량

비고 1) “곡당단가”는 다음과 같다. 다만, 1곡당 가격이 4원 50전 미만일 경우에는 동 금액으로 한다.
 - 신곡 입력 출고가 × 4.5% ÷ 수록곡수

나. 노래반주기 또는 반주용 타이틀 등의 복제·배포를 위한 사용료

이용된 관리 곡수에 따른 월정 사용료	
이용 곡수	월정 사용료
10곡 까지	2,400원
10곡 초과 20곡 까지	4,800원
20곡 초과 80곡 까지	매 20곡당 각 4,800원씩 가산한 금액
80곡 초과시	매 40곡당 각 4,800원씩 가산한 금액

3. 노래반주기 등 하드웨어에 음악데이터를 저장하여 주로 전문 연주인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장소에서 이용하는 전문연주인용의 경우

가. 신곡사용료 : 곡당단가 × 이용곡수 × 판매수량

비고 1) “곡당단가”는 다음과 같다. 다만, 1곡당 가격이 10원 미만일 경우에는 동 금액으로 한다.
 - 회비 × 3.5% ÷ 수록곡수 × 50/100

비고 2) “판매수량”은 회원수를 말한다.

나. 노래반주기 등의 복제·배포를 위한 사용료

이용된 관리곡수에 따른 월정 사용료	
이용 곡수	월정 사용료
10곡 까지	1,000원
10곡 초과 20곡 까지	2,000원
20곡 초과 80곡 까지	매 20곡당 각 2,000원씩 가산한 금액
80곡 초과시	매 40곡당 각 2,000원씩 가산한 금액

4. 반주음악을 구현하는 단말기(하드웨어)에서 온라인 회선 등을 통하여 메인 DB서버에 구축된 음악데이터를 전송받아(스트리밍에 한함)할 수 있는 노래반주기(다기능 단말기 포함)가 영리목적으로 이용되는 통신용의 경우

가. 전송서비스 사용료 : 매출액 × 4.5% ×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비고1) “매출액”이란 통신용 노래반주기 서비스사업을 운영하여 각각의 서비스 이용업소에서 징수한 영업상 수입의 총계를 말함. 다만, 서비스 이용 1개 업소의 월사용료가 11,000원 미만일 경우 동 금액을 하한가로 함

나. 노래반주기 등의 복제·배포를 위한 사용료

이용된 관리곡수에 따른 월정 사용료	
이용 곡수	월정 사용료
10곡 까지	5,000원
10곡 초과 20곡 까지	10,000원
20곡 초과 80곡 까지	매 20곡당 각 10,000원씩 가산한 금액
80곡 초과시	매 40곡당 각 10,000원씩 가산한 금액

⑦ 출판물에 대한 복제·배포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 음악도서, 교본 및 피스 등 음악저작물을 주로 이용하는 출판물에 대한 복제·배포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가. 소비자 판매가격 × 5% × 음악저작물 게재 비율 ×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 제작 수량

비고 1) “음악저작물 게재 비율”이란 출판물의 총 면수 중 음악저작물이 게재된 면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2. 비매용 출판물에 대하여 1부 1곡당 하한가는 5원으로 한다.
3. 신문, 잡지 등의 출판물이나 휘장, 수건, 패널, 포스터 등에 음악저작물을 복제할 경우 1곡당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0,000부 까지	30,000부 까지	50,000부 까지	100,000부 까지	300,000부 까지	500,000부 까지	500,000부 초과
7,500원	15,000원	25,000원	40,000원	60,000원	75,000원	100,000원

제3장 어문저작물 사용료

제5조(어문저작물의 복제·배포 서비스 사용료) ① 강연 또는 소설을 원작으로 한 프로그램을 국내의 복제·배포한 경우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 국내·외 홈비디오 등으로 일반 대중에게 제공시 사용료 = 매출 × 0.9%
2. 방송 후 그 방송대본을 이용하여 인쇄 등의 방법으로 복제·배포시 사용료 = 공급금액의 0.88%
3. CD-ROM Title로 제작, 판매하는 경우 사용료 = 공급금액의 3.85%
4. DVD, VCD로 제작, 판매하는 경우 사용료 = 공급금액의 3.15%
5. 그 밖에 경우의 사용료 = 공급금액의 1.23%

② 일반도서, 선집류에 이용되는 경우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 시, 시조, 향가, 그 밖에 이에 해당하는 부류

이용된 어문저작물에 따른 사용료(3년)	
이용 어문저작물 구분(20,000부 이내)	사용료
1/2편 이상 ~ 1편 이용시	26,250원
2연 이상 ~ 1/2편 미만 이용시	21,000원
1연 이용시	15,750원

2. 수필, 설명, 논설, 그 밖에 이에 해당하는 부류

이용된 어문저작물에 따른 사용료(3년)	
이용 어문저작물 구분(20,000부 이내)	사용료
전편 이용시	52,500원
부분 이용시 (200자 원고지 1매당)	1,680원

3. 소설, 희곡, 그 밖에 이에 해당하는 부류

이용된 어문저작물에 따른 사용료 (3년)	
이용 어문저작물 구분(20,000부 이내)	사용료
200자 원고지 1매당	1,680원

비고 1) 발행부수가 20,000부 이상일 경우에는 부수를 추가로 적용하여 사용료를 산출함

③ 1년마다 재발행 되는 참고서류(학습물)에 이용되는 경우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 장르별 사용료 기준금액 합계 × 발행부수 ÷ 10,000

비고 1) 단, 1년간 발행부수가 10,000부 이내일 경우에는 10,000부 발행을 기준으로 저작권 사용료를 산출한다.

1. 시, 시조, 향가, 그 밖에 이에 해당하는 부류

이용된 어문저작물에 따른 사용료 기준금액	
이용 어문저작물 구분(10,000부 이내)	연간 사용료
1/2편 이상 ~ 1편 이용시	8,925원
2연 이상 ~ 1/2편 미만 이용시	7,350원
1연 이용시	5,250원

2. 수필, 설명, 논설, 그 밖에 이에 해당하는 부류

이용된 어문저작물에 따른 사용료 기준금액	
이용 어문저작물 구분(10,000부 이내)	연간 사용료
전편 이용시	17,850원
부분 이용시(200자 원고지 1매당)	575원

3. 소설, 희곡, 그 밖에 이에 해당하는 부류

이용된 어문저작물에 따른 사용료 기준금액	
이용 어문저작물 구분(10,000부 이내)	연간 사용료
200자 원고지 1매당	575원

제4장 사진·미술 저작물 사용료

제6조(사진 및 미술저작물의 복제 등의 서비스 사용료) ① 광고 및 판촉물에 대한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용도	구분	상세구분	메인	서브
신문광고	중앙지(일간/스포츠)	돌출 1-9단 10-15단	150,000원 225,000원 300,000원	150,000원 175,000원
	지역신문, 대학신문, 지방지, 전문지, 타블로이드		150,000원	100,000원
잡지광고	일반교양지, 전문지, 대학지, 학술지, 사보, 가계부, 전화번호부, 광고		225,000원 150,000원	150,000원 100,000원
차량광고	기차, 지하철, 버스 등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200,000원 250,000원	150,000원 200,000원
	TV광고(CF)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200,000원 300,000원	
카탈로그	표지(표1) 내지(표2~4)		150,000원 100,000원	100,000원
날장인쇄물	A3 Size이하인 경우만 적용		100,000원	
포스터	사내용(100부 미만) 사외용		150,000원 250,000원	100,000원 150,000원
캘린더	6매철/12매철(벽걸이용)/일반	1만부 미만 5만부 미만 5만부 이상	250,000원 300,000원 350,000원	
	12매철(벽걸이용)	1만부 미만 5만부 미만 5만부 이상	225,000원 275,000원 325,000원	
	탁상용	1만부 미만 5만부 미만 5만부 이상	150,000원 175,000원 200,000원	
	와이드 칼라, 네코, 옥외광고, 현수막	3개월 미만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200,000원 250,000원 300,000원	150,000원 200,000원 250,000원
간판	1개 장소 2개장소 이상		250,000원 300,000원	
디스플레이	1개 장소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175,000원 225,000원	
	2개 장소이상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225,000원 275,000원	

용도	구분	상세구분	메인	서브
POP, 데코 레이션	1개 장소 2개장소 이상		150,000원 200,000원	
그 밖의 판촉물	부채, 라벨, 스티커, 복권, 입장권, 메뉴판, 문구류		100,000원	
패키지	제품자체인쇄, 음반자켓		175,000원	
액자용 인화	20"×30" (50.8×76.2cm) 해당		125,000원	
홍보용 슬라이드, 멀티비전			75,000원	
인터넷	배너광고 이외 홈페이지 광고 스크린세이버, S/W, 그 밖에 인터넷 광고메일		100,000원 75,000원 55,000원 82,500원	50,000원
컴퓨터, 핸드폰, 터치스크린			110,000원	

비고 1) "서브"는 해당광고 면적의 1/8미만인 경우에 적용하도록 함. (이하 같음)

② 편집 및 출판에 대한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용도	구분	상세구분	메인	서브
참고서, 서적	표지 내지		100,000원 75,000원	60,000원
단행본, 원간지	표지 내지		100,000원 75,000원	
백과사전, 도감, 사전	표지 내지		75,000원 50,000원	
사보, 뉴스레터, 기내지	표지 내지		100,000원 75,000원	
신문, 기관지 등 (기사용)	중앙지 지방지, 전문지		100,000원 75,000원	
화보			100,000원	
CDE타이틀, 노래방배경			8,200원	

제5장 보 칙

제7조(그 밖의 사용료) ① 저작물의 이용형태가 제2장부터 제4장까지의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울 때에는 저작물 이용의 목적, 형태 등을 고려하여 정보원과 이용자 간에 협의하여 그 사용료 요율 또는 금액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그 사항에 대해 3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승인 전에 사용료를 징수한 때에는 이를 추후 정산한다.

제8조(사용료의 감면) ① 정보원은 위탁자가 「국유재산법」 제65조의 10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 8에 따라 감면을 요청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9조(규정 개정) 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저작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지침) 이 규정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공저작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

부 칙(2013. 9. 23.)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저작권신탁관리업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3. 6.)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1. 5.)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02 사용료 분배규정

2013년 09월 23일 제정 2015년 03월 06일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문화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이 권리를 신탁관리하고 있는 저작물을 이용한 대가로 징수한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의 분배방법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분배대상자) 공공저작권의 사용료 분배는 정보원에 저작권을 위탁한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를 그 대상자로 한다.

제3조(사용료 분배) ① 사용료의 분배는 이용자가 제출한 사용료 정산 내역서, 그 밖에 사용료 산정에 필요한 자료에 기초하여 분배한다.

② 정보원은 이용자로부터 징수한 총 사용료에서 「공공저작권 관리수수료 규정」에 따라 관리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과 예금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위탁자에게 분배금으로 지급한다.

③ 정보원은 이용자로부터 징수한 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분배한다.

1. 분배대상 사용료 : 전년도 1~12월까지 이용자로부터 징수한 사용료

2. 분배시기 : 익년도 2월 말

④ 개별 위탁자에게 분배할 금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이월할 수 있으며, 이월 금액에 대하여는 차기 분배금에 가산한다.

⑤ 그 밖에 사용료 분배와 관련한 사항은 정보원과 위탁자 사이의 협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

제4조(이의 신청) ① 위탁자는 공공저작물 사용료 분배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신탁저작권이 이용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공공저작권운영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공공저작권운영위원회는 이의 신청을 접수한 후 3개월 이내에 그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규정 개정) 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저작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지침) 이 규정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공저작권 신탁관리 업무규정」에 따른 공공저작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저작권 신탁관리업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03 관리수수료 규정

2013년 09월 23일 제정 2015년 03월 06일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문화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이 권리를 신탁관리하면서 수취하는 수수료(이하 “관리수수료”라 한다)를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관리수수료) 공공저작물의 저작권을 정보원에 위탁한 자가 정보원에게 지급하는 관리 수수료는 정보원과 공공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의 15% 이내로 한다.

제3조(규정 개정) 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저작권 신탁관리업무규정」에 따른 공공저작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저작권신탁관리업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04 신탁계약약관

2013년 09월 23일 제정 2024년 04월 09일 개정
2015년 03월 06일 개정

제1조(목적) 이 약관은 공공저작물의 저작권을 위탁하는 공공저작권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공공저작권 신탁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저작물의 원활한 민간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저작권을 신탁 받은 한국문화정보원(이하 “수탁자”라 한다) 사이의 공공저작권 신탁계약의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탁 범위) ① 위탁자는 현재 소유하고 있거나 장차 취득하게 될 공공저작권 중 이 약관에 규정한 바에 따르는 공공저작권의 일부 또는 전부(이하 “신탁저작권”이라 한다)를 수탁자에게 신탁하여 관리하게 한다.

② 수탁자는 「저작권법」 상의 권리범위 내에서 신탁저작권을 관리한다.

제3조(저작권 보증)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신탁한 공공저작물의 저작권자이고,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지 아니함을 확인·보증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신탁한 공공저작권에 관하여 위탁자에게 저작권이 없거나 위탁자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이유로 수탁자와 제3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한다.

③ 수탁자는 필요한 경우 위탁자가 진정한 저작권자인지 여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지 아니한지 여부에 관한 자료를 위탁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위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신탁저작권 관리방법)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탁자를 위하여 신탁저작권을 관리하여야 하고, 신탁저작권을 양도, 담보제공 등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신탁저작권의 이용관계를 모니터링하고, 제3자에 의한 저작권의 침해를 예방하며, 침해행위가 있을 경우 침해행위의 중지와 손해배상청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신탁저작권 및 사용료 등의 관리와 관련하여 위탁자의 권리에 대한 제3자의

침해행위가 있을 경우 그 제3자에 대한 형사고소, 민사소송 등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제5조(공공저작권신탁관리시스템) ① 수탁자는 신탁저작권 관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공공저작권 신탁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신탁저작권 관련 정보(권리정보, 저작물 소재정보 등)를 수집·활용할 수 있고, 위탁자는 신탁계약과 동시에 이를 허락하는 것으로 본다.

제6조(신탁 계약기간) 이 계약의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위탁자가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5년 단위로 그 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해지시점에 계약이 종료된다.

제7조(자유이용허락) ① 수탁자는 위탁자가 신탁한 공공저작권에 대하여 위탁자가 미리 정한 일정한 조건 하에서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이하“자유이용허락”이라 한다)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에서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경우 등 특정한 경우에 한해서는 자유이용허락을 할 수 없다.

제8조(사용료 징수 및 분배) ① 수탁자는 제3자에게 제2조에 속하는 신탁범위 내에서 공공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고, 「공공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공공저작권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수탁자는 위탁자가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감면을 요청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공공저작권 사용료 분배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위탁자에게 분배한다.

제9조(관리수수료) 위탁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자에게 신탁저작권 관리수수료로 지급하여야 하고, 그 비율은 「공공저작권 관리수수료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신탁관리 및 사용료 분배의 유보) ①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이용허락이나 사용료 징수 등의 관리업무를 일시 중지하거나 징수한 사용료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

1. 신탁관리 하는 공공저작권에 관하여 제3자가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권리의 귀속 관계에 관한 이의를 제기할 때
2. 신탁관리 하는 공공저작권에 관하여 위탁자에게 공공저작권이 없음 또는 위탁자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이유로 하는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가 제기되었을 때

② 수탁자는 제1항 각 호의 경우 위탁자에게 저작권이 있거나, 위탁자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확인된 때에는 정상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유보 직전 분배시기까지 확정된 분배금을 분배하여야 한다.

제11조(비용 등의 부담) 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1. 위탁자의 의뢰로 수탁자가 공공저작권의 저작권 등록업무를 하였을 때 소요되는 실비
2.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그 종료에 관한 업무수속에 필요한 비용
3. 신탁저작권 침해행위를 한 제3자의 손해배상청구 등의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를 위한 비용

② 수탁자는 제1항의 비용을 공공저작권 사용료 분배금에서 미리 공제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신탁저작권 침해행위를 한 제3자에 대하여 침해행위의 중지요구(내용증명의 발송 포함), 손해배상청구 등의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를 함에 있어서 사전에 위탁자로부터 그 청구액의 적절성 등에 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2조(위탁자 통지의무) 위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수탁자의 저작권 행사 등에 제한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수탁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1. 위탁자가 신탁저작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경우
2. 위탁자의 이름 또는 명칭, 주소, 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3. 신탁저작물이나 신탁저작권의 종류, 범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수탁자의 저작권 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제13조(권리의무 승계) ① 위탁자인 공공기관이 직제 개편, 합병 등을 이유로 신탁권리관계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신탁저작권을 양수한 공공기관은 신탁계약에 의한 위탁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승계자인 공공기관은 위탁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사실을 지체 없이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신탁계약 해지 및 종료) 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자가 신탁저작권의 전부를 상실한 경우
2. 위탁자가 관련 법령이나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이에 대한 수탁자의 시정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여 더 이상의 신탁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② 위탁자는 수탁자가 저작권의 신탁관리에 따른 제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 계약의 해지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해지의 효력은 그 계약 상대방이 해지 통보를 받은 때로부터 발생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 계약이 해지된 경우 수탁자는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후 6개월 이내에 위탁자에게 사용료 미분배분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 계약의 해지는 해지의 통지 이전에 수탁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이용자의 이용 권리나 이용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제4항에 의한 정산 이후에도 공공저작권 사용료가 계속 발생할 경우 수탁자는 추가로 정산하여야 한다.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합의 해지한 경우에도 같다.

제15조(약관 개정) ① 이 약관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 수탁자는 공공저작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약관 개정에 이의가 있는 위탁자는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정의 양식으로 이 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위탁자가 위 기간 동안 해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정된 약관에 따라 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제16조(부속 계약) ① 이 약관에 있지 아니한 내용에 관하여 별도로 합의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 내용을 기재한 부속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 날인하여 이 약관 말미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약관 말미에 첨부된 부속계약서는 이 약관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17조(재판 관할) 이 약관에 따라 체결된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저작권신탁관리업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05 이용계약약관

2013년 09월 23일 제정 2024년 04월 09일 개정
2015년 03월 06일 개정

제1조(목적) 이 약관은 한국문화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과 정보원이 신탁관리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 사이에 준수하여야 할 이용방법 및 이용계약조건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허락 범위) ① 정보원은 신탁저작권 범위 내에서 이용허락의 대상권리를 정한다.
② 정보원이 아직 공표되지 않은 공공저작물을 이용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그이용자가 이를 공표하는 것을 허락한 것으로 본다.
③ 정보원이 공공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한 저작물에 대하여 신탁관리권리가 소멸한 경우 정보원은 지체 없이 이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용자는 잔여 이용허락 기간까지는 그 이용을 허락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이용 계약기간) 이 계약의 기간은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용기간을 결정하며,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허락을 갱신할 수 있다. 단, 제2조제3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사용료) ① 이용자는 정보원의 「공공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원의 「공공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정보원과 이용자 사이에 합의하여 정한 요율 또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정보원은 「공공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변경으로 인해 사용료의 증감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용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이용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이용자료 제출 등) ① 이용자는 정보원이 사용료 산정을 위하여 공공저작물의 이용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정보원은 이용자에게 사용료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열람 및 제공을 청구할 수 있고,

이용자는 정보원의 청구에 따라야 한다.

③ 정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사용료 산정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계약의 해지) ① 정보원 또는 이용자는 그 상대방이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불이행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정보원이 이용을 허락한 저작물에 대하여 정보원의 신탁관리권리가 소멸한 경우, 이용자는 제2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이용허락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이 통보를 받은 때에 해지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계약이 해지된 경우 이용자는 지체 없이 정보원이 권리를 신탁관리 하는 공공저작물의 이용을 중지하고 그 저작물의 복제물을 폐기하여야 한다.

제7조(복제방지조치의 적용) 이용자는 정보원으로부터 이용허락 받은 공공저작물에 대하여 제3자의 불법복제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약관 개정) ① 정보원은 공공저작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 약관을 개정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약관 개정에 이의가 있는 이용자는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정의 양식으로 이 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용자가 위 기간 동안 해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정된 약관에 따라 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제9조(부속 계약) ① 이 약관에 있지 아니한 내용에 관하여 별도로 합의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 내용을 기재한 부속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 하여 이 약관 말미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약관 말미에 첨부된 부속계약서는 이 약관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10조(자유이용허락) 정보원은 위탁자와 협의하여 위탁자가 미리 정한 일정한 조건 하에서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을 허락한 저작물에 대하여는 이 약관의 각 조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정한 조건에 따른다.

제11조(소송 등의 합의 관할) 이 약관에 따라 체결된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제소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도록 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여 제기되는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저작권신탁관리업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06 신탁관리 업무규정

2013년 09월 23일 제정 2024년 04월 09일 개정
2015년 03월 06일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한국문화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이 정관 제4조 제17호에서 정한 공공저작권의 신탁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저작물”이란 공공기관이 “저작권법” 제9조에 의하여 저작자가 되거나 제3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양도받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저작물을 말한다.
2. “공공저작권”이란 공공저작물의 저작권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4. “신탁”이란 공공저작물의 저작권자인 공공기관이 정보원에 공공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법」상의 권리를 신탁하여 관리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제3조(사업) 정보원은 공공저작권의 신탁관리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공공저작권에 관한 신탁관리 업무
2. 공공저작물의 공동 활용 등 유통 촉진
3. 공공저작물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출판
4. 공공저작권 관리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5. 공공저작권자의 권익 보호와 공공저작물의 공정한 이용도모를 위한 의견 수렴 및 대정부 건의
6. 그 밖에 신탁관리와 관련하여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공공저작물팀 설치) ① 정보원은 제3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공공사업부 내에 공공저작물팀(이하 전담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정보원은 내부 직제개편에 따라 전담조직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전담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담팀에 팀장 1인을 두고, 팀장은 정보원 원장이 임명한다.

제5조(공공저작물팀 운영) 공공저작물팀의 운영에 필요한 조직, 분장사무 등의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6조(공공저작권운영위원회) ① 공공저작권 신탁관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원에 공공저작권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위원, 정보원에 공공저작권을 신탁한 기관을 대표하는 위원과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정보원 원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의 동의를 얻어 위원 중 1인을 위원장이 위촉하고, 간사위원은 전담팀 팀장이 된다.

제7조(소집) ① 운영위원회는 정기운영위원회와 임시운영위원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운영위원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③ 임시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에 관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의결 방법)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중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의결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장은 그 결과를 차기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운영위원회에 참석이 어려운 위원은 의결 안건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9조(의결 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공공저작권 사업의 기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공저작권 신탁관련 제규정 및 약관 등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3. 사용료 및 관리수수료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사용료 분배 및 징수) ①정보원은 「공공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및 「공공저작권 사용료 분배규정」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하여 위탁자에게 이를 분배할 수 있다.

②정보원은 저작물 사용료의 징수와 분배를 위한 신탁회계와 정보원의 관리비용 회계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11조(규정 개정) ① 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 규정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과 지침 등으로 정한다.

제12조(업무 보고) 정보원은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사업실적을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록) 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은 전담팀에서 작성하고 위원장이 확인 서명한 후, 전담팀에서 보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저작권신탁관리업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저작권 신약관리단체 규정집



진주 | 52852 경상남도 진주시 소호로 117

대표번호 055.792.0000

서울 | 04323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로 107, 5층/16층

대표번호 02.2669.0010

비매품/무료



9 788961 206099

ISBN 978-89-6120-609-9

ISBN 978-89-6120-038-7 (세트)